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조 사 요 령 서

(전수조사구용)



경 제 기 획 원

목 차

I. 조사개요	5
II. 조사일정	6
III. 조사원 주의사항	10
IV. 조사대상	14
V. 준비조사	23
VI. 본조사	37
VII. 조사항목별 기입방법 및 작성기준	38
-인구에 관한 사항	38
① 성 명	38
② 가구주와의 관계	38
③ 성 별	40
④ 나 이	40
⑤ 출생지	42
⑥ 교육정도	43
⑦ 통근·통학여부	44
⑧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44

⑨ 출발·도착시각	44
⑩ 이용교통수단	44
⑪ 혼인상태	46

-가구에 관한 사항(모든 가구)

① 거처의 종류	47
② 가구 구분	49
③ 점유형태	50
④ 사용방수	51
⑤ 식수의 종류	51
⑥ 취사연료	52
⑦ 난방시설	52
⑧ 문화시설 및 가재	52
⑨ 전용시설	53
⑩~⑬ 시설형태	53

-주택에 관한 사항(주택의 주가구)

⑭ 외벽재료	54
⑮ 지붕재료	55
⑯~⑰ 연건평, 대지 면적	56
⑱~⑲ 총방수 및 거주 가구수	57
⑳ 건축년도	58

②① 편익시설수	58
②② 거주가능 가구수	59
VIII. OMR 조사표 작성 및 관리요령	60
IX. 조사표류 검토, 정리 및 제출	71

I. 조 사 개 요

1. 법적근거

통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임

2. 조사지역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

3.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 시점

1990년 11월 1일 0시 현재

나. 조사기간

- 준비조사 : 1990. 10. 29~10. 31(3일간)
- 본 조사 : 1990. 11. 1~11. 10(10일간)

4.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조사대상자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고 자 하는 가구에는 조사표 배부)

5. 조사사항

- 가. 인구에 관한 사항 : 11항목
- 나. 가구에 관한 사항 : 13항목
- 다. 주택에 관한 사항 : 9항목

II. 조 사 일 정

조사요령교육



10월 17일(수)
~10월 27일(토)
(기간중 1일)

1. 조사요령 교육

조사요령 교육이 끝나면 집에서 실지조사에 대비하여 조사요령서의 내용은 물론 조사표 작성요령을 충분히 복습하여야 한다.

2. 조사용품 수령

- 조사요령서
- 일반조사표 및 OMR조사표
- 가구명부
- 조사구요도
- 가구일련번호표
- 사무용품(연필, 볼펜, 지우개, 받침대, 가방)

3. 조사표류 관리의 철저

- 오염이나 훼손방지
- 조사표류 절약 및 보관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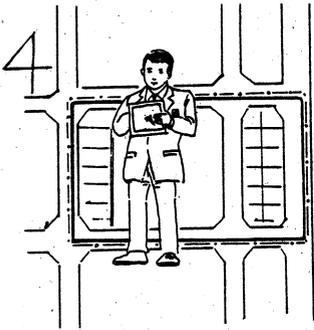
준비조시

1. 조사구 경계확인

동·읍·면 담당자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조사구요도를 수령한 후 자기가 담당할 조사구의 외곽 경계를 확인한다.

2. 조사구 요도 보완작성

조사구 요도에 거쳐 표시를 하고 거쳐번호를 방문,



10월 29일(월)
~10월 31일(수)

순서에 따라 차례로 부여한다.(거처번호 기입방법은 32쪽 참조)

3. 가구명부작성

완성된 조사구요도에 따라 조사구내의 각 가구를 방문하면서 가구명부를 2부 작성한다.

4. 조사표 배부

조사대상자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고자 하는 가구에는 가구원수에 맞게 조사표를 배부한다(조사표 1매에 5명까지 작성).

5. 가구일련번호표(스티커) 첨부

가구확인이 끝나면 조사구번호와 가구일련번호를 기입한 가구일련번호표를 가구수만큼 대문에 붙인다.

본 조사



11월 1일(목)
~11월 10일(토)

1. 가구명부에 표시된 거처번호 순서에 따라 가구를 방문하여 적합한 응답자를 선정하고, 면접에 의하여 일반조사표를 작성한다.

2. 적합한 응답자가 없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원 연락전으로 재방문일자를 약속한다.

OMR 조사표에의 이기

11월 1일(목)
~11월 10일(토)

1. 조사가 완료된 일반조사표는 매일 오후 5시까지 동·읍·면사무소의 지도공무원에게 조사표 검토를 받은 후 OMR조사표에 이기한다.

2. 일반조사표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완성된 조사표는 당해 가구를 재방문하여 작성한 후 OMR조사표에 이기한다. 이때 이기·내검요원에 의해 이기되는 항목(가구주와의 관계, 출생지,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과 경제기획원에서 부호가 기입되는 항목(산업, 직업)은 제외한다.

3. 이기작업이 완료된 OMR조사표는 지도공무원의 내용검토를 받은 후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한 후 조사구별로 OMR조사표 보호용 비닐에 가구번호 순서대로 넣는다.

조사표류 제출



11월 10일(토)

1. 조사표류 제출

조사표 및 가구명부 등의 점검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내검을 다시 한후 동·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최종 점검을 받는다.

2. 제출하여야 할 조사표류

- ① 조사표(일반조사표, OMR조사표)
- ② 가구명부
- ③ 조사구요도
- ④ 조사요원증
- ⑤ 조사업무 수행시 발생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III. 조사원 주의사항

조사원은 각 가구를 방문할 때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의 비밀보호



탁상조사금지



1. 일반적인 주의사항

구 분	실 천 내 용
① 가구의 누락·중복방지	• 담당 조사구 경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주의
② 조사업무에만 전념	• 조사기간 중에는 본 조사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하며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조사하여서는 안됨
③ 대리조사 불가	• 조사업무를 가족이나 친구, 친척에게 대리 조사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교육받은 사람이 조사해야 함
④ 조사업무수행이 어려울때	• 특별한 사고(질병, 기타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지도공무원에게 보고
⑤ 조사요령서 숙지	•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요령서 내용을 숙지
⑥ 개인의 비밀보호	• 조사결과 알게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조사내용은 비밀로 함(누설하게 되면 통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형)
⑦ 조사진행상황 일일보고	• 항상 지도공무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⑧ 탁상조사금지	• 기존의 기록(주민등록부, 통(리)·반적부 등)을 이용하여 탁상 조사하여서는 안됨

2. 가구 방문시 주의사항

방문 시간 선택



조사원마크 및 조사요원증패용



구 분	실 천 내 용
① 방문시간 선택	•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은 피함
② 조사원 마크 및 조사요원증 패용	• 조사업무 수행중 조사원마크 및 조사요원증을 패용, 응답자가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함
③ 복장단정	• 색 안경을 쓰거나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방문하여 응답자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
④ 질문요령	• 조사표의 질문요령에 의거 누구나 알기 쉽고 공손하게 질문(유도질문금지)

3. 응답자 선정시 유의사항

적합한 응답자 선정



구 분	실 천 내 용
적합한 응답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그 가구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가구원을 선정(어린이나 가정부에게 질문 금지) • 특히 동거인(가정부, 종업원, 하숙인 등)에 대한 조사는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여야 함

조사목적설명 및 설득



4. 응답거부시 조치사항

구 분	실 천 내 용
① 조사목적 설명	•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
② 비밀보호	• 조사내용은 법적으로 비밀을 보호토록 되어 있으며 오직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 • 조사내용의 비밀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봉투를 배부
③ 계속된 응답 거부	• 위와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도 공무원에게 보고

대상가구 재방문



5. 대상가구 재방문

구 분	실 천 내 용
① 연락전 활용	• 가구원이 출타, 부재 등으로 적합한 응답자가 없을때 연락전 활용
② 대상가구 재방문	• 대상가구에 혼사(婚事) 또는 상사(喪事)가 있거나 조사표 검토중 기입 누락이나 잘못된 기입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대상가구를 재방문

6. 외국인 조사

외국인에 대한 조사는 우선 조사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용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가. 보통조사구내의 외국인가구

보통조사구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가구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 조사표를 배부하고 본인이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도록 부탁한다.

나. 외국인 가구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외국인 가구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외국인 가구와는 별도로 한국인 조사요령에 의하여 일반조사표(한국인용)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다. 관광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외국인

1990년 11월 1일 0시 현재에 관광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광호텔 조사구 담당조사원이 호텔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외국인 투숙객에게 조사표를 배부 기입해 주도록 부탁한후 회수토록 한다.

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관리인이나 한국인 동거인 등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통하여 조사표 작성을 의뢰토록 한다.

IV. 조 사 대 상

-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담당 조사구내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와 가구원 및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외국인은 모두 조사대상이 되나 외국 외교관, 외국 군인·군속 및 그 가족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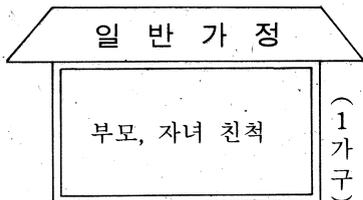
1. 가 구

-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하며, 이는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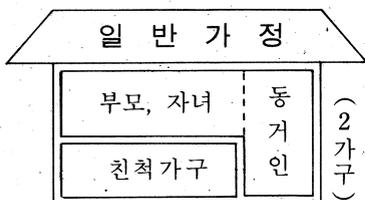
- 일반가구
 - 혈연가구 :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 혈연가족 관계로만 구성된 가구
 - 혈연가족과 5인 이하 비혈연 동거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 단독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 집단가구
 - 집단시설 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등 시설내에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
 -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내에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

일 반 가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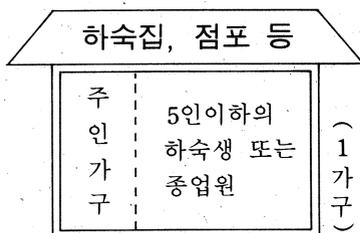
○1인 또는 2인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 취침등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가구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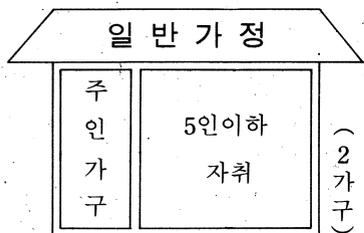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 1가구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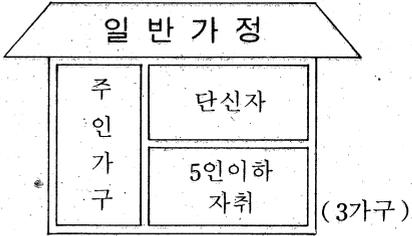
○친척과 같이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가구로 보아 2가구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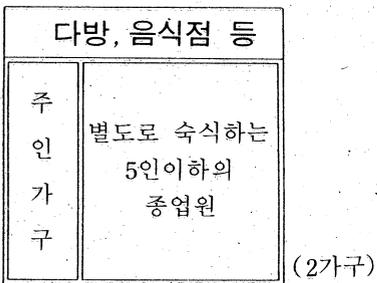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이하의 하숙생 또는 종업원은 주인가구의 동거가구원으로 보아 하나의 가구로 조사한다. 그러나 이들 하숙생 또는 종업원이 6인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인가구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주인가구와 독립시켜 별개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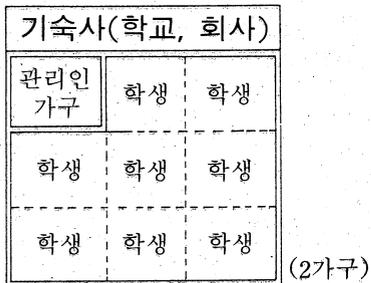
○주인가구와 생계를 달리하는 5인 이하의 자취생은 이들 자취생만을 별개의 가구로 보아 2가구로 조사한다. 그러나 자취생들이 함께 살지 않고 각기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을 때에는 각각을 별개의 가구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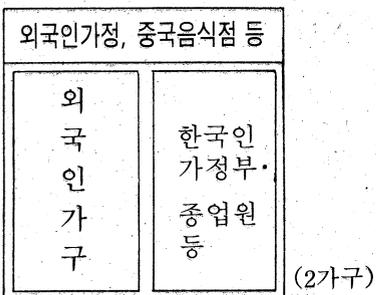
○주인가구와 함께 살고있으나 숙식을 달리 하는 단신자와 5인이하의 자취생은 각각을 1가구로 조사한다.



○다방, 음식점, 상점 등의 영업장소에서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은 이들 종업원만을 별도의 가구로 조사한다. 그러나 숙식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이면 주인가구에 포함시켜 동거인으로 조사하고, 6인이상이면 이들을 독립시켜 별도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기숙사, 고아원등 시설내에 거주하고 있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의 경우 공동취사를 하지 않고 독립취사를 하고 있으면 이들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를 별도의 일반가구로 조사하고, 기숙생 또는 고아원생은 일괄하여 하나의 집단가구로 파악한다.



○외국인 가구 또는 사업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가정부·종업원은 숙식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외국인 가구와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5인까지는 일반가구, 6인 이상은 집단가구로 조사).

집	단	가	구
---	---	---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거처에서 집단하숙 또는 자취하고 있는 6인 이상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가구로 파악한다.

사회 시설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1가구)

○고아원, 양로원, 영아원, 불구자 수용시설 등 사회시설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기숙사(학교)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1가구)

○공장, 학교, 병원 등의 기숙사(명칭이 기숙사라도 독립적인 취사, 취침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일반가정, 상점 등	
주 인 가 구	6인이상의 종업원, 하숙생 등

(2가구)

○주인가구와 동거인수가 6인이상인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2가구로 조사하되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한다.

○주인가구와 자취를 하는 1단위가 6인 이상인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2가구로 조사하되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한다.

○대사찰, 수녀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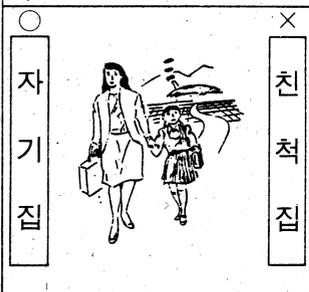
○공사장 및 건설현장의 막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2. 가구원

가구원이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구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란 용어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자 기 집 에 서 조 사 해 야 할 사 람

잠시 친척집 방문



○잠시 친척집을 방문하고 있는 가족(국내외 방문)

○본래 이 가구에서 살고 있었으나 잠시 형제·자매집에 가 있는 부모 등 가족

국내외 출장 또는 여행



○국내외에 여행중인 가족

○국내외에 출장중인 가족(단, 학업이나 직업때문에 외지에서 상주하는 가족은 제외)



○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인 가족(요양소 등에 장기 입원중인 사람은 제외)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 · 관광버스 등의 탑승 승무원인 가족(기숙사에 들어있는 가족 제외)



○ 경찰서 보호실 또는 구치소(교도소)에 미결수로 들어가 있는 가족

○ 즉결 심판에 의하여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중인 가족



○ 예비군 또는 방위소집중인 가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영외거주 직업군인인 가족(영외거주를 하고 있으나 가정을 갖지 않고 혼자 방을 얻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아직 정착 여부를 알 수 없는 1개월미만의 부재중인 가족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은 발견된 장소에서 조사(발견된 장소를 생계단위로 하여 일반가구로 간주 조사)

타 지 에 서 조 사 해 야 할 사 람



○취업, 취학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외지에서 하숙, 자취중인 가족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부녀보호소 등의 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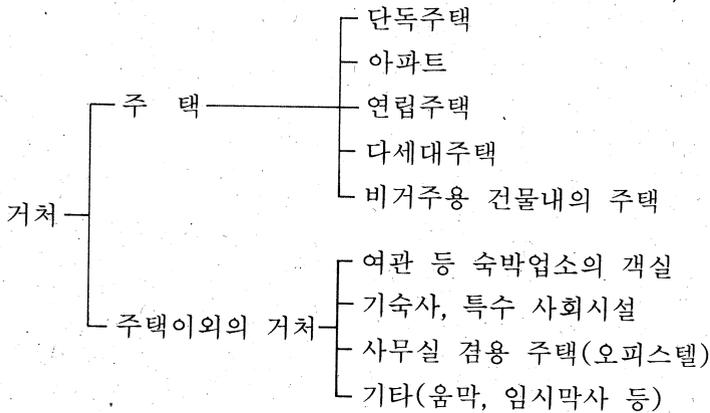
○군, 전투경찰 또는 의무경찰(병역의무자)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가족
○경찰대학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가족(간부 후보생)



○교소도, 소년원에 입소되어 형이 확정된 가족

3. 거 처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주 택

주택이란 한 가구(집단가구 제외)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첫째 : 영구건물이어야 하며

둘째 :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셋째 :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넷째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주단위를 말한다.

○호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

○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수용을 위한 구조물

○건설공사 현장의 임시막사, 움막, 토굴 등

V. 준비 조사

1. 조사구 요도 작성

담당조사구의 경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조사 대상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한다.

가. 조사구의 경계확인

○동·읍·면 담당자가 작성한 조사구 요도를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여 자기가 맡은 조사구의 경계를 확인한다.

○경계가 불분명할 때에는 동·읍·면 담당자와 함께 현지확인하여 인접 조사구와 중복 또는 누락지역이 없도록 한다.



나. 건물 및 지형지물 표시

○경계확인이 끝나면 조사구내의 모든 건물과 지형지물을 요도상에 표시된 지정기호를 사용하여 그려 넣는다.(건물은 로 표시하되 신축중인 건물은 로 표시한다.)

기숙시설 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관광호텔 조사구는 조사구요도를 작성하지 않는다.

다. 거처와 가구파악

○건물 및 지형지물 표시가 끝나면 모든 건물에 대해 사람이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비거주용 건물내에 사는 가구(다방, 점포 등에 거주하는 종업원 가구 등)와 세든 가구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비거주용 건물(은행, 상점, 공장 등)은 건물이름을 기입하고, 사람이 살지 않고 건물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 빈집(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과 수리를 위해 잠시 비워둔 집)은 빈집, 신축중인 건물은 로 표시한다.

라. 거처번호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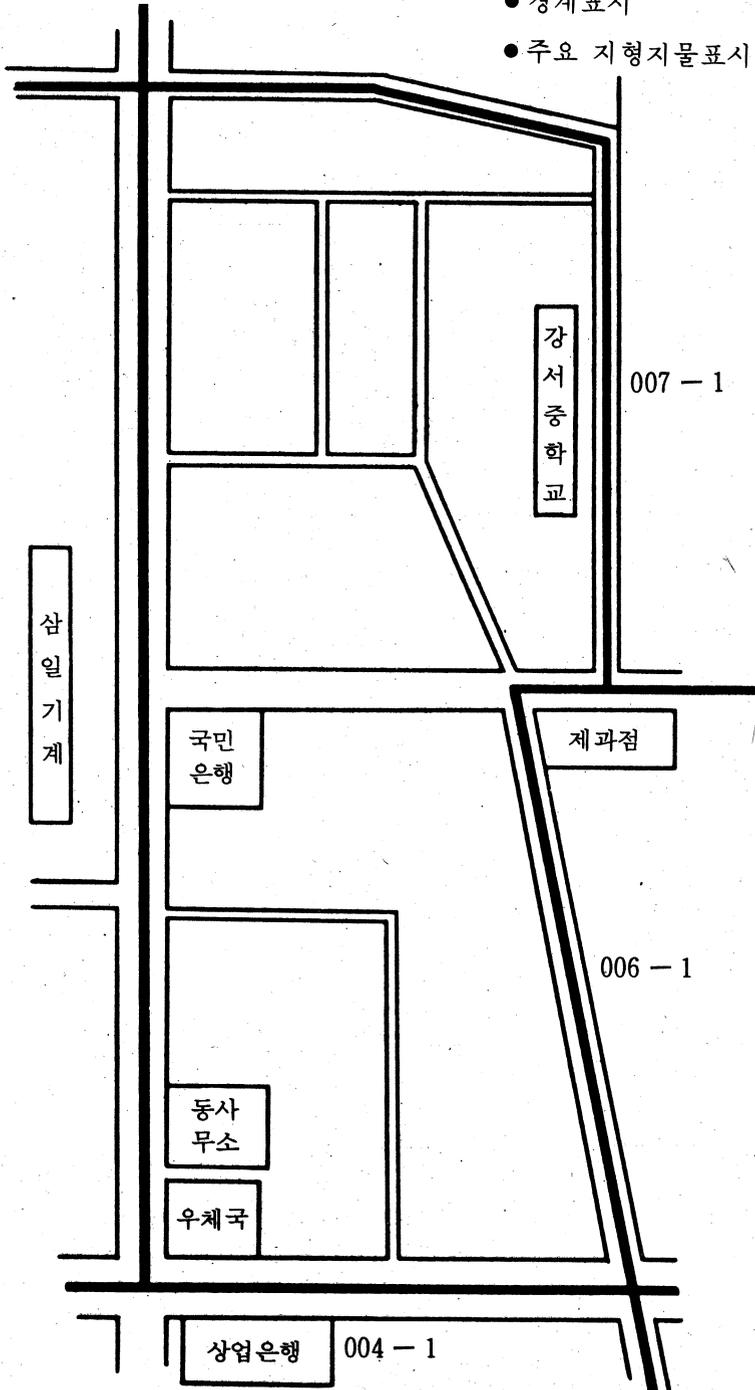
○조사진행 순서에 따라 건물표시내에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1 또는 5빈집).

이때 빈집에 대하여도 거처번호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시부지역의 조사구요도 작성(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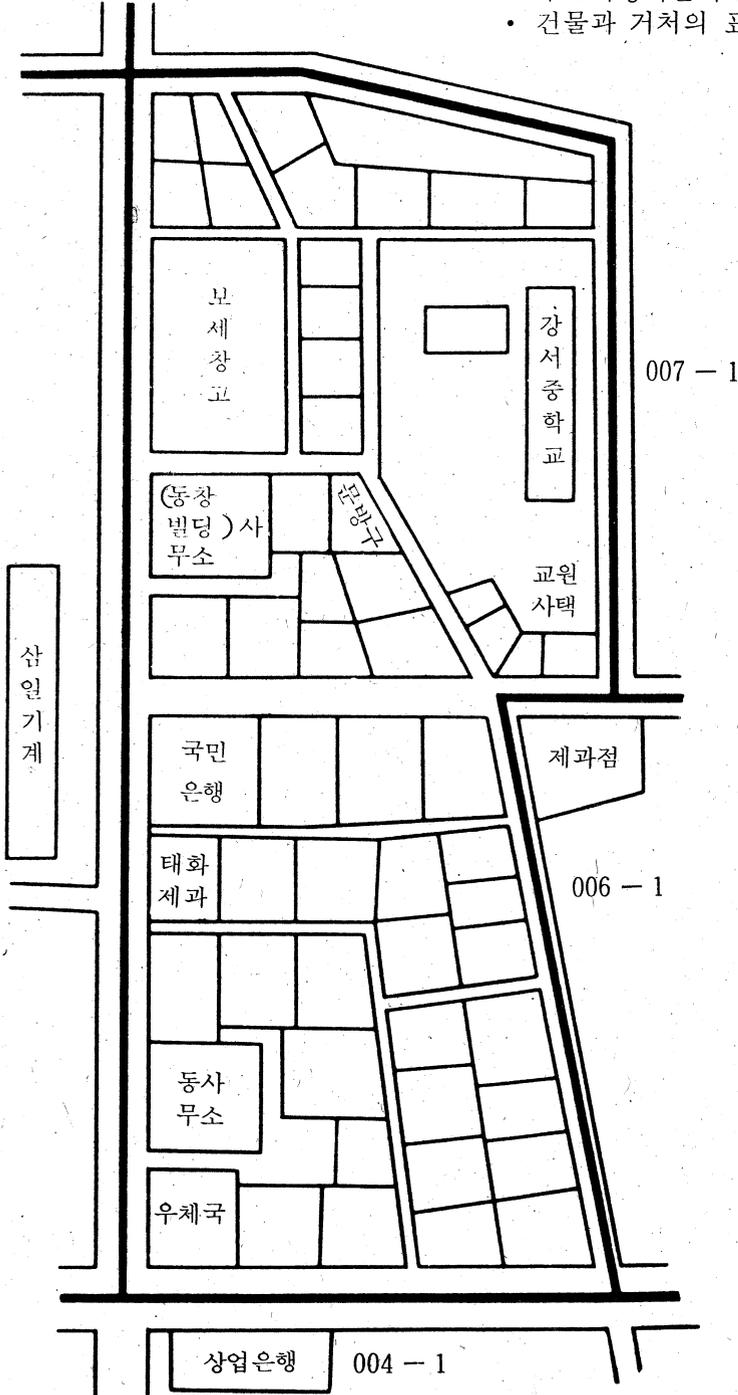
1단계 : 동·읍·면 담당자가 작성

- 경계 표시
- 주요 지형지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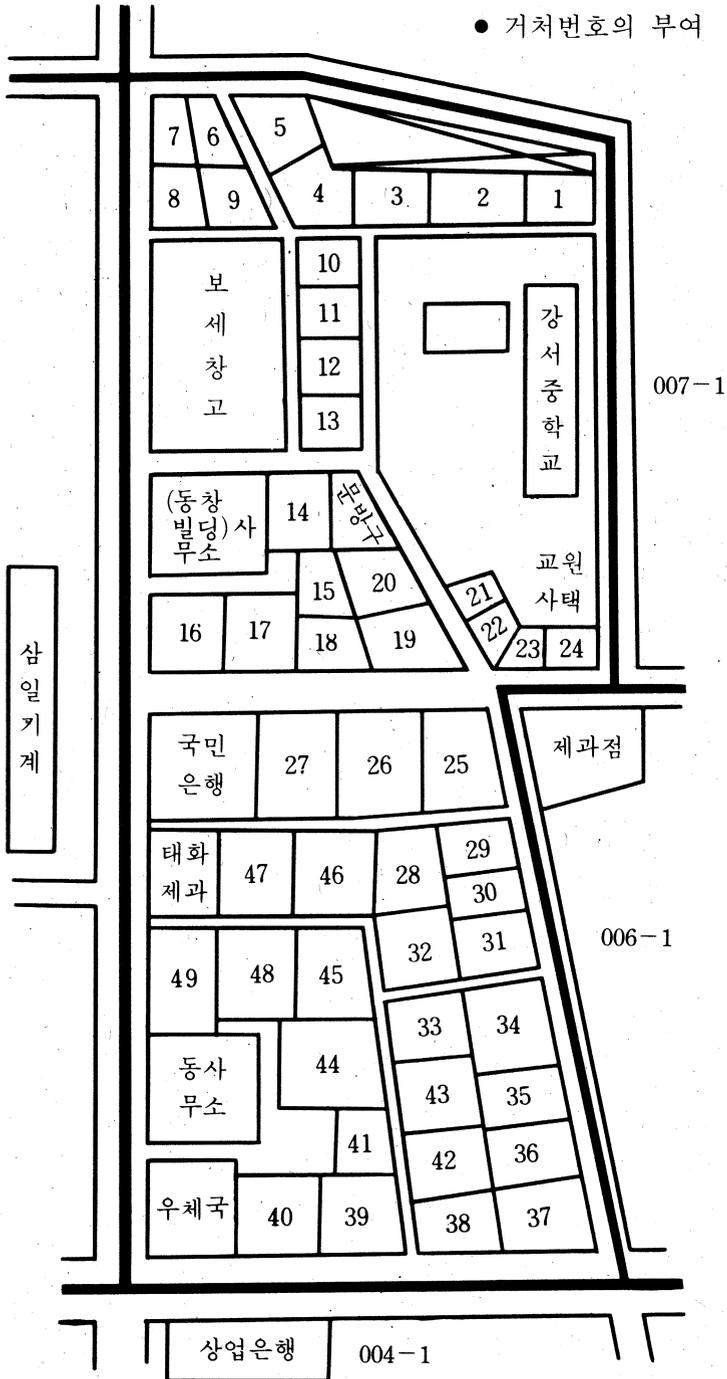


2단계 : 조사원이 작성

- 경계의 확인
- 주요지형지물의 보완
- 건물과 거처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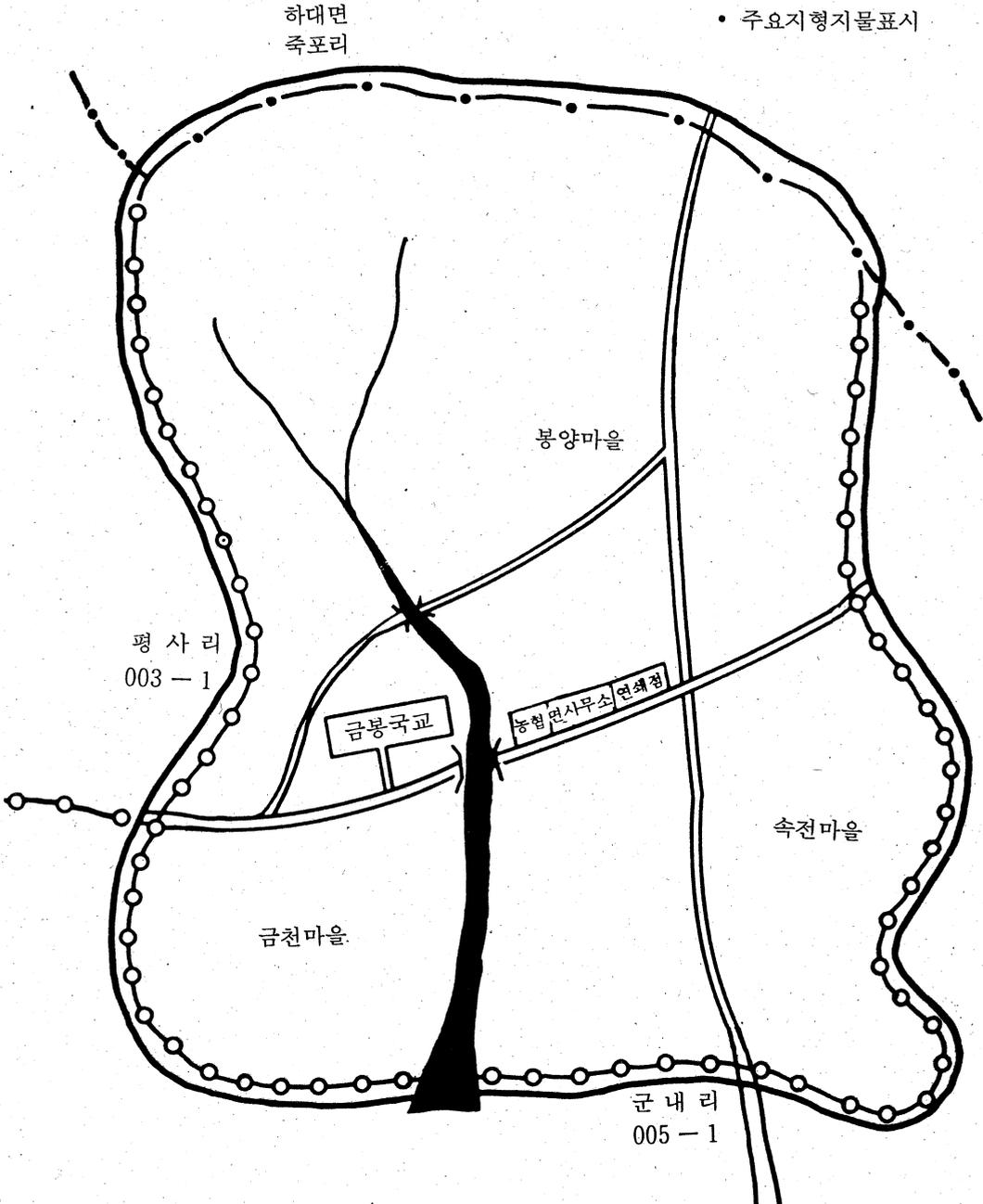
3단계 : 조사원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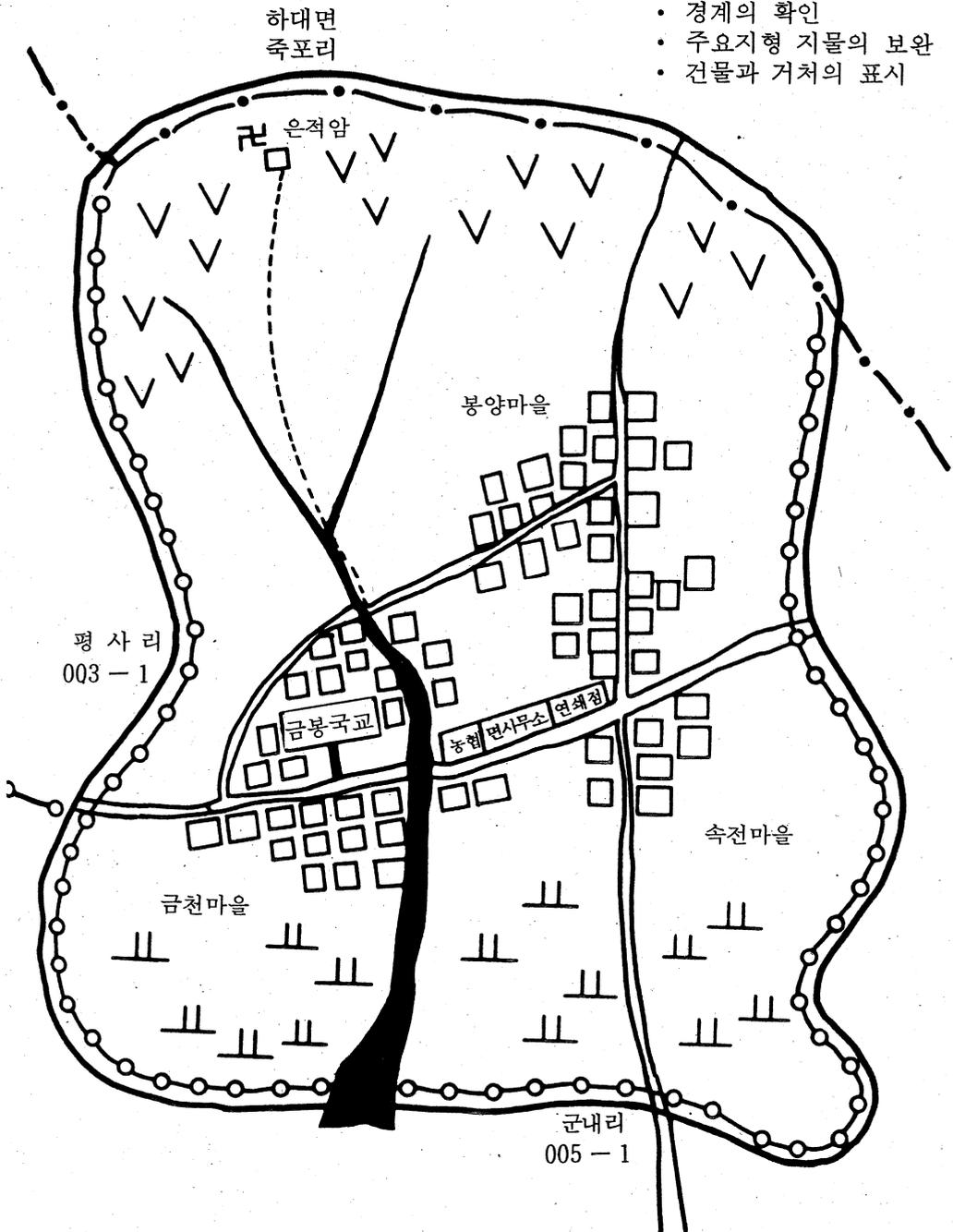
군부지역의 조사구요도 작성(예)

1단계 : 동·읍·면 담당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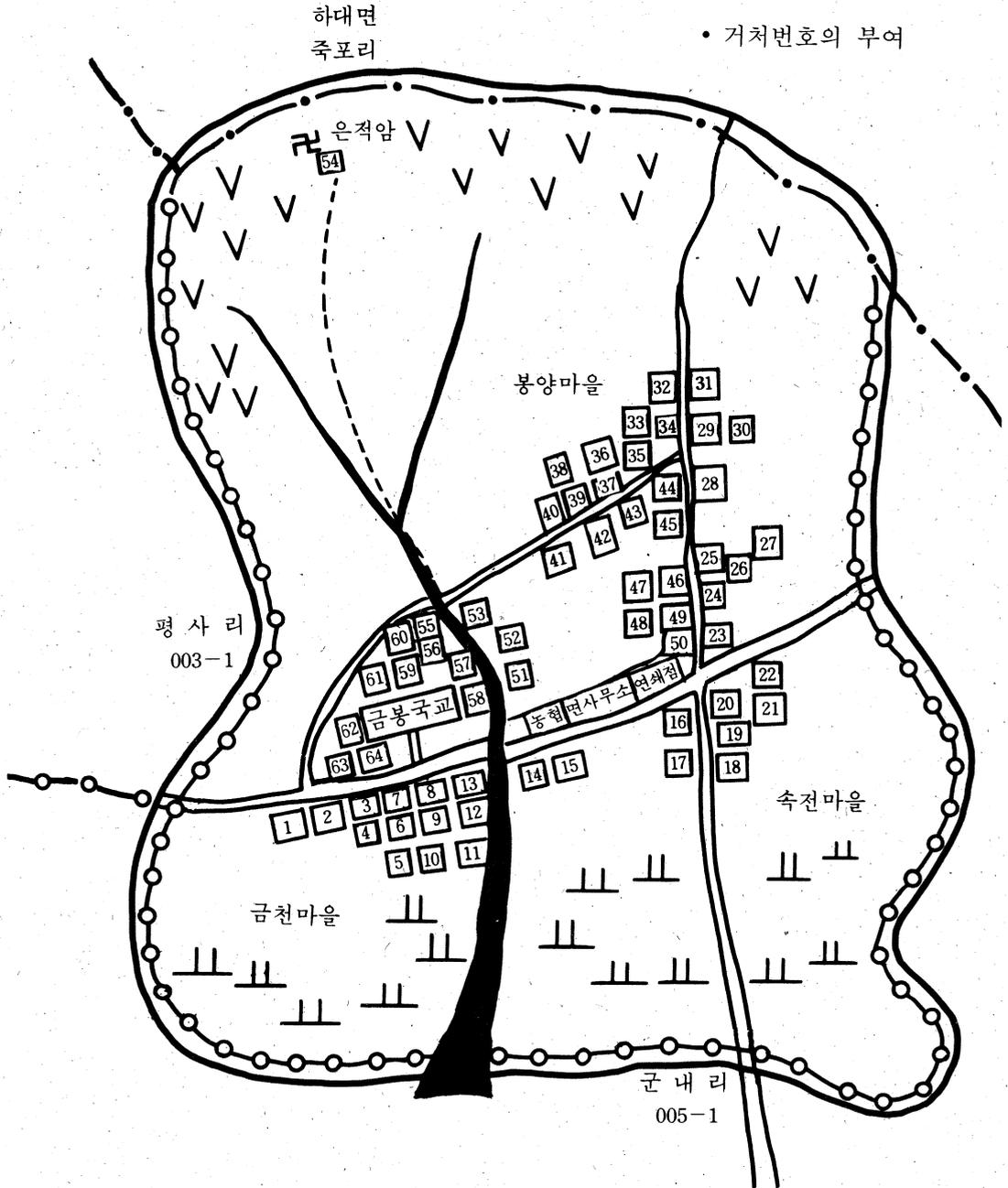
- 경계표시
- 주요지형지물표시



2단계 : 조사원이 작성



3단계 : 조사원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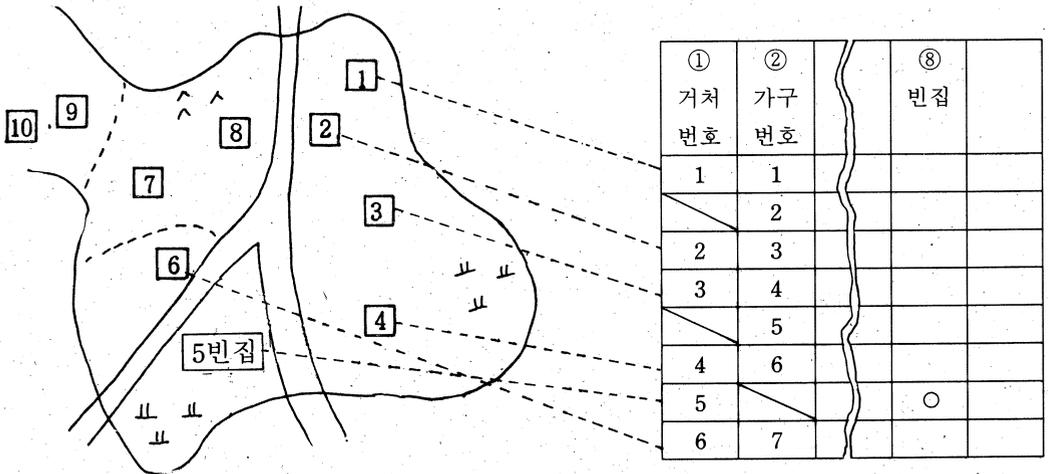
가. 가구의 파악이 끝나면 다시 거처번호 순서에 따라 가구명부를 작성한다.

나. 가구명부의 기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난 외 사 항

- (1) 전수·표본 : 담당조사구가 전수 또는 표본조사구인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한다.
- (2) 조사구 소재지 : 조사구의 소재지명을 동읍면 단위까지 기입한다.
- (3) 조사구번호 :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 (4) 일반조사표 매수 : 실지조사에 소요된 일반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 (5) OMR조사표 매수 : 일반조사표에 의해 이기 작성된 OMR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 (6) 가구명부 매수 : 1매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매중 1매」, 2매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첫째장은 「2매중 1매」 둘째장은 「2매중 2매」로 기입한다.

예시 : 거처 및 가구번호 기입방법



(주의) : 빈집이라 하더라도 거처번호는 기입해야 하며 일반조사표와 OMR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난 내 사항

(1) ① 거처번호 : 거처번호를 앞의 예시와 같이 기입한다.

(2) ② 가구번호

(가) 한 거처내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여 거처번호와 관계없이 순서에 따라 예시와 같이 일련번호를 계속 부여한다.

(나) 하나의 거처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주가구의 가구번호는 거처내에서 맨 먼저 부여하여야 한다.

(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내에 있는 일반 가구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있는 보통 조사구에 포함 조사한다. 기숙사나 특수사회시설 담당 조사원이 그러한 시설이 들어있는 보통조사구를 같이 조사하지 않을 경우 시설내에 있는 일반가구를 누락하기 쉬우므로 발견 즉시 담당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빈집일 경우에는 가구번호란에 사선(\)을 긋는다.

(3) ③주소

거처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통반, 번지까지 자세히 기입한다. 단, 동일거처내에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가구만 기입하고 동거가구는 사선(\)을 긋는다. 특히 군부지역의 「리」 명은 법정리를 기입하여야 한다.

(4) ④가구주 또는 대표자 성명

가구주라 함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 이때, 가구주의 성은 반드시 한자

로, 본관은 한글로 기입하되 동음이본(同音異本)일 경우에는 한자로 기입한다.
학력은 대졸, 고졸, 대퇴와 같이 기입한다.

(5) ⑤가구원수

가구별 가구원수를 파악하여 기입한다. 이는 본조사시 일반조사표 소요량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6) ⑥가구의 종류

해당 란에 ○표시한다.

(7) ⑦거처의 종류

(가) 주가구만 해당란에 ○표시하고, 동거가구는 사선(\)을 긋는다. 여기서 「주
가구」란 주인가구 또는 대표가구를 말한다.

(나) 빈집의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란에 ○표시한다. 따라서 ①거처번호란의 총
거처수와 이 난의 합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8) ⑧빈집

(가) 조사구역내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
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으로서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모두 포함한다.

(나) 과거에 살다가 비워 놓은 집인 경우, 대폭적인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
든지 다시 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만 빈집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는 조사하지 않는다.

(9) ⑨농·어가 구분

(가) 다음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표시한다.

(나) 농가나 어가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선(\)을 긋는다.

(다) 한 가구가 농업활동과 어업활동을 다같이 하는 경우 농가와 어가란에 둘다
○표시를 한다.

(10) 비 고

(가) 가구의 특성, 재방문 약속일자 등을 기록한다.

(나) 기숙시설 조사구나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일 경우에는 그 시설의 명칭과 수용인원수를 기입한다.

농가와 어가의 정의

가. 농 가

가구주나 가구원중에서 다음과 같은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1) 경지 300평 이상을 경작 또는 경영하는 가구

(2)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을 이용한 시설작물을 각각 100평, 과수나 묘목을 각각 200평이상 재배하는 가구

(3) 소, 말 등 대가축 1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경마, 달구지용 소 등 운반용 제외)

(4) 돼지, 산양, 면양 등 중가축 3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5) 토끼 등 소가축 40마리 이상,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가금 4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6) 꿀벌 5군(群)이상을 양봉하는 가구

(7) 위의 각호별 규모이외의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어 가

어가라 함은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조사실시전 1년간에 1개월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의 채포나 양식업을 자영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또는 자기 어업을 하지 않고 타인이 경영하는 수산 동식물의 채취나 양식업을 하는 사업체에 1년간 1개월 이상 고용된 어업종사자가 있는 가구

3. 가구일련번호표(스티커) 첨부

가. 가구확인이 끝나면 조사구 번호와 가구일련 번호를 기입한 가구일련 번호표를 가구수만큼 대문에 붙인다.

나. 빈집에는 가구일련번호표에 X표시를 한 후 첨부한다.

VI. 본조사

1. 조사기간

1990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가구를 방문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2. 응답자 선정

조사원은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가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 중에서 응답자를 선정하여 면접하여야 한다. 단, 가구 내에 동거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면접하여야 한다. 부재중인 가구나 적합한 응답자가 없는 가구는 조사원 연락전을 활용하여 재방문 일자를 약속한다.

3. 누락 또는 전입·전출가구 처리

본조사 당시 누락 또는 전입된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가구명부에 추가기입하고 전출된 가구가 있는 경우 가구명부의 비고란에 전출일자를 기입하고 적색 볼펜으로 복선(=)을 긋는다. 단, 전입된 가구는 이사하기 전의 상주지에서 조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일반조사표의 기입요령

가. 일반조사표는 흑색 볼펜으로 기입한다.

나. 일반조사표는 1가구를 단위로 하여 조사한다. 다만, 6명 이상의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2매 이상의 조사표를 사용하며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첫째장에만 기입하고 둘째장 이후는 사선(\)을 긋는다.

다. 집단가구는 조사표 1매당 5명씩 계속하여 작성한다.

Ⅶ. 조사항목별 기입방법 및 작성기준



① 성 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	------------

	1	
성 명		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을 빠짐 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가구주부터 기입하여 주시고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가구주와의 관계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② 「장남」, 「장남의 장녀」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1) 응답자에게 먼저 가구주를 묻고 그 다음 가구원의 이름을 답변하는 대로

로 기입한다 (①란은 가구주 성명을 반드시 기입한다).

(2) 응답자가 답변한 사람이 조사대상에 해당되는지 또는 누락된 사람(특히 유아, 동거인 등)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름이 없는 어린 아이는

빠지기 쉬운 사람	잘못 포함되기 쉬운 사람
1. 갓난애(특히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유아) 2. 가정부, 하숙인, 노인, 선박·항공기·철도·버스(시외·관광) 탑승 승무원, 잠시 여행중인 가족, 방위병, 병원에 입원중인 가족	1. 친정에 잠시 다니러 온 딸 2. 타지에서 학교 다니는 가족 3. 외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가족 4. 타지에서 취업하고 있는 가족 5. 병역의무자로서 입대한 군인 (지원 입대한 여군 포함)

「김○○」으로 기입한다.

- (3)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가구주가 적절히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4) 집단가구는 집단가구원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
- (5)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을	음	들	림
장녀, 차녀, 삼녀		딸	
장남, 차남, 삼남		아	들
장남의 장남		손	자
차남의 삼녀		손	녀
장남의 처		며	느
삼남의 처		며	느

- (6) 일반가구내에서의 동거인은 자가용 기사, 정원사, 가정부, 영업사용인 등과 같이 구체적인 관계로 기입한다. 단,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예 : 자취 학생 및 종업원 등)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가구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가구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기입한다.

사례연습

사례 1	「박길동」의 가족은 배우자, 타지에서 학교다니는 아들, 군에 있는 아들과 아직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딸이 한명 있다. 이 가구의 조사 대상 가구원 은 몇명인가?
해 설	3명(가구주, 배우자, 딸)

사례 2	가장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경우 그 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할 것인가?
해설	그렇다.
사례 3	동거하고 있는 수명의 종업원이 있는 가구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해설	동거인이 5명 이하일 경우 숙식을 같이 하는 경우 주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조사하고 숙식을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독립된 일반가구로 분류하여 별도의 조사표에 조사하며, 6명 이상일 경우에는 동거인만의 집단가구로 분류하여 별도의 조사표에 조사하며 연장자를 가구주로 기입한다.

③ 성 별

성 별	③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해당번호에 ○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	---------------------------------	------------------------------	------------------------------

- (1) ①, ②중 해당 항목에 ○표시 한다.
- (2) 특히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어린 아이의 경우 성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나 이

- (1) 먼저 집에서 세는 나이를 묻는다. 그냥 나이를 묻는 경우 만나이, 호적상 나이, 주민등록상 나이 등을 응답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집에서 세는 나이를 물어야 한다.

나 이	④-1 세는 나이	세는 나이로 몇 살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입합니다.	살
	④-2 출생년도	이 분은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무슨 띠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출생년도와 띠를 기입합니다.	년도
	띠		띠
	④-3 생일 음력 양력 구분	실제로 집에서 쇠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쇠는 생일을 기입합니다.	월 일
④-4 만 나이	이 남은 앞면에 있는 만나이 환산표를 보시고 정확한 만나이를 계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만 살	

(2) 다음에 출생년도를 묻고 띠를 물어 기입한다.

(3) 그 다음 집에서 쇠는 생일을 묻고 음력인가 양력인가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4) 세는 나이와 출생년도가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재질문을 하여 수정보완한다.

(5) 최선을 다해서도 4가지 사항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2가지 이상 일치하는 것을 택하고, 모두 일치되지 않는 경우 우선 순위를 띠, 세는 나이, 출생년도 순으로 정하여 만나이를 환산한다. 만나이 환산표는 일반조사표를 참조한다.

사례연습

사례 1	「최병현」이라는 사람은 1990년 11월 1일 현재 세는 나이는 44살이고, 돼지띠이며, 1947년생,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 11월 12일 일때 「최병현」의 나이는 만 몇살인가?
해 설	42세

사례 2	「강희복」이라는 사람은 1990년 11월 1일 현재 세는 나이가 44살이고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 3월 5일 일때 「강희복」의 나이는 만 몇 살인가?
해 설	43세

⑤ 출생지

출 생 지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출생 당시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합니다. ※ 북한의 경우에는 출생당시의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되 시·도명 앞에는 북한을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시도(국)</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구시군</div>

(1) 본적지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실제로 태어난 곳을 조사한다. 다만, 산모가 출산을 병원, 친정 등에서 하였

을 때에는 산모의 상주지를 출생지로 본다.

- (2)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출생지의 현행 행정구역을 기준한다.
- (3)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에 해당되면 아래 시도, 구시군을 기입하지 않는다.
- (4) 출생지가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과 다른 경우에는 시도, 구시군명을 물어 기입하고 출생지가 외국인 경우는 국가명을 기입한다.(단, 전주시나 안양시와 같이 구(출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명은 전라북도 및 경기도이며 구시군명은 전주 ○○구, 안양 ○○구를 기입한다).
- (5)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당시의 북한지역 시도와 구시군명을 기입하되, 시도명 앞에 북한이라고 기입한다.

사례연습

사례 1	현재는 서울 영등포에 살고 1977년에는 서울 관악구 노량진 1동에 살았던 「이갑순」 산모는 그 당시 친정인 수원에서 「강을동」이라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때 「을동」군의 출생지는 어디인가?
해 설	「강을동」군의 태어난 곳은 수원이지만 산모의 상주지는 서울 관악구 임. 그러나 관악구 노량진 1동은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동작구 노량진 1동으로 바뀌었으므로 「강을동」군의 출생지는 동작구가 된다.

⑥ 교육 정도

교육 정도	⑥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입합니다. ※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말합니다. ※ 현재 1학기 이상 휴학상태인 경우에는 중퇴에 해당됩니다.	1	안다녔음(안다니고 있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
		6	대학(교)
		7	대학원



(1) 만 5세 이상의 사람에게 묻는다(만 5세 미만은 모두 사선(\)을 긋는다).

(2) 학교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정규 교육기관을 말한다(타자, 경리, 부기학원 및 입시를 위한 학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말한다.

정 규 학 교	정규학교로 보지 않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학교(공민학교 포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포함) • 고등학교(구제 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전수학교 포함) • 전문대학(초급대학, 구제 전문학교 포함) • 대학이상(각급 사관학교, 신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 • 검정고시 합격자 중입 검정고시 합격(국졸) 고입 검정고시 합격(중졸) 대입 검정고시 합격(고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 미용학원 • 타자, 경리, 부기학원 • 재수생을 위한 입시학원 • 기술학원 • 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 • 노인대학, 주부대학 등 • 평생교육원

⑦통근·통학여부	⑧직장또는학교(원) 주 소	⑨출발·도착시각	⑩이용교통수단
----------	----------------	----------	---------

- (1) 만 12세 이상의 사람에게 우선 매일 정기적으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 ⑦란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⑧ ⑨ ⑩란을 묻는다.
따라서 ⑦란 「안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⑧ ⑨ ⑩란에 사선(\\)을 긋는다.
- (2) ⑧란의 학교(원)란 정규학교 뿐만 아니라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경우도 포함된다.

<p>배근·배출지역</p>	<p>⑦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직장 또는 학교(원)를 다니는 경우에도 통근·통학에 포함됩니다. ② 안한다에 해당되는 분은 ⑧에서 ⑩까지 사선(\)을 긋습니다.</p>	<p>① 한 다 ② 안 한 다</p>
<p>주거지역(원주소)</p>	<p>⑧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면 직장 또는 학교(원)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② 다른 동읍면으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는 그 곳의 행정구역명을 정확히 기입하시고 모를 경우에는 직장 또는 학교(원)의 이름이나 인근 유명한 건물이름 또는 특징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p>	<p>① 현재 살고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p>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p> </div>
<p>출발·도착시각</p>	<p>⑨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p>	<p>•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p>
<p>이용교통수단</p>	<p>⑩ 평소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할 때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통근·통학시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번호에 모두 ○표합니다.</p>	<p>① 시 내 버 스 ② 좌 석 버 스 ③ 시 외 버 스 ④ 통근(통학)버 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 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 전 거 보 ⑨ 도 보 ⑩ 기타 교통수단</p>

- (3) 「⑧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는 직장 또는 학교(원)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말하는 것으로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가 「②다른 동읍면」에 있을 때에도 시도, 구시군, 동읍면의 행정구역명을 물어 기입한다. 단, 전주시나 안양시의 경우에는 출생지 항목에서 기입하는 방식으로 기입한다.
- (가) 택시 운전사인 경

우에는 차고지를 직장 주소로 기입한다.

(나) 열차,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해당사무실을 직장 주소로 기입한다.

(다) 논밭에서 일하는 경우는 ⑦란 「② 안한다」에 해당된다.

(라) 근무처가 일정하지 아니한 행상인들은 지난 1개월간 주로 경제활동을 한 지역을 직장 주소로 기입한다.

(4) ⑩란은 주로 평소 출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주된 것 하나만 ○표시하나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번호에 2개이상 ○표시한다.

(5) 「⑨출발·도착시각」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

각을 기입한다.

사례 1	특정회사,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배우, 음악가, 연예인들의 직장주소는 어디인가?
해설	전속인 경우는 전속된 직장 주소를, 전속이 아닌 경우 최근 가장 많이 출연하는 곳을 직장주소로 기입한다.
사례 2	본사, 지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판매원이나, 통신원 등으로 일한 사람의 직장주소는 어디인가?
해설	주재하고 있는 장소를 직장주소로 기입한다.

⑪ 혼인상태

혼인상태	① 이 분은 결혼하였습니까? 사실상의 혼인상태에 ○표합니다.	① 미 혼 ② 유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1) 만 15세 이상의 사람에게 묻는다(만 15세 미만은 모두 사선(\)을 긋는다).

(2)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한다.

① 미 혼 : 이제까지 결혼한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유배우 : 결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③ 사 별 : 결혼했으나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경우로서 6·25때 배우자가 실종 또는 납치된 후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별로 간주한다.

④ 이 혼 :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경우



모든 가구에 해당됩니다.

① 거처의 종류

① 거처의 종류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한 종류의 집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⑥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⑧ 사무실 겸용 주택(오피스텔) ⑨ 기타(움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

(1) ①~⑨ 항목 어느 하나의 항에 반드시 ○표시한다.

(2) 주택

(가) 주택이란 한 가구(집단가구 제외)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첫째 : 영구건물이어야 하며

둘째 :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셋째 :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으며

네째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단,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 등 건물은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① 단독주택 :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②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상가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된다).

③ 연립주택 :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개념의 주택으로서 다만, 건물의 높이가 3층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3층의 빌라, 맨션 등은 여기에 해당된다).

④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건물의 연건평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다.

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사업 또는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단독주택인지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인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주거와 영업행위에 사용되는 면적을 비교하여 주거용이 크면 단독주택으로, 영업용이 크면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으로 분류한다.

(3) 주택이외의 거처

⑥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단, 주인가구가 여관 등 숙박업소 건물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주 부문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는 「⑤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해당되며 주인가구의 거주부분이 여관건물과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단독주택」에 해당된다.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 수용을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⑧ 사무실 겸용 주택 : 오피스텔을 말한다.

⑨ 기타 : 천막집, 판자집, 움막, 암자, 건설 공사장의 임시막사 등과 같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② 가구 구분

② 가구 구분

택이 이 집을 대표하는 주가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세를 들어 사는 가구들만이 있을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가 주가구입니다.

① 주가구 ② 동거가구 ③ 집단가구

※ 집단가구는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를 의미하며 ③ 집단가구에 해당되면 ③ ~ ② 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① 주 가구 : ① 한 주택에 한 가구가 사는 경우에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주가구로 본다.

②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는 물론 주인가구가 주가구가 되나 주인가구가 없이 세든 가구만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를 주가구로 한다.

③ 따라서 이 난에 해당되면 “주택에 관한 사항”란까지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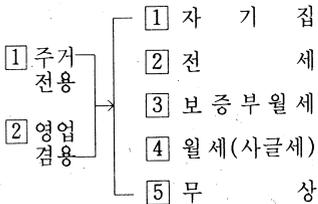
② 동 거 가 구 : 주가구 이외의 가구를 말한다. 이 난에 해당되면 아래 “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고 사선(\)을 긋는다.

③ 집 단 가 구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과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이를 집단가구라 한다. 이 난에 해당되면 이하 모든 난에 사선(\)을 긋는다.

③ 점유형태

③ 점유형태

이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와 영업의 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 ① 자 기 집 : 법률상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 ② 전 세 : 전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전세 및 보증금」란에 전세액을 기입하고 「월세」란은 사선(\)을 긋는다. 독채전세의 경우 전세든 사람이 다시 방을 세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독채전세를 든 가구의 전세액에서 다른 가구에 세를 놓아 받은 전세액 또는 보증금액을 공제하여 기입한다.
- ③ 보증부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각각 기입한다.
- ④ 월세(사글세):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와 보증금을 내고 매월 보증금에서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세 및 보증금」란은 사선(\)을 긋고 「월세」란에 월세액을 기입한다.
- ⑤ 무 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사용 방수

④ 사용 방수

데크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봅니다.

-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6 6개이상

- (1) 방이란 침실, 서재,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 등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가 1.8m(6척)이상, 넓이가 3.3㎡(1평) 이상인 것을 말한다.
- (2)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본다.
- (3) 다락은 방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 사람이 실제 기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으로 보며 단순히 물건만을 쌓아두고 있을 때는 방으로 보지 않는다.
- (4)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

⑤ 식수의 종류

⑤ 식수의 종류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 1 상수도 2 간이수도 3 자가수도
 4 수동펌프 5 우물 6 기타()

- (1) 거처내에 식수 시설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 가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식수를 조사한다.
- (2) 상수도는 먹는 물을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간이수도는 먹는 물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자가수도는 먹는 물을 개인이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얻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취사연료

⑥ 취사연료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 | | | |
|-------------------------------|---------------------------------|----------------------------------|
| <input type="checkbox"/> 1 연탄 | <input type="checkbox"/> 2 유류 | <input type="checkbox"/> 3 가스 |
| <input type="checkbox"/> 4 전기 | <input type="checkbox"/> 5 임산연료 | <input type="checkbox"/> 6 기타() |

- 취사용 연료를 두가지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연중 가장 많이 사용한 연료에 ○표시 한다.

⑦ 난방시설

⑦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 | | | |
|-------------------------------------|-------------------------------------|------------------------------------|
| <input type="checkbox"/> 1 채래식 아궁이 | <input type="checkbox"/> 2 연탄 아궁이 | <input type="checkbox"/> 3 연탄 보일러 |
| <input type="checkbox"/> 4 단독 기름보일러 | <input type="checkbox"/> 5 단독 가스보일러 | <input type="checkbox"/> 6 중앙난방보일러 |
| <input type="checkbox"/> 7 전기 보일러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

- (1) 난방시설이 2가지 이상일 때에는 주된 난방시설에 ○표시 한다.
- (2) 새마을보일러는 연탄보일러에 ○표시한다.

⑧ 문화시설 및 가재

⑧ 문화시설 및 가재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합니다.

- | | | |
|---------------------------------|------------------------------------|---|
| <input type="checkbox"/> 1 텔레비전 | <input type="checkbox"/> 2 냉장고 | <input type="checkbox"/> 3 세탁기 |
| <input type="checkbox"/> 4 전화 | <input type="checkbox"/> 5 전축(오디오) | <input type="checkbox"/> 6 녹화재생기(V.T.R) |
| <input type="checkbox"/> 7 에어컨 | <input type="checkbox"/> 8 개인용 컴퓨터 | <input type="checkbox"/> 9 자가용 승용차 |

-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를 모두 조사한다.

- (2) 세탁기는 세탁을 위한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탈수만을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3) 전화는 교환전화도 포함한다.
- (4) 자가용 승용차에는 자가전용만 해당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나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퇴근용 승용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⑨ 전용시설

⑨ 전용시설
 맥에서는 다음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 부엌 시설 :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2. 화장실시설 :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3. 출입구시설 :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 부엌, 화장실 및 출입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1 단독사용」에,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 2 공동사용 또는 없음」에 ○표시한다.

⑩~⑬ 시설 형태

⑩~⑬ 시설형태
 단독사용 또는 공동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음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⑩ 부엌 시설 : 1 재래식 2 입식 3 없음
 ⑪ 화장실시설 :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음
 ⑫ 목욕 시설 : 1 온수시설 2 비온수시설 3 없음
 ⑬ 상수도시설 : 1 있음 2 없음

(1) 부엌시설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입식은

조리, 취사, 싱크대 등 입식시설을 장치한 부엌을 말하며 재래식은 구가옥이나 시골 등에서 사용하는 부엌을 말한다.

(2) 화장실시설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을 수세식이라 하고 수세식을 제외한 시설을 재래식이라 한다.

(3) 목욕시설

목욕시설에는 온수시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4) 상수도시설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영하는 수도를 말한다.



주가구만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이 주택을 대표하는 주가구만 해당됩니다(가구에 관한 사항 ①거처의 종류 ④~⑤에 해당되면서 ②가구 구분란의 ①에 해당되는 가구)

⑭ 외 벽 재 료

⑭ 외벽재료

이 주택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벽재료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재료를 말합니다.

- | | | |
|----------|----------|---------|
| ① 나무 | ② 적벽돌, 돌 | ③ 시멘트제품 |
| ④ 철근콘크리트 | ⑤ 흙, 흙벽돌 | ⑥ 기타() |

- 외벽재료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재료를 말한다.

① 나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② 적벽돌, 돌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없이 구운벽돌(적색, 흑색), 오지벽돌(적색, 흑색) 및 돌로 쌓거나 치장한 집을 말한다.

③ 시멘트 제품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없이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굽지 않는 것)등으로 벽을 쌓거나 타일 등으로 치장한 집을 말한다.

④ 철근콘크리트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철근콘크리트로 된 집을 말한다(벽이 적벽돌, 타일, 시멘트 몰탈로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해당됨).

⑤ 흙, 흙벽돌

토담집을 말한다.

⑥ 기 타

상기 어느 항에도 속하지 않는 집을 말한다.

⑮ 지붕 재료

⑮ 지붕재료
이 주택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기와	② 슬레이트	③ 슬래브(슬래브기와)
④ 함석	⑤ 짚, 갈대	⑥ 기타()

• 주택물과 부속건물(사랑채 등)의 지붕재료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물의 지붕재료를

조사한다.

① 기 와

시멘트 또는 구운 기와로 덮힌 집을 말한다.

단, 슬래브 위에 기와로 덮은 집은 슬래브에 ○표시 한다.

② 슬레이트

각종 형태의 석면과 시멘트 제품의 슬레이트로 덮힌 집을 말한다.

③ 슬래브(슬래브기와)

평슬래브 및 경슬래브에 기와를 덮은 것을 말한다.

④ 함 석

⑤ 짚, 갈대

초가집 등이 포함된다.

⑥ 기 타

「①기와」~「⑤짚, 갈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⑩~⑪ 연건평 및 대지 면적

⑩, ⑪ 연건평 및 대지 면적

이 주택의 연건평과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기입하고 대지 면적은 담장 안의 전면적을 기입합니다. ※ 평 또는 m²중 한쪽만 기입합니다.

⑩ 연건평 평 ⑪ 대지 면적 평
 m² m²

(1) 연건평은 주거에 사용되는 부분만 조사한다. 따라서 창고, 외양간 등은 제외하며

지하실은 연건평에 포함시킨다.

- (2) 대지 면적에는 텃밭을 제외한 담내의 전면적을 조사한다. 따라서 담내의 정원 등은 대지면적에 포함시킨다.
- (3)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또는 영업 겸용 주택의 경우 연건평과 대지 면적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조사한다.
- (4)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전용평수를 연건평, 지분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조사한다.

⑱~⑲ 총 방수 및 거주 가구수

⑱, ⑲ 총방수 및 거주 가구수
이 주택에는 방이 모두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보며, 동거가구의 방수 및 가구수도 포함됩니다.
⑱ 총 방 수 개
⑲ 거주 가구수 가구

- (1) 방이란 침실, 서재, 거실 등과 같이 사면이 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주용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총 방수란 이러한 방의 총수를 말한다.
- (2) 다만, 부엌,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현관, 베란다, 로비, 목욕탕, 변소,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고 있는 다락방, 그리고 점포, 사무실 등은 방수에서 제외한다.
- (3) 거주 가구수는 주가구를 포함해서 현재 주택에 들어있는 동거가구를 합산하여 조사한다.

㉔ 건축년도

㉔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1950년 이전 | <input type="checkbox"/> 2 1950년~1959년 |
| <input type="checkbox"/> 3 1960년~1969년 | <input type="checkbox"/> 4 1970년~1979년 |
| <input type="checkbox"/> 5 1980년~1985년 | <input type="checkbox"/> 6 1986년 |
| <input type="checkbox"/> 7 1987년 | <input type="checkbox"/> 8 1988년 |
| <input type="checkbox"/> 9 1989년 | <input type="checkbox"/> 0 1990년 |

- (1)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질문하여 일괄 기입한다.
- (2) 신축시기를 조사하여야 하나 개축 또는 증축 부문이 건물의 1/2이상일 경우에는 개축 또는 증축시기를 신축시기로 본다.
- (4) 수차례 증축하였을 경우에는 신축시기를 기입한다.

㉕ 편의시설수

㉕ 편의시설수

이 주택에는 다음 시설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 1. 부엌: 개
- 2. 화장실: 개
- 3. 출입구: 개

- 세든 가구가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이집에 설비된 편의시설이 각각 몇 개인지를 조사하여 기입한다.

㉔ 거주 가능 가구수

㉔ 거주 가능 가구수

이 주택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가구

- (1) 현재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㉑거주 가구수」 항목과는 달리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었는지를 묻는다.
- (2)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단독사용부엌, 단독사용 화장실, 단독사용 출입구를 모두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Ⅷ. OMR조사표 작성 및 관리 요령

1. 작성요령

가. OMR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2B 연필로 기입해야 한다.

나. OMR조사표에서 내에는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는 난이며, 은 마크 「—」를 하는 난이다.

다. 난외사항의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 매수」,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가구원수」등의 기입란과 난내사항의 「①성명」란의 기입내용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기한다.

라. 마크란()에 마크 「—」할 때에는 아래의 양호한 마크의 예"처럼 마크테두리 내에 굵고 진하게 마크한다.

• 양호한 마크의 예 :

*마크의 기본원칙

- ①연필심 부분은 둥글게 깎아서 사용한다.
- ②마크는 마크테두리의 좌측선에서 우측선까지 한다.
- ③농도는 가급적 진하게 한다.

• 불량한 마크의 예

①가늘거나 희미한 경우 :

②짧은 경우 : , ,

③마크테두리에서 2mm이상 벗어난 경우 : ,

④마크테두리 밖에 표시된 경우:

⑤잉크, 볼펜 등으로 마크되어 있는 경우:

⑥가득차게 마크한 경우:

마.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OMR조사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OMR조사표에 이기할 때 숫자 단위별 이기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마크테두리 부분(²) 밖에 있는 번호에 일절 기입하지 않아야 하고, 낙서나 불필요한 표기가 없어야 한다.

아. 조사표 전면의 우측상단 및 우측변의 타이밍 마크 주위에는 낙서나 불필요한 표기가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자. 잘못 마크한 경우에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컴퓨터용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일반조사표의 내용을 다시 이기하되 지우개 가루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요령

가. 조사표는 환경조건(특히 온도, 습도)이 급격히 변화하기 쉬운 장소(예컨대,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 또는 난방장치의 부근)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나. 조사표가 물기나 습기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표의 모서리 부분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조사표에 구멍뚫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마. 조사표에 클립이나 지철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조사표에 셀룰로이드 테이프, 라벨, 풀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먼지, 기름, 물방울 등의 오염물이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아. 조사표 보관시 자석 등의 접근은 피해야 한다.

자. 조사표 취급시 가급적 타이밍마크 쪽은 삼가하고, 조사표의 왼쪽 아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하여 조사표를 다룬다.

차. 완성된 OMR조사표는 항상 보호용 비닐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이기요령

가. 난외사항

(1) 주 소

대상 가구의 행정구역명을 기입하며 가구원수가 6명이상일 경우 OMR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주소를 빠짐없이 매장마다 기입한다.

예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310번지」일 경우

주 소	서울특별시 [Ⓢ] 종로 [Ⓢ] 시 [Ⓢ] 경운 [Ⓢ] 동 [Ⓢ] 310 번지 도 시 구 읍 면 (동 호 아파트) 호
-----	---

로 이기한다.

(2) 조사구번호

조사구번호는 041-1과 같이 4자리 수로 표기되는데 앞 3자리는 그 지역의 조사구 번호이며 마지막 한자리는 그 조사구의 특성번호를 나타낸다.

OMR조사표에 이기할 때에는 앞 3자리 수만 조사표에 마크하며 조사구의

특성번호는 마크하지 않는다.

예 : 조사구 번호가 041-1이면

조사구번호	0	백	<u>0</u>	1	2	3									
	4	십	0	1	2	3	<u>4</u>	5	6	7	8	9			
	1	일	0	<u>1</u>	2	3	4	5	6	7	8	9			

로 기입한다. OMR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하는 가구도 매장마다 이기한다.

(3) 거처번호

거처번호가 24일 경우 OMR조사표에 다음과 같이

거 처 번 호	0	백	<u>0</u>	1	2	3									
	2	십	0	1	<u>2</u>	3	4	5	6	7	8	9			
	4	일	0	1	2	3	<u>4</u>	5	6	7	8	9			

로 이기하며, 2매이상 사용할 경우에 매장마다 이기한다.

(4) 가구번호

가구번호가 54일 경우 OMR조사표에 다음과 같이

가 구 번 호	0	백	<u>0</u>	1	2	3									
	5	십	0	1	2	3	4	<u>5</u>	6	7	8	9			
	4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하며, 2매이상 사용할 경우에 매장마다 이기한다.

(5) 가구당 조사표매수 및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가구원수가 8명으로 OMR조사표를 2매 사용한다면 첫째장에는

가 구 당	0	백	가구당조사표	0	백	0	1	2	3											
	0	십	매 수 중	0	십	0	1	2	3	4	5	6	7	8	9					
조사표매수	2	일	일 련 번 호	/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하고,

둘째장에는

가 구 당	0	백	가구당조사표	0	백	0	1	2	3												
	0	십	매 수 중	0	십	0	1	2	3	4	5	6	7	8	9						
조사표매수	2	일	일 련 번 호	2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한다.

(6) 가구원수

가구원수가 8명일 경우

가 구 원 수	0	백	0	1	2	3														
	0	십	0	1	2	3	4	5	6	7	8	9								
	8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하며, OMR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할 경우에도 첫째장에만 이기한다.

나. 난내사항

인구에 관한 사항

① 성 명

일반조사표를 보고 성명을 기입한다.

			1
① 성	명	김 영 수	

② 가구주와의 관계

동·읍·면의 이기·내검요원이 이기하는 사항이므로 조사원은 이기하지 않는다.

③ 성 별

남자일 경우

③ 성 별	1. 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여 <input type="checkbox"/>
-------	--	-------------------------------

로 이기한다.

④ 나 이

세는 나이가 37살 이면

4-1 세 는 나 이	백	1 <input type="checkbox"/>				
	십	0	1	2	3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5	6	7	8	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0	1	2	3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5	6	7	8	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로 이기하고,

세는 나이가 5살이면

4-1 세 는 나 이	백	1 <input type="checkbox"/>				
	십	0	1	2	3	4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5	6	7	8	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0	1	2	3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5	6	7	8	9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로 이기한다.

출생년도가 1954년이고, 띠가 말띠이면

4-2

출 생 년 도	백	18		1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띠	취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진나비	닭	
	개	돼지				

생일이 음력 3월 5일이면

4-3

생 일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십	0	1	2	3	
		4	5	6	7	8
	일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양력·음력구분		1. 양력	2. 음력			

로 이기하고,

만나이가 36세이면

4-4

만 나 이	백	1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하며,

만나이가 4세이면

4-4	만	백	1				
	나	십	0	1	2	3	4
			5	6	7	8	9
이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한다.

⑤ 출생지

동·읍·면의 이기·내검요원이 이기하는 사항이므로 조사원은 작성하지 않는다.

⑥ 교육정도

「중학교 2학년에 재학」일 경우에는

⑥ 교육 정도	1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로 이기한다.

⑦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⑦ 통근·통학여부	1. 한다	2. 안한다
	(⑧번으로 계속)	(⑪번으로 계속)

로 이기한다.

⑧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동·읍·면의 이기·내검요원이 이기하는 사항이므로 조사원은 이기하지 않는다.

⑨ 출발·도착시각

집에서 직장으로 출발하는 시각이 오전 7시 33분이고, 직장에 도착하는 시각이 8시 16분이면 분 단위를 사사오입하여 이기한다.

⑨ 출발·도착시각	출 발 시 각	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분	00	10	20	30	40
	도 착 시 각	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분	00	10	20	30	40

⑩ 이용교통수단

이용교통수단이 ①시내버스일 경우

⑩ 이용 교통 수단	1	2	3
	4	5	6
	7	8	9
	0		

로 이기한다.

⑪ 혼인상태

혼인상태가 “유배우”이면

⑪ 혼 인 상 태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로 이기한다.

가구에 관한 사항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보고 모든 가구에 대하여 이기한다.

OMR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첫째장에만 이기하고 둘째장부터는 이기하지 않는다.

가 구 에 관 한 사 항	① 거 처 의 종 류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9 <input type="checkbox"/>					
	② 가 구 구 분	1. 주거가구 <input type="checkbox"/>		2. 동거가구 <input type="checkbox"/>		3. 집단가구 <input type="checkbox"/>			
	③ 점 유 형 태	1. 주거전용 <input type="checkbox"/>		2. 영업겸용 <input type="checkbox"/>					
		1. 자기집 <input type="checkbox"/>	2. 전 세 <input type="checkbox"/>	3. 보증부월세 <input type="checkbox"/>	4. 월세(사글세) <input type="checkbox"/>	5. 무 상 <input type="checkbox"/>			
	④ 사 용 방 수	1 개 <input type="checkbox"/>	2 개 <input type="checkbox"/>	3 개 <input type="checkbox"/>	4 개 <input type="checkbox"/>	5 개 <input type="checkbox"/>	6 개 이상 <input type="checkbox"/>		
	⑤ 식 수 의 종 류	1. 상 수 도 <input type="checkbox"/>	2. 간이수도 <input type="checkbox"/>	3. 자가수도 <input type="checkbox"/>	4. 수동펌프 <input type="checkbox"/>	5. 우 물 <input type="checkbox"/>	6. 기 타 <input type="checkbox"/>		
	⑥ 취 사 연 료	1. 연 탄 <input type="checkbox"/>	2. 유 류 <input type="checkbox"/>	3. 가 스 <input type="checkbox"/>	4. 전 기 <input type="checkbox"/>	5. 임산연료 <input type="checkbox"/>	6. 기 타 <input type="checkbox"/>		
	⑦ 난 방 시 설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⑧ 문화시설및가재	1. 텔레비전 <input type="checkbox"/>		2. 냉 강 고 <input type="checkbox"/>		3. 세 탁 기 <input type="checkbox"/>		4. 전 화 <input type="checkbox"/>	
		7. 에어컨 <input type="checkbox"/>		8. 개인용컴퓨터 <input type="checkbox"/>		9. 자가용승용차 <input type="checkbox"/>		5. 선 축 <input type="checkbox"/>	
	⑨ 전용시설	1. 부 역 시 설 <input type="checkbox"/>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2. 화장실시설 <input type="checkbox"/>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3. 출입구시설 <input type="checkbox"/>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시 설 형 태	⑩ 부 역 시 설	1. 채 래 식 <input type="checkbox"/>		2. 입식 <input type="checkbox"/>		3. 없음 <input type="checkbox"/>			
	⑪ 화장실시설	1. 채 래 식 <input type="checkbox"/>		2.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3. 없음 <input type="checkbox"/>			
	⑫ 목 욕 시 설	1. 온수시설 <input type="checkbox"/>		2. 비온수시설 <input type="checkbox"/>		3. 없음 <input type="checkbox"/>			
	⑬ 상수도시설	1. 있 음 <input type="checkbox"/>		2. 없 음 <input type="checkbox"/>					

주택에 관한 사항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보고 주택의 주가구만 이기한다.

OMR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첫째장에만 이기하고 둘째장부터는 이기하지 않는다.

주 택 에 관 한 사 항	⑭외벽재료	<input type="checkbox"/> 1. 나무	<input type="checkbox"/> 2. 적벽돌, 돌	<input type="checkbox"/> 3. 시멘트계통			
		<input type="checkbox"/> 4. 철근콘크리트	<input type="checkbox"/> 5. 흙, 흙벽돌	<input type="checkbox"/> 6. 기타			
	⑮지붕재료	<input type="checkbox"/> 1. 기와	<input type="checkbox"/> 2. 슬레이트	<input type="checkbox"/> 3. 스텝(스라브기와)			
		<input type="checkbox"/> 4. 합석	<input type="checkbox"/> 5. 짚, 갈대	<input type="checkbox"/> 6. 기타			
	⑯연 건 평	7 평미만 <input type="checkbox"/>	7~9 <input type="checkbox"/>	9~14 <input type="checkbox"/>	14~19 <input type="checkbox"/>	19~29 <input type="checkbox"/>	
		29~39 <input type="checkbox"/>	39~49 <input type="checkbox"/>	49~69 <input type="checkbox"/>	69~99 <input type="checkbox"/>	99평이상 <input type="checkbox"/>	
	⑰대지면적	10평미만 <input type="checkbox"/>	10~14 <input type="checkbox"/>	14~19 <input type="checkbox"/>	19~29 <input type="checkbox"/>	29~39 <input type="checkbox"/>	39~49 <input type="checkbox"/>
		49~69 <input type="checkbox"/>	69~99 <input type="checkbox"/>	99~149 <input type="checkbox"/>	149~199 <input type="checkbox"/>	199~249 <input type="checkbox"/>	249평이상 <input type="checkbox"/>
	⑱총 방 수	1 개 <input type="checkbox"/>	2 개 <input type="checkbox"/>	3 개 <input type="checkbox"/>	4 개 <input type="checkbox"/>	5 개 <input type="checkbox"/>	6 개 <input type="checkbox"/>
		7 개 <input type="checkbox"/>	8 개 <input type="checkbox"/>	9 개 <input type="checkbox"/>	10 개 <input type="checkbox"/>	11 개 <input type="checkbox"/>	12 개 이상 <input type="checkbox"/>
⑲거주가구수	1 가구 <input type="checkbox"/>	2 가구 <input type="checkbox"/>	3 가구 <input type="checkbox"/>	4 가구 <input type="checkbox"/>	5 가구 <input type="checkbox"/>	6 가구 <input type="checkbox"/>	
	7 가구 <input type="checkbox"/>	8 가구 <input type="checkbox"/>	9 가구 <input type="checkbox"/>	10 가구 <input type="checkbox"/>	11 가구 <input type="checkbox"/>	12 가구 이상 <input type="checkbox"/>	
⑳건축년도	1. 1950년 이전 <input type="checkbox"/>	2. 50~59 <input type="checkbox"/>	3. 60~69 <input type="checkbox"/>	4. 70~79 <input type="checkbox"/>	5. 80~85 <input type="checkbox"/>		
	6. 86년 <input type="checkbox"/>	7. 87년 <input type="checkbox"/>	8. 88년 <input type="checkbox"/>	9. 89년 <input type="checkbox"/>	0. 1990년 <input type="checkbox"/>		
㉑ 편의 시설	1. 부엌	1 개 <input type="checkbox"/>	2 개 <input type="checkbox"/>	3 개 <input type="checkbox"/>	4 개 <input type="checkbox"/>	5 개 <input type="checkbox"/>	6 개 이상 <input type="checkbox"/>
	2. 화장실	1 개 <input type="checkbox"/>	2 개 <input type="checkbox"/>	3 개 <input type="checkbox"/>	4 개 <input type="checkbox"/>	5 개 <input type="checkbox"/>	6 개 이상 <input type="checkbox"/>
	3. 출입구	1 개 <input type="checkbox"/>	2 개 <input type="checkbox"/>	3 개 <input type="checkbox"/>	4 개 <input type="checkbox"/>	5 개 <input type="checkbox"/>	6 개 이상 <input type="checkbox"/>
㉒거주가능 가 구 수	1 가구 <input type="checkbox"/>		2 가구 <input type="checkbox"/>		3 가구 <input type="checkbox"/>		
	4 가구 <input type="checkbox"/>		5 가구 <input type="checkbox"/>		6 가구 이상 <input type="checkbox"/>		

IX. 조사표류 검토, 정리 및 제출

1. 일반조사표 검토 및 정리

가. 일반조사표의 수량 확인

조사가 완료되면 내용확인을 하기전에 일반조사표의 수량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조사구내의 가구수+가구원 6명이상 가구수=총조사표 매수

- 5명까지 : 1매
- 5명~10명 : 2매
- 11명~15명 : 3매

나. 일반조사표 확인내용

(1) 난외사항

(가) 주 소

통반까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조사구번호

가구명부의 조사구번호와 대조한다.

(다) 거처번호

가구명부의 거처번호와 대조한다.

(라) 가구번호

가구명부의 가구번호와 대조한다. 한 거처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 주가구의 가구번호가 맨 먼저 부여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가구당 조사표 매수

1가구에 조사표 매수가 1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조사표마다 매수표시

가 되었는지 확인한다.(예 : 가구원수가 8명이상인 경우 2매중 1매, 2매
중 2매)

(바) 가구원수

1가구에 살고 있는 가구원수가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사) 응답자·조사원 성명 및 서명

응답자 및 조사원 성명과 서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난내사항

인구에 관한 사항

① 성 명

- 성명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1990.11. 1이후 출생자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기입되어 있으면 삭제한다.

②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가 가구원 일련번호 1란에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가구주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장녀, 차녀, 장남 등으로 기입
- 일반가구내의 동거인이 승용차기사, 정원사, 가정부, 영업 사용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성 별

- 남·여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표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④ 나 이

- 연령환산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 기입사항에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다.

⑤ 출생지

- 출생지가 「다른 구시군」일 때 시도(국), 구시군 명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북 출생자의 경우 시도(국)명 앞에 북한이라고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교육정도

학 력 별	졸업연령	재학연령	중퇴연령
국민학교	11세이상	6세이상~12세미만	재학연령 참조
중 학 교	14 〃	11 〃 ~15 〃	〃
고 등 학 교	17 〃	14 〃 ~18 〃	〃
전 문 대	19 〃	17 〃 ~20 〃	〃
대 학 (교)	21 〃	17 〃 ~24 〃	〃
대 학 원	23 〃	21 〃	〃

- 만 5세 미만자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만 5세 이상자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며, 졸업, 재학, 중퇴란에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다.

- 연령과 학력관계는 다음 표를 비교하여 현재 조사된 사항이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 처리한다.

⑦통근·통학여부	⑧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⑨출발·도착시각	⑩이용교통수단
----------	----------------	----------	---------

- 만 12세 미만의 사람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여 기입되었을 경우에는 ⑦, ⑧, ⑨, ⑩ 항목에 사선(\)을 긋는다.
- ⑦란 「1한다」 해당자는 ⑧, ⑨, ⑩란 기입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었을 때에는 재방문하여 조사한다.
- ⑧란 「2다른 동읍면」에 ○표시되었을 경우 시도, 구시군, 동읍면의 행정구역 명칭의 기입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시 재방문하여 조사 기입한다.

⑪ 혼인 상태

- 만 15세 미만의 사람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구주와의 관계」란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가구에 관한 사항

- 모든 가구가 조사되어야 하므로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다.
- 집단 가구는 ①거처의 종류, ②가구 구분까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첫째장에는 가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둘째장 이후에는 사선(\)이 그어졌는지 확인한다.

주택에 관한 사항

- 「①거처의 종류」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②가구구분」의 주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만 조사되었는지, 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둘째장 이후에는 사선(\)이 그어졌는지 확인한다.

2. OMR조사표 검토 및 정리

가. 조사표의 수량 확인

OMR조사표 매수가 일반조사표 매수와 일치되는지 확인한다.

나. 조사표 이기내용 확인

(1) 난외사항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 매수,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가구원수가 누락된 조사표가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누락된 조사표가 있으면 일반조사표를 찾아 이기한다. 가구원수가 6명이상일 경우 OMR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매장마다 난외사항이 이기되어야 한다 (가구원수는 첫째장에만 이기).

(2) 난내사항

- ①성명, ③성별, ④나이, ⑥교육정도, ⑦통근·통학여부, ⑨출발·도착시각,
⑩이용교통수단, ⑪혼인상태 및 가구·주택에 관한 사항중 이기가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장 이후에는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이
기 안함).

3. 기타 표류 검토 및 정리

가. 가구명부 대조 보완 및 편철

준비조사시 작성한 가구명부는 본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기간중 전출, 누락 등에
의하여 가구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표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보완이 끝나고 나면 동읍면별로 편철한다.

나. 조사구요도 수정 보완

준비조사시 작성한 요도는 본조사 완료후 요도상의 변동사항(거처의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수정 보완한다.

다. 일반조사표 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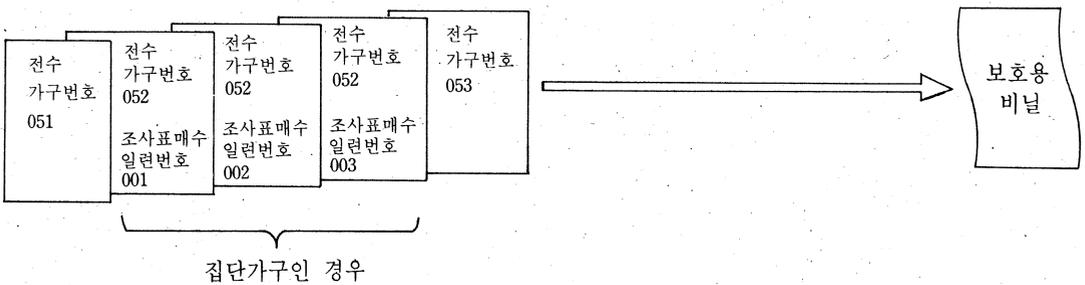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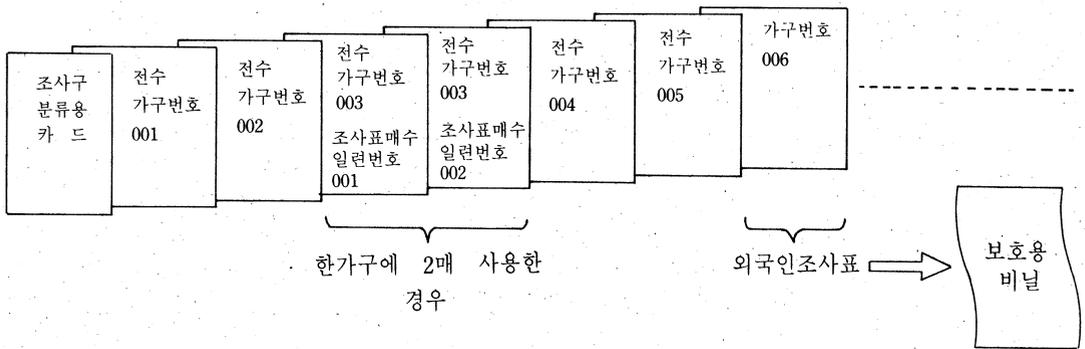
일반조사표는 조사구별로 편철하며 마모,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라. OMR조사표 정리

- (1) 조사원은 일반조사표를 토대로 OMR조사표에 이기작업이 끝나면 조사구단
위로 보호용 비닐에 넣어 동·읍·면 지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2) 외국인 조사표가 있는 경우 조사구마다 OMR 전수조사표와 OMR외국인 조사표를 분리하여 각각 보호용 비닐에 넣어 동·읍·면 지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조사표 정리요령



- 조사구마다 조사구 분류용카드 1매를 작성하여 OMR조사표 맨위에 정리한다.
- 조사구마다 거처번호, 가구 번호순으로 정리한다.
- 1가구에 2매이상 조사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수조사표를 조사표매수 일련 번호순으로 먼저 정리하고 표본조사표를 조사표 매수 일련 번호순으로 정리한다.
- 담당 조사구내에 외국인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조사표를 사용하여 작성한 후 별도의 보호용 비닐에 넣는다.

4. 조사표류 제출

조사표 내용검토가 끝나면 동읍면 지도공무원의 최종점검을 받아 보완한 후 199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조사표류를 동읍면 지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일반조사표
- 나. OMR조사표
- 다. 가구명부
- 라. 조사구 요도
- 마. 조사요원증



가 구 명 부

(전수·표본)

이 조사구의 조사표매수는
가구수가 32가구, 6인 이상
가구수가 9가구이므로
41매가 된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조사구번호	조사표매수	가구명부매수	조사원	이 수 영
서울	종로	사직	012-1	일반 OMR 41매 41매	1매중 1매	지도원 지도공무원	김영수 박흥영

① 거 처 번 호	② 가 구 일 련 번 호	③ 주 소			④ 가 구 주 또는 대 표 자 성 명			⑤ 가 구 원 수			⑥ 가 구 의 종 류			⑦ 거 처 의 종 류					⑧ 빈 집	⑨ 농·어·가 구 분	⑩ 비 고				
		리·동	번 지	통 반	성 명 (姓)은 반드시 한자로 기입	본 관 (本貫)	학 려	계	남	여	일 반 가 구	집 단 가 구	외 국 인 가 구	단 독 주 택	아 파 트	연 립 주 택	다 세 대 주 택	비 거 주 용				건 물 내 의 주 택	주 택 이 외 의 거 처	농	어
1	1	23	3/1	張 경관	결성	고졸	4	2	2	0			0												
2	2			趙 고현	김제	고졸	7	3	4	0															
3	3	38	3/1	차 희순	강릉	고졸	5	2	3	0			0	중거가구는 ①, ②, ③ 관은 사선(\\)											
4	4			尹 세환	과평	고졸	6	4	2	0															
5	5	37	3/1	金 백두	김해	고졸	3	2	1	0			0												
6	6			韓 옥달	청주	대졸	4	1	3	0															90.11.2 전입
7	7	34	3/1	崔 학준	간성	대졸	6	2	4	0			0												
8	8			權 창희	안동	대졸	2	1	1	0															
9	9	29	3/1	鄭 종만	경주	대졸	4	1	3	0			0												
10	10			宋 기래	김해	대졸	4	2	2	0															
6	11	36	3/2	손 영배	해평	고퇴	6	4	2	0			0												
7	7	35	3/2										0												빈집
8	12	43	3/2	李 고선	전주	고퇴	5	2	3	0			0	빈집일 경우라도 ①, ②, ③ 관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13	13			洪 금표	강양	고퇴	3	2	1	0															
9	14	44	3/2	吳 광석	고창	고퇴	5	3	2	0			0												
15	15			姜 흥묵	진주	중졸	3	1	2	0															
10	16	45	3/2	曹 귀락	창녕	중졸	7	3	4	0			0												
17	17			梁 재건	남원	중졸	1	1	0	0															
11	18	146	4/1	沈 진로	청송	중졸	7	7	0	0		0													
12	19	146	4/1	安 석환	광주	중졸	5	2	3	0			0												
13	20	146	4/1	南 영덕	고성	대졸	6	2	4	0			0												
14	21	146	4/1	申 봉순	평산	대졸	6	4	2	0			0												
15	22	146	4/1	康 영봉	신천	대졸	5	4	1	0			0												
16	23	146	4/1	潘 장우	거제	대졸	4	2	2	0			0												
17	24	148	4/1	林 순방	과주	대졸	7	3	4	0			0												
18	25	148	4/1	陳 명로	여양	대졸	3	1	2	0			0												
19	26	148	4/1	柳 종호	고흥	중퇴	2	1	1	0			0												
20	27	148	4/1	呂 길영	성주	대퇴	2	1	1	0			0												
21	28	148	4/1	田 희월	팔양	국퇴	5	3	2	0			0												
22	29	148	4/1	方 정환	문양	대퇴	4	1	3	0			0												
23	30	152	4/1	卜 제로	면천	고졸	3	2	1	0			0												
24	31	154	4/1	車 상제	연안	고졸	4	2	2	0			0												
1	32	23	3/1	安 철호	광주	고졸	2	1	1	0															주락(준비조사)
3	33	37	3/1	南 료진	고성	고졸	2	0	2	0															90.11.3 전입

이 조사구의 조사표매수는
가구수가 32가구, 6인 이상
가구수가 9가구이므로
41매가 된다.

② 가구일련번호관의 합계와
⑥ 가구의 종류관의 합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이 명부
에서는 「② 가구일련번호」가
맨 끝번호 33에서 「⑥ 가구
이리까지」번까지가 적혀있

「① 거처번호」의 제일 큰
숫자와 「⑦ 거처의 종류
총합계」와는 일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① 거처
번호」와 「⑦ 거처의 종류
는 주가주반 기입하고

전거주지에
조사되었는
물어, 조사
안되었는
전입일시를
하고 조사한
이때 등업
기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전수 조사구용 조사표)

※ 이 난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이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통리동(아파트)	120 번지 호
서울	종로	경운	3동1반	전화 (720-0000)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매수	가구원수
0041	31	49	2매중	6

		1	2	3	4	5
성명	① 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을 빠짐 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가구주부터 기입하여 주시고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강창호	강력준	강석돈	강석순	강석태
	②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장남」, 「장녀의 장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가구주	처	장남	장녀	차남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분은 모두 기입합니다	③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④ 나이	34 살	32 살	8 살	6 살	3 살
	④-2 출생년도	1957 년도	1959 년도	1983 년도	1985 년도	1988 년도
	④-3 생일	4 월 27 일	8 월 7 일	10 월 3 일	10 월 26 일	11 월 8 일
	④-4 양력 음력 구분	① 양력 ② 음력				
출생지	⑤ 이 난은 위에 있는 만나이 환산표를 보시고 정확한 만나이를 계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만 33 살	만 31 살	만 7 살	만 5 살	만 1 살
	⑤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출생 당시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북한은 출생 당시의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되 시·도명 앞에는 북한을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	경상북도(국) 포항 구(군)	경상북도(국) 포항 구(군)	시도(국)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만 5세 이상입니다	⑥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입합니다. ※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말합니다. ※ 현재 1학기 이상 휴학상태인 경우에는 중퇴에 해당됩니다.	① 안다녔음(안다니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등 ④ 고 학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교) ⑦ 대 학 원	① 안다녔음(안다니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등 ④ 고 학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교) ⑦ 대 학 원	① 안다녔음(안다니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등 ④ 고 학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교) ⑦ 대 학 원	① 안다녔음(안다니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등 ④ 고 학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교) ⑦ 대 학 원	① 안다녔음(안다니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등 ④ 고 학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교) ⑦ 대 학 원
	⑦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직장 또는 학교(원)를 다니는 경우에도 통근·통학에 포함됩니다. ※ 안한다에 해당되는 분은 ⑧에서 ⑩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만 12세 이상되는 분만 기입합니다	⑧ 직장 또는 학교(원)소	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				
	⑨ 출발·도착 시각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 7 시 50 분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 7 시 50 분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 7 시 50 분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 7 시 50 분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 7 시 50 분
	⑩ 이용 교통수단	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 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 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 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 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 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

① 거처의 종류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한 종류의 집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 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⑥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 ⑧ 사무실 겸용 주택(오피스텔) ⑨ 기타(옴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

② 가구 구분

택이 이 집을 대표하는 주거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세를 들어 사는 가구들만이 있을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가 주거구입니다.

- ① 주거구 ② 동거가구 ③ 집단가구

※ 집단가구는 기숙사, 양로원, 교아원 등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를 의미하며 ③ 집단가구에 해당되면 ③ ~ ② 까지 사전(\)을 굵습니다.

③ 점유형태

이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와 영업의 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주거전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영업겸용 | } | <input type="checkbox"/> ① 자기 집 |
| | | <input type="checkbox"/> ② 전 세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보증부 월세 |
| | | <input type="checkbox"/> ④ 월세(사글세) |
| | | <input type="checkbox"/> ⑤ 무 상 |

④ 사용 방수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봅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⑥ 6개이상

⑤ 식수의 종류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O표합니다.

- ① 상수도 ② 간이수도 ③ 자가수도
- ④ 수동펌프 ⑤ 우물 ⑥ 기타()

⑥ 취사연료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2개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O표합니다.

- ① 연탄 ② 유류 ③ 가스
- ④ 전기 ⑤ 임산연료 ⑥ 기타()

⑦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O표합니다.

- ① 채래식 아궁이 ② 연탄 아궁이 ③ 연탄 보일러
- ④ 단독 기름보일러 ⑤ 단독 가스보일러 ⑥ 중앙난방보일러
- ⑦ 전기 보일러 ⑧ 기타()

⑧ 문화시설 및 가재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O표합니다.

- ① 텔레비전 ② 냉장고 ③ 세탁기
- ④ 전화 ⑤ 전축(오디오) ⑥ 녹화재생기(V.T.R.)
- ⑦ 에어컨 ⑧ 개인용 컴퓨터 ⑨ 자가용 승용차

⑨ 전용시설

택에서는 다음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부엌 시설 :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 2. 화장실시설 :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 3. 출입구시설 :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⑩~⑬ 시설형태

단독사용 또는 공동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음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⑩ 부엌 시설 : ① 채래식 ② 입식 ③ 없음
- ⑪ 화장실시설 : ① 채래식 ② 수세식 ③ 없음
- ⑫ 목욕 시설 : ① 온수시설 ② 비온수시설 ③ 없음
- ⑬ 상수도시설 : ① 있음 ② 없음

⑭ 외벽재료

이 주택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벽재료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재료를 말합니다.

- ① 나무 ② 적벽돌, 돌 ③ 시멘트제품
- ④ 철근콘크리트 ⑤ 흙, 흙벽돌 ⑥ 기타()

⑮ 지붕재료

이 주택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① 기와 ② 슬레이트 ③ 슬래브(슬래브기와)
- ④ 함석 ⑤ 짚, 갈대 ⑥ 기타()

⑯, ⑰ 연건평 및 대지 면적

이 주택의 연건평과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기입하고 대지 면적은 담장 안의 전면적 기입합니다. ※ 평 또는 m²중 한쪽만 기입합니다.

- ⑯ 연건평 평 ⑰ 대지 면적 평
- m² m²

⑱, ⑲ 총방수 및 거주 가구수

이 주택에는 방이 모두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보며, 동거가구의 방수 및 수도 포함됩니다.

- ⑱ 총 방 수 개
- ⑲ 거주 가구수 가구

⑳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

- ① 1950년 이전 ② 1950년~1959년
- ③ 1960년~1969년 ④ 1970년~1979년
- ⑤ 1980년~1985년 ⑥ 1986년
- ⑦ 1987년 ⑧ 1988년
- ⑨ 1989년 ⑩ 1990년

㉑ 편의시설수

이 주택에는 다음 시설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 1. 부엌 : 개
- 2. 화장실 : 개
- 3. 출입구 : 개

㉒ 거주 가능 가구수

이 주택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 가구

응답자	장혁순	서명	김영우	조사원	김영우	서명
성명		장혁순		성명		김영우

- 이제 택의 조사표가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 택을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이 조사표를 잘 전달하여 주십시오.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함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전수 조사구용 조사표)

※ 이 난은 조사가원이 기입하는 난이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

시·도	구·시·군	동·읍·면	통리동(아파트)	120번지	호
서울	종로	경운	3동1반	전화 (720-0000)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매수	가구원수
0041	31	49	2매중 2매	

		1	2	3	4	5
성명	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가구주부터 기입하여 주시고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강진호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② 「장남」, 「장남의 장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제				
	성별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나이	④-1 세는 나이로 몇 살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입합니다.	28 살			
	출생년월일	④-2 이 분은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무슨 띠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출생년도와 띠를 기입합니다.	1963 년도 토끼 띠			
	양력 음력 구분	④-3 실제로 집에서 쇠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쇠는 생일을 기입합니다.	2 월 8 일 ① 양력 ② 음력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분은 모두 기입합니다	만 나이	④-4 이 난은 위에 있는 만나이 환산표를 보시고 정확한 만나이를 계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만 27 살			
	출생지	⑤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출생 당시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합니다. ※ 북한의 경우에는 출생 당시의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되 시·도명 앞에는 북한을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경상북도(국) 포항 구(국)			
	교육정도	⑥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입합니다. ※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말합니다. ※ 현재 1학기 이상 휴학상태인 경우에는 중퇴에 해당됩니다.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민 ③ 중·학·등 ④ 고·문·대 ⑤ 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통근·통학 여부	⑦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직장 또는 학교(원)를 다니는 경우에도 통근·통학에 포함됩니다. ② 안한다에 해당되는 분은 ⑧에서 ⑩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직장 또는 학교(원) 소재지	⑧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면 직장 또는 학교(원)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② 다른 동읍면으로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곳의 행정구역명을 정확히 기입하시고 모를 경우에는 직장 또는 학교(원)의 이름이나 인근 유명한 건물이름 또는 특징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 서울특별시(도) 종로(구)시·군 경운(동)읍·면 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			
	출발·도착 시각	⑨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	·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7 시 10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7 시 50 분			
기입합니다	이용교통수단	⑩ 평소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할 때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통근·통학시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번호에 모두 O표합니다.	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 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			
	혼인	이 분은 결혼하였습니까?	① 미 혼 ② 유배우			

둘째강은 사선()

① 거처의 종류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한 종류의 집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⑥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⑧ 사무실 겸용 주택(오피스텔) ⑨ 기타(음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

② 가구 구분
 택이 이 집을 대표하는 주가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세를 들어 사는 가구들만이 있을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가 주가구입니다.
 ① 주가구 ② 동거가구 ③ 집단가구
 ※ 집단가구는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를 의미하며 ③ 집단가구에 해당되면 ③ ~ ② 까지 사전(\)을 긋습니다.

③ 점유형태
 이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와 영업의 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① 주거전용 ② 영업겸용
 → ① 자기 집 ② 전 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 상

④ 사용 방수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봅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⑥ 6개이상

⑤ 식수의 종류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상수도 ② 간이수도 ③ 자가수도 ④ 수도펌프 ⑤ 우물 ⑥ 기타()

⑥ 취사연료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2개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연탄 ② 유류 ③ 가스 ④ 전기 ⑤ 임산연료 ⑥ 기타()

⑦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재래식 아궁이 ② 연탄 아궁이 ③ 연탄 보일러 ④ 단독 기름보일러 ⑤ 단독 가스보일러 ⑥ 중앙난방보일러 ⑦ 전기 보일러 ⑧ 기타()

⑧ 문화시설 및 가재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합니다.
 ① 텔레비전 ② 냉장고 ③ 세탁기 ④ 전화 ⑤ 전축(오디오) ⑥ 녹화재생기(V.T.R.) ⑦ 에어컨 ⑧ 개인용 컴퓨터 ⑨ 자가용 자동차

⑨ 전용시설
 택에서는 다음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 부엌 시설 :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2. 화장실시설 :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3. 출입구시설 :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⑩~⑬ 시설형태
 단독사용 또는 공동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음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⑩ 부엌 시설 : ① 재래식 ② 입식 ③ 없음
 ⑪ 화장실시설 : ① 재래식 ② 수세식 ③ 없음
 ⑫ 목욕 시설 : ① 온수시설 ② 비온수시설 ③ 없음
 ⑬ 상수도시설 : ① 있음 ② 없음

⑭ 외벽재료
 이 주택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벽재료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재료를 말합니다.
 ① 나무 ② 적벽돌, 돌 ③ 시멘트제품 ④ 철근콘크리트 ⑤ 흙, 흙벽돌 ⑥ 기타()

⑮ 지붕재료
 이 주택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기와 ② 슬레이트 ③ 슬래브(슬래브기와) ④ 함석 ⑤ 짚, 갈대 ⑥ 기타()

⑯, ⑰ 연건평 및 대지 면적
 이 주택의 연건평과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기입하고 대지 면적은 담장 안의 전면적 기입합니다. ※ 평 또는 m² 중 한쪽만 기입합니다.
 ⑯ 연건평 평 ⑰ 대지 면적 평
 m² m²

⑱, ⑲ 총방수 및 거주 가구수
 이 주택에는 방이 모두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보며, 동거가구의 방수 및 가구수도 포함됩니다.
 ⑱ 총 방 수 개 ⑲ 거주 가구수 가구

⑳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
 ① 1950년 이전 ② 1950년~1959년 ③ 1960년~1969년 ④ 1970년~1979년 ⑤ 1980년~1985년 ⑥ 1986년 ⑦ 1987년 ⑧ 1988년 ⑨ 1989년 ⑩ 1990년

㉑ 편의시설
 이 주택에는 다음 시설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1. 부엌 : 개
 2. 화장실 : 개
 3. 출입구 : 개

㉒ 거주 가능 가구수
 이 주택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가구

응답자	서명	조사원	서명
성명	강덕순	성명	김영주

- 이제 택의 조사표가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 택을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이 조사표를 잘 전달하여 주십시오.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120번지 호 044	조사구번호	044
거처번호	031	가구번호	049
가구당 조사표매수	02	가구원수	006

OMR조사표 기입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을 보면서 각란의 기입내용을 정확
야 한다.

-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 매수」 「가구당
중 일련번호」는 한가구에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될 경우 매장마다 작성한다.
“예” 조사표가 3매 사용된 경우

①성명	강창호	장익순	장석돈	장석순	장석래
②가구주와의 관계	집	집	집	집	집
③성별	남	여	남	남	여
④나 이	4-1 세는나이	18	19	18	19
	4-2 출생년도	81	82	81	82
	4-3 생일	1월 5일	2월 3일	1월 6일	2월 4일
	4-4 만 나이	31	32	31	32
⑤출생지	다	다	다	다	다
	구	구	구	구	구

-첫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3	가구당조사표 매수 중 일련번호	01
-----------	----	------------------	----

-둘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3	가구당조사표 매수 중 일련번호	02
-----------	----	------------------	----

-셋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3	가구당조사표 매수 중 일련번호	03
-----------	----	------------------	----

- 「가구원수」는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될 경우에도 조사표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는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성명」은 가구원 일련번호순으로 가구주부터 작성한다. 이때 가구원 일련번호
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예”

성명	강창호	장익순		장석돈
----	-----	-----	--	-----

- 「가구주와의 관계」는 이가·내검요원이 작성하는 난이므로 조사원은 작성하지
않는다.
- 「성별」은 가구원마다 작성한다.
- 「나이」는 「세는나이」 「출생년도」 「띠」 「생일」 「양력음력구분」 「만나이」
의 「0」을 반드시 마크한다.

“예” 세는 나이 8살.

4-1 세는나이	8
----------	---

- 「출생지」는 일반조사표에 「③다른구시군」란에 기입되어 있으면 「다른 구시군」
마크하고, 「구시군」 부호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 둔다.

도	1. 한다 2. 안한다					
여부	1. 한다 2. 안한다					
시 도	1. 원시 2. 1차 3. 2차 4. 3차 5. 4차 6. 5차 7. 6차 8. 7차 9. 8차 10. 9차 11. 10차 12. 11차	1. 원시 2. 1차 3. 2차 4. 3차 5. 4차 6. 5차 7. 6차 8. 7차 9. 8차 10. 9차 11. 10차 12. 11차	1. 원시 2. 1차 3. 2차 4. 3차 5. 4차 6. 5차 7. 6차 8. 7차 9. 8차 10. 9차 11. 10차 12. 11차	1. 원시 2. 1차 3. 2차 4. 3차 5. 4차 6. 5차 7. 6차 8. 7차 9. 8차 10. 9차 11. 10차 12. 11차	1. 원시 2. 1차 3. 2차 4. 3차 5. 4차 6. 5차 7. 6차 8. 7차 9. 8차 10. 9차 11. 10차 12. 11차	
	구 시 군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동 읍 면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출 발 시 각 분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00 10 20 30 40 50					
도 착 시 각 분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00 10 20 30 40 50					
수 단	1 2 3 4 5 6 7 8 9 0					
태	1. 미혼 2. 동거 3. 사별 4. 이혼					
의 종 류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7 8 9	7 8 9	7 8 9	7 8 9	
	1. 주거구 2. 동거구 3. 집단구					
	1. 주거전용 2. 업무용					
	1. 1기 2. 2기 3. 3기 4. 4기 5. 5기 6. 6기 7. 7기 8. 8기 9. 9기 10. 10기 11. 11기 12. 12기	1. 1기 2. 2기 3. 3기 4. 4기 5. 5기 6. 6기 7. 7기 8. 8기 9. 9기 10. 10기 11. 11기 12. 12기	1. 1기 2. 2기 3. 3기 4. 4기 5. 5기 6. 6기 7. 7기 8. 8기 9. 9기 10. 10기 11. 11기 12. 12기	1. 1기 2. 2기 3. 3기 4. 4기 5. 5기 6. 6기 7. 7기 8. 8기 9. 9기 10. 10기 11. 11기 12. 12기	1. 1기 2. 2기 3. 3기 4. 4기 5. 5기 6. 6기 7. 7기 8. 8기 9. 9기 10. 10기 11. 11기 12. 12기	
	1. 상수도 2. 하수도 3. 차가도 4. 수돗물 5. 우물 6. 기타					
	1. 연료 2. 연료 3. 가스 4. 전기 5. 인공열 6. 기타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 화 5. 전 욕 6. 누화세기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 화 5. 전 욕 6. 누화세기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 화 5. 전 욕 6. 누화세기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 화 5. 전 욕 6. 누화세기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 화 5. 전 욕 6. 누화세기	
	7. 에어컨 8. 세탁기 9. 세탁기 10. 세탁기					
	1. 단독 2. 공동 3. 합동					
	1. 단독 2. 공동 3. 합동					
1. 단독 2. 공동 3. 합동	1. 단독 2. 공동 3. 합동	1. 단독 2. 공동 3. 합동	1. 단독 2. 공동 3. 합동	1. 단독 2. 공동 3. 합동		
1. 단독 2. 공동 3. 합동	1. 단독 2. 공동 3. 합동	1. 단독 2. 공동 3. 합동	1. 단독 2. 공동 3. 합동	1. 단독 2. 공동 3. 합동		

• 「교육정도」 「통근·통학여부」는 일반 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는 일반조사표에 「② 다른 동읍면」란에 기입된 경우 「 시도」란에 마크하고, 「구시군」 부호와 「동읍면」 부호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출발·도착시각」 「이용교통수단」 「혼인상태」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가구에 관한 사항」 「주택에 관한 사항」은 한가구에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될 경우 첫째 장만 작성하고 둘째장 이상은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의 주거구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전수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다시 쓰시오.
- 마크하실 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굽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서울 ^시 종로 ^구 경운 ^동 120번지 아파트		조사구번호	0	백	0	1	2	3
거처번호	0	백	0	1	2	3	4	5	6
가구당 조사표매수	0	백	0	1	2	3	4	5	6

		1	2	3	4	5
① 성명		강창호	장덕순	강석돈	강석순	강석표
② 가구주와의 관계	성	남	남	남	남	남
	나이	4-1	4-1	4-1	4-1	4-1
④ 나	출생년도	4-2	4-2	4-2	4-2	4-2
	생일	4-3	4-3	4-3	4-3	4-3
⑤ 출생	출생지	4-4	4-4	4-4	4-4	4-4
	출생지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이 기 내 검 무 원 기 입 란

		1					2					3					4					5				
교육 정도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통근·통학여부		1. 한다 2. 안한다 (8)번으로 계속 (11)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8)번으로 계속 (11)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8)번으로 계속 (11)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8)번으로 계속 (11)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8)번으로 계속 (11)번으로 계속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시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동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읍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면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출발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도착시각		00 10 20 30 40 50					00 10 20 30 40 50					00 10 20 30 40 50					00 10 20 30 40 50					00 10 20 30 40 50				
이용 교통수단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혼인상태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⑧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내걸
인 기입란

⑨ 출발·도착시각

⑩ 이용 교통수단

⑪ 혼인 상태

① 거처의 종류	1 2 3 4 5 6 7 8 9
② 가구 구분	1. 주거가구 2. 동거가구 3. 집단가구
③ 점유 형태	1. 주거전용 2. 영업겸용 1. 자기집 2. 전세 3. 보증부월세 4. 원세(사글세) 5. 무상
④ 사용 방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⑤ 식수의 종류	1. 상수도 2. 간이수도 3. 자가수도 4. 수동펌프 5. 우물 6. 기타
⑥ 취사 연료	1. 연탄 2. 유류 3. 가스 4. 전기 5. 임산연료 6. 기타
⑦ 난방 시설	1 2 3 4 5 6 7 8
⑧ 문화시설및가재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화 5. 전속 6. 녹화재생기 7. 에어컨 8. 개인용컴퓨터 9. 자가용승용차
⑨ 전용 시설	1. 부엌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2. 화장실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3. 출입구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⑩ 부엌 시설	1. 재래식 2. 입식 3. 없음

주택에 관한 사항	⑭외벽재료	1. 나무 2. 벽돌 3. 시멘트제품 4. 철근콘크리트 5. 흙, 흙벽돌 6. 기타
	⑮지붕재료	1. 기와 2. 슬레이트 3. 스프라(스라브기와) 4. 합석 5. 짚, 갈대 6. 기타
	⑯연건평	7평미만 7~9 9~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평이상
	⑰대지면적	10평미만 10~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149 149~199 199~249 249평이상
	⑱층방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이상
	⑲거주가구수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가구 8가구 9가구 10가구 11가구 12가구이상
	⑳건축년도	1. 1950년 이전 2. 50~59 3. 60~69 4. 70~79 5. 80~85 6. 86년 7. 87년 8. 88년 9. 89년 0. 1990년
	㉑편의 시설	1. 부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2. 화장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전수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세요.
- 마크하실 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굽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 둘째 장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주소	서울 ^시 종로 ^구 시경은 ^동 120번지 아파트	조사구번호	0백 0십 4일
거처번호	0백 3십 1일	가구번호	0백 4십 9일
가구당 조사표매수	0백 0십 2일	가구원수	0백 0십 0일
가구당조사표 매수	0백 0십 0일		0백 0십 0일
조사표매수	2일	일련번호	2일

이 기 내 필요 원 기 입 란

		1	2	3	4	5	
① 성명	강진호						
	성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성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② 가구주와의 관계	성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일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③ 성별	1. 남 2. 여		1. 남 2. 여		1. 남 2. 여		
	1. 남 2. 여		1. 남 2. 여		1. 남 2. 여		
④ 나	4-1	세는나이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출생년도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띠	귀 소 범 토끼 용				
⑤ 이	4-2	생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생일	6월 7월 8월 9월 10월				
		양력·음력구분	1. 양력 2. 음력				
⑥ 나이	4-3	만 나이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나이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출생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른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른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른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른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른 구시군
⑦ 출생	4-4	다구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큰도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외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2	3	4	5
⑥ 교육 정도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⑦ 통근·통학여부		1. 한다 2. 안한다 (⑧번으로 계속) (⑩번으로 계속)				
⑧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 시 군 동 읍 면 일	구 시 군 동 읍 면 일	구 시 군 동 읍 면 일	구 시 군 동 읍 면 일	구 시 군 동 읍 면 일
⑨ 출발·도착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출발시각 분	출발시각 분	출발시각 분	출발시각 분	출발시각 분
		00 10 20 30 40 50				
		도 착 시 각 분	도 착 시 각 분	도 착 시 각 분	도 착 시 각 분	도 착 시 각 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⑩ 이용 교통수단		1 2 3 4 5 6 7 8 9 0				
⑪ 혼인 상태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가 구 에 관 한 사 항	① 거처의 종류	1 2 3 4 5 6 7 8 9	
	② 가구 구분	1. 주가구 2. 동거가구 3. 집단가구	
	③ 점유 형태	1. 주거전용 2. 영업경용 1. 자기집 2. 전세 3. 보증부월세 4. 월세(사글세) 5. 무상	
	④ 사용 방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⑤ 식수의 종류	1. 상수도 2. 간이수도 3. 자가수도 4. 수도필프 5. 우물 6. 기타	
	⑥ 취사 연료	1. 연탄 2. 유류 3. 가스 4. 전기 5. 임산연료 6. 기타	
	⑦ 난방 시설	1 2 3 4 5 6 7 8	
	⑧ 문화시설및가재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화 5. 전축 6. 녹화재생기 7. 에어컨 8. 개인용컴퓨터 9. 자가용승용차	
	⑨ 전용 시설	1. 부엌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2. 화장실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3. 출입구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시 설	⑩ 부엌시설	1. 재래식 2. 임식 3. 없음
		⑪ 화장실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음

주 택 에 관 한 사 항	⑭외벽재료	1. 나무 2. 벽돌, 돌 3. 시멘트제품 4. 철근콘크리트 5. 흙, 흙벽돌 6. 기타	
	⑮지붕재료	1. 기와 2. 슬레이트 3. 스텝(스라브기와) 4. 합석 5. 질, 갈대 6. 기타	
	⑯연 건 평	7평미만 7~9 9~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평이상	
	⑰대지면적	10평미만 10~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149 149~199 199~249 249평이상	
	⑱층 방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이상	
	⑲거주가구수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가구 8가구 9가구 10가구 11가구 12가구이상	
	⑳건축년도	1. 1950년이전 2. 50~59 3. 60~69 4. 70~79 5. 80~85 6. 86년 7. 87년 8. 88년 9. 89년 0. 1990년	
	⑳편의 시설	1. 부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2. 화장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3. 출입구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조 사 요 령 서

(표본조사구용)



경 제 기 획 원

목 차

I. 조사개요	5
II. 조사일정	6
III. 조사원 주의사항	10
IV. 조사대상	14
V. 준비조사	23
VI. 본조사	37
VII. 조사항목별 기입방법 및 작성기준	38
-인구에 관한 사항	38
① 성 명	38
② 가구주와의 관계	38
③ 성 별	40
④ 나 이	40
⑤ 출생지	42
⑫ 1년전 거주지	43
⑬ 5년전 거주지	43
⑥ 교육정도	44

⑦ 통근·통학여부	45
⑧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45
⑨ 출발·도착시각	45
⑩ 이용교통수단	45
⑭ 경제활동상태	47
⑮ 산 업	53
⑯ 종사상의 지위	53
⑰ 직 업	56
⑪ 혼인상태	58
⑱ 초혼연령	59
⑲ 생존자녀수	59
⑳ 사망자녀수	59
㉑ 총출생자녀수	59
-가구에 관한 사항(모든 가구)	60
① 거처의 종류	60
② 가구 구분	62
③ 점유형태 ㉓ 임차료	63
④ 사용방수,	64
⑤ 식수의 종류	65
⑥ 취사연료	65
⑦ 난방시설	66
⑧ 문화시설 및 가재	66

⑨ 전용시설	67
⑩~⑬ 시설형태	67
⑭ 월 평균 가구 소득규모	68
-주택에 관한 사항(주택의 주가구)	69
⑮ 외벽재료	70
⑯ 지붕재료	71
⑰~⑱ 연건평, 대지 면적	72
⑲~⑳ 총방수 및 거주 가구수	72
㉑ 건축년도	73
㉒ 편익시설수	73
㉓ 거주가능 가구수	74
VIII. OMR 조사표 작성 및 관리 요령	75
IX. 조사표류 검토, 정리 및 제출	91

I. 조 사 개 요

1. 법적근거

통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임

2. 조사지역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

3.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 시점

1990년 11월 1일 0시 현재

나. 조사기간

- 준비조사 : 1990. 10. 30~10. 31(2일간)
- 본 조 사 : 1990. 11. 1~11. 10(10일간)

4.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5. 조사사항

- 가. 인구에 관한 사항 : 21항목
- 나. 가구에 관한 사항 : 15항목
- 다. 주택에 관한 사항 : 9항목

조사요령교육



10월 17일(수)
~10월 27일(토)
(기간중 2일)

II. 조 사 일 정

1. 조사요령 교육

조사요령 교육이 끝나면 집에서 실지조사에 대비하여 조사요령서의 내용은 물론 조사표 작성요령을 충분히 복습하여야 한다.

2. 조사용품 수령

- 조사요령서
- 일반조사표 및 OMR조사표
- 가구명부
- 조사구요도
- 가구일련번호표
- 사무용품(연필, 볼펜, 지우개, 받침대, 가방)

3. 조사표류 관리의 철저

- 오염이나 훼손방지
- 조사표류 절약 및 보관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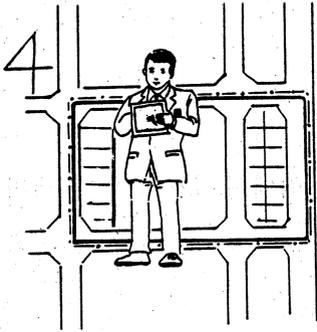
준 비 조 사

1. 조사구 경계확인

동·읍·면 담당자가 개략적으로 작성한 조사구요도를 수령한 후 자기가 담당할 조사구의 외곽 경계를 확인한다.

2. 조사구 요도 보완작성

조사구 요도에 거처 표시를 하고 거처번호를 방문



10월 30일(화)
~10월 31일(수)

순서에 따라 차례로 부여한다.(거처번호 기입방법은 32쪽 참조)

3. 가구명부작성

완성된 조사구요도에 따라 조사구내의 각 가구를 방문하면서 가구명부를 2부 작성한다.

4. 가구일련번호표(스티커) 첨부

가구확인이 끝나면 조사구번호와 가구일련번호를 기입한 가구일련번호표를 가구수만큼 대문에 붙인다.

본 조사



11월 1일(목)
~11월 10일(토)

1. 가구명부에 표시된 거처번호 순서에 따라 가구를 방문하여 적합한 응답자를 선정하고, 면접에 의하여 일반조사표를 작성한다.
2. 적합한 응답자가 없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원 연락전으로 재방문일자를 약속한다.

OMR 조사표에의 이기

11월 1일(목)
~11월 10일(토)

1. 조사가 완료된 일반조사표는 매일 오후 5시까지 동·읍·면사무소의 지도공무원에게 조사표 검토를 받은 후 OMR조사표에 이기한다.
2. 일반조사표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완성된 조사표는 당해 가구를 재방문하여 작성한 후 OMR조사표에 이기한다. 이때 이기·내검요원에 의해 이기되는 항목(가구주와의 관계, 출생지,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과 경제기획원에서 부호가 기입되는 항목(산업, 직업)은 제외한다.
3. 이기작업이 완료된 OMR조사표는 지도공무원의 내용검토를 받은 후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한 후 조사구별로 OMR조사표 보호용 비닐에 가구번호 순서대로 넣는다.

조사표류 제출



11월 10일(토)

1. 조사표류 제출

조사표 및 가구명부 등의 점검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내검을 다시 한후 동·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최종 점검을 받는다.

2. 제출하여야 할 조사표류

- ① 조사표(일반조사표, OMR조사표)
- ② 가구명부
- ③ 조사구요도
- ④ 조사요원증
- ⑤ 조사업무 수행시 발생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III. 조사원 주의사항

조사원은 각 가구를 방문할 때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의 비밀보호



탁상조사금지



1. 일반적인 주의사항

구분	실천내용
① 가구의 누락·중복방지	• 담당 조사구 경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주의
② 조사업무에만 전념	• 조사기간 중에는 본 조사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하며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조사하여서는 안됨
③ 대리조사 불가	• 조사업무를 가족이나 친구, 친척에게 대리 조사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교육받은 사람이 조사해야 함
④ 조사업무수행이 어려울때	• 특별한 사고(질병, 기타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지도공무원에게 보고
⑤ 조사요령서 숙지	•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요령서 내용을 숙지
⑥ 개인의 비밀보호	• 조사결과 알게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조사내용은 비밀로 함(누설하게 되면 통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형)
⑦ 조사진행상황 일일보고	• 항상 지도공무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⑧ 탁상조사금지	• 기존의 기록(주민등록부, 통(리)·반적부 등)을 이용하여 탁상 조사해서는 안됨

2. 가구 방문시 주의사항

방문 시간 선택



조사원마크 및 조사원증패용



구 분	실 천 내 용
① 방문시간 선택	•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은 피함
② 조사원 마크 및 조사원증 패용	• 조사업무 수행중 조사원마크 및 조사원증을 패용, 응답자가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함
③ 복장단정	• 색 안경을 쓰거나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방문하여 응답자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
④ 질문요령	• 조사표의 질문요령에 의거 누구나 알기 쉽고 공손하게 질문(유도질문금지)

3. 응답자 선정시 유의사항

적합한 응답자 선정



구 분	실 천 내 용
적합한 응답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그 가구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가구원을 선정(어린이나 가정부에게 질문 금지) • 특히 동거인(가정부, 종업원, 하숙인 등)에 대한 조사는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여야 함

조사목적설명 및 설득



4. 응답거부시 조치사항

구 분	실 천 내 용
① 조사목적 설명	•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
② 비밀보호	• 조사내용은 법적으로 비밀을 보호토록 되어 있으며 오직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 • 조사내용의 비밀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봉투를 배부
③ 계속된 응답 거부	• 위와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도 공무원에게 보고

대상가구 재방문



5. 대상가구 재방문

구 분	실 천 내 용
① 연락전 활용	• 가구원이 출타, 부재 등으로 적합한 응답자가 없을때 연락전 활용
② 대상가구 재방문	• 대상가구에 혼사(婚事) 또는 상사(喪事)가 있거나 조사표 검토중 기입 누락이나 잘못 기입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대상가구를 재방문

6. 외국인 조사

외국인에 대한 조사는 우선 조사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용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가. 보통조사구내의 외국인가구

보통조사구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가구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 조사표를 배부하고 본인이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도록 부탁한다.

나. 외국인 가구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외국인 가구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외국인 가구와는 별도로 한국인 조사요령에 의하여 일반조사표(한국인용)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다. 관광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외국인

1990년 11월 1일 0시 현재에 관광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광호텔 조사구 담당조사원이 호텔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외국인 투숙객에게 조사표를 배부 기입해 주도록 부탁한후 회수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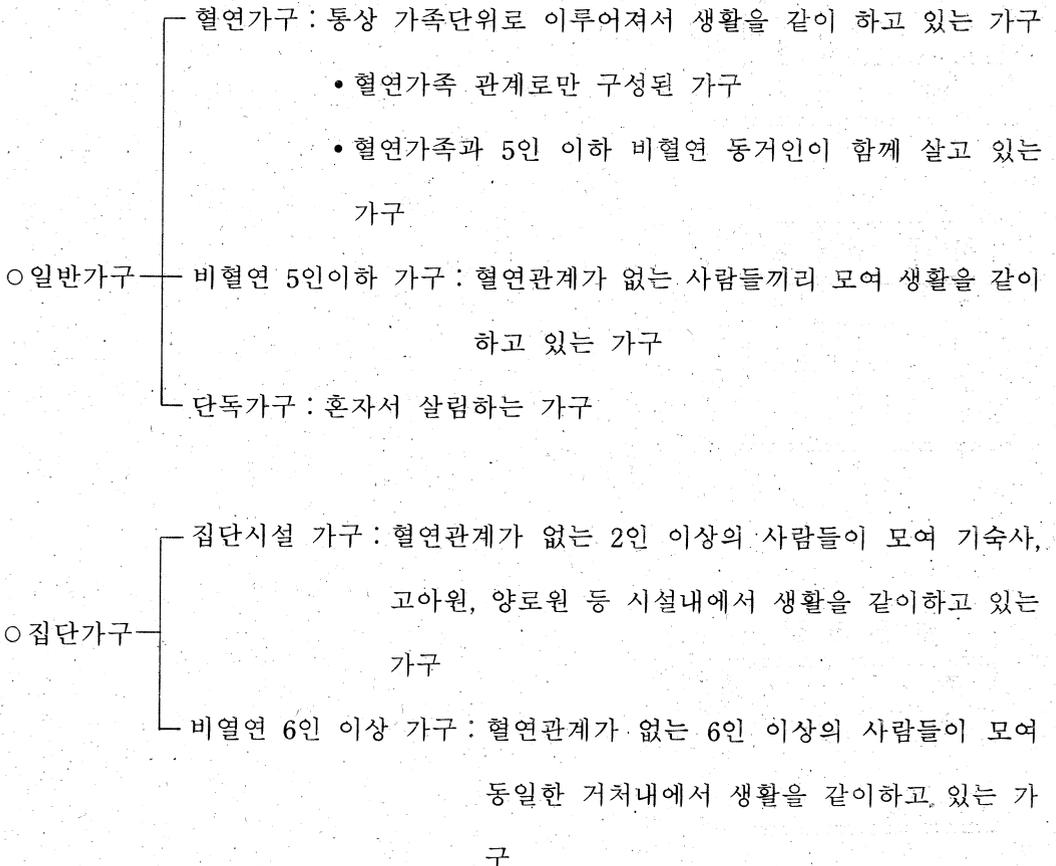
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관리인이나 한국인 동거인 등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통하여 조사표 작성을 의뢰토록 한다.

IV. 조 사 대 상

-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담당 조사구내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와 가구원 및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외국인은 모두 조사대상이 되나 외국 외교관, 외국 군인·군속 및 그 가족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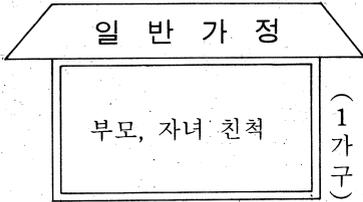
1. 가 구

-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하며, 이는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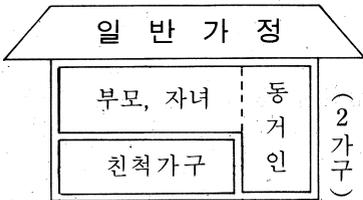


일 반 가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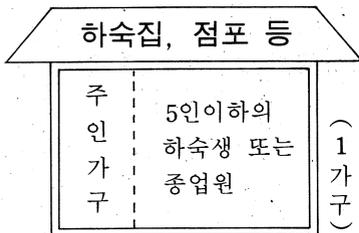
○1인 또는 2인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 취침등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가구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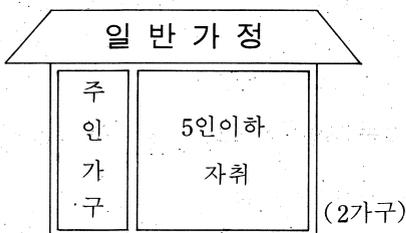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 1가구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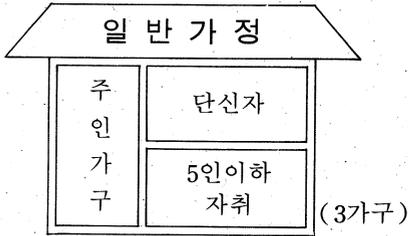
○친척과 같이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가구로 보아 2가구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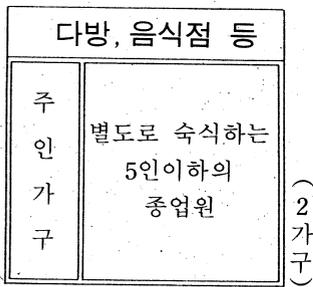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 또는 종업원은 주인가구의 동거가구원으로 보아 하나의 가구로 조사한다. 그러나 이들 하숙생 또는 종업원이 6인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인가구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주인가구와 독립시켜 별개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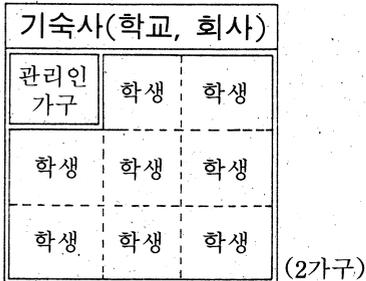
○주인가구와 생계를 달리하는 5인 이하의 자취생은 이들 자취생만을 별개의 가구로 보아 2가구로 조사한다. 그러나 자취생들이 함께 살지 않고 각기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을 때에는 각각을 별개의 가구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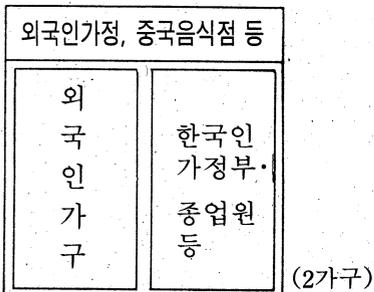
○주인가구와 함께 살고있으나 숙식을 달리 하는 단신자와 5인이하의 자취생은 각각을 1가구로 조사한다.



○다방, 음식점, 상점 등의 영업장소에서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은 이들 종업원만을 별도의 가구로 조사한다. 그러나 숙식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이면 주인가구에 포함시켜 동계인으로 조사하고, 6인이상이면 이들을 독립시켜 별도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기숙사, 고아원등 시설내에 거주하고 있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의 경우 공동취사를 하지 않고 독립취사를 하고 있으면 이들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를 별도의 일반가구로 조사하고, 기숙생 또는 고아원생은 일괄하여 하나의 집단가구로 파악한다.



○외국인 가구 또는 사업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가정부·종업원은 숙식을 같이 하든 달리 하든 외국인 가구와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5인까지는 일반가구, 6인 이상은 집단가구로 조사).

집 단 가 구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거처에서 집단하숙 또는 자취하고 있는 6인이상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가구로 파악한다.

사회 시설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1가구)

○고아원, 양로원, 영아원, 불구자 수용시설 등 사회시설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기숙사(학교)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1가구)

○공장, 학교, 병원 등의 기숙사(명칭이 기숙사라도 독립적인 취사, 취침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일반가정, 상점 등	
주 인 가 구	6인이상의 종업원, 하숙생 등

(2가구)

○주인가구와 동거인수가 6인이상인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2가구로 조사하되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한다.

○주인가구와 자취를 하는 1단위가 6인 이상인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2가구로 조사하되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한다.

○대사찰, 수녀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공사장 및 건설현장의 막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1개의 집단가구로 조사한다.

2. 가 구 원

가구원이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구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란 용어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자 기 집 에 서 조 사 해 야 할 사 람

잠시 친척집 방문	
○	×
자 기 집	친 척 집
	

- 잠시 친척집을 방문하고 있는 가족(국내외 방문)
- 본래 이 가구에서 살고 있었으나 잠시 형제·자매집에 가 있는 부모 등 가족

국내외 출장 또는 여행	
○	×
자 기 집	여 행 및 출 장 중 지
	

- 국내외에 여행중인 가족
- 국내외에 출장중인 가족(단, 학업이나 직업때문에 외지에서 상주하는 가족은 제외)

병원 입원 환자

○ 자기 집

× 병원



○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인 가족(요양소 등에 장기 입원중인 사람은 제외)

선박 · 항공기승무원

○ 자기 집

× 선박 · 항공기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 · 관광버스 등의 탑승 승무원인 가족(기숙사에 들어있는 가족 제외)

경찰서 또는 구치소의 미결수

○ 자기 집

× 경찰서 · 구치소



○ 경찰서 보호실 또는 구치소(교도소)에 미결수로 들어가 있는 가족

○ 즉결 심판에 의하여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중인 가족

예비군 및 방위소집

○ 자기 집

× 훈련 장소



○ 예비군 또는 방위소집중인 가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영외거주 직업군인인 가족(영외거주를 하고 있으나 가정을 갖지 않고 혼자 방을 얻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아직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1개월미만의 부재중인 가족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은 발견된 장소에서 조사(발견된 장소를 생계단위로 하여 일반가구로 간주 조사)

타 지 에 서 조 사 해 야 할 사 람



○취업, 취학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외지에서 하숙, 자취중인 가족



○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부녀보호소 등의 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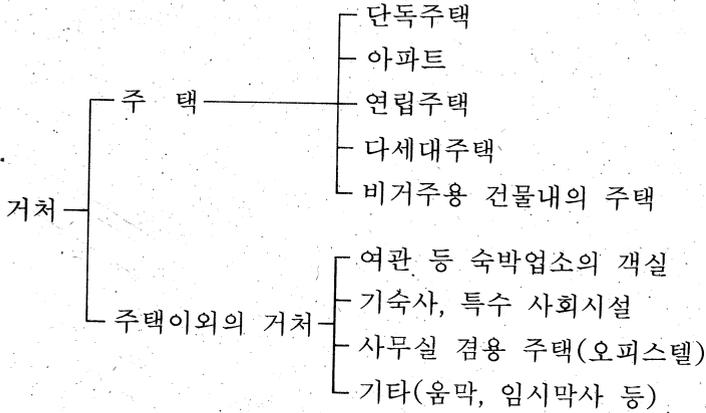
○ 군, 전투경찰 또는 의무경찰(병역의무자)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가족
○ 경찰대학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가족(간부 후보생)



○ 교소도, 소년원에 입소되어 형이 확정된 가족

3. 거 처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주 택

주택이란 한 가구(집단가구 제외)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첫째 : 영구건물이어야 하며

둘째 :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셋째 :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넷째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주단위를 말한다.

○호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

○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수용을 위한 구조물

○건설공사 현장의 임시막사, 움막, 토굴 등

V. 준비 조사

1. 조사구 요도 작성

담당조사구의 경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조사 대상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한다.

가. 조사구의 경계확인

○동·읍·면 담당자가 작성한 조사구 요도를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여 자기가 맡은 조사구의 경계를 확인한다.

○경계가 불분명할 때에는 동·읍·면 담당자와 함께 현지확인하여 인접 조사구와 중복 또는 누락지역이 없도록 한다.



나. 건물 및 지형지물 표시

○경계확인이 끝나면 조사구내의 모든 건물과 지형지물을 요도상에 표시된 지정기호를 사용하여 그려 넣는다.(건물은 로 표시하되 신축중인 건물은 로 표시한다.)

기숙시설 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관광호텔 조사구는 조사구요도를 작성하지 않는다.

다. 거처와 가구파악

○건물 및 지형지물 표시가 끝나면 모든 건물에 대해 사람이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비거주용 건물내에 사는 가구(다방, 점포 등에 거주하는 종업원 가구 등)와 세든 가구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사람이 살지 않는 비거주용 건물(은행, 상점, 공장 등)은 건물이름을 기입하고, 사람이 살지 않고 건물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 빈집(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과 수리를 위해 잠시 비워둔 집)은 빈집, 신축중인 건물은 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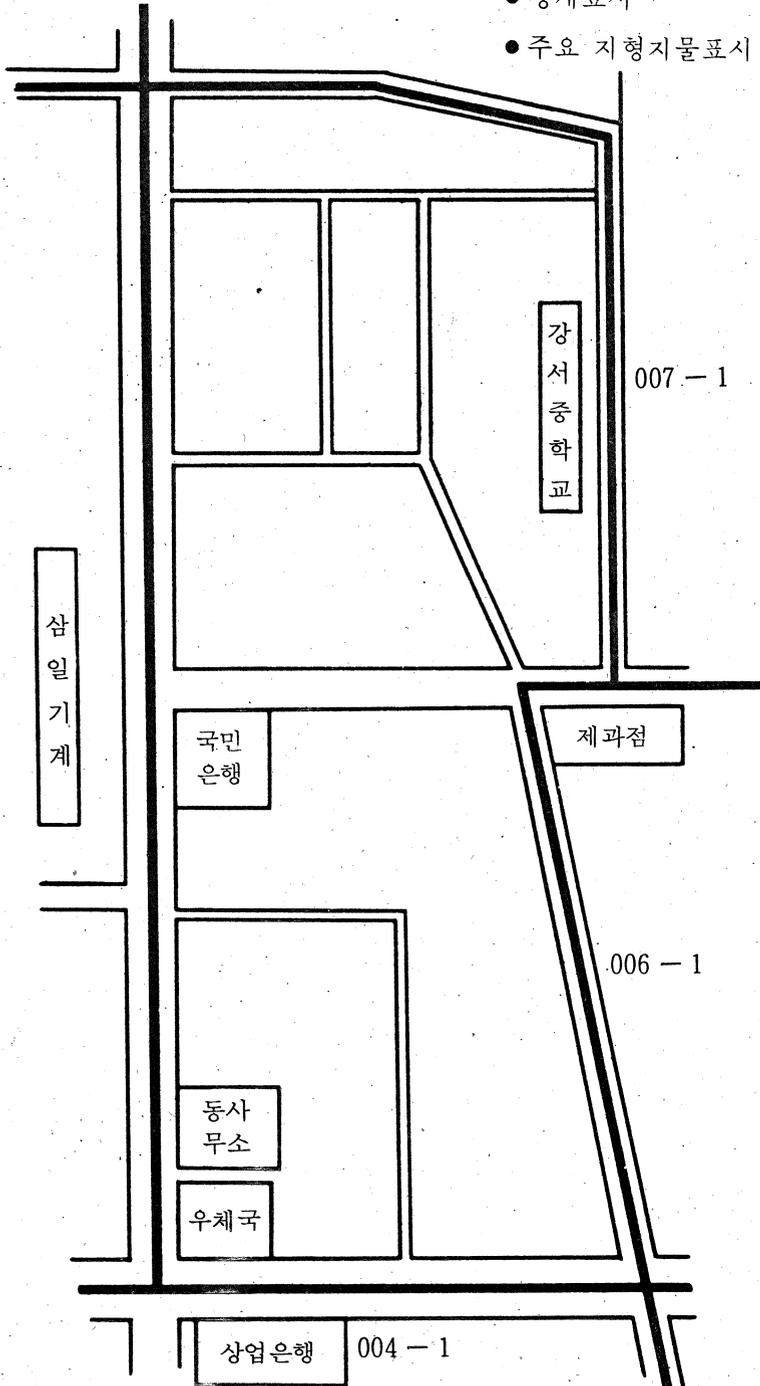
라. 거처번호 부여

○ 조사진행 순서에 따라 건물표시내에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1 또는 5빈집).
이때 빈집에 대하여도 거처번호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시부지역의 조사구요도 작성(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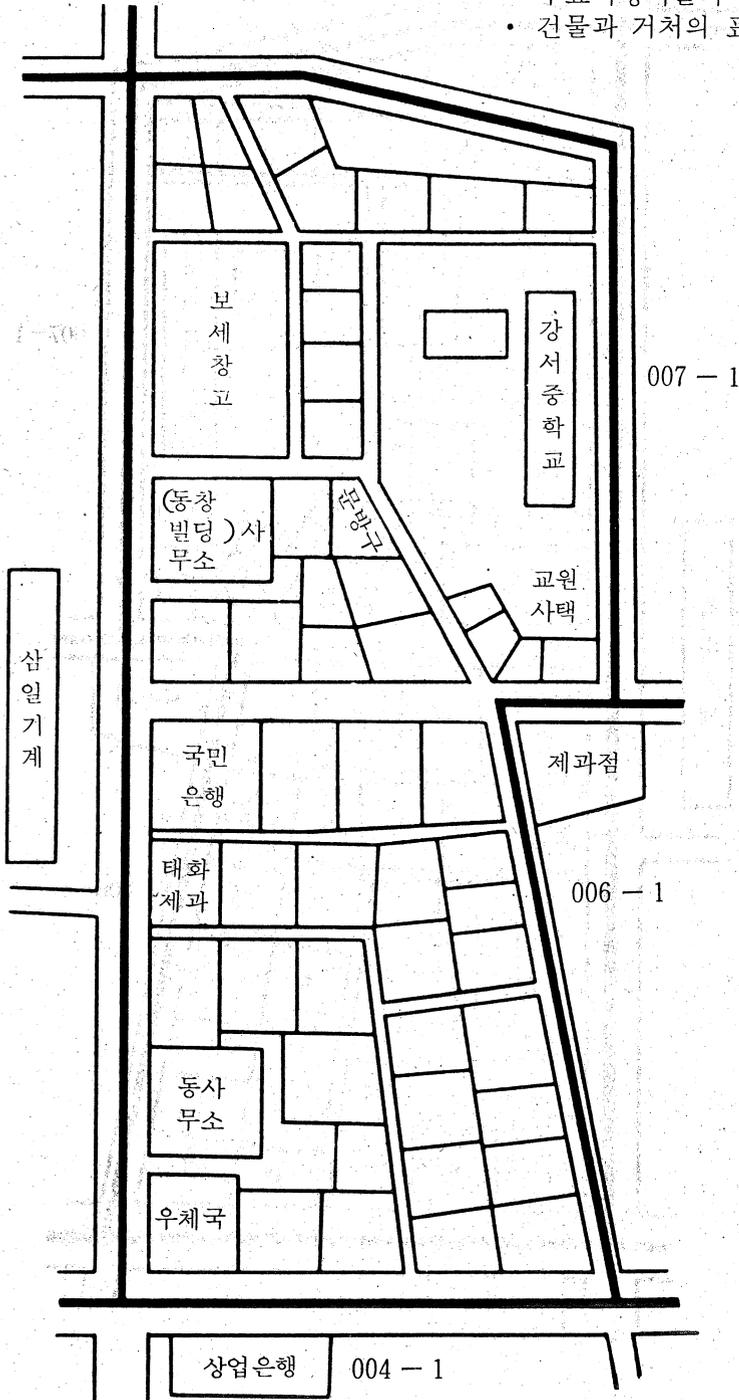
1단계 : 동·읍·면 담당자가 작성

- 경계표시
- 주요 지형지물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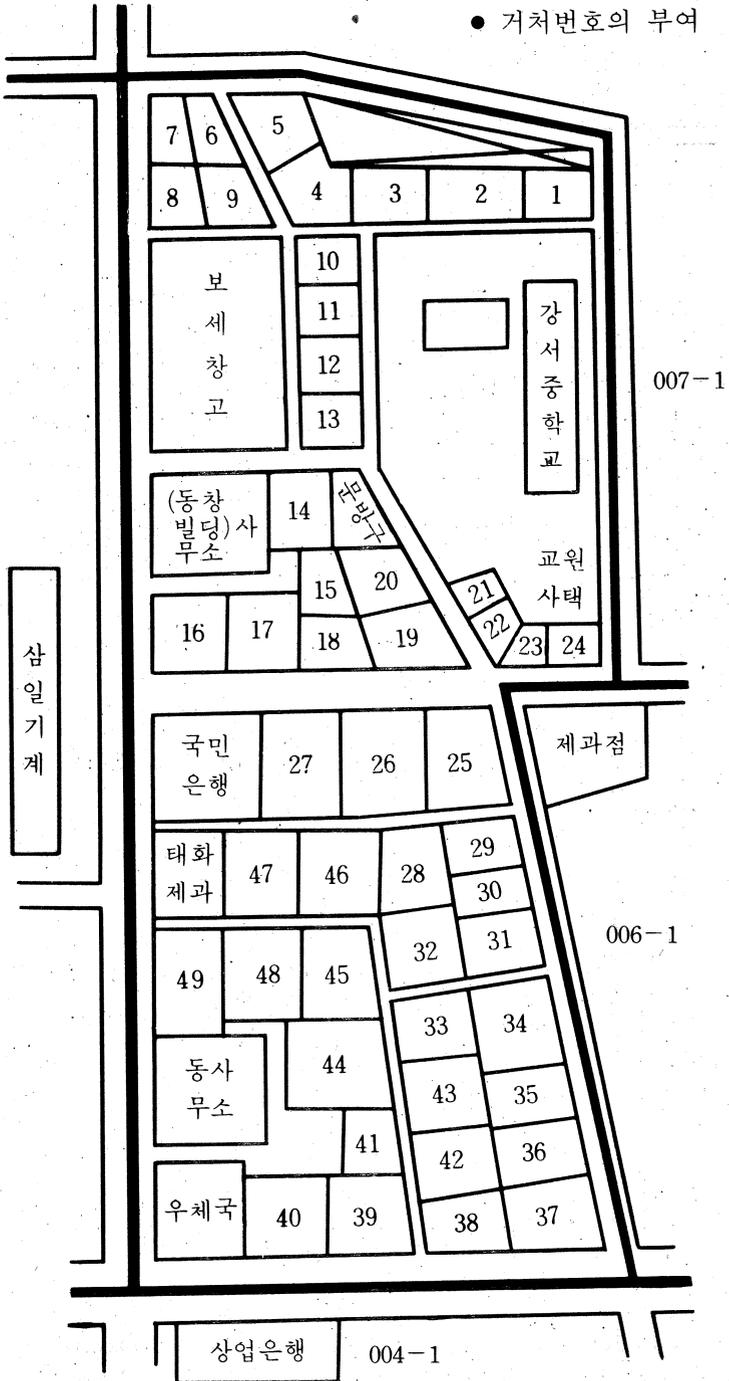
2단계 : 조사원이 작성

- 경계의 확인
- 주요지형지물의 보완
- 건물과 거처의 표시



3단계 : 조사원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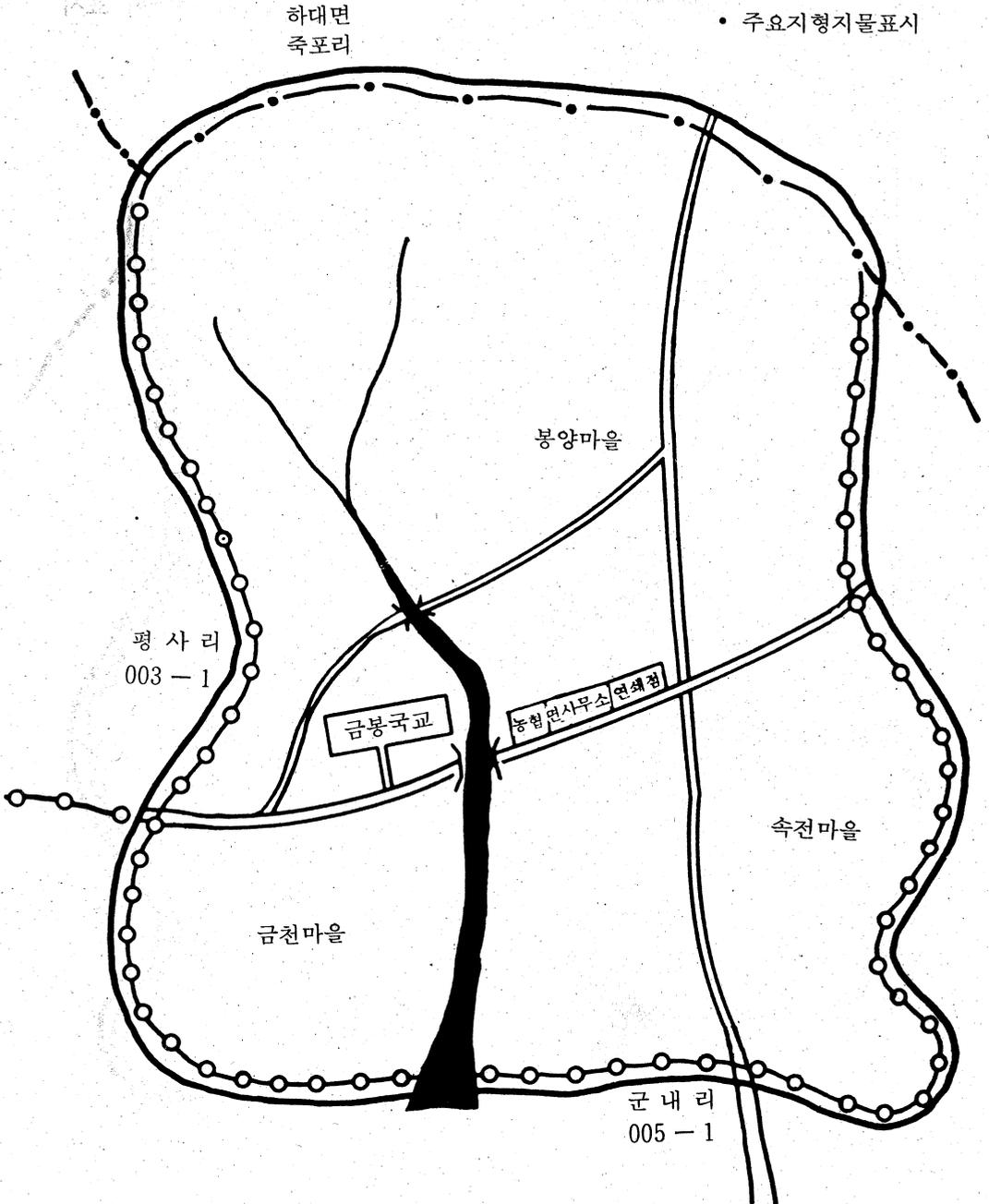
● 거처번호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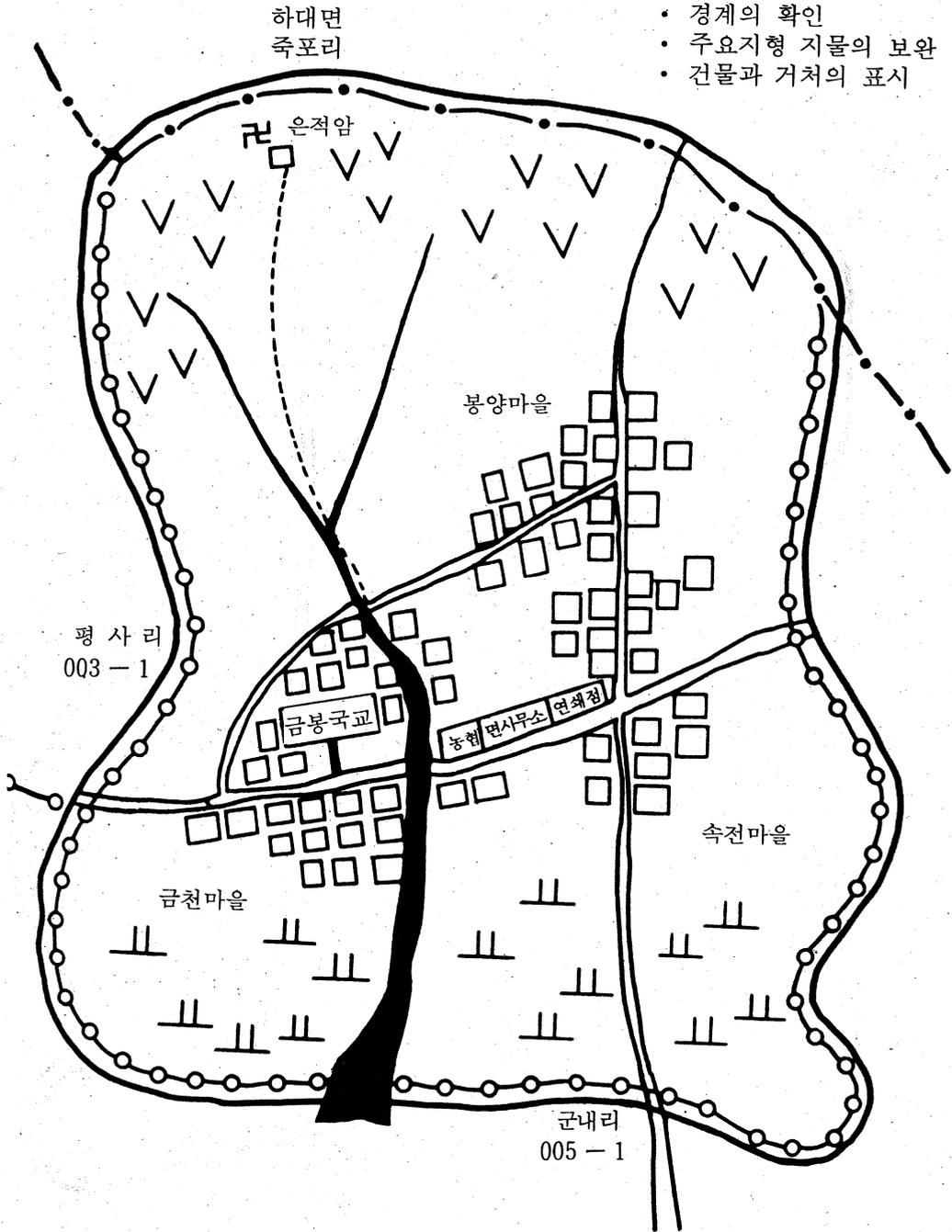
군부지역의 조사구요도 작성(예)

1단계 : 동·읍·면 담당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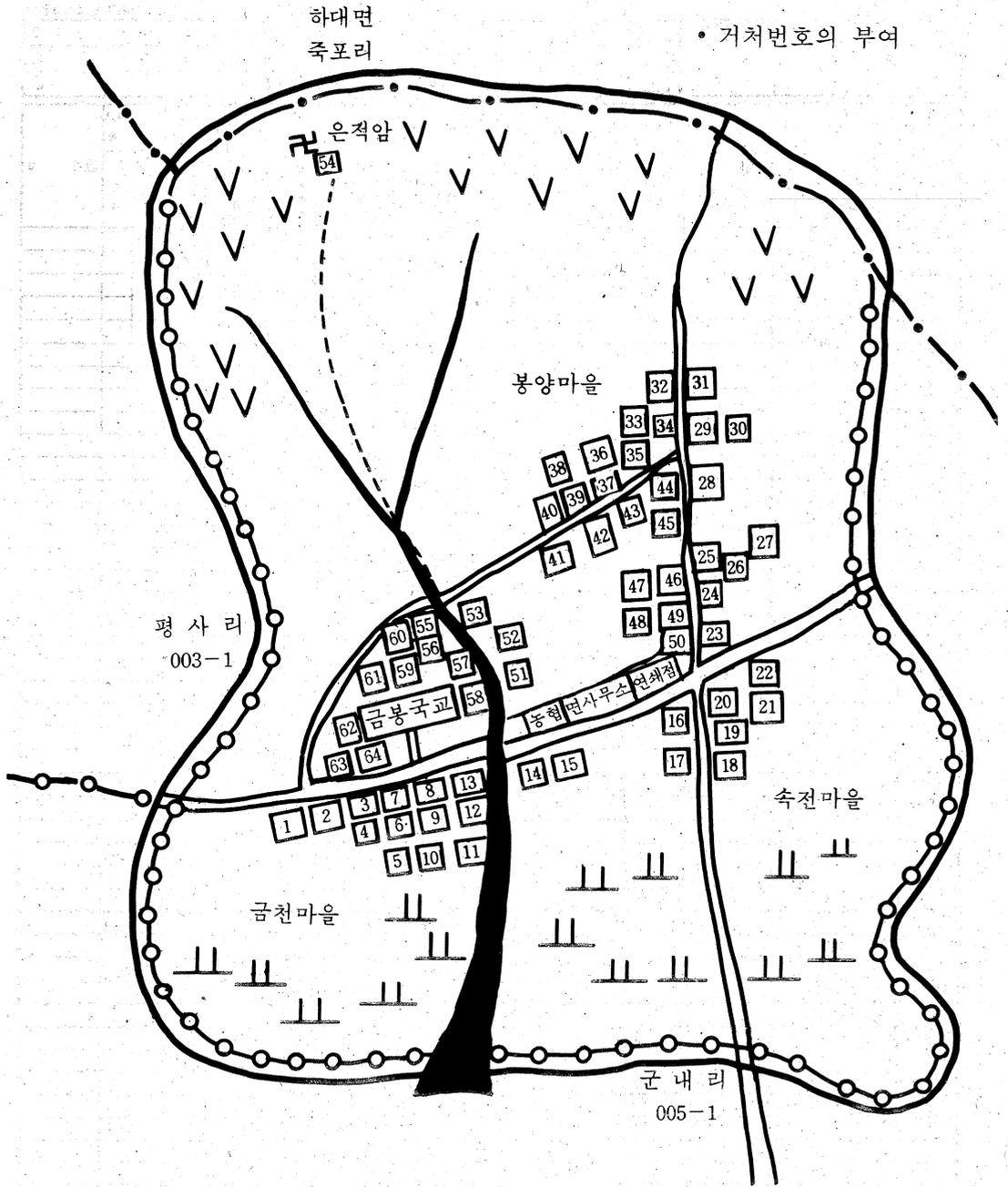
- 경계표시
- 주요지형지물표시



2단계 : 조사원이 작성



3단계 : 조사원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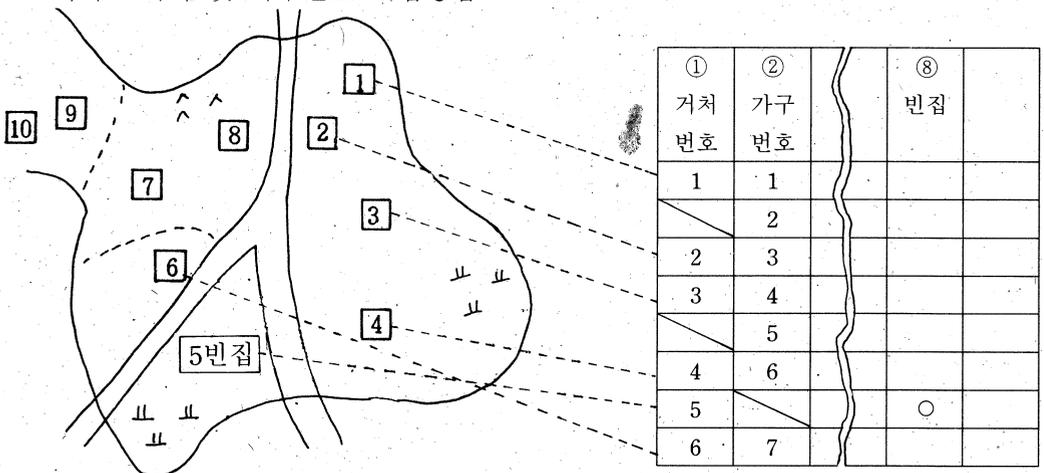
가. 가구의 파악이 끝나면 다시 거쳐번호 순서에 따라 가구명부를 작성한다.

나. 가구명부의 기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난 외 사 항

- (1) 전수·표본 : 담당조사구가 전수 또는 표본조사구인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한다.
- (2) 조사구 소재지 : 조사구의 소재지명을 동읍면 단위까지 기입한다.
- (3) 조사구번호 :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 (4) 일반조사표 매수 : 실지조사에 소요된 일반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 (5) OMR조사표 매수 : 일반조사표에 의해 이기 작성된 OMR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 (6) 가구명부 매수 : 1매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매중 1매」, 2매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첫째장은 「2매중 1매」 둘째장은 「2매중 2매」로 기입한다.

예시 : 거쳐 및 가구번호 기입방법



(주의) : 빈집이라 하더라도 거쳐번호는 기입해야 하며 일반조사표와 OMR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난 내 사 항

(1) ① 거처번호 : 거처번호를 앞의 예시와 같이 기입한다.

(2) ② 가구번호

(가) 한 거처내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여 거처번호와 관계없이 순서에 따라 예시와 같이 일련번호를 계속 부여한다.

(나) 하나의 거처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주가구의 가구번호는 거처내에서 맨 먼저 부여하여야 한다.

(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내에 있는 일반 가구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있는 보통 조사구에 포함 조사한다. 기숙사나 특수사회시설 담당 조사원이 그러한 시설이 들어있는 보통조사구를 같이 조사하지 않을 경우 시설내에 있는 일반가구를 누락하기 쉬우므로 발견 즉시 담당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빈집일 경우에는 가구번호란에 사선(\)을 긋는다.

(3) ③주소

거처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통반, 번지까지 자세히 기입한다. 단, 동일거처내에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가구만 기입하고 동거가구는 사선(\)을 긋는다. 특히 군부지역의 「리」 명은 법정리를 기입하여야 한다.

(4) ④가구주 또는 대표자 성명

가구주라 함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 이때, 가구주의 성은 반드시 한자

로, 본관은 한글로 기입하되 동음이본(同音異本)일 경우에는 한자로 기입한다.
학력은 대졸, 고졸, 대퇴와 같이 기입한다.

(5) ⑤가구원수

가구별 가구원수를 파악하여 기입한다. 이는 본조사시 일반조사표 소요량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6) ⑥가구의 종류

해당 란에 ○표시한다.

(7) ⑦거처의 종류

(가) 주가구만 해당란에 ○표시하고, 동거가구는 사선(\)을 긋는다. 여기서 「주
가구」란 주인가구 또는 대표가구를 말한다.

(나) 빈집의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란에 ○표시한다. 따라서 ①거처번호란의 총
거처수와 이 난의 합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8) ⑧빈집

(가) 조사구역내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
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으로서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모두 포함한다.

(나) 과거에 살다가 비워 놓은 집인 경우, 대폭적인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
든지 다시 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만 빈집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는 조사하지 않는다.

(9) ⑨농·어가 구분

(가) 다음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표시한다.

(나) 농가나 어가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선(\)을 긋는다.

(다) 한 가구가 농업활동과 어업활동을 다같이 하는 경우 농가와 어가란에 둘다
○표시를 한다.

(10) 비 고

(가) 가구의 특성, 재방문 약속일자 등을 기록한다.

(나) 기숙시설 조사구나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일 경우에는 그 시설의 명칭과 수용인원수를 기입한다.

농가와 어가의 정의

가. 농 가

가구주나 가구원중에서 다음과 같은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 (1) 경지 300평 이상을 경작 또는 경영하는 가구
- (2)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을 이용한 시설작물을 각각 100평, 과수나 묘목을 각각 200평이상 재배하는 가구
- (3) 소, 말 등 대가축 1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경마, 달구지용 소 등 운반용 제외)
- (4) 돼지, 산양, 면양 등 중가축 3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 (5) 토끼 등 소가축 40마리 이상,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가금 4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 (6) 꿀벌 5군(群) 이상을 양봉하는 가구
- (7) 위의 각호별 규모이외의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어 가

어가라 함은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조사실시전 1년간에 1개월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의 채포나 양식업을 자영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또는 자기 어업을 하지 않고 타인이 경영하는 수산 동식물의 채취나 양식업을 하는 사업체에 1년간 1개월 이상 고용된 어업종사자가 있는 가구

3. 가구일련번호표(스티커) 첨부

가. 가구확인이 끝나면 조사구 번호와 가구일련 번호를 기입한 가구일련 번호표를 가구수만큼 대문에 붙인다.

나. 빈집에는 가구일련번호표에 X표시를 한 후 첨부 한다.

VI. 본조사

1. 조사기간

1990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가구를 방문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2. 응답자 선정

조사원은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가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 중에서 응답자를 선정하여 면접하여야 한다. 단, 가구 내에 동거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면접하여야 한다. 부재중인 가구나 적합한 응답자가 없는 가구는 조사원 연락전을 활용하여 재방문 일자를 약속한다.

3. 누락 또는 전입·전출가구 처리

본조사 당시 누락 또는 전입된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가구명부에 추가기입하고 전출된 가구가 있는 경우 가구명부의 비고란에 전출일자를 기입하고 적색 볼펜으로 복선(=)을 긋는다. 단, 전입된 가구는 이사하기 전의 상주지에서 조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일반조사표의 기입요령

가. 일반조사표는 흑색 볼펜으로 기입한다.

나. 일반조사표는 1가구를 단위로 하여 조사한다. 다만, 6명 이상의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2매 이상의 조사표를 사용하며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첫째장에만 기입하고 둘째장 이후는 사선(\)을 긋는다.

다. 집단가구는 조사표 1매당 5명씩 계속하여 작성한다.

Ⅶ. 조사항목별 기입방법 및 작성기준



① 성 명	② 가구주와의 관계
-------	------------

	1	
성 명		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을 빠짐 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가구주부터 기입하여 주시고 가구원 히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가구주와의 관계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장남」, 「장남의 장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1) 응답자에게 먼저 가구주를 묻고 그 다음 가구원의 이름을 답변하는 대

로 기입한다(Ⅰ란은 가구주 성명을 반드시 기입한다).

(2) 응답자가 답변한 사람이 조사대상에 해당되는지 또는 누락된 사람(특히 유아, 동거인 등)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름이 없는 어린 아이는

빠지기 쉬운 사람	잘못 포함되기 쉬운 사람
1. 갓난애(특히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유아) 2. 가정부, 하숙인, 노인, 선박·항공기·철도·버스(시외·관광) 탑승 승무원, 잠시 여행중인 가족, 방위병, 병원에 입원중인 가족	1. 친정에 잠시 다니러 온 딸 2. 타지에서 학교 다니는 가족 3. 외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가족 4. 타지에서 취업하고 있는 가족 5. 병역의무자로서 입대한 군인 (지원 입대한 여군 포함)

「김○○」으로 기입한다.

- (3)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가구주가 적절히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4) 집단가구는 집단가구원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
- (5)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움	음	들	림
장녀, 차녀, 삼녀			딸
장남, 차남, 삼남		아	들
장남의 장남		손	자
차남의 삼녀		손	녀
장남의 처		며	느 리
삼남의 처		며	느 리

- (6) 일반가구내에서의 동거인은 자가용 기사, 정원사, 가정부, 영업사용인 등과 같이 구체적인 관계로 기입한다. 단,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예 : 자취 학생 및 종업원 등)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가구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가구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기입한다.

사례연습

사례 1	「박길동」의 가족은 배우자, 타지에서 학교다니는 아들, 군에 있는 아들과 아직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딸이 한명 있다. 이 가구의 조사 대상 가구원 은 몇명인가?
해 설	3명(가구주, 배우자, 딸)

사례 2	가장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경우 그 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할 것인가?
해 설	그렇다.
사례 3	동거하고 있는 수명의 종업원이 있는 가구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해 설	동거인이 5명 이하일 경우 숙식을 같이 하는 경우 주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조사하고 숙식을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독립된 일반가구로 분류하여 별도의 조사표에 조사하며, 6명 이상일 경우에는 동거인만의 집단가구로 분류하여 별도의 조사표에 조사하며 연장자를 가구주로 기입한다.

③ 성 별

성 별	3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해당번호에 ○표합니다.	1 남	2 여
--------	------------------------------------	-----	-----

- (1) 1, 2중 해당 항목에 ○표시 한다.
- (2) 특히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어린 아이의 경우 성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나 이

- (1) 먼저 집에서 세는 나이를 묻는다. 그냥 나이를 묻는 경우 만나이, 호적상 나이, 주민등록상 나이 등을 응답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집에서 세는 나이를 물어야 한다.

나 이	4-1	세는 나이로 몇 살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입합니다.	살
	4-2	이 분은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무슨 띠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출생년도와 띠를 기입합니다.	년도 띠
	4-3	실제로 집에서 쇠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월 일
		양력 음력 구분	1 양력 2 음력
4-4	이 난은 앞면에 있는 만나이 환산표를 보시고 정확한 만나이를 계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만 살	

(2) 다음에 출생년도를 묻고 띠를 물어 기입한다.

(3) 그 다음 집에서 쇠는 생일을 묻고 음력인가 양력인가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4) 세는 나이와 출생년도가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재질문을 하여 수정보완한다.

(5) 최선을 다해서도 4가지 사항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2가지 이상 일치하는 것을 택하고, 모두 일치되지 않는 경우 우선 순위를 띠, 세는 나이, 출생년도 순으로 정하여 만나이를 환산한다. 만나이 환산표는 일반조사표를 참조한다.

사례연습

사례 1	「최병현」이라는 사람은 1990년 11월 1일 현재 세는 나이는 44살이고, 돼지띠이며, 1947년생,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 11월 12일 일때 「최병현」의 나이는 만 몇살인가?
해 설	42세

사례 2	「강희복」이라는 사람은 1990년 11월 1일 현재 세는 나이가 44살이고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 3월 5일 일때 「강희복」의 나이는 만 몇 살인가?
해 설	43세

⑤ 출생지

출 생 지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출생 당시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합니다. ※ 북한의 경우에는 출생당시의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되 시·도명 앞에는 북한을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table border="1"> <tr> <td>시도(국)</td> </tr> <tr> <td>구시군</td> </tr> </table>	시도(국)
시도(국)			
구시군			

(1) 본적지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실제로 태어난 곳을 조사한다. 다만, 산모가 출산을 병원, 친정 등에서 하였

을 때에는 산모의 상주지를 출생지로 본다.

- (2)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출생지의 현행 행정구역을 기준한다.
- (3)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에 해당되면 아래 시도, 구시군을 기입하지 않는다.
- (4) 출생지가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과 다른 경우에는 시도, 구시군명을 물어 기입하고 출생지가 외국인 경우는 국가명을 기입한다. (단, 전주시나 안양시와 같이 구(출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명은 전라북도 및 경기도이며 구시군명은 전주 ○○구, 안양 ○○구를 기입한다).
- (5)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당시의 북한지역 시도와 구시군명을 기입하되, 시도명 앞에 북한이라고 기입한다.

사례연습

사례 1	현재는 서울 영등포에 살고 1977년에는 서울 관악구 노량진 1동에 살았던 「이갑순」 산모는 그 당시 친정인 수원에서 「강을동」이라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때 「을동」군의 출생지는 어디인가?
해설	「강을동」군의 태어난 곳은 수원이지만 산모의 상주지는 서울 관악구 임. 그러나 관악구 노량진 1동은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동작구 노량진 1동으로 바뀌었으므로 「강을동」군의 출생지는 동작구가 된다.

⑫ 1년전 거주지 ⑬ 5년전 거주지

1년전 거주지 ⑫	지금으로부터 1년전(89.11.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고 외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이름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5년전 거주지 ⑬	지금으로부터 5년전(85. 11. 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고 외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이름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1) ⑫1년전 거주지는 만 1세 이상, ⑬5년전 거주지는 만 5세 이상의 사람에게 묻는다.

(2) ①현재 살고 있는 집
②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에

해당되면 아래 시도·구시군을 조사하지 않는다.

- (3) 집을 떠나 군에 임대한 기간은 그가 속해 있던 가구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4) 취업, 취학 등으로 집을 떠나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사는 경우에는 다시 돌아온 때부터 그가 속해 있던 가구와 같이 상주한 것으로 조사한다.
- (5)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 (6) 전주시나 안양시와 같이 구(출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명은 전라북도 및 경기

도이며 구시군명은 전주 ○○구, 안양 ○○구를 기입한다.

<p>사례 1</p> <p>해설</p>	<p>「박갑석」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1987년 3월 1일 군에 입대하였다가 1990년 2월 1일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는데 본가는 이미 1988년 12월에 서울 종로구로 이사를 하였다. 이때 「박갑석」의 1년전 거주지는 어디인가?</p> <p>군복무기간은 「박갑석」이 속했던 가구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 1989년 11월 1일 이전에 본가가 서울 종로구로 이사하였으므로 1년전 거주지는 서울 종로구로 기입한다.</p>
<p>사례 2</p> <p>해설</p>	<p>「김을석」은 1988년 6월~1990년 7월까지 사우디에서 건설노무자로 취업한 적이 있다. 이때 「김을석」의 1년전 거주지는 어디인가?</p> <p>취업, 취학 등으로 집을 떠난 경우에는 집으로 다시 돌아온 때부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김을석」은 1989년 11월 1일 당시 사우디에 있었으므로 1년전 거주지는 사우디(국)으로 기입한다.</p>

6 교육 정도

<p>교육 정도</p>	<p>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p> <p>※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입합니다.</p> <p>⑥ ※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말합니다.</p> <p>※ 현재 1학기 이상 휴학상태인 경우에는 중퇴에 해당됩니다.</p>	<table border="1"> <tr> <td>1</td> <td>안다녔음(안다니고 있음)</td> </tr> <tr> <td>2</td> <td>국민학교</td> </tr> <tr> <td>3</td> <td>중학교</td> </tr> <tr> <td>4</td> <td>고등학교</td> </tr> <tr> <td>5</td> <td>전문대</td> </tr> <tr> <td>6</td> <td>대학교(교)</td> </tr> <tr> <td>7</td> <td>대학원</td> </tr>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table border="1"> <tr> <td>1</td> <td>졸업</td> </tr> <tr> <td>2</td> <td>재학</td> </tr> <tr> <td>3</td> <td>중퇴</td> </tr> </table> </p>	1	안다녔음(안다니고 있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	6	대학교(교)	7	대학원	1	졸업	2	재학	3	중퇴
1	안다녔음(안다니고 있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																					
6	대학교(교)																					
7	대학원																					
1	졸업																					
2	재학																					
3	중퇴																					

(1) 만 5세 이상의 사람에게 묻는다(만 5세 미만은 모두 사선(\)을 긋는다).

(2) 학교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정규 교육기관을 말한다(타자, 경리, 부기학원 및 입시를 위한 학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말한다.

정 규 학 교	정규학교로 보지 않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학교(공민학교 포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포함) • 고등학교(구제 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전수학교 포함) • 전문대학(초급대학, 구제 전문학교 포함) • 대학이상(각급 사관학교, 신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 • 검정고시 합격자 중입 검정고시 합격(국졸) 고입 검정고시 합격(중졸) 대입 검정고시 합격(고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 미용학원 • 타자, 경리, 부기학원 • 재수생을 위한 입시학원 • 기술학원 • 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 • 노인대학, 주부대학 등 • 평생교육원

⑦통근·통학여부	⑧직장또는학교(원) 주 소	9출발·도착시각	⑩이용교통수단
----------	----------------	----------	---------

- (1) 만 12세 이상의 사람에게 우선 매일 정기적으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 ⑦란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⑧ ⑨ ⑩란을 묻는다.
따라서 ⑦란 「안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⑧ ⑨ ⑩란에 사선(\)을 긋는다.
- (2) ⑧란의 학교(원)란 정규학교 뿐만 아니라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경우도 포함된다.

통근·통학여부	<p>⑦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직장 또는 학교(원)를 다니는 경우에도 통근·통학에 포함됩니다. ② 안한다에 해당되는 분은 ⑧에서 ⑩까지 사선(\)을 긋습니다.</p>	<p>① 한 다 ② 안 한 다</p>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p>⑧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면 직장 또는 학교(원)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② 다른 동읍면으로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곳의 행정구역명을 정확히 기입하시고 모를 경우에는 직장 또는 학교(원)의 이름이나 인근 유명한 건물이름 또는 특징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p>	<p>① 현재 살고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p> <p>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p>
출발·도착시각	<p>⑨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p>	<p>•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p>
이용 교통수단	<p>⑩ 평소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할 때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통근·통학시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번호에 모두 ○표합니다.</p>	<p>① 시 내 버 스 ② 좌 석 버 스 ③ 시 외 버 스 ④ 통근(통학)버 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 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 전 거 ⑨ 도 보 ⑩ 기타 교통수단</p>

- (3) 「⑧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는 직장 또는 학교(원)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말하는 것으로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가 「②다른 동읍면」에 있을 때에도 시도, 구시군, 동읍면의 행정구역명을 물어 기입한다. 단, 전주시나 안양시의 경우에는 출생지 항목에서 기입하는 방식으로 기입한다.
(가) 택시 운전사인 경우

우에는 차고지를 직장 주소로 기입한다.

(나) 열차,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해당사무실을 직장 주소로 기입한다.

(다) 논밭에서 일하는 경우는 ⑦란 「② 안한다」에 해당된다.

(라) 근무처가 일정하지 아니한 행상인들은 지난 1개월간 주로 경제활동을 한 지역을 직장 주소로 기입한다.

(4) ⑩란은 주로 평소 출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주된 것 하나만 ○표시하나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번호에 2개이상 ○표시한다.

(5) 「⑨출발·도착시각」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

각을 기입한다.

사례 1	특정회사,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배우, 음악가, 연예인들의 직장주소는 어디인가?
해설	전속인 경우는 전속된 직장 주소를, 전속이 아닌 경우 최근 가장 많이 출연하는 곳을 직장주소로 기입한다.
사례 2	본사, 지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판매원이나, 통신원 등으로 일한 사람의 직장주소는 어디인가?
해설	주재하고 있는 장소를 직장주소로 기입한다.

⑭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상태	이 분은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1
	<p>※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중 30일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p> <p>그러나 11월 1일 직전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에 해당되고, 11월 1일 직전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에 해당됩니다.</p> <p>※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은 ⑮ 산업부터 기입하시고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분은 ⑮ 산업부터 ⑰ 직업까지 사선(\)을 긋습니다.</p>	<p>[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p> <p>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p> <p>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p> <p>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p> <p>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p> <p>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p> <p>[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p> <p>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p> <p>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p> <p>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p> <p>⑨ 놀고 있다.</p> <p>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p>

(1) ⑭란은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인구」와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만 15세 이상의 사람에게 묻는다(만 15세 미만은 모두 사선(\)을 긋는다).

(2)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중 30일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11월 1일 직전에 취업하여 앞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인 사람은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에 해당되고, 11월 1일 직전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에 해당된다.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 가족으로서 자가영업(개인경영의 농장, 공장, 점포 등)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현금 보수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무급가족종사자)
- 직장이나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11월 1일 현재 천재지변, 자신이나 가족의 병, 여행 등의 사유로 일을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경우
- 계절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 부업 또는 임시적인 일을 가끔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년동안 일한 기간이 30일 이상 되었으며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경우
- 견습중인 노동자나 간호사 등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수일내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현재 상품을 구입하거나 진열장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 수입이 있는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직업훈련원에서 무급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3) 「1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평소에 주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게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일한 사람이 해당된다.

(가) 농사를 짓거나 상점 또는 공장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

(나) 다른 사람 또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

(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며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

(라) 일정한 직업 또는 직장이 없더라도 평소에 주로 수입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행상, 막노동 등)

(마) 임금 또는 봉급을 받지 않으나 가족이 하는 일을 돕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

(바) 영외거주 군인도 여기에 포함하고 ⑮란 「주된 사업내용」에 군인이라고 기입하며 ⑮란 「직장·사업체 이름」 및 ⑯⑰란에는 사선(\)을 긋고 ⑩혼인상태부터 다시 묻는다.

(4) 「②집안 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는 주로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가내 부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시간제로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 가정주부가 가내부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①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에 해당된다.

(5) 「③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는 주간에는 학교에 다니고 야간에만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작품활동이나 연예활동(악사 등)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 주간에는 직장에 다니고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①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에 해당된다.

(6) 「④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히 일을 하고 있다」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회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주로 하면서 틈틈이 부업 또는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7) 「⑤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잠시 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① 자기 또는 가족의 병
- ② 일기불순
- ③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 ④ 사업체(기계고장, 원료 미확보 등)
- ⑤ 기타 상기 이외의 사유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 평소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안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정으로 가끔 일을 한 경우
- 11월 1일 직전에 퇴직한 사람이 퇴직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자가소비 정도의 채소를 경작하는 경우
- 자선사업 등 수입있는 일이 아닌 봉사활동만 하는 경우
-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

(8) 「⑥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과 새로이 취업전선에 나섰으나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해당된다.

(9) 「㉘집안일을 돌보고 있다」는 평소에 취사, 육아, 세탁 등의 가사일만을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가정부, 정원사, 자가용 운전사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㉙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에 해당된다.

(10) 「㉚학교(원)에 다니고 있다」는 정규학교 뿐만 아니라 재수생을 위한 학원, 기술 습득을 위한 각종 학원, 무보수로 다니고 있는 직업훈련원 등 비정규학교에 다닌 사람도 해당된다.

(11) 「㉛놀고 있다」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기불순 또는 일시적인 병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발령대기 또는 사업준비를 위하여 현재 놀고 있거나, 알맞은 일거리가 없어서 구직을 단념하고 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2) 「㉜기타」는 ㉗, ㉘, ㉚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방위소집 중인 자, 나이가 많아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사람,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사람, 재산수입·이자수입·배당금·송금·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례연습

사례 1	근무처가 결정되어 있으나 조사기간까지 아직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경제활동 상태는?
해 설	조사기간중에 아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지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

사례 2	사업개시를 위하여 자본 및 자재를 조달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의 경제활동 상태는?
해 설	사업개시의 출발점은 본연의 업무를 개시하는 때부터이며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례 3	조사기간 중 수도 또는 원동기의 고장(사업체내 사정)으로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경제활동 상태는?
해 설	일시 휴직으로 잠시 이직하고 있는 상태는 「⑤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에 해당된다.
사례 4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 영세민 취로사업 등으로 제방보수 등 부락공동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된 노동을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 설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의 여부는 정부로부터 노임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사례 5	예금의 이자 또는 주식의 배당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 설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례 6	접대부와 위안부의 하는 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 설	접대부의 접대행위는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위안부의 행위는 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접대부의 행위는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다. 불법행위인 위안부의 행위, 밀수행위, 도박 등은 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p>사례 7</p> <p>해 설</p>	<p>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개월 동안만 아르바이트 일을 한 경우 「수입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p> <p>평소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1년간 30일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만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단, 그 학생이 금년만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p>
<p>사례 8</p> <p>해 설</p>	<p>근로학생이 주간에 일하고 있고, 야간에 통학하는 경우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하는지 또는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해야 하는지?</p> <p>본인이 어느 것을 하느냐에 달렸지만, 일반적으로 주간에 근무하고, 밤에 학교 다니고 있다면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p> <p>단, 학생이 야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간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p>

⑮ 산 업	⑯ 종사상의 지위
-------	-----------

(1) ⑮란의 「산업」은 ⑭란의 ①, ②, ③, ④, ⑤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된 사업 또는 직장이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알기 위하여 묻는 항목이다.

가. 주된 사업내용

조사대상자가 속한 사업체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즉 상품을 만드는 곳인지, 상품을 만들면 어떤 종류의 상품을 만드는 곳인지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산 업 판 단 ⑮	이 분이 다니시는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 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직장명이나 사업체명이 있다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단 산업 기입 예를 참조하시고 주된 사업 내용을 기입할 때에는 생산 품목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주된 사업 내용 직장·사업체 이름
종 사 상 의 지 위 ⑯	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 사하고 있습니까? 상단의 종사상의 지위 기입 예를 참 조하여 기입합니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예 : 포목소매상, 식당, 책
상을 만든다(조사표
예시참조).

나. 직장·사업체 이름
조사대상자가 일하는
직장, 회사, 공장이름
을 쓴다(○○ 주식회

사 본사, (주)○○ 사 수원공장 등). 상호가 없이 장사를 하는 경우 또는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사업장소를 기입한다(논, 밭, 시장, 농장, 목장, 지하상가 등).

(2) ⑯란 「종사상의 지위」는 ⑮란의 하고 있는 사업 또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 구체적
으로 어떻게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항목이다.

①고용원을 둔 사업주

한사람 이상의 유급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무급가족종
사자와 자기 혼자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여기에 분류해서는 안된다.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고용원이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자를 말
하며, 일정하게 어느 직장이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장소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

③무급가족종사자

일정한 보수없이 자기가족(동일가구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한 자(1
년중에 30일이상)를 말한다. 따라서 혈연관계에 있으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일을 도운 경우나 같은 가구내의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
급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금·봉급근로자

일정한 직장에 소속되어 봉급 및 급료를 받는 사람으로서 직장근로자, 가사사용인 등을 말한다.

직장근로자라 함은 공무원,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전무, 상사, 감사 등)과 같이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순히 거마비만 받는 비상근 임원은 제외한다.

가사사용인이라 함은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가정을 돌봐주고 급료를 받는 사람(가정부, 정원사, 자가용 운전사 등)을 말한다.

사례연습

<p>사례 1</p> <p>해 설</p>	<p>자기 자본으로 학교를 건립하고 학교 교장이며 관리인이다.</p> <p>종사상의 지위는?</p> <p>자기자본을 출자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재단이사장 또는 학교 교장으로 종사하고 있다면 “임금·봉급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p>
<p>사례 2</p> <p>해 설</p>	<p>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A는 회사차를, B는 개인 택시를, C는 영업용 택시를, D는 사장의 승용차를 운전하되 회사봉급을 받고, E는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주인인 개인한테서 봉급을 받을 때 종사상의 지위는?</p> <p>A는 임금·봉급근로자, B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C, D, E는 임금·봉급 근로자</p>

⑰ 직 업

직 업 ⑰	이 분은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 및 직책도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단의 직업 기입 예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말은 일의 종류 _____ 부서 및 직책 _____
	(1) ⑰란은 일정한 직장에 소속되어 급료를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일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2) 말은 일의 종류는 ⑩란 해당자 모두가 기입되어야 하며 실제 하고 있는 일은 누가 읽어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한번의 질문으로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어서 기입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공무원, 회사원, 공원, 사무원 등 막연한 직업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예 : 양품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음, 경리사무를 보고 있음, 타자를 치고 있음, 나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음

(3) 부서 및 직책은 직업의 종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서는 부, 국, 과, 계, 반 등을 기입하고 직책에는 부장, 국장, 상무, 전무, 사장, 과장, 계장, 공장장, 반장 등을 기입한다. ⑩란의 ①, ②, ③해당자로서 부서 및 직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선(\)을 긋는다.

예 : (부서 및 직책) (부서 및 직책)
 개발부 개발과장 경리과 경리계장

⑮ 산 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 업
<p>주된 사업내용</p> <p>야채 속성 재배</p> <p>직장·사업체 이름</p> <p>비블하우스</p>	<p>④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p>③ 무급 가족 종사자</p> <p>④ 임금·봉급 근로자</p>	<p>말은 일의 종류</p> <p>온실에서 야채를 속성 재배하고 있음</p> <p>부서 및 직책</p>
<p>주된 사업내용</p> <p>미장일</p> <p>직장·사업체 이름</p> <p>집집을 돌면서</p>	<p>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p>③ 무급 가족 종사자</p> <p>④ 임금·봉급 근로자</p>	<p>말은 일의 종류</p> <p>시멘트 미장일을 하고 있음</p> <p>부서 및 직책</p>
<p>주된 사업내용</p> <p>무역업</p> <p>직장·사업체 이름</p> <p>한정물산주식회사</p>	<p>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p>③ 무급 가족 종사자</p> <p>④ 임금·봉급 근로자</p>	<p>말은 일의 종류</p> <p>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음</p> <p>부서 및 직책</p> <p>시장실 대표이사</p>
<p>주된 사업내용</p> <p>견직물 원단을 생산</p> <p>직장·사업체 이름</p> <p>동방기업사</p>	<p>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p>③ 무급 가족 종사자</p> <p>④ 임금·봉급 근로자</p>	<p>말은 일의 종류</p> <p>회사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음</p> <p>부서 및 직책</p> <p>총무부 운전기사</p>
<p>주된 사업내용</p> <p>벼농사</p> <p>직장·사업체 이름</p> <p>논</p>	<p>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p>③ 무급 가족 종사자</p> <p>④ 임금·봉급 근로자</p>	<p>말은 일의 종류</p> <p>나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음</p> <p>부서 및 직책</p>

⑮ 산 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 업
주된 사업내용 기관차 부품인 스프링을 생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맡은 일의 종류 선반을 조각하고 있음
직장·사업체 이름 평화공업 주식회사		부서 및 직책 선반부 기능직 5등급
주된 사업내용 아동복 제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맡은 일의 종류 일을 분담해 주고 제품을 검사하고 있음
직장·사업체 이름 한일섬유주식회사		부서 및 직책 봉제부 반장

⑪ 혼인상태

혼 인 상 태	⑪ 이 분은 결혼하였습니까? 사실상의 혼인상태에 ○표합니다.	① 미 혼 ② 유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	--------------------------------------	----------------------------

(1) 만 15세 이상의 사람에게 묻는다(만 15세 미만은 모두 사선(\)을 긋는다).

(2)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한다.

① 미 혼 : 이제까지 결혼한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유배우 : 결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③ 사 별 : 결혼했으나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경우로서 6·25때 배우자가 실종 또는 납치된 후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별로 간주한다.

④ 이 혼 :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경우

⑱ 초혼연령

초혼연령 ⑱	결혼은 세는 나이로 몇 살 때 하였습니까? 결혼한 날짜는 생일전입니까? 후입니까? 결혼은 몇 년도에 하였습니까? 살 때 <input type="checkbox"/> 1 생일전 <input type="checkbox"/> 2 생일후 년도
--------	--	--

(1) 만 15세 이상중 기혼자(유배우, 사별, 이혼)에게만 묻는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의자와 만 15세 이상의 자라도 미혼에 해당되는 자는 사선(\)을 긋는다.

- (2) 초혼연령은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초혼연령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때의 연령에 해당되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다가식을 올린 경우에는 사실상 부부생활을 처음 시작한 연령을 조사하여야 한다.
- (3) 재혼한 사람은 첫번째 배우자와의 결혼연령을 조사하여야 한다.
- (4) “생일전후”란 결혼식 혹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한 날이 본인 생일과 비교하여 생일전인 경우 「1생일전」에 ○표시하고 후일 때는 「2생일후」에 ○표시한다.

⑲ 생존자녀수 ⑳ 사망자녀수 ㉑ 총출생자녀수

- (1) 만 15세 이상중 기혼 (유배우, 사별, 이혼)부인에게만 질문하며 남자와 미혼여자는 사선(\)을 긋는다.
- (2) 기혼부인이 사실상 낳은 자녀수를 기입한다.
- (3) 재혼부인인 경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현 남편과 현 남편의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
- (4) 생존자녀수, 사망자녀수 및 총출생 자녀수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0을 기입한다.

생존 자녀 수 19	부인이 낳은 자녀중 현재 생존해 있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부인이 낳은 자녀중 의지에 나가 생활 하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남	명
		여	명
		계	명
사망 자녀 수 20	부인이 낳은 자녀중 사망한 자녀가 있 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남	명
		여	명
		계	명
총출 생 자녀 수 21	지금까지 부인이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남	명
		여	명
		계	명

가구에
관한 사항 모든 가구에 해당됩니다.

① 거처의 종류

① 거처의 종류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한 종류의 집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⑥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⑧ 사무실 겸용 주택(오피스텔) ⑨ 기타(움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

(1) ①~⑨ 항목 어느 하나의 항에 반드시 ○ 표시한다.

(2) 주택

(가) 주택이란 한 가구(집단가구 제외)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첫째 : 영구건물이어야 하며

둘째 :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셋째 :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으며

넷째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단,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 등 건물은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① 단독주택 :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②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상가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된다).

③ 연립주택 :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개념의 주택으로서 다만, 건물의 높이가 3층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3층의 빌라, 맨션 등은 여기에 해당된다).

④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건물의 연건평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다.

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사업 또는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단독주택인지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인지 판

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주거와 영업행위에 사용되는 면적을 비교하여 주거용이 크면 단독주택으로, 영업용이 크면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으로 분류한다.

(3) 주택이외의 거처

⑥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설비를 제공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단, 주인가구가 여관 등 숙박업소 건물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주 부문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는 「⑤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해당되며 주인가구의 거주부분이 여관건물과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단독주택」에 해당된다.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 수용을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⑧ 사무실 겸용 주택 : 오피스텔을 말한다.

⑨ 기타 : 천막집, 판자집, 움막, 암자, 건설 공사장의 임시막사 등과 같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② 가 구 구 분

② 가구 구분
 택이 이 집을 대표하는 주거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세를 들어 사는 가구들만이 있을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가 주거구입니다.
 ① 주거구 ② 동거가구 ③ 집단가구
 ※ 집단가구는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를 의미하며 ③ 집단가구에 해당되면 ③ ~ ㉔ 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 ① 주 가 구 : ① 한 주택에 한 가구가 사는 경우에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주
 가구로 본다.
- ②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는 물론 주인가구가 주가구가
 되나 주인가구가 없이 세든 가구만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를 주가구로 한다.
- ③ 따라서 이 난에 해당되면 “주택에 관한 사항”란까지 모두 조사하여
 야 한다.
- ② 동 거 가 구 : 주가구 이외의 가구를 말한다. 이 난에 해당되면 아래 “주택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고 사선(\)을 긋는다.
- ③ 집 단 가 구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시설에 있는 사람과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이를 집단가구라 한다. 이 난에 해당
 되면 이하 모든 난에 사선(\)을 긋는다.

③ 점유형태 ㉓ 임 차 료

③ 점유형태 ㉓ 임차료

이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와 영업을 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
 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전세 및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
 나 됩니까?

① 주거 전용	② 영업 겸용	① 자 기 집	→	전세 및 보증금			
		② 전 세		억	천만	백만	십만원
		③ 보증부월세	→	월 세			
		④ 월세(사글세)		백만	십만	만원	
		⑤ 무 상					

※ 사글세의 경우에는 한 달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 ① 자 기 집 : 법률상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 ② 전 세 : 전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전세 및 보증금」란에 전세액을 기입하고 「월세」란은 사선(\)을 긋는다. 독채전세의 경우 전세든 사람이 다시 방을 세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독채전세를 든 가구의 전세액에서 다른 가구에 세를 놓아 받은 전세액 또는 보증금액을 공제하여 기입한다.
- ③ 보증부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각각 기입한다.
- ④ 월세(사글세) :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와 보증금을 내고 매월 보증금에서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세 및 보증금」란은 사선(\)을 긋고 「월세」란에 월세액을 기입한다.
- ⑤ 무 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사 용 방 수

④ 사용 방수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봅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⑥ 6개이상

- (1) 방이란 침실, 서재, 응접실, 한옥의 대청마루 등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가 1.8m(6척)이상, 넓이가 3.3㎡(1평) 이상인 것을 말한다.

- (2)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본다.
- (3) 다락은 방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 사람이 실제 기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으로 보며 단순히 물건만을 쌓아두고 있을 때는 방으로 보지 않는다.
- (4)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는다.

⑤ 식수의 종류

⑤ 식수의 종류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1 상수도	<input type="checkbox"/> 2 간이수도	<input type="checkbox"/> 3 자가수도
<input type="checkbox"/> 4 수동펌프	<input type="checkbox"/> 5 우물	<input type="checkbox"/> 6 기타()

- (1) 거처내에 식수 시설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 가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식수를 조사한다.
- (2) 상수도는 먹는 물을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간이수도는 먹는 물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자가수도는 먹는 물을 개인이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얻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취사연료

⑥ 취사연료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1 연탄	<input type="checkbox"/> 2 유류	<input type="checkbox"/> 3 가스
<input type="checkbox"/> 4 전기	<input type="checkbox"/> 5 임산연료	<input type="checkbox"/> 6 기타()

- 취사용 연료를 두가지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연중 가장 많이 사용한 연료에 ○표시 한다.

⑦ 난방시설

⑦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 | | | |
|-------------------------------------|---|------------------------------------|
| <input type="checkbox"/> 1 재래식 아궁이 | <input type="checkbox"/> 2 연탄 아궁이 | <input type="checkbox"/> 3 연탄 보일러 |
| <input type="checkbox"/> 4 단독 기름보일러 | <input type="checkbox"/> 5 단독 가스보일러 | <input type="checkbox"/> 6 중앙난방보일러 |
| <input type="checkbox"/> 7 전기 보일러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

- (1) 난방시설이 2가지 이상일 때에는 주된 난방시설에 ○표시 한다.
(2) 새마을보일러는 연탄보일러에 ○표시한다.

⑧ 문화시설 및 가재

⑧ 문화시설 및 가재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합니다.

- | | | |
|---------------------------------|------------------------------------|---|
| <input type="checkbox"/> 1 텔레비전 | <input type="checkbox"/> 2 냉장고 | <input type="checkbox"/> 3 세탁기 |
| <input type="checkbox"/> 4 전화 | <input type="checkbox"/> 5 전축(오디오) | <input type="checkbox"/> 6 녹화재생기(V.T.R) |
| <input type="checkbox"/> 7 에어컨 | <input type="checkbox"/> 8 개인용 컴퓨터 | <input type="checkbox"/> 9 자가용 승용차 |

-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를 모두 조사한다.
(2) 세탁기는 세탁을 위한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탈수만을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전화는 교환전화도 포함한다.
(4) 자가용 승용차에는 자가전용만 해당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나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퇴근용 승용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⑨ 전용 시설

⑨ 전용시설

택에서는 다음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 | | |
|------------|-------------------------------|-------------------------------------|
| 1. 부엌 시설 : | <input type="checkbox"/> 단독사용 |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용 또는 없음 |
| 2. 화장실시설 : | <input type="checkbox"/> 단독사용 |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용 또는 없음 |
| 3. 출입구시설 : | <input type="checkbox"/> 단독사용 |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용 또는 없음 |

- 부엌, 화장실 및 출입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독사용」에,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공동사용 또는 없음」에 ○표시한다.

⑩~⑬ 시설 형태

⑩~⑬ 시설형태

단독사용 또는 공동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음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 | | |
|-----------|-------------------------------|--------------------------------|-----------------------------|
| ⑩ 부엌 시설 : |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 <input type="checkbox"/> 입식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⑪ 화장실시설 : |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 <input type="checkbox"/> 수세식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⑫ 목욕 시설 : | <input type="checkbox"/> 온수시설 | <input type="checkbox"/> 비온수시설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⑬ 상수도시설 : |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1) 부엌시설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입식은 조리, 취사, 싱크대 등 입식시설을 장치한 부엌을 말하며 재래식은 구가옥이나 시골 등에서 사용하는 부엌을 말한다.

(2) 화장실시설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을 수세식이라 하고

수세식을 제외한 시설을 재래식이라 한다.

(3) 목욕시설

목욕시설에는 온수시설 여부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4) 상수도시설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영하는 수도를 말한다.

㉔ 월 평균 가구 소득 규모

㉔ 월 평균 가구 소득 규모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월 평균 얼마
나 됩니까? ※ 지난 1년(1989. 11. 1~1990. 10. 31)동안의 총소득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소득세나 상여금은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 | | | |
|---------------------|---------------------|-------------------|
| ① 20만원 미만 | ②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 ③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
| ④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 ⑤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
| ⑥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⑦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
| ⑧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⑨ 300만원 이상 | |

(1) 지난 1년간(1989.11.1~1990.10.31)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인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난 달의 소득이나 현재의 가구원 소득을 기준해서는 안된다.

(2) 가구원 전체 총소득이란, 가족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영업사용인 또는 동거인과 같이 가족이 아닌 사람의 소득은 제외된다.

(3) 소득이 현물(쌀, 보리 및 공업제품 등)일 경우에는 그 현물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4) 실업자가 취업을 해서 12개월이 안된 경우 및 신규취업자의 취업 기간이 12개월이

안된 경우 등은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실제 취업기간(개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본다.

[포함되어야 할 소득]

- (1) 근로소득 : 임금, 급료, 봉급, 상여금, 봉사료(팁), 부업소득 및 기타 근로소득
- (2) 임대소득 : 건물임대소득, 토지임대소득, 자동차임대소득, 특허권 등 기타 임대소득
- (3) 이자 및 배당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4) 사업소득 :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및 점포나 소규모 공장을 경영하는 자영자의 사업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난 다음의 소득
- (5) 이전소득 : 정부 및 사회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에서 정부 및 사회단체에 준 기부금, 분담금 등을 뺀 잔액, 가족·친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가족·친지에 게 준 보조금을 뺀 잔액, 연금

[포함되어서는 안될 소득 또는 수입]

- 복권당첨금, 경조사시 들어온 수입금, 퇴직일시금, 상속재산액, 각종 보험금 탄 것, 재산을 매각한 수입, 저축금 탄 것, 쟁돈 탄 것, 빌려준 돈 회수금



주거구만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이 주택을 대표하는 주거구만 해당됩니다(가구에 관한 사항 ①거처의 종류 ④~⑤에 해당되면서 ②가구 구분란의 ①에 해당되는 가구)

⑭ 외 벽 재 료

⑭ 외벽재료

이 주택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벽재료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재료를 말합니다.

- ① 나무 ② 적벽돌, 돌 ③ 시멘트제품
④ 철근콘크리트 ⑤ 흙, 흙벽돌 ⑥ 기타()

- 외벽재료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재료를 말한다.

① 나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한다.

② 적벽돌, 돌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없이 구운벽돌(적색, 흑색), 오지벽돌(적색, 흑색) 및 돌로 쌓거나 치장한 집을 말한다.

③ 시멘트 제품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없이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굽지 않는 것)등으로 벽을 쌓거나 타일 등으로 치장한 집을 말한다.

④ 철근콘크리트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철근콘크리트로 된 집을 말한다(벽이 적벽돌, 타일, 시멘트 몰탈로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해당됨).

⑤ 흙, 흙벽돌

토담집을 말한다.

⑥ 기 타

상기 어느 항에도 속하지 않는 집을 말한다.

⑮ 지붕 재료

⑮ 지붕재료

이 주택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기와

② 슬레이트

③ 슬래브(슬래브기와)

④ 함석

⑤ 짚, 갈대

⑥ 기타()

• 주택물과 부속건물(사랑채 등)의 지붕재료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물의 지붕재료를 조사한다.

① 기와

시멘트 또는 구운 기와로 덮힌 집을 말한다.

단, 슬래브 위에 기와로 덮은 집은 슬래브에 ○표시 한다.

② 슬레이트

각종 형태의 석면과 시멘트 제품의 슬레이트로 덮힌 집을 말한다.

③ 슬래브(슬래브기와)

평슬래브 및 경슬래브에 기와를 덮은 것을 말한다.

④ 함석

⑤ 짚, 갈대

초가집 등이 포함된다.

⑥ 기타

「①기와」~「⑤짚, 갈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⑩~⑪ 연건평 및 대지 면적

⑩, ⑪ 연건평 및 대지 면적

이 주택의 연건평과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기입하고 대지 면적은 담장 안의 전면적을 기입합니다. ※ 평 또는 m² 중 한쪽만 기입합니다.

⑩ 연건평 평 ⑪ 대지 면적 평
..... m² m²

- (1) 연건평은 주거에 사용되는 부분만 조사한다. 따라서 창고, 외양간 등은 제외하며 지하실은 연건평에 포함시킨다.
- (2) 대지 면적에는 텃밭을 제외한 담내의 전면적을 조사한다. 따라서 담내의 정원 등은 대지면적에 포함시킨다.
- (3)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또는 영업 겸용 주택의 경우 연건평과 대지 면적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조사한다.
- (4)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전용평수를 연건평, 지분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조사한다.

⑫~⑬ 총 방수 및 거주 가구수

⑫, ⑬ 총방수 및 거주 가구수

이 주택에는 방이 모두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보며, 동거가구의 방수 및 가구수도 포함됩니다.

⑫ 총 방 수 개
⑬ 거주 가구수 가구

- (1) 방이란 침실, 서재, 거실 등과 같이 사면이 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주용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총 방수란 이러한 방의 총수를 말한다.

- (2) 다만, 부엌,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현관, 베란다, 로비, 목욕탕, 변소,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고 있는 다락방, 그리고 점포, 사무실 등은 방수에서 제외한다.
- (3) 거주 가구수는 주가구를 포함해서 현재 주택에 들어있는 동거가구를 합산하여 조사한다.

㉔ 건축년도

㉔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1950년 이전 | <input type="checkbox"/> 2 1950년~1959년 |
| <input type="checkbox"/> 3 1960년~1969년 | <input type="checkbox"/> 4 1970년~1979년 |
| <input type="checkbox"/> 5 1980년~1985년 | <input type="checkbox"/> 6 1986년 |
| <input type="checkbox"/> 7 1987년 | <input type="checkbox"/> 8 1988년 |
| <input type="checkbox"/> 9 1989년 | <input type="checkbox"/> 0 1990년 |

- (1)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질문하여 일괄 기입한다.
- (2) 신축시기를 조사하여야 하나 개축 또는 증축 부문이 건물의 1/2이상일 경우에는 개축 또는 증축시기를 신축시기로 본다.
- (4) 수차례 증축하였을 경우에는 신축시기를 기입한다.

㉕ 편의시설수

㉕ 편의시설수

이 주택에는 다음 시설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1. 부엌 : 개
2. 화장실 : 개
3. 출입구 : 개

- 세든 가구가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이집에 설비된 편의시설이 각각 몇 개인지를 조사하여 기입한다.

㉔ 거주 가능 가구수

㉔ 거주 가능 가구수

이 주택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가구

- (1) 현재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㉓ 거주 가구수」 항목과는 달리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었는지를 묻는다.
- (2)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단독사용부엌, 단독사용 화장실, 단독사용 출입구를 모두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VIII. OMR조사표 작성 및 관리 요령

1. 작성요령

가. OMR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2B 연필로 기입해야 한다.

나. OMR조사표에서  내에는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는 난이며,  은 마크 「—」를 하는 난이다.

다. 난외사항의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 매수」,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가구원수」등의 기입란과 난내사항의 「①성명」, 「⑮ 산업」, 「⑱ 직업」란의 기입내용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기한다.

라. 마크란()에 마크 「—」할 때에는 아래의 양호한 마크의 예"처럼 마크테두리 내에 굵고 진하게 마크한다.

• 양호한 마크의 예 : 

*마크의 기본원칙

- ① 연필심 부분은 등글게 깎아서 사용한다.
- ② 마크는 마크테두리의 좌측선에서 우측선까지 한다.
- ③ 농도는 가급적 진하게 한다.

• 불량한 마크의 예

① 가늘거나 희미한 경우 : 

② 짧은 경우 :  ,  , 

③ 마크테두리에서 2mm 이상 벗어난 경우 :  , 

④마크테두리 밖에 표시된 경우 :

⑤잉크, 볼펜 등으로 마크되어 있는 경우 :

⑥가득차게 마크한 경우 :

- 마.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OMR조사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OMR조사표에 이기할 때 숫자 단위별 이기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사. 마크테두리 부분() 밖에 있는 번호에 일절 기입하지 않아야 하고, 낙서나 불필요한 표기가 없어야 한다.
- 아. 조사표 전면의 우측상단 및 우측변의 타이밍 마크 주위에는 낙서나 불필요한 표기가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자. 잘못 마크한 경우에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컴퓨터용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일반조사표의 내용을 다시 이기하되 지우개 가루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요령

- 가. 조사표는 환경조건(특히 온도, 습도)이 급격히 변화하기 쉬운 장소(예컨대,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바람이 많이 부는 장소 또는 난방장치의 부근)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 나. 조사표가 물기나 습기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다. 조사표의 모서리 부분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라. 조사표에 구멍뚫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 마. 조사표에 클립이나 지철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조사표에 셀룰로이드 테이프, 라벨, 풀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먼지, 기름, 물방울 등의 오염물이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아. 조사표 보관시 자석 등의 접근은 피해야 한다.

자. 조사표 취급시 가급적 타이밍마크 쪽은 삼가하고, 조사표의 왼쪽 아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하여 조사표를 다룬다.

차. 완성된 OMR조사표는 항상 보호용 비닐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이기요령

가. 전수조사표 난외사항

(1) 주 소

대상 가구의 행정구역명을 기입하며 가구원수가 6명이상일 경우 OMR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주소를 빠짐없이 매장마다 기입한다.

예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310번지」일 경우

주 소	서울특별 [Ⓢ] 시 [Ⓜ] 도 종로 [Ⓜ] 시 [Ⓜ] 구 경운 [Ⓜ] 동 [Ⓜ] 읍 [Ⓜ] 면 (310 번지 동 호) 호 아파트 호
-----	--

로 이기한다.

(2) 조사구번호

조사구번호는 041-1과 같이 4자리 수로 표기되는데 앞 3자리는 그 지역의 조사구 번호이며 마지막 한자리는 그 조사구의 특성번호를 나타낸다. OMR조사표에 이기할 때에는 앞 3자리 수만 조사표에 마크하며 조사구의

특성번호는 마크하지 않는다.

예 : 조사구 번호가 041-1이면

조사구번호	0	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로 기입한다. OMR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하는 가구도 매장마다 이기한다.

(3) 거처번호

거처번호가 24일 경우 OMR조사표에 다음과 같이

거 처 번 호	0	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로 이기하며, 2매 이상 사용할 경우에 매장마다 이기한다.

(4) 가구번호

가구번호가 54일 경우 OMR조사표에 다음과 같이

가구번호	0	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로 이기하며, 2매 이상 사용할 경우에 매장마다 이기한다.

(5) 가구당 조사표매수 및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가구원수가 8명으로 OMR조사표를 2매 사용한다면 첫째장에는

가 구 당	0	백	가구당조사표	0	백	0	1	2	3											
	0	십	매 수 중	0	십	0	1	2	3	4	5	6	7	8	9					
조사표매수	2	일	일련번호	1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하고,

둘째장에는

가 구 당	0	백	가구당조사표	0	백	0	1	2	3											
	0	십	매 수 중	0	십	0	1	2	3	4	5	6	7	8	9					
조사표매수	2	일	일련번호	2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한다.

(6) 가구원수

가구원수가 8명일 경우

가 구 원 수	0	백	0	1	2	3														
	0	십	0	1	2	3	4	5	6	7	8	9								
	8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하며, OMR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할 경우에도 첫째장에만 이기한다.

나. 전수조사표 난내사항

인구에 관한 사항

① 성 명

일반조사표를 보고 성명을 기입한다.

	1	
① 성 명	김 영 수	

② 가구주와의 관계

동·읍·면의 이기·내검요원이 이기하는 사항이므로 조사원은 이기지 않는다.

③ 성 별

남자일 경우

③ 성 별	1. 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여 <input type="checkbox"/>
-------	--	-------------------------------

로 이기한다.

④ 나 이

세는 나이가 37살 이면

4-1 세 는 나 이	백	1 <input type="checkbox"/>				
	십	0	1	2	3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5	6	7	8	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0	1	2	3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5	6	7	8	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로 이기하고,

세는 나이가 5살이면

4-1 세 는 나 이	백	1 <input type="checkbox"/>				
	십	0	1	2	3	4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5	6	7	8	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0	1	2	3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	5	6	7	8	9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로 이기한다.

출생년도가 1954년이고, 띠가 말띠이면

4-2

출 생 년 도	백	18		1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띠	취	소	범	토끼	용
백		말	양	장나비	닭	
개		돼지				

생일이 음력 3월 5일이면

4-3

생 일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십	0	1	2	3
일		0	1	2	3	4
양력·음력구분		1. 양력	2. 음력			

로 이기하고,

만나이가 36세이면

4-4

만 나 이	백	1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하며,

만나이가 4세이면

4-4	만	백	1 □				
	나	십	0	1	2	3	4
			5	6	7	8	9
이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한다.

⑤ 출생지

동·읍·면의 이기·내검요원이 이기하는 사항이므로 조사원은 작성하지 않는다.

⑥ 교육정도

「중학교 2학년에 재학」일 경우에는

⑥ 교육 정도	1	1. 안다졌음 (안다나고있음)	□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로 이기한다.

⑦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⑦ 통근·통학여부	1. 한다	2. 안한다
	□	□
	(⑥번으로 계속)	(⑩번으로 계속)

로 이기한다.

⑧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동·읍·면의 이기·내검요원이 이기하는 사항이므로 조사원은 이기지 않는다.

⑨ 출발·도착시각

집에서 직장으로 출발하는 시각이 오전 7시 33분이고, 직장에 도착하는 시각이 8시 16분이면 분 단위를 사사오입하여 이기한다.

⑨ 출발 · 도착 시각	출 발 시 각	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분	00	10	20	30	40		
			50						
	도 착 시 각	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분		00	10	20	30	40			
		50							

⑩ 이용교통수단

이용교통수단이 ① 시내버스일 경우

⑩ 이용 교통수단	1	2	3
	4	5	6
	7	8	9
	0		

로 이기한다.

⑪ 혼인상태

혼인상태가 “유배우”이면

⑪ 혼 인 상 태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로 이기한다.

가구에 관한 사항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보고 모든 가구에 대하여 이기한다.

OMR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첫째장에만 이기하고 둘째장부터는 이기하지 않는다.

가 구 에 관 한 사 항	① 거 처 의 증 류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9 <input type="checkbox"/>				
	② 가 구 구 분	1. 주가구 <input type="checkbox"/>		2. 동거가구 <input type="checkbox"/>		3. 집단가구 <input type="checkbox"/>		
	③ 점 유 형 태	1. 주거전용 <input type="checkbox"/>		2. 영업경용 <input type="checkbox"/>				
		1. 자기집 <input type="checkbox"/>	2. 전 세 <input type="checkbox"/>	3. 보증부월세 <input type="checkbox"/>	4. 월세(사글세) <input type="checkbox"/>	5. 무 상 <input type="checkbox"/>		
	④ 사 용 방 수	1 개 <input type="checkbox"/>	2 개 <input type="checkbox"/>	3 개 <input type="checkbox"/>	4 개 <input type="checkbox"/>	5 개 <input type="checkbox"/>	6 개 이상 <input type="checkbox"/>	
	⑤ 식 수 의 증 류	1. 상 수 도 <input type="checkbox"/>	2. 간익수도 <input type="checkbox"/>	3. 자가수도 <input type="checkbox"/>	4. 수도펌프 <input type="checkbox"/>	5. 우 물 <input type="checkbox"/>	6. 기 타 <input type="checkbox"/>	
	⑥ 취 사 연 료	1. 연 탄 <input type="checkbox"/>	2. 유 류 <input type="checkbox"/>	3. 가 스 <input type="checkbox"/>	4. 전 기 <input type="checkbox"/>	5. 임산연료 <input type="checkbox"/>	6. 기 타 <input type="checkbox"/>	
⑦ 난 방 시 설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⑧ 문화시설및가재	1. 텔레비전 <input type="checkbox"/>	2. 병 장 고 <input type="checkbox"/>	3. 세 탁 기 <input type="checkbox"/>	4. 전 화 <input type="checkbox"/>	5. 전 축 <input type="checkbox"/>	6. 녹화제생기 <input type="checkbox"/>		
	7. 에어컨 <input type="checkbox"/>	8. 개인용컴퓨터 <input type="checkbox"/>	9. 자가용승용차 <input type="checkbox"/>					
⑨ 전 동 시 설	1. 부 업 시 설	1. 단독으로사용 <input type="checkbox"/>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2. 화 장 실 시 설	1. 단독으로사용 <input type="checkbox"/>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3. 출 입 구 시 설	1. 단독으로사용 <input type="checkbox"/>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시 설 형 태	⑩ 부 업 시 설	1. 재 래 식 <input type="checkbox"/>	2. 일 식 <input type="checkbox"/>	3. 없 음 <input type="checkbox"/>				
	⑪ 화 장 실 시 설	1. 재 래 식 <input type="checkbox"/>	2. 수 세 식 <input type="checkbox"/>	3. 없 음 <input type="checkbox"/>				
	⑫ 목 욕 시 설	1. 온수시설 <input type="checkbox"/>	2. 비온수시설 <input type="checkbox"/>	3. 없 음 <input type="checkbox"/>				
	⑬ 상수도시설	1. 있 음 <input type="checkbox"/>	2. 없 음 <input type="checkbox"/>					

주택에 관한 사항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보고 주택의 주거구만 이기한다.

OMR조사표를 2매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첫째장에만 이기하고 둘째장부터는 이기하지 않는다.

주 택 에 관 한 사 항	⑭외벽재료	<input type="checkbox"/> 1. 나무	<input type="checkbox"/> 2. 적벽돌, 돌	<input type="checkbox"/> 3. 시멘트제품	<input type="checkbox"/> 4. 철근콘크리트	<input type="checkbox"/> 5. 흙, 흙벽돌	<input type="checkbox"/> 6. 기타						
	⑮지붕재료	<input type="checkbox"/> 1. 기와	<input type="checkbox"/> 2. 슬레이트	<input type="checkbox"/> 3. 스투브(스라브기와)	<input type="checkbox"/> 4. 합석	<input type="checkbox"/> 5. 짚, 갈대	<input type="checkbox"/> 6. 기타						
	⑯연 건 평	7 평미만 <input type="checkbox"/>	7~9 <input type="checkbox"/>	9~14 <input type="checkbox"/>	14~19 <input type="checkbox"/>	19~29 <input type="checkbox"/>	29~39 <input type="checkbox"/>	39~49 <input type="checkbox"/>	49~69 <input type="checkbox"/>	69~99 <input type="checkbox"/>	99평이상 <input type="checkbox"/>		
	⑰대지면적	10평미만 <input type="checkbox"/>	10~14 <input type="checkbox"/>	14~19 <input type="checkbox"/>	19~29 <input type="checkbox"/>	29~39 <input type="checkbox"/>	39~49 <input type="checkbox"/>	49~69 <input type="checkbox"/>	69~99 <input type="checkbox"/>	99~149 <input type="checkbox"/>	149~199 <input type="checkbox"/>	199~249 <input type="checkbox"/>	249평이상 <input type="checkbox"/>
	⑱총 방 수	1 개 <input type="checkbox"/>	2 개 <input type="checkbox"/>	3 개 <input type="checkbox"/>	4 개 <input type="checkbox"/>	5 개 <input type="checkbox"/>	6 개 <input type="checkbox"/>	7 개 <input type="checkbox"/>	8 개 <input type="checkbox"/>	9 개 <input type="checkbox"/>	10개 <input type="checkbox"/>	11개 <input type="checkbox"/>	12개이상 <input type="checkbox"/>
	⑲거주가구수	1 가구 <input type="checkbox"/>	2 가구 <input type="checkbox"/>	3 가구 <input type="checkbox"/>	4 가구 <input type="checkbox"/>	5 가구 <input type="checkbox"/>	6 가구 <input type="checkbox"/>	7 가구 <input type="checkbox"/>	8 가구 <input type="checkbox"/>	9 가구 <input type="checkbox"/>	10가구 <input type="checkbox"/>	11가구 <input type="checkbox"/>	12가구이상 <input type="checkbox"/>
	⑳건축년도	1. 1950년 이전 <input type="checkbox"/>	2. 50~59 <input type="checkbox"/>	3. 60~69 <input type="checkbox"/>	4. 70~79 <input type="checkbox"/>	5. 80~85 <input type="checkbox"/>	6. 86년 <input type="checkbox"/>	7. 87년 <input type="checkbox"/>	8. 88년 <input type="checkbox"/>	9. 89년 <input type="checkbox"/>	0. 1990년 <input type="checkbox"/>		
	㉑ 편의 시설	1. 부엌	<input type="checkbox"/> 1 개	<input type="checkbox"/> 2 개	<input type="checkbox"/> 3 개	<input type="checkbox"/> 4 개	<input type="checkbox"/> 5 개	<input type="checkbox"/> 6 개이상					
		2.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1 개	<input type="checkbox"/> 2 개	<input type="checkbox"/> 3 개	<input type="checkbox"/> 4 개	<input type="checkbox"/> 5 개	<input type="checkbox"/> 6 개이상					
		3. 출입구	<input type="checkbox"/> 1 개	<input type="checkbox"/> 2 개	<input type="checkbox"/> 3 개	<input type="checkbox"/> 4 개	<input type="checkbox"/> 5 개	<input type="checkbox"/> 6 개이상					
㉒거주가능 가 구 수	1 가구 <input type="checkbox"/>	2 가구 <input type="checkbox"/>	3 가구 <input type="checkbox"/>	4 가구 <input type="checkbox"/>	5 가구 <input type="checkbox"/>	6가구이상 <input type="checkbox"/>							

다. 표본조사표 난외사항

- (1) 주소, (2) 조사구번호, (3) 거처번호, (4) 가구번호, (5) 가구당 조사표 매수 및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6) 가구원수 기입방법은 전수조사표 난외사항 이기방법과 같다.

라. 표본조사표 난내사항

인구에 관한 사항

성명

전수조사표 성명 기입방법과 같다.

⑫ 1년전 거주지 ⑬ 5년전 거주지

동·읍·면의 이기·내검요원이 이기하는 사항이므로 조사원은 이기하지 않는다.

⑭ 경제활동상태

「1」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일반조사표에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⑭ 경제활동상태	1	2	3	4	5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7	8	9	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로 이기한다.

⑮ 산 업

「주된 사업 내용」과 「직장·사업체이름」란을 일반조사표에서 기재된 대로

⑮ 산 업	주된 사업 내용	전직물 원단을 생산				
	직 장 · 사업체 이름	동방기업사				
	※ 통 계 국 기 입 란	대	0 □	1 □	2 □	3 □
		5 □	6 □	7 □	8 □	9 □
	중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소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이기하며, 부호이기는 경제기획원에서 하므로 조사원이나 이기·내검요원은
이기하지 않는다.

⑯ 종사상의 지위

「1」고용원을 둔 사업주라고 일반조사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⑯ 종 사 상 의 지 위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 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 임금·봉급 근로자

로 이기한다.

⑰ 직 업

「말은 일의 종류」와 「부서 및 직책」을 일반조사표에 기재된 대로 이기하며,

⑰ 직	말은 일의 종류	회사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음						
	부서 및 직책	총무부 운전기사						
업	※통계국기입란	대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X □
		중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X □	
	소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X □	

부호기업은 경제기획원에서 하므로 조사원이나 이기·내검요원은 이기하지 않는다.

⑱ 초혼연령

초혼연령이 세는 나이로 29세, 혼인시기가 생일후였으며, 초혼년도가 1978년도 였다면

⑬ 초혼연령	십	1	2	3	4	5
	일	0	1	2	3	4
		5	6	7	8	9
	1. 생일전		2. 생일후			
⑭ 초혼연령	백	18	1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한다.

⑰ 생존자녀수	⑱ 사망자녀수	㉑ 총출생자녀수
---------	---------	----------

생존자녀수와 사망자녀수의 합계는 총출생자녀수와 일치한다.

사망자녀수가 없을 때에도 반드시 해당 마크란에 이기한다.

예를 들어 생존자녀수가 3명, 사망자녀수가 0명, 총출생자녀수가 3명이라면

⑰ 생존자녀수 계	십	0	1			
	일	0	1	2	3	4
		5	6	7	8	9
⑱ 사망자녀수 계	십	0	1			
	일	0	1	2	3	4
		5	6	7	8	9
㉑ 총출생자녀수 계	십	0	1			
	일	0	1	2	3	4
		5	6	7	8	9

로 이기한다.

가구에 관한 사항

어떤 가구의 전세 및 보증금이 2,350만원, 월세가 35만원, 그리고 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187만원이라고 한다면

	전 세 및 보 증 금					월 세						
	억	0	1	2	3	4	백 만	0	1	2	3	4
㉓ 임 차 료	천 만	0	1	2	3	4	백 만	0	1	2	3	4
		5	6	7	8	9		5	6	7	8	9
	백 만	0	1	2	3	4	십 만	0	1	2	3	4
		5	6	7	8	9		5	6	7	8	9
㉔ 월 평 균 가구소득규모	십만원	0	1	2	3	4	만 원	0	1	2	3	4
		5	6	7	8	9		5	6	7	8	9
		1	20만원 미만	2	20만원~30만원미만	3	30만원~50만원미만	4	50만원~70만원미만			
		5	70만원~100만원미만	6	100만원~150만원미만	7	150만원~200만원미만	8	200만원~300만원미만			
	9	300만원이상										

로 이기한다.

IX. 조사표류 검토, 정리 및 제출

1. 일반조사표 검토 및 정리

가. 일반조사표의 수량 확인

조사가 완료되면 내용확인을 하기전에 일반조사표의 수량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조사구내의 가구수+가구원 6명이상 가구수=총조사표 매수

- 5명까지 : 1매
- 5명~10명 : 2매
- 11명~15명 : 3매

나. 일반조사표 확인내용

(1) 난외사항

(가) 주 소

통반까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조사구번호

가구명부의 조사구번호와 대조한다.

(다) 거처번호

가구명부의 거처번호와 대조한다.

(라) 가구번호

가구명부의 가구번호와 대조한다. 한 거처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 주가구의 가구번호가 맨 먼저 부여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가구당 조사표 매수

1가구에 조사표 매수가 1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조사표마다 매수표시

가 되었는지 확인한다.(예 : 가구원수가 8명이상인 경우 2매중 1매, 2매
중 2매)

(바) 가구원수

1가구에 살고 있는 가구원수가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사) 응답자·조사원 성명 및 서명

응답자 및 조사원 성명과 서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난내사항

인구에 관한 사항

① 성 명

- 성명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1990.11. 1이후 출생자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기입되어 있으면 삭제한다.

②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가 가구원 일련번호 ①란에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가구주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예 : 장녀, 차녀, 장남 등으로 기입
- 일반가구내의 동거인이 승용차기사, 정원사, 가정부, 영업 사용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성 별

- 남·여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표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④ 나 이

- 연령환산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 기입사항에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다.

⑤ 출생지

- 출생지가 「다른 구시군」일 때 시도(국), 구시군 명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북 출생자의 경우 시도(국)명 앞에 북한이라고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⑫ 1년전 거주지

⑬ 5년전 거주지

- ⑫란은 만 1세 미만자(1989.11. 1 이후 출생자)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⑬란은 만 5세 미만자(1985년 11. 1이후 출생자)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다른 구시군」일 경우 시도, 구시군 명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교육정도

- 만 5세 미만자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만 5세 이상자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며, 졸업, 재학, 중퇴란에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다.
- 연령과 학력관계는 다음 표를 비교하여 현재 조사된 사항이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 처리한다.

학 력 별	졸업연령	재학연령	중퇴연령
국민학교	11세이상	6세이상~12세미만	재학연령 참조
중 학교	14 √	11 √ ~15 √	√
고등학교	17 √	14 √ ~18 √	√
전문대	19 √	17 √ ~20 √	√
대학(교)	21 √	17 √ ~24 √	√
대학원	23 √	21 √	√

⑦통근·통학여부	⑧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⑨출발·도착시각	⑩이용교통수단
----------	----------------	----------	---------

- 만 12세 미만의 사람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여 기입되었을 경우에는 ⑦, ⑧, ⑨, ⑩ 항목에 사선(\)을 긋는다.
- ⑦란 「1한다」 해당자는 ⑧, ⑨, ⑩란 기입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되었을 때에는 재방문하여 조사한다.
- ⑧란 「2다른 동읍면」에 ○표시되었을 경우 시도, 구시군, 동읍면의 행정구역 명칭의 기입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시 재방문하여 조사 기입한다.

⑭경제활동상태	⑮산업	⑯종사상의 지위	⑰직업
---------	-----	----------	-----

- 만 15세 이상의 사람은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므로 ④란 나이항목의 연령환산에 의한 만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⑭란의 ①, ②, ③, ④, ⑤ 해당자는 ⑮, ⑯, ⑰란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⑥ ⑦ ⑧ ⑨ ⑩ 해당자는 사선(\)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 직업군인은 「⑮산업」항목의 주된 사업 내용만 기입하고 ⑮란의 「직장·사업체 이름」 ⑯, ⑰란은 사선(\)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 ⑯란 「종사상의 지위」가 ①, ②, ③인 경우에는 ⑰란의 「부서 및 직책」에 사선(\)이 그어져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한다.

⑪ 혼인 상태

- 만 15세 미만의 사람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구주와의 관계」란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⑱ 초혼연령

- 만 15세 미만의 사람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⑲ 생존자녀수	⑳ 사망자녀수	㉑ 총출생자녀수
---------	---------	----------

- 만 15세 이상중 기혼여자만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⑲란+⑳란=㉑란이 되는지 확인한다.

가구에 관한 사항

- 모든 가구가 조사되어야 하므로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다.
- 집단 가구는 ①거처의 종류, ②가구 구분까지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첫째장에는 가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둘째장 이후에는 사선(\)이 그어졌는지 확인한다.
- 「㉓임차료」 항목에서 자기 집이 아닌 경우의 「전세 및 보증금」과 「월세」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㉔ 한달 평균 가구 소득 규모」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주택에 관한 사항

- 「①거처의 종류」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②가구구분」의 주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만 조사되었는지, 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둘째장 이후에는 사선(\)이 그어졌는지 확인한다.

2. OMR조사표 검토 및 정리

가. 조사표의 수량 확인

OMR조사표 매수가 일반조사표 매수의 2배가 되는지 확인한다.

나. 조사표 이기내용 확인

(1) 난외사항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 매수,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가구원수가 누락된 조사표가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누락된 조사표가 있으면 일반조사표를 찾아 이기한다. 가구원수가 6명이상일 경우 OMR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매장마다 난외사항이 이

기되어야 한다 (가구원수는 첫째장에만 이기).

(2) 난내사항

①성명, ③성별, ④나이, ⑥교육정도, ⑦통근·통학여부, ⑨출발·도착시각, ⑩이용교통수단, ⑪혼인상태, ⑭경제활동상태, ⑮산업, ⑯종사상의 지위, ⑰직업, ⑱초혼연령, ⑲생존자녀수, ⑳사망자녀수, ㉑총출생자녀수 및 가구·주택에 관한 사항중 이기가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장 이후에는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이기 안함).

3. 기타 표류 검토 및 정리

가. 가구명부 대조 보완 및 편철

준비조사시 작성한 가구명부는 본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기간중 전출, 누락 등에 의하여 가구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표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보완이 끝나고 나면 동읍면별로 편철한다.

나. 조사구역도 수정 보완

준비조사시 작성한 요도는 본조사 완료후 요도상의 변동사항(거처의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수정 보완한다.

다. 일반조사표 편철

일반조사표는 조사구별로 편철하며 마모,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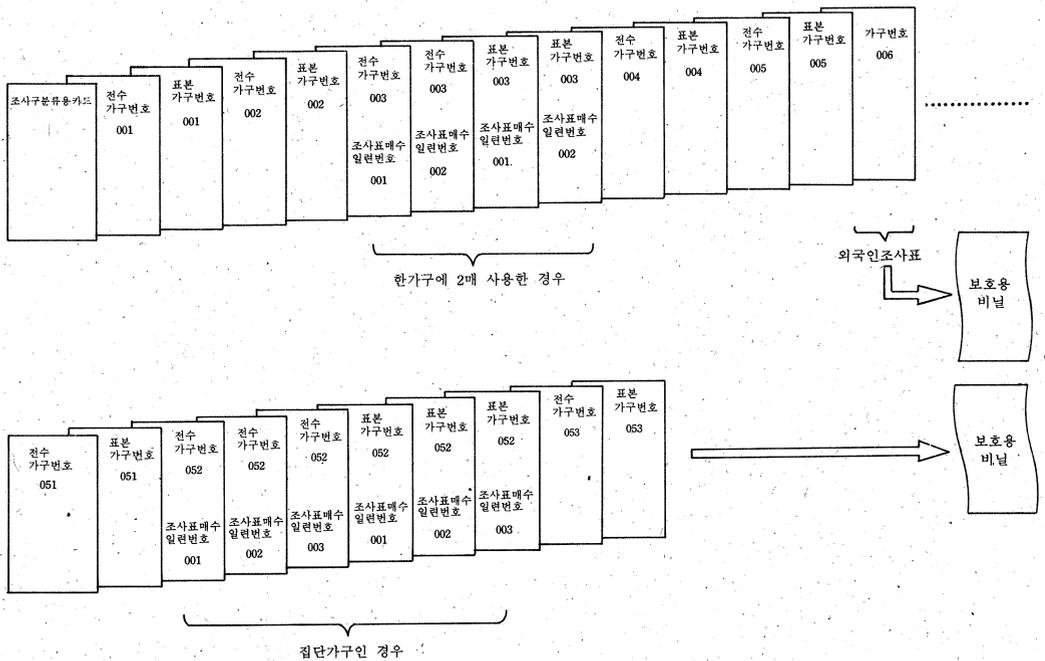
라. OMR조사표 정리

조사원은 일반조사표를 토대로 OMR조사표에 이기작업이 끝나면 조사구단위로

보호용 비닐에 넣어 동·읍·면 지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1) 표본조사구에서는 OMR 전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를 함께 사용한다.
- (2) 표본조사구에 외국인 조사표가 있는 경우 조사구마다 OMR 전수조사표·표본조사표와 OMR외국인 조사표를 분리하여 각각 보호용 비닐에 넣어 동·읍·면 지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조사표 정리요령



- 조사구마다 조사구 분류용카드 1매를 작성하여 OMR조사표 맨위에 정리한다.
- 조사구마다 거처번호, 가구 번호순으로 정리한다.
- 1가구에 2매이상 조사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수조사표를 조사표매수 일련 번호순으로 먼저 정리하고 표본조사표를 조사표 매수 일련 번호순으로 정리한다.
- 담당 조사구내에 외국인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조사표를 사용하여 작성한 후 별도의 보호용 비닐에 넣는다.

* 기숙시설 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도 OMR 전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를 함께 사용하여 OMR조사표 정리 방법은 표본조사구와 동일하게 한다.

4. 조사표류 제출

조사표 내용검토가 끝나면 동읍면 지도공무원의 최종점검을 받아 보완한 후 199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조사표류를 동읍면 지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반조사표

나. OMR조사표

다. 가구명부

라. 조사구 요도

마. 조사요원증

가 구 명 부

(전수 (표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이 조사구의 조사표 배수는
가구수가 32 '주, 6인 이상
가구수가 9가주이므로
41매가 된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조사구번호	조사표매수	가구명부매수	조사원	이수명
서울	종로	사직	012-1	일반 OMR 41매 82매	1매중 / 매	지도원	김경수
						지도공무원	박홍명

① 거 처 번 호	② 가 구 일 련 번 호	③ 주 소			④ 가 구 주 또는 대 표 자 성 명		⑤ 가 구 원 수			⑥ 가 구 의 종 류			⑦ 거 처 의 종 류					⑧ 번	⑨ 농·어 가 구 분	⑩ 비 고			
		리	번	통	성 명	본 판	학 령	계	남	여	일 반 가 구	집 단 가 구	외 국 인 가 구	주 택	단 독 주 택	아 파 트	연 립 주 택				다 세 대 주 택	비 거 주 용 주 택	건 물 내 외 주 택
1	1	23	3/1	張경환	결성	고졸	4	2	2	0	0	0	0	0	0	0	0	0	0	0			
2	2	38	3/1	趙고현	김제	고졸	7	3	4	0	0	0	0	0	0	0	0	0	0	0			
3	3	37	3/1	차희순	강등	고졸	5	2	3	0	0	0	0	0	0	0	0	0	0	0			
4	4	37	3/1	尹世환	과평	고졸	6	4	2	0	0	0	0	0	0	0	0	0	0	0			
5	5	34	3/1	金백두	김해	고졸	3	2	1	0	0	0	0	0	0	0	0	0	0	0			
6	6	34	3/1	韓옥달	청주	대졸	4	1	3	0	0	0	0	0	0	0	0	0	0	0			90.11.2 전출
7	7	34	3/1	崔학준	간성	대졸	6	2	4	0	0	0	0	0	0	0	0	0	0	0			
8	8	29	3/1	權창희	안등	대졸	2	1	1	0	0	0	0	0	0	0	0	0	0	0			
9	9	29	3/1	鄭종만	경주	대졸	4	1	3	0	0	0	0	0	0	0	0	0	0	0			
10	10	36	3/2	宋기래	김해	대졸	4	2	2	0	0	0	0	0	0	0	0	0	0	0			
11	11	35	3/2	홍영배	해평	고퇴	6	4	2	0	0	0	0	0	0	0	0	0	0	0			빈집
12	12	43	3/2	李교선	전주	고퇴	5	2	3	0	0	0	0	0	0	0	0	0	0	0			
13	13	44	3/2	洪승표	강양	고퇴	3	2	1	0	0	0	0	0	0	0	0	0	0	0			
14	14	44	3/2	吳광숙	고광	고퇴	5	3	2	0	0	0	0	0	0	0	0	0	0	0			
15	15	45	3/2	姜홍목	진주	중졸	3	1	2	0	0	0	0	0	0	0	0	0	0	0			
16	16	45	3/2	曹규학	창녕	중졸	7	3	4	0	0	0	0	0	0	0	0	0	0	0			
17	17	146	4/1	梁재건	남원	중졸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8	18	146	4/1	沈진로	청송	중졸	7	7	0	0	0	0	0	0	0	0	0	0	0	0			
19	19	146	4/1	安석환	광주	중졸	5	2	3	0	0	0	0	0	0	0	0	0	0	0			
20	20	146	4/1	南영덕	고성	대졸	6	2	4	0	0	0	0	0	0	0	0	0	0	0			
21	21	146	4/1	申봉순	평산	대졸	6	4	2	0	0	0	0	0	0	0	0	0	0	0			
22	22	146	4/1	康영봉	신천	대졸	5	4	1	0	0	0	0	0	0	0	0	0	0	0			
23	23	146	4/1	潘장우	거제	대졸	4	2	2	0	0	0	0	0	0	0	0	0	0	0			
24	24	148	4/1	林순방	과주	대졸	7	3	4	0	0	0	0	0	0	0	0	0	0	0			
25	25	148	4/1	陳명호	여양	중학	3	1	2	0	0	0	0	0	0	0	0	0	0	0			
26	26	148	4/1	柳종호	고흥	중퇴	2	1	1	0	0	0	0	0	0	0	0	0	0	0			
27	27	148	4/1	呂길영	성주	대퇴	2	1	1	0	0	0	0	0	0	0	0	0	0	0			
28	28	148	4/1	田희월	팔양	중퇴	5	3	2	0	0	0	0	0	0	0	0	0	0	0			
29	29	148	4/1	方정환	문양	대퇴	4	1	3	0	0	0	0	0	0	0	0	0	0	0			
30	30	152	4/1	卜제호	면천	고졸	3	2	1	0	0	0	0	0	0	0	0	0	0	0			
31	31	154	4/1	車상제	연안	고졸	4	2	2	0	0	0	0	0	0	0	0	0	0	0			
32	32	37	3/1	安철호	광주	고졸	2	1	1	0	0	0	0	0	0	0	0	0	0	0			주택(준비)
33	33	37	3/1	南효진	고성	고졸	2	0	2	0	0	0	0	0	0	0	0	0	0	0			90.11.3 전입

② 가구일련번호관의 합계와
⑥ 가구의 종류관의 합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이 명부
에서는 「② 가구일련번호가
맨 끝번호 33에서」 ⑥ 가구
일련번호 6번 가구가 전출이
므로 32 가구이다

「① 거처번호의 제일 큰
숫자와」 ⑦ 거처의 종류
총합계와는 일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① 거처
번호와」 ⑦ 거처의 종류
는 주가주반 기입하고
등거가구는 수선()을
치기 때문이다.

전거주지에서
조사되었음을
물어, 조사가
안되었을 경우
전입일시를 기재
하고 조사한다.
이때 동읍면
에 제출한부
도 동일하게
수정 보완한다
(주택, 전출도
동일)

소 계							138	71	67	31	1	0	10	0	12	0	1	1	1	0	0		
-----	--	--	--	--	--	--	-----	----	----	----	---	---	----	---	----	---	---	---	---	---	---	--	--

예시 : 산업, 종사상의 지위 및 직업의 기입 예

⑮ 산 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 업
주된 사업 내용 버닝사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말은 일의 종류
직장·사업체 이름 온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사외 노에서 병행하고 있음
	③ 무급 가족 종사자	부서 및 직책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⑮ 산 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 업
주된 사업 내용 전직을 원단을 생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말은 일의 종류
직장·사업체 이름 동방기업사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회사 회장과 운영을 하고 있음
	③ 무급 가족 종사자	부서 및 직책
	④ 임금·봉급 근로자	총무부 운전기사

⑮ 산 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 업
주된 사업 내용 도로건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말은 일의 종류
직장·사업체 이름 경제건설주식회사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경리사무를 하고 있음
	③ 무급 가족 종사자	부서 및 직책
	④ 임금·봉급 근로자	경리와 경리계장

⑮ 산 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 업
주된 사업 내용 아동복 제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말은 일의 종류
직장·사업체 이름 한일 섬유주식회사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일을 분담해주고 재봉질한다
	③ 무급 가족 종사자	부서 및 직책
	④ 임금·봉급 근로자	봉제부 반장

		1	2	3	4	5	
만 15세 이상 이 상 되 는 분 만 기 입 합 니 다	⑭	이 분은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중 30일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11월 1일 직전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에 해당되고, 11월 1일 직전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에 해당됩니다. ※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은 ⑮ 산업부터 기입하시고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분은 ⑮ 산업부터 ⑰ 직업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⑮	이 분이 다니시는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직장명이나 사업체명이 있다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단 산업 기입 예를 참조하시고 주된 사업 내용을 기입할 때에는 생산 품목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주된 사업 내용 건축자재 알루미늄 소재 생산 직장·사업체 이름 한성공업주식회사	주된 사업 내용 채소 소매 직장·사업체 이름 우리 집			
	⑯	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상단의 종사상의 지위 기입 예를 참조하여 기입합니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⑰	이 분은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 및 직책도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단의 직업 기입 예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말은 일의 종류 알루미늄 제품은 갖고 있음 부서 및 직책 생산반 기능공	말은 일의 종류 채소 소매를 하고 있음 부서 및 직책			
	⑱	이 분은 결혼하였습니까? 사실상의 혼인상태에 ○표합니다.	① 미 혼 ② 유 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유 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유 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유 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유 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만 15세 이상 중 기혼	⑲	결혼은 세는 나이로 몇 살 때 하였습니까? 결혼한 날짜는 생일전입니까? 후입니까? 결혼은 몇 년도에 하였습니까?	26 살 때 ① 생일전 ② 생일후 1982 년도	24 살 때 ① 생일전 ② 생일후 1982 년도			
만 15세 이상 중 기혼 여자 만 기 입 합 니 다	⑲	부인이 낳은 자녀중 현재 생존해 있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부인이 낳은 자녀중 의지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남 2 명 여 1 명 계 3 명	남 2 명 여 1 명 계 3 명			
	⑳	부인이 낳은 자녀중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남 0 명 여 0 명 계 0 명	남 0 명 여 0 명 계 0 명			
	㉑	지금까지 부인이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남 2 명 여 1 명 계 3 명	남 2 명 여 1 명 계 3 명			

↓ 뒷면에 계속됩니다.



모든 가구에 해당됩니다.

① 거처의 종류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한 종류의 집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⑥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⑧ 사무실 겸용 주택(오피스텔) ⑨ 기타(음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

② 가구 구분
택이 이집을 대표하는 주거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세를 들어 사는 가구들만이 있을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가 주거구입니다.
① 주거구 ② 동거가구 ③ 집단가구
※ 집단가구는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를 의미하며 ③ 집단가구에 해당되면 ③~⑨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③ 점유형태 ④ 임차료
이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와 영업을 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 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전세 및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 나 됩니까?

① 주거전용	① 차기잡	전세 및 보증금			
	② 전세	억	천만	백만	십만원
② 영업겸용	③ 보증부월세	/	5	0	
	④ 월세(사글세)	월세			
	⑤ 무상	백만	십만	만원	
		/	0		

※ 사글세의 경우에는 한 달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④ 사용방수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현대식 주택(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봅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⑥ 6개이상

⑤ 식수의 종류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상수도 ② 간이수도 ③ 자가수도
④ 수동펌프 ⑤ 우물 ⑥ 기타()

⑥ 취사연료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연탄 ② 유류 ③ 가스
④ 전기 ⑤ 임산연료 ⑥ 기타()

⑦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재래식 아궁이 ② 연탄 아궁이 ③ 연탄 보일러
④ 단독 기름보일러 ⑤ 단독 가스보일러 ⑥ 중앙난방보일러
⑦ 전기 보일러 ⑧ 기타()

⑧ 문화시설 및 가재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합니다.
① 텔레비전 ② 냉장고 ③ 세탁기
④ 전화 ⑤ 전축(오디오) ⑥ 녹화재생기(V.T.R)
⑦ 에어컨 ⑧ 개인용 컴퓨터 ⑨ 자가용 승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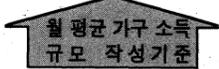
⑨ 전용시설
택에서는 다음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 부엌 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2. 화장실 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3. 출입구 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⑩~⑬ 시설형태
단독사용 또는 공동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음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⑩ 부엌 시설: ① 재래식 ② 입식 ③ 없음
⑪ 화장실 시설: ① 재래식 ② 수세식 ③ 없음
⑫ 목욕 시설: ① 온수시설 ② 비온수시설 ③ 없음
⑬ 상수도 시설: ① 있음 ② 없음

⑭ 월 평균 가구 소득 규모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월 평균 얼마 나 됩니까? ※ 지난 1년(1989. 11. 1~1990. 10. 31) 동안의 총소득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소득세나 상여금은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① 20만원 미만 ②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③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④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⑤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⑥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⑦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⑧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⑨ 300만원 이상

○ 지난 1년간(1989. 11. 1~1990. 10. 31)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인 총소득액을 평균 한 달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난달의 소득이나 현재의 가구원 소득을 기준해서는 안됩니다.
○ 가구원 전체 총소득이란, 가족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영업사용인 또는 동거인과 같이 가족이 아닌 사람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 소득이 현물(쌀, 보리 및 공업제품 등)일 경우에는 그 현물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실업자가 취업을 해서 12개월이 안된 경우 및 신규취업자의 취업 기간이 12개월이 안된 경우 등은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실제 취업기간(개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포함되어야 할 소득]
○ 근로소득: 임금, 급여, 봉급, 일당, 상여금, 봉사료(팁), 부업소득 및 기타 근로소득



○ 임대소득: 건물임대소득, 토지임대소득, 자동차임대소득, 특허권 등 기타 임대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및 점포나 소규모 공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의 사업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난 다음의 소득
○ 이전소득: 정부 및 사회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에서 정부 및 사회단체에 준 기부금·분담금 등을 뺀 잔액, 가족·친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가족·친지에게 준 보조금을 뺀 잔액, 연금

[포함되어서는 안될 소득 또는 수입]
○ 복권당첨금, 경조사시 들어온 수입금, 퇴직일급, 상속재산액, 각종 보험금 탄 것, 재산을 매각한 수입, 저축금 탄 것, 켜돈 탄 것, 빌려준 돈 회수금



주거구만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이 주택을 대표하는 주거구만 해당됩니다.

(가구에 관한사항 ① 거처의 종류 ①~⑤에 해당되면서, ②가구 구분란의 ①에 해당되는 가구)

⑭ 외벽재료
이 주택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벽재료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재료를 말합니다.
① 나무 ② 적벽돌, 돌 ③ 시멘트제품
④ 철근콘크리트 ⑤ 흙, 흙벽돌 ⑥ 기타()

⑮ 지붕재료
이 주택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기와 ② 슬레이트 ③ 슬래브(슬래브기와)
④ 합석 ⑤ 짚, 갈대 ⑥ 기타()

⑯, ⑰ 연건평 및 대지 면적
이 주택의 연건평과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기입하고 대지 면적은 담장 안의 전면적을 기입합니다. ※ 평 또는 m² 중 한쪽만 기입합니다.
⑯ 연건평 평 ⑰ 대지 면적 평
..... m² m²

⑱, ⑲ 총방수 및 거주 가구수
이 주택에는 방이 모두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보며, 동거가구의 방수 및 가구수도 포함됩니다.
⑱ 총 방수 개
..... 가구

⑲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
① 1958년 이전 ② 1959년~1959년
③ 1960년~1969년 ④ 1970년~1979년
⑤ 1980년~1985년 ⑥ 1986년
⑦ 1987년 ⑧ 1988년
⑨ 1989년 ⑩ 1990년

⑳ 편익사실수
이 주택에는 다음 시설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1. 부엌: 개
2. 화장실: 개
3. 출입구: 개

㉑ 거주 가능 가구수
이 주택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 가구

응답자 성명	장덕순	서명	장덕순	조사원 성명	김영수	서명	김영수
--------	-----	----	-----	--------	-----	----	-----

- 이제 택의 조사표가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 택을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이 조사표를 잘 전달하여 주십시오.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조사구용 조사표)

비밀번호
이 조사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정통계 제 1 호 및 제 2 호

시	구	동	동리동(아파트)	120번지	호
서울	종로	경운	3동1반	전화	(720-0000)

※ 이 난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이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매수	가구원수
0041	31	49	2매중	2매

필적장은 사전()

인사말씀

경제기획원에서는 5년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에 관한 총조사를 실시하여 나라살림을 바르게 꾸려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99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이번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와 모든 주택에 대하여 총수는 물론 그 개별특성까지 파악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귀택의 식구에 대한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및 통근·통학 여부와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표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사실대로 기입하였다가 조사원이 다시 방문하였을 때에 돌려주시고 기입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원의 확인이나 추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기입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이 국가 기본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택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0년 11월 1일

경제기획원장관

조사대상

이번 총조사는 11월 1일 0시 현재,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귀택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 0시 이후에 출생한 아이나 11월 1일 0시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조사되어야 할 사람	조사되어서는 안될 사람
○ 해외 또는 국내의 다른 곳에 출장, 여행, 행사 등으로 잠시 출타중인 사람	○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외지 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 경찰서 보호실, 구치소(교도소)의 미결수	○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 등에 들어가 있는 사람
○ 예비군 또는 방위소집중인 사람	○ 군 또는 전투경찰(병역의무자)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사람
○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	○ 요양소, 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중인 사람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의 탑승승무원	○ 사회시설(양로원, 부녀보호소 등)에서 살고 있는 사람
○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아직 정착 여부를 알 수 없는 1개월 미만의 부재중인 가족.	

“김영수”라는 사람은 1990년 11월 1일 현재 세는 나이는 30살이고 피가 소띠이며,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 10월 21일 일 때 “김영수”의 만나는 몇 살인가? **답 28세**
해설: 만나이환산표에서 세는 나이가 30살이고 소띠인 경우에 만나는 29세 또는 28세가 되는데, 1961년 11월 1일의 음력날짜가 9월 23일이고 김영수의 음력생일 10월 21일은 음력 9월 23일 이후가 되므로 김영수의 만나는 28세가 됨.

만(滿)나이 환산표

만나이 환산에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 일 이 양 11월 1일 전	생 일 이 양 11월 1일 후
1	1990	말	0	9. 14
2	1989	뱀	1	10. 3
3	1988	용	2	9. 22
4	1987	토끼	3	9. 10
5	1986	호랑이	4	9. 29
6	1985	소	5	9. 19
7	1984	쥐	6	10. 9
8	1983	돼지	7	9. 27
9	1982	개	8	9. 16
10	1981	닭	9	10. 5
11	1980	잔나비	10	9. 24
12	1979	양	11	9. 12
13	1978	말	12	10. 1
14	1977	뱀	13	9. 20
15	1976	용	14	9. 10
16	1975	토끼	15	9. 28
17	1974	호랑이	16	9. 18
18	1973	소	17	10. 7
19	1972	쥐	18	9. 26
20	1971	돼지	19	9. 14
21	1970	개	20	10. 3
22	1969	닭	21	9. 22
23	1968	잔나비	22	9. 11
24	1967	양	23	9. 29
25	1966	말	24	9. 19
26	1965	뱀	25	10. 9
27	1964	용	26	9. 27
28	1963	토끼	27	9. 16
29	1962	호랑이	28	10. 5
30	1961	소	29	9. 23
31	1960	쥐	30	9. 13
32	1959	돼지	31	10. 1
33	1958	개		9. 20
34	1957	닭		9. 10
35	1956	잔나비	34	9. 29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 일 이 양 11월 1일 전	생 일 이 양 11월 1일 후
36	1955	양	35	9. 17
37	1954	말	36	10. 6
38	1953	뱀	37	9. 25
39	1952	용	38	9. 14
40	1951	토끼	39	10. 3
41	1950	호랑이	40	9. 22
42	1949	소	41	9. 11
43	1948	쥐	42	10. 1
44	1947	돼지	43	9. 19
45	1946	개	44	10. 8
46	1945	닭	45	9. 27
47	1944	잔나비	46	9. 16
48	1943	양	47	10. 4
49	1942	말	48	9. 23
50	1941	뱀	49	9. 13
51	1940	용	50	10. 3
52	1939	토끼	51	9. 20
53	1938	호랑이	52	9. 10
54	1937	소	53	9. 29
55	1936	쥐	54	9. 18
56	1935	돼지	55	10. 6
57	1934	개	56	9. 24
58	1933	닭	57	9. 14
59	1932	잔나비	58	10. 4
60	1931	양	59	9. 22
61	1930	말	60	9. 11
62	1929	뱀	61	10. 1
63	1928	용	62	9. 19
64	1927	토끼	63	10. 7
65	1926	호랑이	64	9. 26
66	1925	소	65	9. 15
67	1924	쥐	66	10. 5
68	1923	돼지	67	9. 23
69	1922	개	68	9. 13
70	1921	닭	69	10. 2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 일 이 양 11월 1일 전	생 일 이 양 11월 1일 후
71	1920	잔나비	70	9. 21
72	1919	양	71	9. 9
73	1918	말	72	9. 28
74	1917	뱀	73	9. 17
75	1916	용	74	10. 6
76	1915	토끼	75	9. 24
77	1914	호랑이	76	9. 14
78	1913	소	77	10. 4
79	1912	쥐	78	9. 23
80	1911	돼지	79	9. 11
81	1910	개	80	9. 30
82	1909	닭	81	9. 19
83	1908	잔나비	82	10. 8
84	1907	양	83	9. 26
85	1906	말	84	9. 15
86	1905	뱀	85	10. 5
87	1904	용	86	9. 24
88	1903	토끼	87	9. 13
89	1902	호랑이	88	10. 2
90	1901	소	89	9. 21
91	1900	쥐	90	9. 10
92	1899	돼지	91	9. 28
93	1898	개	92	9. 18
94	1897	닭	93	10. 7
95	1896	잔나비	94	9. 26
96	1895	양	95	9. 15
97	1894	말	96	10. 4
98	1893	뱀	97	9. 23
99	1892	용	98	9. 12
100	1891	토끼	99	9. 30
101	1890	호랑이	100	9. 19
102	1889	소	101	10. 9
103	1888	쥐	102	9. 28
104	1887	돼지	103	9. 16
105	1886	개	104	9. 6



		1	2	3	4	5
성명	① 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가구주부터 기입하여 주시고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강 전 로				
	②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장남」, 「장남의 장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제				
성별	③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해당번호에 ○표합니다.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④-1 세는 나이로 몇 살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입합니다.	28 살				
나이	④-2 출생년도 이 분은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무슨 띠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출생년도와 띠를 기입합니다.	1963 년도 토끼 띠	년도 띠	년도 띠	년도 띠	년도 띠
	④-3 생일 실제로 집에서 쇠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양력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쇠는 생일을 기입합니다.	2 월 8 일 ① 양력 ② 음력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이	④-4 만나이 이 난은 앞면에 있는 만나이 환산표를 보시고 정확한 만나이를 계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만 27 살	만 살	만 살	만 살	만 살
	⑤ 출생지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출생 당시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합니다. ※ 북한의 경우에는 출생당시의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되 시·도명 앞에는 북한을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경상북도(국) 포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만 1세 이상 되는	⑥-1 1년전 거주지 지금으로부터 1년전(89.11.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고 외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⑥-5 5년전 거주지 지금으로부터 5년전(85. 11. 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고 외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경상북도(국) 포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만 5세 이상 되는	⑥-6 교육정도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입합니다. ※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말합니다. ※ 현재 1학기 이상 휴학상태인 경우는 중퇴에 해당됩니다.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학 ③ 중 학 등 ④ 고 등 등 ⑤ 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학 ③ 중 학 등 ④ 고 등 등 ⑤ 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학 ③ 중 학 등 ④ 고 등 등 ⑤ 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학 ③ 중 학 등 ④ 고 등 등 ⑤ 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학 ③ 중 학 등 ④ 고 등 등 ⑤ 전문대 ⑥ 대학(교) ⑦ 대학원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⑦ 통근·통학 여부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직장 또는 학교(원)를 다니는 경우에도 통근·통학에 포함됩니다. ② 안한다에 해당되는 분은 ⑧에서 ⑩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만 12세 이상 되는	⑧ 직장주소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면 직장 또는 학교(원)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② 다른 동읍면으로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곳의 행정구역명을 정확히 기입하시고 모를 경우에는 직장 또는 학교(원)의 이름이나 인근 유명한 건물 이름 또는 특징 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 서울특별시(도) 구로구(시)구 구로(동)읍면 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	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 시도 구시군 동읍면 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			
	⑨ 출발·도착 시각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	①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7 시 10 분 ② 오후 시 분 ③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7 시 50 분	①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③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	①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③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	①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③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	①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③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
이용교통수단	⑩ 평소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할 때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통근·통학시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번호에 모두 ○표합니다.	① 시내버스 ② 좌석버스 ③ 시외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버스 ② 좌석버스 ③ 시외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버스 ② 좌석버스 ③ 시외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버스 ② 좌석버스 ③ 시외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버스 ② 좌석버스 ③ 시외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기타 교통수단

예시 : 산업, 종사상의 지위 및 직업의 기입 예

⑮ 산 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 업
주된 사업 내용 버 능 사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사계 노에서 버능을 짓고 있음
직장·사업체 이름 논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⑮ 산 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 업
주된 사업 내용 전직을 원사를 생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회사 화물차 운전중 하고 있음
직장·사업체 이름 동 방 기 업 사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종무부 운전기사

⑮ 산 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 업
주된 사업 내용 도목건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경리사무를 하고 있음
직장·사업체 이름 경제건설주식회사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경리과 경리계장

⑮ 산 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 업
주된 사업 내용 아동복 제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일을 분담해주고 재봉을 접시거나
직장·사업체 이름 한길 섬유주식회사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봉제부 반장

		1	2	3	4	5	
만 15세 이상 이 상 되 는 분 만 기 입 합 니 다	⑭ 경제 활동 상태	이 분은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중 30일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11월 1일 직전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에 해당되고, 11월 1일 직전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에 해당됩니다. ※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은 ⑮ 산업부터 기입하시고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분은 ⑮ 산업부터 ⑰ 직업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⑮ 산업	이 분이 다니시는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직장명이나 사업체명이 있다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단 산업 기입 예를 참조하시고 주된 사업 내용을 기입할 때에는 생산 품목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주된 사업 내용 건축자재 알루미늄 샷시 생산 직장·사업체 이름 권성공업주식회사	주된 사업 내용 직장·사업체 이름			
	⑯ 종사상의 지위	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상단의 종사상의 지위 기입 예를 참조하여 기입합니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⑰ 직업	이 분은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 및 직책도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단의 직업 기입 예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말은 일의 종류 제품을 주부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음 부서 및 직책 중선반 기능공	말은 일의 종류 부서 및 직책			
	⑱ 혼인 상태	이 분은 결혼하였습니까? 사실상의 혼인상태에 ○표합니다.	① 미 혼 ② 유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유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유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유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① 미 혼 ② 유배우 ③ 사 별 ④ 이 혼
만 15세 이상 중 기 혼	⑳ 초혼 연령	결혼은 세는 나이로 몇 살 때 하였습니까? 결혼한 날짜는 생일전입니까? 후입니까? 결혼은 몇 년도에 하였습니까?	살 때 ① 생일전 ② 생일후 년도				
만 15세 이상 중 기 혼 여 자 만 기 입 합 니 다	㉑ 생존 자녀 수	부인이 낳은 자녀중 현재 생존해 있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부인이 낳은 자녀중 외지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남 명 여 명 계 명				
	㉒ 사망 자녀 수	부인이 낳은 자녀중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남 명 여 명 계 명				
	㉓ 총출생 자녀 수	지금까지 부인이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남 명 여 명 계 명				

↓ 뒷면에 됩니다.

가구에
관한 사항

모든 가구에 해당됩니다.

① 거처의 종류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한 종류의 집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⑥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⑧ 사목실 겸용 주택(오피스텔) ⑨ 기타(음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

② 가구 구분
택이 이집을 대표하는 주거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세를 들어 사는 가구들만이 있을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가 주거구입니다.
① 주거구 ② 동거가구 ③ 집단가구
※ 집단가구는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를 의미하며 ③ 집단가구에 해당되면 ③~⑫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③ 점유형태 ④ 임차료
이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와 영업의 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 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전세 및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됩니까?
① 주거전용 ② 영업겸용
1 자기 집 2 전세 3 보증부월세 4 월세(사글세) 5 무상
전세 및 보증금
억 천만 백만 십만원
월세
백만 십만 만원
※ 사글세의 경우에는 한 달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④ 사용방식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봅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⑥ 6개이상

⑤ 식수의 종류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상수도 ② 간이수도 ③ 자가수도 ④ 수동펌프 ⑤ 우물 ⑥ 기타()

⑥ 취사연료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연탄 ② 유류 ③ 가스 ④ 전기 ⑤ 임산연료 ⑥ 기타()

⑦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재래식 아궁이 ② 연탄 아궁이 ③ 연탄 보일러
④ 단독 기름보일러 ⑤ 단독 가스보일러 ⑥ 중앙난방보일러
⑦ 전기 보일러 ⑧ 기타()

⑧ 문화시설 및 가재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합니다.
① 텔레비전 ② 냉장고 ③ 세탁기
④ 전화 ⑤ 전축(오디오) ⑥ 녹화재생기(V.T.R)
⑦ 에어컨 ⑧ 개인용 컴퓨터 ⑨ 자가용 승용차

⑨ 전용시설
택에서는 다음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 부엌 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2. 화장실 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3. 출입구 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⑩~⑬ 시설형태
단독사용 또는 공동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⑩ 부엌 시설: ① 재래식 ② 입식 ③ 없음
⑪ 화장실 시설: ① 재래식 ② 수세식 ③ 없음
⑫ 목욕 시설: ① 온수시설 ② 비온수시설 ③ 없음
⑬ 상수도 시설: ① 있음 ② 없음

⑭ 월 평균 가구 소득 규모
가계를 꾸러나가기 위해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 지난 1년(1989. 11. 1~1990. 10. 31) 동안의 총소득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소득세나 상여금은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① 20만원 미만 ②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③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④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⑤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⑥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⑦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⑧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⑨ 300만원 이상

○ 지난 1년간(1989. 11. 1~1990. 10. 31)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인 총소득액을 평균 한 달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난달의 소득이나 현재의 가구원 소득을 기준해서는 안됩니다.

○ 가구원 전체 총소득이란, 가족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영업사용인 또는 동거인과 같이 가족이 아닌 사람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 소득이 현물(쌀, 보리 및 공업제품 등) 일 경우에는 그 현물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실업자가 취업을 해서 12개월이 안된 경우 및 신규취업자의 취업 기간이 12개월이 안된 경우 등은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실제 취업기간(개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포함되어야 할 소득]
○ 근로소득: 임금, 급여, 봉급, 일당, 상여금, 봉사료(팁), 부업소득 및 기타 근로소득

월 평균 가구 소득 규모 작성기준

○ 임대소득: 건물임대소득, 토지임대소득, 자동차임대소득, 특허권 등 기타 임대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및 점포나 소규모 공장을 경영하는 자영자의 사업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난 다음의 소득
○ 이전소득: 정부 및 사회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에서 정부 및 사회단체에 준 기부금·분담금 등을 뺀 잔액, 가족·친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가족·친지에게 준 보조금을 뺀 잔액, 연금

[포함되어서는 안될 소득 또는 수입]
○ 복권당첨금, 경조사시 들어온 수입금, 퇴직일시금, 상속재산액, 각종 보험금 탄 것, 재산을 매각한 수입, 저축금 탄 것, 갚은 돈 탄 것, 빌려준 돈 회수금

주택에
관한 사항

주거구만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이 주택을 대표하는 주거구만 해당됩니다.
(가구에 관한사항 ① 거처의 종류 ①~⑤에 해당되면서, ②가구 구분란의 ①에 해당하는 가구)

⑭ 외벽재료
이 주택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벽재료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재료를 말합니다.
① 나무 ② 적벽돌, 돌 ③ 시멘트제품
④ 철근콘크리트 ⑤ 흙, 흙벽돌 ⑥ 기타()

⑮ 지붕재료
이 주택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기와 ② 슬레이트 ③ 슬래브(슬래브기와)
④ 합석 ⑤ 짚, 갈대 ⑥ 기타()

⑯ 연건평 및 대지 면적
이 주택의 연건평과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기입하고 대지 면적은 담장 안의 전면적을 기입합니다. ※ 평 또는 m² 한쪽만 기입합니다.
⑯ 연건평 평 ⑰ 대지 면적 평
m² m²

⑱ 총방수 및 거주 가구수
이 주택에는 방이 모두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보며, 동거가구의 방수 및 가구수도 포함됩니다.
⑱ 총 방 수 개
⑲ 거주 가구수 가구

⑳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
① 1950년 이전 ② 1950년~1959년
③ 1960년~1969년 ④ 1970년~1979년
⑤ 1980년~1985년 ⑥ 1986년
⑦ 1987년 ⑧ 1988년
⑨ 1989년 ⑩ 1990년

㉑ 편의시설수
이 주택에는 다음 시설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1. 부엌: 개
2. 화장실: 개
3. 출입구: 개

㉒ 거주 가능 가구수
이 주택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 가구

응답자 성명 **장덕순** 서명 **장덕순** 조사원 성명 **김영수** 서명 **김영수**

● 이제 택의 조사표가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 택을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이 조사표를 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함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전수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십시오.
- 마크하실 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굽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OMR조사표 작성 요령

OMR조사표 기입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을 보면서 각란의 기입내용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0번지 아파트 (동) (아파트)		조사구번호	04	
거처번호	031	가구번호	49	가구원수	06
가구당 조사표 매수	02	가구당 조사표 매수 중 일련번호	01	가구원수	06
성명	강창호	장익순	장석돈	장석순	장석래
가구주와의 관계	1	2	3	4	5
성별	남	남	남	남	남
세는나이	8	18	19	18	19
출생년도	80	80	80	80	80
피	1	2	3	4	5
생일	1월 2월 3월 4월 5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양력음력구분	1. 양력 2. 음력				
만나이	8	18	19	18	19
나	1	2	3	4	5
이	1월 2월 3월 4월 5월				
출생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 매수」 「가구당 조사표 매수 중 일련번호」는 한가구에 조사표가 2매 이상 사용될 경우 매장마다 작성한다.
- “예” 조사표가 3매 사용된 경우

가구당	0	매	가구당조사표	0	매	매수 중	0	일련번호	0
조사표매수	3	일	매수 중	0	일련번호	1	일	0	일

—첫째장

가구당	0	매	가구당조사표	0	매	매수 중	0	일련번호	0
조사표매수	3	일	매수 중	0	일련번호	1	일	0	일

—둘째장

가구당	0	매	가구당조사표	0	매	매수 중	0	일련번호	0
조사표매수	3	일	매수 중	0	일련번호	3	일	0	일

—셋째장

- 「가구원수」는 조사표가 2매 이상 사용될 경우에도 조사표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부터는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성명」은 가구원 일련번호순으로 가구주부터 작성한다. 이때 가구원 일련번호 중 중간번호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예”

성명	강창호	장익순		장석돈	장석순
----	-----	-----	--	-----	-----

- 「가구주와의 관계」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는 난이므로 조사원은 작성하지 않는다.
- 「성별」은 가구원마다 작성한다.
- 「나이」는 「세는나이」 「출생년도」 「피」 「생일」 「양력음력구분」 「만나이」란의 십단위의 「0」을 반드시 마크한다.

“예” 세는 나이 8살.

세는나이	8
------	---

- 「출생지」는 일반조사표에 「③다른구시군」란에 기입되어 있으면 「다른 구시군의 시도」란은 마크하고, 「구시군」 부호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 둔다.

		1	2	3	4	5
⑥ 교육 정도		1. 안다(있음) (안다(있음)) 2. 국어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대학 6. 대학(원) 7. 대학원 3. 대학원	1. 안다(있음) (안다(있음)) 2. 국어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대학 6. 대학(원) 7. 대학원 3. 대학원	1. 안다(있음) (안다(있음)) 2. 국어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대학 6. 대학(원) 7. 대학원 3. 대학원	1. 안다(있음) (안다(있음)) 2. 국어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대학 6. 대학(원) 7. 대학원 3. 대학원	1. 안다(있음) (안다(있음)) 2. 국어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대학 6. 대학(원) 7. 대학원 3. 대학원
⑦ 통근·통학여부		1. 안다(있음) (안다(있음)) 2. 안다(있음) (안다(있음))				
⑧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시	1. 시도(동읍면) 2. 시도(동읍면) 3. 시도(동읍면) 4. 시도(동읍면) 5. 시도(동읍면) 6. 시도(동읍면) 7. 시도(동읍면) 8. 시도(동읍면) 9. 시도(동읍면) 10. 시도(동읍면)	1. 시도(동읍면) 2. 시도(동읍면) 3. 시도(동읍면) 4. 시도(동읍면) 5. 시도(동읍면) 6. 시도(동읍면) 7. 시도(동읍면) 8. 시도(동읍면) 9. 시도(동읍면) 10. 시도(동읍면)	1. 시도(동읍면) 2. 시도(동읍면) 3. 시도(동읍면) 4. 시도(동읍면) 5. 시도(동읍면) 6. 시도(동읍면) 7. 시도(동읍면) 8. 시도(동읍면) 9. 시도(동읍면) 10. 시도(동읍면)	1. 시도(동읍면) 2. 시도(동읍면) 3. 시도(동읍면) 4. 시도(동읍면) 5. 시도(동읍면) 6. 시도(동읍면) 7. 시도(동읍면) 8. 시도(동읍면) 9. 시도(동읍면) 10. 시도(동읍면)	1. 시도(동읍면) 2. 시도(동읍면) 3. 시도(동읍면) 4. 시도(동읍면) 5. 시도(동읍면) 6. 시도(동읍면) 7. 시도(동읍면) 8. 시도(동읍면) 9. 시도(동읍면) 10. 시도(동읍면)
	구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시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동읍면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⑨ 출발·도착시각	출발시각	1. 오전 2. 오후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도	0 10 20 30 40 50				
	시	0 10 20 30 40 50				
	도	0 10 20 30 40 50				
⑩ 이용교통수단		1. 2. 3. 4. 5. 6. 7. 8. 9.				
⑪ 혼인상태		1. 미혼 2. 혼인 3. 사별 4. 이혼				

• 「교육정도」 「통근·통학여부」는 일반 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는 일반조사표에 「② 다른 동읍면」란에 기입된 경우 「시도」란에 마크하고, 「구시군」 부호와 「동읍면」 부호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출발·도착시각」 「이용교통수단」 「혼인상태」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가 구 에 관 한 사 항	① 거처의종류	1. 2. 3. 4. 5. 6.
	② 가구구분	1. 주가구 2. 동거가구 3. 별단가구
	③ 점유형태	1. 자기거주 2. 전세 3. 보증부채 4. 임대(보증) 5. 무상 6. 기타
	④ 사용방수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6. 6개 이상
	⑤ 식수의종류	1. 상수도 2. 정수기 3. 저가수도 4. 수도필트 5. 우물 6. 기타
	⑥ 취사연료	1. 연탄 2. 등유 3. 가스 4. 전기 5. 임산연료 6. 기타
	⑦ 난방시설	1. 2. 3. 4. 5. 6.
	⑧ 문화시설및가재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 화 5. 전 녹 6. 녹화설비 7. 에어컨 8. 세탁기 9. 기타가재
	⑨ 편의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용시설을 필요 3. 공용시설을 필요
	⑩ 편의시설	1. 개 레 시 2. 입 시 3. 입 용
	⑪ 화장실시설	1. 개 레 시 2. 수 세 시 3. 입 용
	⑫ 목욕시설	1. 온수시설 2. 미온수시설 3. 입 용
	⑬ 상수도시설	1. 입 용 2. 입 용
주 택 에 관 한 사 항	⑭ 의복재	1. 나무 2. 벽지, 돌 3. 서양드레스 4. 방한코트 5. 모자, 용품 6. 기타
	⑮ 지붕재	1. 기와 2. 슬레이트 3. 스페트(스페트지) 4. 합성 5. 점, 갈레 6. 기타
	⑯ 연건평	7. 평미만 7-9 9-14 14-19 19-24 24-29 29-39 39-49 49-69 69-99 99평이상
	⑰ 대지면적	10평미만 10-19 19-29 29-39 39-49 49-59 59-69 69-79 79-89 89-99 99-109 109-119 119-129 129-139 139-149 149-159 159-169 169-179 179-189 189-199 199-209 209-219 219-229 229-239 239-249 249-259 259-269 269-279 279-289 289-299 299-309 309-319 319-329 329-339 339-349 349-359 359-369 369-379 379-389 389-399 399-409 409-419 419-429 429-439 439-449 449-459 459-469 469-479 479-489 489-499 499-509 509-519 519-529 529-539 539-549 549-559 559-569 569-579 579-589 589-599 599-609 609-619 619-629 629-639 639-649 649-659 659-669 669-679 679-689 689-699 699-709 709-719 719-729 729-739 739-749 749-759 759-769 769-779 779-789 789-799 799-809 809-819 819-829 829-839 839-849 849-859 859-869 869-879 879-889 889-899 899-909 909-919 919-929 929-939 939-949 949-959 959-969 969-979 979-989 989-999 1000평이상
	⑱ 층방수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6. 6개 7. 7개 8. 8개 9. 9개 10. 10개 11. 11개 12. 12개 이상
	⑲ 거주가구수	1. 1가구 2. 2가구 3. 3가구 4. 4가구 5. 5가구 6. 6가구 7. 7가구 8. 8가구 9. 9가구 10. 10가구 11. 11가구 12. 12가구 이상
	⑳ 건축년도	1. 1950년미만 2. 50-59 3. 60-69 4. 70-79 5. 80-85 6. 86년 7. 87년 8. 88년 9. 89년 0. 1990년
	㉑ 편의시설	1. 부 욱 2. 화 장 실 3. 욱 실 4. 욱 실 5. 욱 실 6. 욱 실 7. 욱 실 8. 욱 실 9. 욱 실 10. 욱 실 11. 욱 실 12. 욱 실
	㉒ 거주가능가구수	1. 1가구 2. 2가구 3. 3가구 4. 4가구 5. 5가구 6. 6가구 이상

• 「가구에 관한 사항」 「주택에 관한 사항」은 한가구에 조사표가 2매 이상 사용될 경우 첫째 장만 작성하고 둘째장 이상은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의 주가구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불린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 마크할 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굵고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할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찢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 120번지 아파트		조사구번호	004	
거처번호	031	가구번호	49		
가구당 조사표 매수	0	가구당 조사표 매수 중 일련번호	07	가구원수	
성명	강창호	장익순	강석돈	강석순	강석래
1년전 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5년전 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경제활동상태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주된 사업 내용	건축자재양분 찾시 생산	채소소매			
직장 사업체 이름	한성공영주택 회사	우리집			
통계국 기입란	중 소	중 소	중 소	중 소	중 소

• 「주소」「조사구번호」「거처번호」「가구번호」「가구당 조사표 매수」「가구당 조사표 매수 중 일련번호」는 한가구에 조사표가 2매 이상 사용될 경우 매장마다 작성한다.

“예” 조사표가 3매 사용된 경우

—첫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	백	0	십	0	일	0
가구당 조사표매수 중 일련번호	0	1	2	3	4	5	6

—둘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	백	0	십	0	일	0
가구당 조사표매수 중 일련번호	0	1	2	3	4	5	6

—셋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	백	0	십	0	일	0
가구당 조사표매수 중 일련번호	0	1	2	3	4	5	6

* 「가구당 조사표 매수」와 「가구당 조사표 매수 중 일련번호」는 전수조사표와 표본 조사표 매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 「가구원수」는 조사표가 2매 이상 사용될 경우 조사표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부터는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성명」은 전수조사표에 작성되어 있는대로 가구원 일련 번호순으로 이기한다.

• 「1년전 거주지」는 「3. 다른 구시군」에 마크되어 있으면 「다른 구시군의 시도」는 마크하고, 「구시군」 부호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5년전 거주지」는 「3. 다른 구시군」에 마크되어 있으면 「다른 구시군의 시도」는 마크하고, 「구시군」 부호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므로 공백 상태로 남겨둔다.

• 「경제 활동 상태」는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산업」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주된 사업 내용」과 「직장·사업체 이름」을 그대로 이기한다.

—「*통계국 기입란」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1	2	3	4	5			
(16) 종사상의 지위	1. 고용원용 동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임금·불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직업	말은 일의 종류	알아동 재봉틀 깎고 있음							
	부서 및 직책	선반기능							
※ 통계국기입란	대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중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소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18) 초혼연령	초혼연령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생일전 2. 생일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초혼백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초혼연도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19) 생존자녀수	계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일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20) 사망자녀수	계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일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21) 총출생자녀수	계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일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가) 구에 관한 사항	23 임차료	전세 및 보증금				월세			
	24 월 평균 가구소득규모	1 20만원 미만 2 20만원~30만원미만 3 30만원~50만원미만 4 50만원~70만원미만 5 70만원~100만원미만 6 100만원~150만원미만 7 150만원~200만원미만 8 200만원~300만원미만 9 300만원이상							

• 「종사상의 지위」는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직업」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말은 일의 종류」와 「부서 및 직책」을 []에 그대로 이기한다.

- 「*통계국기입란」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초혼연령」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생존자녀수」 「사망자녀수」 「총출생자녀수」는 일반조사표의 「계」란만을 해당란에 마크한다.

• 「가구에 관한 사항은」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된 경우 조사표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 이상은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1990년 인구 주택 조사 (전수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세요.
- 마크하실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호) 120번지 아파트		조사구번호	0	백	0	1	2	3
거처번호	0	백	0	백	0	1	2	3	4
가구당 조사표매수	0	백	0	백	0	1	2	3	4
조사표매수	0	백	0	백	0	1	2	3	4

		1	2	3	4	5
① 성명		강광호	장력순	강석돈	강석순	강석태
② 가구주와의 관계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③ 성별		1. 남 2. 여				
④ 나이	4-1 세는 나이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4-2 출생년도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4-3 생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4 만 나이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⑤ 출생지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집 3. 다른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집 3. 다른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집 3. 다른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집 3. 다른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집 3. 다른 구시군
다 구시군 의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구시군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이 기 내 검 모 원 기 입 란

이 기 내 검 모 원 기 입 란

		1	2	3	4	5			
⑥ 교육 정도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⑦ 통근·통학여부		1. 한다 2. 안한다 (⑧번으로 계속) (⑩번으로 계속)							
⑧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i>이기 내정요원 기입란</i>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 시 읍 동 읍 읍면 일		구 시 읍 동 읍 읍면 일		구 시 읍 동 읍 읍면 일		구 시 읍 동 읍 읍면 일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⑨ 출발·도착 시각		1. 오전 2. 오후		1. 오전 2. 오후		1. 오전 2. 오후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출발 시각 도착 시각			
⑩ 이용 교통수단		1. 2. 3. 4. 5. 6. 7. 8. 9. 0							
⑪ 혼인 상태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가 구 에 관 한 사 항	① 거처의 종류	1. 2. 3. 4. 5. 6. 7. 8. 9.
	② 가구 구분	1. 주거가구 2. 주거가구 3. 집단가구
	③ 점유 형태	1. 주거전용 2. 영업전용
	④ 사용 방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⑤ 식수의 종류	1. 상수도 2. 간이수도 3. 자가수도 4. 수도펌프 5. 우물 6. 기타
	⑥ 취사 연료	1. 연탄 2. 유류 3. 가스 4. 전기 5. 임산연료 6. 기타
	⑦ 난방 시설	1. 2. 3. 4. 5. 6. 7. 8.
	⑧ 문화시설및가재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화 5. 전속 6. 녹화재생기 7. 에어컨 8. 개인용컴퓨터 9. 자가용승용차
시 설 형 태	⑨ 전용 시설	1. 부엌시설 2. 화장실시설 3. 출입구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⑩ 부엌 시설	1. 재래식 2. 입식 3. 없음
	⑪ 화장실 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음
	⑫ 목욕 시설	1. 온수시설 2. 비온수시설 3. 없음
⑬ 상수도 시설	1. 있음 2. 없음	

주 택 에 관 한 사 항	⑭ 외벽재료	1. 나무 2. 벽돌, 돌 3. 시멘트제품 4. 철근콘크리트 5. 흙, 흙벽돌 6. 기타
	⑮ 지붕재료	1. 기와 2. 슬레이트 3. 스프라(스라브기외) 4. 합석 5. 짚, 갈대 6. 기타
	⑯ 연 건 평	7평미만 7~9 9~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평이상
	⑰ 대지면적	10평미만 10~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149 149~199 199~249 249평이상
	⑱ 층 방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⑲ 거주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⑳ 건축년도	1. 1950년 이전 2. 50~59 3. 60~69 4. 70~79 5. 80~85 6. 86년 7. 87년 8. 88년 9. 89년 0. 1990년
	⑳ 편의 시설	1. 부엌 2. 화장실 3. 출입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㉑ 거주가능 가구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990년 인구 주택조사 (전수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세요.
- 마크하실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동계장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주소	서울 ^시 종로 ^구 경운 ^동 120번지 호 (동호)		조사구번호	0	백	0	1	2	3	0	1	2	3	
거처번호	0	백	0	1	2	3	0	1	2	3	0	1	2	3
가구당 조사표매수	0	백	0	1	2	3	0	1	2	3	0	1	2	3

이 기 내검요원 기입란

① 성명		1	2	3	4	5
② 가구주와의 관계	성	강진로				
	일	[Digit Grid]				
③ 성별	성	남				
	일	[Digit Grid]				
4-1 세는나이	백	1				
	일	[Digit Grid]				
4-2 출생년도	백	18 19				
	일	[Digit Grid]				
4-3 생일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Digit Grid]				
4-4 만나이	백	1				
	일	[Digit Grid]				
⑤ 출생지	현제 살고 있는 집	1. 양력 2. 음력				
	다구시군 의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이 기 내검 요원 기입란

		1	2	3	4	5	
⑥ 교육 정도		1. 안다녔음 (안다나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나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나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나고있음) 2. 국민 3. 중학 1. 졸업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⑦ 통근·통학여부		1. 한다 2. 안한다 (8번으로 계속) (11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8번으로 계속) (11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8번으로 계속) (11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8번으로 계속) (11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8번으로 계속) (11번으로 계속)	
⑧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이거 내경 요원 기입간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 0 1 2 3 4 5 6 7 8 9	구 0 1 2 3 4 5 6 7 8 9	구 0 1 2 3 4 5 6 7 8 9	구 0 1 2 3 4 5 6 7 8 9	구 0 1 2 3 4 5 6 7 8 9	구 0 1 2 3 4 5 6 7 8 9
		동읍면 0 1 2 3 4 5 6 7 8 9	동읍면 0 1 2 3 4 5 6 7 8 9	동읍면 0 1 2 3 4 5 6 7 8 9	동읍면 0 1 2 3 4 5 6 7 8 9	동읍면 0 1 2 3 4 5 6 7 8 9	동읍면 0 1 2 3 4 5 6 7 8 9
⑨ 출발·도착시각		출발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출발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출발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출발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출발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도착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도착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도착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도착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도착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도착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⑩ 이용 교통수단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⑪ 혼인 상태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가구 에 관 한 사 항	① 거처의 종류	1. 2. 3. 4. 5. 6. 7. 8. 9.
	② 가구 구분	1. 주가구 2. 동거가구 3. 집단가구
	③ 점유 형태	1. 주거전용 2. 영업겸용 1. 자기집 2. 전세 3. 보증부월세 4. 월세(사글세) 5. 무상
	④ 사용 방 수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이상
	⑤ 식수의 종류	1. 상수도 2. 간이수도 3. 자가수도 4. 수동펌프 5. 우물 6. 기타
	⑥ 취사 연료	1. 연탄 2. 유류 3. 가스 4. 전기 5. 임산연료 6. 기타
	⑦ 난방 시설	1. 2. 3. 4. 5. 6. 7. 8.
	⑧ 문화시설및가재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화 5. 전축 6. 녹화재생기 7. 에어컨 8. 개인용컴퓨터 9. 자기용승용차
시설 형태	⑨ 전용시설	1. 부엌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2. 화장실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3. 출입구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⑩ 부엌시설	1. 재래식 2. 임식 3. 없음
	⑪ 화장실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음
	⑫ 목욕시설	1. 온수시설 2. 비온수시설 3. 없음
	⑬ 상수도시설	1. 있음 2. 없음

주 택 에 관 한 사 항	⑭ 외벽재료	1. 나무 2. 벽돌, 돌 3. 시멘트벽돌 4. 철근콘크리트 5. 흙, 흙벽돌 6. 기타
	⑮ 지붕재료	1. 기와 2. 슬레이트 3. 스티브(스티브기와) 4. 합석 5. 짚, 갈대 6. 기타
	⑯ 연 건 평	7평미만 7~9 9~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평이상
	⑰ 대지면적	10평미만 10~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149 149~199 199~249 249평이상
	⑱ 총 방 수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7. 개 8. 개 9. 개 10. 개 11. 개 12. 개 이상
	⑲ 거주가구수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7. 가구 8. 가구 9. 가구 10. 가구 11. 가구 12. 가구 이상
	⑳ 건축년도	1. 1950년 이전 2. 50~59 3. 60~69 4. 70~79 5. 80~85 6. 86년 7. 87년 8. 88년 9. 89년 0. 1990년
	⑳ 편의 시설	1. 부엌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이상
		2. 화장실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이상
		3. 출입구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이상
	㉑ 거주가능 가구 수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이상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 마크하실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서울 (시) 동로 (구) 경운 (동) 120번지 (읍면동) 아파트	조사구번호	0 0 4	0 1 2 3 4 5 6 7 8 9
거처번호	0 3 1	가구번호	0 4 9	0 1 2 3 4 5 6 7 8 9
가구당 조사표매수	0 0 2	가구원수	0 0 6	0 1 2 3 4 5 6 7 8 9

성명	1	2	3	4	5
강창호	강석순	강석돈	강석순	강석래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다른 구시군의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	외국	외국	외국	외국	외국
구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시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군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⑫ 1년 전 거주지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⑬ 5년 전 거주지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⑭ 경제활동상태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⑮ 산	주된 사업 내용	건축자재 알루미늄 샷시 생산	채소 소매		
	직장 사업체 이름	한성공업주식회사	우리 집		
※ 통계국 기입란	대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중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소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이거 내검
모원 기입란

이거 내검
모원 기입란

		1	2	3	4	5	
⑬ 지	⑯ 종사상의 위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⑰ 직	말은 일의 종류 알루미늄 제품을 하고 있음 부서 및 직책 선반반 기능장	채소소매를 하고 있음				
⑰ 업	※ 통계국기입란	대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중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소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⑱ 초혼연령	초혼연령	십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백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초혼연령	도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일	1.생일전 2.생일후 0 1 0 1 2 3 4 5 6 7 8 9	1.생일전 2.생일후 0 1 0 1 2 3 4 5 6 7 8 9	1.생일전 2.생일후 0 1 0 1 2 3 4 5 6 7 8 9	1.생일전 2.생일후 0 1 0 1 2 3 4 5 6 7 8 9	1.생일전 2.생일후 0 1 0 1 2 3 4 5 6 7 8 9
⑲ 생존자녀수	십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일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⑳ 사망자녀수	십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일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㉑ 총출생자녀수	십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일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전세 및 보증금					월세				
가 구 에 관 한 사 항	㉓ 임차료	억	0 1 2 3 4								
		천 만	0 1 2 3 4 5 6 7 8 9				백 만	0 1 2 3 4 5 6 7 8 9			
		백 만	0 1 2 3 4 5 6 7 8 9				십 만	0 1 2 3 4 5 6 7 8 9			
		십만원	0 1 2 3 4 5 6 7 8 9				만 원	0 1 2 3 4 5 6 7 8 9			
㉔ 월 평균 가구소득규모		1 20만원 미만	2 20만원~30만원미만	3 30만원~50만원미만	4 50만원~70만원미만	5 70만원~100만원미만	6 100만원~150만원미만	7 150만원~200만원미만	8 200만원~300만원미만	9 300만원이상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 연필로 사용하고 틀린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 마크하실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 둘째장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주소	서울 ^시 종로 ^구 경운 ^동 (120번지 동 아파트)		조사구번호	0	백	0	1	2	3	0	십	0	1	2	3	4	5	6	7	8	9			
거처번호	0	백	0	1	2	3	4	5	6	7	8	9	0	백	0	1	2	3	4	5	6	7	8	9
가구당 조사표 매수	0	백	0	1	2	3	4	5	6	7	8	9	0	백	0	1	2	3	4	5	6	7	8	9
조사표매수	0	십	0	1	2	3	4	5	6	7	8	9	0	십	0	1	2	3	4	5	6	7	8	9
가구원수	0	백	0	1	2	3	4	5	6	7	8	9	0	백	0	1	2	3	4	5	6	7	8	9

성명	1		2		3		4		5		
	강진로										
⑫ 1년 전 거주지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다른 구시군의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구시군	구		구		구		구		구		
	시		시		시		시		시		
⑬ 5년 전 거주지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다른 구시군의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구시군	구		구		구		구		구		
	시		시		시		시		시		
⑭ 경제활동상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⑮ 산업	주된 사업 내용	건축자재알루미늄 소재 생산									
	직장 사업체 이름	한성공업주식회사									
※ 통계국 기입란	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중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5 6 7 8 9	
	소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아기·내경 요원 기입란

아기·내경 요원 기입란

		1	2	3	4	5	
⑩ 종 사 상 의 지 위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⑪ 직	맡은 일의 종류	제등을 주부되고 파는 일을 하고 있음					
	부서 및 직책	출선반 기공					
⑫ 업	※ 통계국 기입란	대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중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소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⑬ 초 혼 연 령	초혼연령	십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백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초혼연령도	일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⑭ 생 존 자 녀 수 계	십	0 1	0 1	0 1	0 1	0 1	
	일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⑮ 사 망 자 녀 수 계	십	0 1	0 1	0 1	0 1	0 1	
	일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⑯ 총 출 생 자 녀 수 계	십	0 1	0 1	0 1	0 1	0 1	
	일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가 구 에 관 한 사 항	⑳ 임 차 료	전 세 및 보 증 금					월 세				
		억	천 만	백 만	십 만 원	만 원	백 만	십 만	만 원	만 원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㉑ 월 평 균 가 구 소 득 규 모	1 20만원 미만 2 20만원~30만원미만 3 30만원~50만원미만 4 50만원~70만원미만 5 70만원~100만원미만 6 100만원~150만원미만 7 150만원~200만원미만 8 200만원~300만원미만 9 300만원이상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 조사구용 조사표)

비밀의 보호
이 조사과정 알려진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정통계 제 1 호 및 제 2 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동리동(아파트)	120 번지 호
서울	종로	경운	3동1반	전화 (20-0000)

※ 이 난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이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

조사구번호	기척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매수	가구원수
004-1	31	49	2 매중 1 매	6

인 사 말 씀

경제기획원에서는 5년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에 관한 총조사를 실시하여 나라살림을 바르게 꾸려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99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이번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와 모든 주택에 대하여 총수는 물론 그 개별특성까지 파악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귀택의 식구에 대한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및 통근·통학 여부와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표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사실대로 기입하였다가 조사원이 다시 방문하였을 때에 돌려주시고 기입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원의 확인이나 추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기입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이 국가 기본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택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0년 11월 1일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조 사 대 상

이번 총조사는 11월 1일 0시 현재,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귀택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 0시 이후에 출생한 아이나 11월 1일 0시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조사되어야 할 사람	조사되어서는 안될 사람
○ 해외 또는 국내의 다른 곳에 출장, 여행, 행상 등으로 잠시 출타중인 사람	○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외지 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 경찰서 보호실, 구치소(교도소)의 미결수	○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 등에 들어가 있는 사람
○ 예비군 또는 방위소집중인 사람	○ 군 또는 전투경찰(병역의무자)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사람
○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	○ 요양소, 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중인 사람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의 탑승승무원	○ 사회시설(양로원, 부녀보호소 등)에서 살고 있는 사람
○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아직 정착 여부를 알 수 없는 1개월 미만의 부재중인 가족.	

“김영수”라는 사람은 1990년 11월 1일 현재 세는 나이는 30살이고 띠가 소띠이며,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 10월 21일 일 때 “김영수”의 만나이는 몇 살인가? **답 28세**

해설: 만나이환산표에서 세는 나이가 30살이고 소띠인 경우에 만나이는 29세 또는 28세가 되는데, 1961년 11월 1일의 음력날짜가 9월 23일이고 김영수의 음력생일 10월 21일은 음력 9월 23일 이후가 되므로 김영수의 만나이는 28세가 됨.

만(滿)나이 환산표

만나이 환산에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 일 이 려 양 11월 1일 전 이	생 일 이 려 양 11월 1일 후
1	1990	말	0	9. 14
2	1989	백	1	10. 3
3	1988	용	2	9. 22
4	1987	토끼	3	9. 10
5	1986	호랑이	4	9. 29
6	1985	소	5	9. 19
7	1984	쥐	6	10. 9
8	1983	돼지	7	9. 27
9	1982	개	8	9. 16
10	1981	닭	9	10. 5
11	1980	잔나비	10	9. 24
12	1979	양	11	9. 12
13	1978	말	12	10. 1
14	1977	백	13	9. 20
15	1976	용	14	9. 10
16	1975	토끼	15	9. 28
17	1974	호랑이	16	9. 18
18	1973	소	17	10. 7
19	1972	쥐	18	9. 26
20	1971	돼지	19	9. 14
21	1970	개	20	10. 3
22	1969	닭	21	9. 22
23	1968	잔나비	22	9. 11
24	1967	양	23	9. 29
25	1966	말	24	9. 19
26	1965	백	25	10. 9
27	1964	용	26	9. 27
28	1963	토끼	27	9. 16
29	1962	호랑이	28	10. 5
30	1961	소	29	9. 23
31	1960	쥐	30	9. 13
32	1959	돼지	31	10. 1
33	1958	개	32	9. 20
34	1957	닭	33	9. 10
35	1956	잔나비	34	9. 29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 일 이 려 양 11월 1일 전 이	생 일 이 려 양 11월 1일 후
36	1955	양	35	9. 17
37	1954	말	36	10. 6
38	1953	백	37	9. 25
39	1952	용	38	9. 14
40	1951	토끼	39	10. 3
41	1950	호랑이	40	9. 22
42	1949	소	41	9. 11
43	1948	쥐	42	10. 1
44	1947	돼지	43	9. 19
45	1946	개	44	10. 8
46	1945	닭	45	9. 27
47	1944	잔나비	46	9. 16
48	1943	양	47	10. 4
49	1942	말	48	9. 23
50	1941	백	49	9. 13
51	1940	용	50	10. 3
52	1939	토끼	51	9. 20
53	1938	호랑이	52	9. 10
54	1937	소	53	9. 29
55	1936	쥐	54	9. 18
56	1935	돼지	55	10. 6
57	1934	개	56	9. 24
58	1933	닭	57	9. 14
59	1932	잔나비	58	10. 4
60	1931	양	59	9. 22
61	1930	말	60	9. 11
62	1929	백	61	10. 1
63	1928	용	62	9. 19
64	1927	토끼	63	10. 7
65	1926	호랑이	64	9. 26
66	1925	소	65	9. 15
67	1924	쥐	66	10. 5
68	1923	돼지	67	9. 23
69	1922	개	68	9. 13
70	1921	닭	69	10. 2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 일 이 려 양 11월 1일 전 이	생 일 이 려 양 11월 1일 후
71	1920	잔나비	70	9. 21
72	1919	양	71	9. 9
73	1918	말	72	9. 28
74	1917	백	73	9. 17
75	1916	용	74	10. 6
76	1915	토끼	75	9. 24
77	1914	호랑이	76	9. 14
78	1913	소	77	10. 4
79	1912	쥐	78	9. 23
80	1911	돼지	79	9. 11
81	1910	개	80	9. 30
82	1909	닭	81	9. 19
83	1908	잔나비	82	10. 8
84	1907	양	83	9. 26
85	1906	말	84	9. 15
86	1905	백	85	10. 5
87	1904	용	86	9. 24
88	1903	토끼	87	9. 13
89	1902	호랑이	88	10. 2
90	1901	소	89	9. 21
91	1900	쥐	90	9. 10
92	1899	돼지	91	9. 28
93	1898	개	92	9. 18
94	1897	닭	93	10. 7
95	1896	잔나비	94	9. 26
96	1895	양	95	9. 15
97	1894	말	96	10. 4
98	1893	백	97	9. 23
99	1892	용	98	9. 12
100	1891	토끼	99	9. 30
101	1890	호랑이	100	9. 19
102	1889	소	101	10. 9
103	1888	쥐	102	9. 28
104	1887	돼지	103	9. 16
105	1886	개	104	10. 6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지 도 요 령 서



경 제 기 획 원

부 탁 의 말 씀

본 지도 요령서에는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를 위한 조사원의 훈련과 조사원이 수행하는 조사업무를 지도 감독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기본정책 입안에 필요한 각종자료는 물론 바로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방대한 인력이 동원되는 통계 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따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 조사의 성패는 조사현장에서 지도업무를 담당할 지도공무원 및 지도원이 맡은 바 임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공무원 및 지도원 여러분은 이러한 점을 깊이 명심하고 이 지도요령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본 조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0년 9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이 강 우

차 례

I. 조사원 훈련	5
1. 훈련전 준비 사항	5
2. 훈 련	6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6
나. 훈련실시	6
다. 조사요령서 설명상의 주의사항	
II. 실사지도의 기본방향	9
1. 실사지도 업무의 강화	9
2. 성실한 실사지도 업무의 수행	9
III. 지도공무원 및 지도원의 임무	10
1. 중앙	10
2. 지방	10
가. 시·도, 구·시·군 지도공무원	10
나. 동·읍·면 지도공무원	10
다. 지도원	11
IV. 조사원 관리	12
1. 조사원의 수행업무	12

2. 조사원 관리업무 내용	12
V. 단계별 지도, 감독 요령	14
1. 준비조사	14
가. 준비조사 전 지도공무원의 수행업무	14
나. 준비조사 기간중 지도공무원의 수행업무	16
다. 준비조사 완료후의 지도공무원의 수행업무	17
2. 실지조사	17
가. 실지조사 전 지도공무원의 수행업무	17
나. 실지조사 기간중 지도공무원의 할일	18
VI. 조사표류의 수집, 검토 및 제출	20
1. 조사원의 조사표류검토	20
2. 조사표류 보완	20
3. 조사표류 접수	21
4. 집계표의 작성과 제출	21
5. 조사표류 검토 및 제출	22
6. 조사표류 검토 및 작성시 유의사항	22
VII. 조사항목별 조사목적과 주의사항	23
1. 인구에 관한 사항	23
2. 주거에 관한 사항	31

VIII. OMR 조사표 작성 및 내검	34
1. 기본 방향	34
2. 업무 추진 과정	34
3. 작성방법	35
4. 검토 및 정리	36
IX. 조사현황 파악 및 보고	39
X. 참고 사항	43
1. 금회총조사의 특징	43
2. 센서스 명칭을 「총조사」로 변경한 이유	43
3. 인구 주택 총조사의 연혁과 법적근거	44
4. 조사구의 종류	47
5. 집계 및 보고서 발간	48
6. '90년 총조사 산업분류와 직업분류	49

I. 조사원 훈련

1. 훈련전 준비사항

조사원의 훈련을 담당해야 하는 구·시·군, 동·읍·면 지도공무원은 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훈련용 자재의 준비사항을 재 점검하고 훈련시 실습용으로 각종 표류 1부씩을 모든 조사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훈련장소와 준비물 점검

- 각급 훈련시 훈련장 정면에 현판, 정문에 입간판 설치
- 책상, 의자, 분필, 흑판, 흑판지우개, 확성기, VTR, 쾌도걸이 등

- 훈련 30분전까지 입실완료 및 출석점검

- 훈련교재 및 용품 배부

- 조사원 서약서
- 임명장
- 조사요원증 및 조사요원 마크
- 전수 및 표본 조사요령서
- 기타 실습용 조사표류 각1부

- 조사구요도

- 가구명부

- 가구일련번호표

- 전수 및 표본조사표(일반, OMR)

- 외국인 조사표

- 조사표 표지

- 훈련기관의 기관장 훈시 준비

훈련 식순에는 국민의례, 기관장훈시, 임명장수여, 조사원서약서에 의한 선서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2. 훈련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조사구별로 조사원을 점검하여 훈련 불참자, 대리 참석자 등을 파악한 후 반드시 조사원 본인을 훈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훈련 불참자는 당일 훈련이 불가능한 자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 구분 파악하여 당일에 한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준비조사 시작전 특정일을 정하여 재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원 등록 명부의 예비조사원 중에서 적임자를 투입하고, 즉시 구·시·군에 보고함과 동시에 교육 불참자와 함께 훈련을 실시토록 한다.
- 2) 본 교육 시작에 앞서 각 조사원에게 배부한 훈련 실습용 조사표류에 대해서 그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모든 조사표류의 사용시 분실 또는 훼손됨이 없도록 하고, 특히 OMR조사표 취급(관리)요령을 철저히 이해토록 주지시킨다.

나. 훈련실시

각급 교관은 조사에 관한 훈련자료를 철저히 숙독하여 조사원 훈련방법을 연구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만일 교육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면 단독으로 해결하지 말고 차상급 기관 또는 중앙과 협의를 한 후 해결하도록 하며, 다음 사항이 필히 교육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원의 준수사항을 빠짐없이 알려주도록 한다.
- 조사요령의 차이를 설명하여 조사요령서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세부사항을 교육한다.

- 총조사 개요, 취지 및 중요성 등을 모든 조사원이 숙지하여 응답 거부 발생시 설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조사요령서 참조).
- 조사일정을 엄수하여 조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은 모든 조사원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조사항목의 설명은 지역 실정에 합당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조사표류 검토 요령은 모든 조사원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요령서 설명상의 주의사항

1) 조사의 취지

가) 총조사는 인구수나 주택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관련된 제반 특성 및 주택의 구조와 설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인력이 동원되는 전국 규모의 조사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나) 조사결과 자료의 구체적인 용도를 본 요령서의 「Ⅶ. 조사 항목별 조사목적과 주의사항」란을 토대로 설명한다.

다) 조사 결과가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도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2) 조사일정

- 본 조사기간이 11월 1일부터 10일간으로 설정되었는 바 조사 기간을 엄수할 것을 당부한다.
- 조사기간중 조사상의 문제점이 있을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의 전화 번호와 담당자의 이름을 알려 주도록 한다(지도공무원 및 지도원).

3) 조사의 대상

- 상주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과 조사에서 빠지기 쉬운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면서 자세히 설명하여 준다.
- 조사대상에 관한 설명은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원 모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때까지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 가구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함으로써 동거가구가 동거인으로 조사되어 결과적으로 가구수가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상주개념과 가구에 대한 정의는 조사요령서의 「조사대상」란을 참고한다.

II. 실사지도의 기본방향

1. 실사지도업무의 강화

- 지도공무원의 정예화
- 활용가능한 최대한의 인력동원(중앙, 지방)
- 형식적인 실사 지도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현장 지도의 강화
- 일일 진도현황 파악과 문제점의 신속한 해결

2. 성실한 실사 지도업무의 수행

- 지도인력의 철저한 훈련
- 지도내용의 일관성유지
- 총조사업무에 대한 적극적 자세 확립

Ⅲ. 지도공무원 및 지도원의 임무

1. 중 앙

- 훈련 실시 및 조사기간중 해당 지역에 상주하면서 조사의 진행상황을 점검
- 해당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
- 관내 조사구를 순회하며 조사원의 업무 진척 상황을 파악
-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점의 해결 및 동 결과 보고
- 시·도의 관계관과 협의 관내 취약지역을 집중 지도 및 지원

2. 지 방

가. 시·도, 구·시·군 지도공무원

- 자체 인력동원 계획에 의거 지정된 지역을 순회 지도하면서 해당 기관의 관 심도 파악
- 조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점의 해결 및 동 결과 보고
- 관내 취약지역 집중 지도

나. 동·읍·면 지도공무원

항상 조사구내를 순회하면서 아래 사항 중점 지도 및 해결

- 조사원의 교육불참, 대리참석, 훈련도중 이탈 방지
- 중도포기, 대리조사, 탁상조사 미연에 방지
- 가구명부에 의거 적정조사표류를 배부
-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점 해결
- 담당지역 조사원의 조사 진척상황 점검
- 조사완료 및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구·시·군에 보고

- 취약지역(누락, 중복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집중 지도
- 지도원의 활동사항 지원 및 문제점 해결
- 대주민 홍보활동
- 조사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미완조사표의 보완조사(시부에서 비밀보호용 봉투를 사용한 가구의 추가질문 등)
- 완료된 조사표의 검토 및 집계

다. 지도원

조사 기간중 동·읍·면에 상시 등청하여 업무지시를 받는다.

• 준비조사

- 부재가구수 파악
- 조사구 경계 확인 지도
- 조사구 요도 작성 미비점 보완
- 누락가구 색출

• 본조사

- 회수조사표의 정리 및 부실내용 확인
- 누락거처 및 누락가구 색출
- 전출 및 전입가구의 조사 여부 확인
- 조사진도가 부진한 조사원 지원 및 독려
- 비협조가구에 대한 설득
- 조사원 유고시 이를 대신하여 조사 완료
- 조사원이 작성한 OMR조사표 확인보완조치 및 동·읍·면에 인계

432

508

IV. 조사원 관리

1. 조사원의 수행업무

- 준비조사

- 조사구 경계 확인
- 조사구 요도에 거쳐번호와 골목길 및 출입구 표시
- 가구명부 작성
- 전출 예상 가구 파악
- 부재가구수 파악
- 가구일련번호표(스티카) 칩부

- 본조사

- 조사표 내용의 확인 및 부실기재사항 보완 질문
- 부재가구에 대한 재확인
- 누락거처 및 가구 색출
- OMR조사표 이기(이기·내검요원 작성항목 제외)

2. 조사원 관리 업무 내용

- 교육받은 조사원이 실제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조사기간중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 여부
- 일정별 수행업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 여부
- 조사표의 배부 및 회수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여부
- 조사표 회수시 부실기재 내용을 찾아 면접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부
- 부재가구에 대해 지도원에게 제때에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 애경사, 외병 등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조사원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조사하여 응답가구의 불만을 사는 일은 없는지 여부
- 가구방문시 응답가구와 불미스런 일은 없는지 여부
- 현장조사시 발생된 문제점을 조사원이 감추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
- 취약지 가구 및 누락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한 조사는 적절히 하는지 여부
(다방, 식당, 주점, 공장숙직실, 기타유기장, 교회, 사찰 등에 거주하는 가구 색출)
-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단체,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를 위한 언행이나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
- 조사결과 알게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은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
- 기존의 기록에 의하여 탁상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책임있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지 여부
- 응답을 거부하는 가구를 지도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조사요원마크 및 조사요원증을 제대로 패용하고 있는지 여부

V. 단계별 지도, 감독 요령

1. 준비조사(10. 29~10. 31)

가. 준비조사전 지도공무원(지도원)의 수행업무

동·읍·면에서는 준비조사가 시작되는 첫날 09:00에 조사원을 모두 소집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원 점검

조사구별로 조사원을 점검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조사원이 있을 경우 당해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예비조사원 또는 지도원을 보충하여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2) 조사표류 및 사무용품의 배부

동·읍·면 지도공무원은 조사원별 조사표류 및 사무용품의 배부일람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 준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와 사무용품을 배부하고 조사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조치한다.

조사원에게 배부할 조사표류와 사무용품은 다음과 같다.

- 조사구 요도(보통 조사구 또는 섬조사구,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5번)당 2매)
 - 조사원은 조사구요도를 2매 수령하여 완성한 후 1부는 동읍면에 제출하고 1부는 조사에 사용한다 (동읍면에서는 조사원이 사용한 조사구요도를 1부편철하여 보관).
 -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와 관광호텔조사구(5번) 요도는 보통조사구 또는 섬조사구 요도에 위치 표시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요도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배부하지 않는다.

○가구명부

- 조사구별로 2부 작성할 수 있도록 배부한다.

- 1부는 조사 완료후 이기하여 구시군에 제출하고 1부는 동·읍·면에서 보관한다(또한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도 작성함).

○가구일련번호표(스티커)

- 모든 가구마다 첨부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기숙 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와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조사구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사무용품

조사원 1인당 연필, 지우개, 흑색볼펜, 받침대, 가방 각 1개씩을 배부한다.

3) 준비 조사 업무 설명

준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류와 용품을 배부하고 난후 다시한번 조사표류의 작성 방법과 준비조사 업무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준다.

- 관내조사구의 요도, 가구명부 및 기타 준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하기 전에 반드시 조사구경계, 지형치물 등 특정사항들이 빠짐없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조밀지역에서 인접조사구와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 조사원과 현지에 대동답사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 취약지구를 일일이 현지 답사하여 누락 및 중복 등이없는지를 확인지도한다.

- 준비조사 기간중 가구명부 작성 상태, 가구일련번호표 첨부여부, 조사구요도의 작성 상태를 점검 지도한다.

- 준비조사 기간내에 수행해야 할 업무를 반드시 확인 주지시키고 완료된 조사원에게 조사표 등 본조사 관련 서식 일체를 배부(OMR 조사표 포함)한다.

- 조사구 설정시 누락된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이 발견되면 당해 동·읍·면의 맨 마지막 조사구번호 다음에 이어지는 번호를 부여하고 조사하도

록 조치한다.

4) 조사원과의 업무 연락

동읍면에서는 조사원별 조사진도와 문제점을 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시에는 직접 혹은 유선 보고토록 조사원에게 지시하고 이러한 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전화번호와 담당자 성명을 알려주어야 한다.

- 조사구요도상의 조사구경계가 현지 확인결과 알수 없거나 불분명할 때
- 조사구 설정시 누락된 기숙사 또는 특수사회시설이 발견되었을 때
- 비협조가구가 발생하였을 때
- 조사대상파악여부가 불분명 할때
- 조사원 자신의 신상문제로 인하여 조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 준비조사 기간중 지도공무원의 수행업무

동·읍·면 지도공무원 및 지도원은 조사기간중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내를 순회하면서 조사원의 조사활동상태를 확인한다.
- 2) 준비조사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 3) 가구누락이 예상되는 취약지구는 실지방문하여 확인한다.
- 4) 조사원의 일일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기간내 준비조사 작업을 완료토록 독려한다.
- 5) 준비조사 완료상태 (조사구요도작성, 가구명부작성, 가구일련번호표 첨부 상태 등) 를 파악한다.
- 6) 부진조사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 7) 조사원의 유선보고에 대해 응답해 준다.
- 8) 조사원 동태를 매일 파악한다.

9) 조사원 유고시 예비조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그 결과를 구·시·군에 보고한다.

다. 준비조사가 완료된 후의 지도공무원의 할일

- 1) 준비조사가 끝나면 조사구별로 요도작성 상태, 가구명부 작성상태를 반드시 점검한 후 해당조사원에게 돌려준다.
- 2) 준비조사가 완료된 조사구에 대해서는 가구명부상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조사원별 조사표 소요량을 산출하여 배부일람표에 기재하고 조사표를 11월 1일에 일괄 배부토록 조치한다.
- 3) 준비조사 결과 적정가구를 현저히 초과 혹은 미달되는 조사구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구·시·군 경유 시·도 상주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2. 실지조사(11. 1-11. 10)

가. 실지조사전 지도공무원의 수행업무

동·읍·면에서는 본 조사가 시작되는 첫날 09:00에 조사원을 소집하여 조사표를 배부하고 본조사 기간중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원 점검

조사구별로 조사원을 점검하여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는지를 재점검한다.

2) 실지 조사 업무 설명

총조사 전 업무는 이 실지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동·읍·면장이 직접 조사원에게 실지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

나. 실지조사 기간중 지도공무원의 수행업무

1) 조사구별 조사 상황의 일일 점검

지도공무원은 조사구별로 조사상황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2) 부진 조사구의 집중적인 지도

일일 점검결과 부진 조사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를 실시한다.

3) 조사원 유고시의 조치

조사원이 유고되었을 경우에는 각 동·읍·면장은 지체없이 예비조사원을 투입하고 그 결과를 구·시·군을 거쳐 시·도에 보고해야 한다.

4) 비협조 가구 및 응답자를 만날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조치

비협조 가구 발생을 조사원으로부터 통고 받으면 즉시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토록 하며 맞벌이·단독가구등으로 응답자를 만날 수 없는 가구는 연락전을 활용하여 약속날짜에 재방문 조사한다. 또한 응답자가 조사내용의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비밀보호용 봉투를 활용토록 조치한다.

5) 취약 지구에 대한 방문지도

조사누락이 예상되는 취약지구(유홍가, 공장숙직실, 기숙사, 빌딩, 사찰, 여관, 호텔, 특수사회시설, 외국인 가구)에 대해서는 동·읍·면 지도공무원 혹은 지도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구 또는 사람의 조사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조사기간중 전입, 전출한 가구에 대한 조치

동·읍·면 지도공무원은 조사기준일 이후에 전출이 예상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먼저 조사하여 조사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고 조사가 완료된 거처라도 조사기간중 타지에서 전입해온 가구의 유무와 조사유무를 계속확인하여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하도록 한다.

7) 조사원 동태 파악

동·읍·면의 지도공무원 또는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구 요도의 거쳐번호 순으로 빠짐없이 조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동·읍·면 지도공무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건강 혹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있거나 대리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매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조사원이 통적부, 반적부 등을 보고 탁상에서 작성하는 사례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조사원이 조사업무에 전념치 않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V. 조사표류의 수집, 검토 및 제출

1. 조사원의 조사표류 검토

동·읍·면 지도공무원은 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요령서 「Ⅷ. 조사표류 검토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토대로 완료된 조사표 내용을 반드시 검토케 하여야 한다.

2. 조사표류 보완

동·읍·면 지도공무원은 조사표 검토가 끝난 조사표류에 대하여 조사구 요도, 가구명부 및 조사표상의 거처, 가구 또는 인구수 등 관련 항목간의 일치 여부와 각종 조사표류 작성내용(OMR조사표 이기상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실시한 후 오기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수정토록 한다.

가) 조사구요도

- 인접된 조사구 요도와 대조하여 조사구 경계의 정확성 여부와 누락, 중복 가구의 유무 등을 검토
- 조사구 요도에 표시된 지형지물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검토

나) 가구명부

- 조사구 요도의 거처번호 및 조사표의 가구번호와 일치하는지를 검토
- 가구명부에 기재된 가구주 및 거처번호 등의 기재 사항이 조사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
- 가구명부와 조사표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표를 기준으로 가구명부를 수정

다) 조사표

- 조사내용의 정확성 제고 및 통계의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관련항목의 불일치를 찾아 현장에서 보완
- 중점 내검사항
 - 조사표내용의 항목별 응답범위 체크
 - 조사표내용의 2항목이상 관련체크
 - OMR조사표 훼손상태 점검
 - 조사표내용의 이기정확성 점검

3. 조사표류 접수

- 조사표류 보완이 완료된 조사표는 동·읍·면지도공무원이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한후 조사원으로부터 조사표류 관련일체를 접수한다.
- 접수표류
 - 조사구요도
 - 가구명부
 - 일반조사표(전수, 표본)
 - OMR조사표(전수, 표본)
 - 조사요원증(해당 동·읍·면에서 필히 수집완료하여 폐기)

4. 집계표 작성과 제출

가) 집계표 작성

동·읍·면 지도공무원은 조사원이 작성, 검토가 완료된 가구명부를 토대로 집계표를 작성한다.

나) 타자료와 비교 검토

작성된 집계표 자료는 조사구별 또는 행정리(동)별로 기존 각종 자료와 비

교 검토하여 상호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본 총조사에 결합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한다.

다. 집계표의 제출

작성이 완료된 집계표는 다른 조사표류와 함께 구·시·군에 제출한다.

5. 조사표류 검토 및 제출

가. 조사표 접수대장 작성

내용검토가 완료된 조사표류에 대해서는 운송도중 훼손 또는 분실이 없도록 조사표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1부는 동·읍·면에 보관하고, 6(7)부는 구·시·군에 제출한다.

나. 조사표류 제출 및 보완

동·읍·면에 비치된 기본도는 구시군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각종 조사표류와 함께 구·시·군에 제출하며 조사구 요도는 동·읍·면에 비치된 요도를 조사원이 사용했던 요도에 의하여 수정 보완한 후 기본도와 함께 구·시·군에 제출한다.

6. 조사표류 검토 및 작성시 유의사항

동·읍·면 지도공무원이 조사표류의 검토와 작성을 할 때에는 조사요령서「IX. 조사표류검토, 정리 및 제출」을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하여야 한다.

Ⅶ. 조사항목별 조사목적과 주의사항

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상호연관 대조하여 모순된 내용 또는 누락 및 중복조사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며 항목별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에 관한 사항

가) 성 명

- (1) 성명은 조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각 조사항목란의 기입 내용 확인과 조사누락 중복의 방지 그리고 조사표의 내용 검사시 기입 미비사항에 대한 조회를 할 때에 필요하다.
- (2) 호적상의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르는 이름을 기입한다.
- (3) 이름이 아직 없는 갓난 아기가 많이 누락될 염려가 있으니 이를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나) 가구주와의 관계

- (1) 이 난은 주로 가구의 구성과 핵가족화의 정도, 세대별 가구수, 가구주의 취업 상태, 가구주의 부양가족수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 (2) 가구주란 호주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가구주는 반드시 「가구주」라 기입하고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입
 - 손 자→장남의 장남, 차남의 장남 등
 - 며느리→장남의 처, 차남의 처 등

다) 성 별

- (1) 인구에 관한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직업이나 교육정도 등 여러가지 특성이 남녀별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다.
- (2) 특히 0세아(12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남녀별 파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나 이

- (1) 대부분의 사람은 일정연령에 따라 의무교육, 취직, 결혼, 자녀의 양육, 퇴직 그리고 노후 생활 등의 과정을 거친다. 연령별 인구통계는 이러한 각 과정에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를 나타내 주며 이에 따라 교육, 고용, 청소년, 노인 등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에 정책대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장래인구 추계에 필요한 출생률과 사망률을 계산하고 생명보험과 각종 연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생명표를 작성하는 등 인구에 관한 조사항목으로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조사원으로 하여금 각별히 주의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 (2) 나이는 호적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의 만나이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나이계산 방법은 기억하고 있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 조사표에서도 세는 나이, 띠, 출생년도, 생일 등 여러가지를 질문하여 만나이를 조사원이 환산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원은 세가지 사항을 빠짐없이 질문하여 응답자가 알고 있는 항목을 모두 기입한 후 이를 토대로 일반조사표에 수록되어 있는 만나이 환산표에 의하여 만나이를 기입토록 하여야 한다.
- (3) 나이환산 방법으로 생일이 양력 10월 31일 이전일 때는 세는 나이에서 하나를 빼고 생일이 양력 11월 1일 이후일 때에는 세는 나이에서 둘을 뺀 숫자가 만나이이다.

마) 출생지, 1년전 거주지, 5년 전거주지

- (1) 인구이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하는 항목들이다. 출생에 관한 자료는 장기간에 걸친 인구이동의 양과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1년전 거주지 및 5년전 거주지 자료는 단기적인 지역간 인구이동의 양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별 장래인구 예측 등에 이용된다.
- (2) 응답자가 고령자이거나 가구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은 신혼부인일 경우 가구원들의 1년전 혹은 5년전 거주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조사원이 강압적인 언사로 질문할 경우 적당히 대답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토록 당부하여야 한다.
- (3) 출생지 : 출생지와 현지 거주하는 곳이 구·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출생지의 시·도, 구·시·군명이 기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출생지가 북한일 경우에는 북한지역 시·도와 구·시·군명을, 외국일 경우에는 국명을 기입하도록 한다.
- (4) 1년전 거주지 및 5년전 거주지 : 1년전 거주지는 1세 이상, 5년전 거주지는 5세 이상인 가구원에게만 질문한다.
1년전 또는 5년전에 살고 있던 곳과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구·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1년전 또는 5년전 거주지의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한다. 단, 행정구역명칭이 바뀌어 졌을때는 현행행정명을 기입한다.

바) 교육정도

- (1) 전국 및 지역인구의 교육수준 자료는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며 교육정도별 취업 및 실업구조에 관한 자료는 인력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활

용되며 또한 인구의 이동, 출산력 등을 교육정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육 수준과 인구이동 그리고 출산력과의 관계들을 파악할 수 있다.

(2) 이 항목 조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실제 학력보다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제의 학력을 파악하도록 조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학교라 함은 주·야간을 막론하고 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급 정규학교를 말하며 5세이상 가구원에게만 질문한다.

사) 직장 또는 학교 주소와 이용 교통 수단

(1) 이 항목은 통근·통학 인구수의 파악으로 지역별 이동 인구수를 알 수 있으며 또한 통근·통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을 파악함으로써 교통대책, 도시계획 등의 자료로 이용된다. 특히 인구가 급격히 집중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 시 중심부와 변두리 지역간의 출퇴근 인구가 현저히 증가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시 교통문제등 도시 과밀화에 따른 제반문제 해결에 귀중하게 사용된다.

(2) 정규학교나 직장에 가기 위한 출근 뿐만 아니라 이·미용학원, 자동차학원, 요리학원, 각종 강습회 참석 등을 위한 통학도 포함되어야 한다.

(3) 직장 및 학교주소의 파악은 응답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지명(동·읍·면 단위)을 기록하도록 하며 행정구역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주요지형지물을 기입한다.

응답자가 정확한 동읍면을 알지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읍·면 지도공무원과 상의하여 동·읍·면 소재지를 확인 기입토록 당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근 동명을 조사원 임의로 기록할 경우 잘 알려진 동의 이동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인근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동의 인구는 현격히 줄어들어 자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 혼인상태

- (1) 사람은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달라지고 또한 정신생활도 달라진다. 예를들면 젊은 미혼자의 경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으며 유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게 되고 여자는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사별하였거나 이혼하였을 경우(특히 이들이 전에 피부양자였을 경우) 생활보장이 문제가 된다. 이와같이 혼인상태별 인구의 구성자체에 관한 통계도 중요하지만 이 이외에도 기혼부인의 출산율에 의하여 장래 인구의 추이를 좌우하는 출산력이 분석된다. 그리고 기혼부인의 경우 출산의 경우나 육아시기에는 직장을 통상 떠나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구성에 대한 자료는 고용대책이나 노동행정의 기본자료가 된다.
- (2) 혼인상태는 조사기준일 당시에 있어서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확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사원은 응답자가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도 정확한 응답을 얻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여야 한다.

자) 경제활동상태

- 15세 이상 가구원에게만 질문
- 평상 상태(1년중 30일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의 취업여부를 질문하는 항목이며 개념 정의에 의하여 조사되도록 함.
- 남의 집에 고용된 가사종사자(가정부, 정원사, 자가용운전사) 등은 가사를 돌보고 있더라도 「1일하고 있음」에 해당.

- 1) 산 업 : ⑭란의 ①~⑤항에 ○표시된 가구원에게만 질문하여 산업분류가 가능하게 기입토록 한다.

(주된 사업내용)

가) 이 항목은 산업별 취업자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별 취업자 구성은 경제발전에 따라 크게 변한다. 즉 경제가 발달하면 농림 어업부문 취업자 구성비는 낮아지고 이에 반하여 광공업부문 취업자 구성비는 높아진다. 그러나 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고도소비 사회에 접어들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구성비가 더욱 크게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나) 취업자의 산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장 이름과 그 직장의 주된 사업내용을 묻는데 이는 어느 한가지 질문만으로는 근무하는 사업체 혹은 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 이름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내용도 빠짐없이 기입토록 하여야 한다.

다) 혼자서 장사를 하는 사람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 등은 직장의 이름이 없을 것이므로 직장 이름란에는 자기가 일한 장소를 기입토록 하며, 주된 사업내용란에는 자기가 일한 곳에서 주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기입

┌ 남의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파출부」
└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지게꾼→「지게꾼」

- 상호가 없거나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일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입

┌ 파출부→「남의 집에서」
└ 농 부→「우리 논에서」 또는 「남의 논에서」

(가) 산업 및 직업과 함께 그 사회의 경제구조를 고용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이라든지 소규모 상공업이 지배적인 전근대적 경제구조에서는 자영업주라든지 무급가족 종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구조가 근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용자가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종사상의 지위란의 취업자 구성으로부터 경제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경제정책이라든지 고용정책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나)기업요령은 조사요령서를 토대로 조사원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직업

(가)이 항목은 취업자의 직업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직업이나 산업이 크게 다를것이 없지마는 상공업이 발달하면 직업도 고도화 해가고 기술 진보와 더불어 동일산업내에도 여러가지 직업이 있게 된다. 따라서 어느 산업의 취업자가 어떠한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 필요한 직업별 전문 훈련이라든가 전문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⑭란의 ①~⑤항에 ○표시된 가구원에게만 질문하여 직업분류가 가능하게 기입토록 한다.

(말은 일의 종류)

- 다니고 있는 직장 또는 사업체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종류,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가를 기입하도록 한다. 따라서 실제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정확하게 질문하여 기입

(직위 또는 직명)

- 과장, 계장, 실장, 전무, 공장장 등 직위 또는 직명은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위한 책임의 정도 또는 수행하는 일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직업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됨.

- 주인이면서 사업체, 점포 등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이·미용사, 구멍가게 주인, 농부 등은 자영인이라 기재

(사) 혼인상태 : 15세 이상의 가구원에게만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질문 조사토록 한다.

(차) 초혼연령

- 15세이상의 기혼부인에게만 질문하며 남자와 미혼여자는 사선(\)
- 기혼부인이 사실상 낳은 자녀수를 기입
- 생존자녀수+사망자녀수=총 출생자녀수의 등식이 성립되나 총 출생 자녀수도 물어 생존자녀수와 사망 자녀수의 답변이 올바른가 확인

(1) 이 자료는 남녀별 평균 혼인연령을 파악하여 타 조사항목(총 출생아수 등)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출산력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2) 재혼한 사람은 재혼한 일자를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혼연령이 특히 높게 나타나거나 총출생아 수 등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초혼연령임을 강조하여 재차 질문토록 해야 하며 며느리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의 초혼연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없을 경우 일단 연필로 체크하였다가 재방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토록 하여야 한다.

타) 생존자녀수, 사망자녀수, 총출생자녀수

(1) 한 여자가 일생동안 출산한 모든 자녀수와 사망 자녀수를 조사하여 출산력과 사망력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2) 어렸을 때 사망한 자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자녀 또는 갓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녀, 타지에 분가해 나가 있는 자녀는 응답을 기피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수를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3) 이번 조사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원은 이 세 가지 사항을 빠짐없이 질문하여 기입하여야 하며 총 자녀수가 동거자녀, 분가자녀, 사망자녀의 합계와 차이가 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예 : 17세에 결혼한 70세 할머니가 사망자녀가 1명도 없거나 총자녀수가 1~2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경우는 누락 가능성이 높다)는 재질문을 하여야 한다.

- (4) 응답자가 다른 가구원의 총출생아 수를 모를 경우에는 재방문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특히 사망아 수에 있어 응답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당부하여야 한다.

2. 주거에 관한 사항

가. 가구에 관한 사항

- 1) 모든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하는 항목이다. 주거환경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생활, 의식구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향상과 함께 우리의 생활환경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본 조사항목은 이러한 생활환경을 조사하여 주택정책, 각종 사회정책의 기초자료와 국민생활의 각종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모든 가구에 대해 조사

- 일반가구는 ①란부터 ⑬란(⑭, ⑮란은 표본)까지 조사
- 집단가구는 ①란과 ②란만 조사하고 ③란부터 ⑭란(⑮란은 표본)까지 모두 사선(\)을 그음.

- 집단가구란 통상 혈연관계가 없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기거하는 기숙사에 수용된 인원.
- 고아원, 양로원 등의 집단 시설과 6인 이상이 동일거처에서 집단 하숙 또는 자취를 하고 있는 생활단위

3) 거처의 종류

◦주택의 요건 : ①영구건물이어야 한다.

②한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한다.

③독립된 출입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④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단,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물은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사업 또는 영업용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여기에 해당

◦주택이외의 거처 :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경우 여기에 해당

* ⑤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과 ⑥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은 자칫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문화시설 및 가재

- 현재 갖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모두에 ○표시
- 세탁기는 세탁을 위한 기기이므로 탈수만 하는 것은 제외
- 전화기는 교환 전화도 포함
- 자가용 승용차에는 자가전용만 해당되며 사업용 또는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퇴근용 승용차는 포함하지 않음

5) 주택의 주가구

⑭란부터 ⑳란까지는 ①란의 ①②③④⑤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②란의 ① 주가구(대표가구)에 대해서만 질문

- 총방수는 이집에 있는 모든 가구의 방의 총수를 말하며, 총거주 가구수는 주가구를 포함하여 이집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의 총수를 말함.
- 연건평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조사하며, 지하실은 연건평에 포함하며 대지면적은 담장안의 전면적을 기입

나. 주택에 관한 사항

- (1) 가구에 관한 사항에서 주택에 살고 있고 주가구로 파악된 가구의 응답자에게만 질문하는 사항으로서 주택의 구조와 설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택정책, 사회개발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2) 총 건평과 대지면적은 텃밭 등을 포함하여 응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원으로 하여금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준다. 만일 응답자가 건평수나 대지면적을 모르고 있거나 불합리한 응답을 할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건평수와 대지면적을 파악하여 기입토록 한다.
- (3) 건축년도도 응답자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방문 또는 간접조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VIII. OMR조사표 작성 및 내검

1. 기본방향

- 일반항목은 조사원이 이기
- 특정항목(가구주와의 관계, 출생지, 직장 또는 학교(원) 주소,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은 동·읍·면의 이기·내검요원이 이기.

2. 업무 추진 과정

- 조사원은 매일 동사무소에 출근하여 전날 조사된(조사원) 조사상황을 지도공무원에게 통보
- 조사된 매수만큼의 OMR조사표를 동·읍·면 지도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하여 OMR조사표에 이기
- 작성된 OMR조사표는 지도원 또는 동·읍·면 지도공무원에게 제출
- 동·읍·면 지도공무원 및 지도원은 조사원이 작성한 OMR조사표의 내용을 일반조사표와 대조하면서 기입내용을 점검
-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익일 출근시 조사원에게 통보하여 수정 보완토록 조치
- 다만 OMR조사표 작성시 전수조사 항목인 ①가구주와의 관계 ②출생지 ③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항목과 표본조사 항목인 ①1년전 거주지 ②5년전 거주지 항목은 조사원이 아닌 동·읍·면의 이기·내검요원이 이기·내검한다.
- 조사완료 후 이기·내검요원에 의해 조사표 전반에 걸친 기재 누락사항과 관련 항목간의 불일치내용에 대한 내용검사를 실시

3. 작성방법

가. OMR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2B연필로 기입해야 한다.

나. OMR조사표에서  내에는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는 난이며,  은 마크 「—」를 하는 난이다.

다.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 매수」,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가구원수」 등의 조사표난 외기입란과 「I성명」란의 이기내용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기한다.

라. 마크란 () 에 마크할 마크 (—) 는 아래의 양호한 마크의 “예”처럼 마크테두리 내에서 굵고 진하게 마크한다.

◦ 양호한 마크의 예 : 

◦ 불량한 마크의 예

- 가늘거나 희미한 경우 : 

- 짧은 경우 :  ,  , 

- 마크테두리에서 2mm이상 벗어난 경우 :  , 

- 마크테두리 밖에 표시된 경우 : 

- 잉크, 볼펜 등으로 마크되어 있는 경우 : 

- 가득차게 마크한 경우 : 

마.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이 OMR조사표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OMR조사표에 이기할 때에 숫자 단위별 이기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마크테두리 부분 밖에 있는 란번호()에 일체 기입하지 않아야 하고, 낙서나 이상한 표기가 없어야 한다.

아. 조사표 전면의 우측상단 및 오른쪽 타이밍 마크란 주위에는 낙서나 이상한 표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잘못 마크한 경우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컴퓨터용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일반 조사표의 정확한 내용을 다시 이기하되 지우개 가루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검토 및 정리

가. 조사표의 수량 확인

OMR조사표 매수가 일반조사표 매수와 일치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조사표 이기내용 확인

1) 난외사항

주소,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 매수,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가구원수가 누락된 조사표가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누락된 조사표가 있으면 일반조사표를 찾아 이기한다. 가구원수가 6명이상일 경우 OMR조사표를 2매이상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매장마다 난외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단, 가구원수는 2매중 첫째장만 작성).

2) 난내사항

①성명, ③성별, ④나이, ⑥교육정도, ⑦통근·통학여부, ⑨출발·도착시각, ⑩이용교통수단, ⑪혼인상태, ⑭경제활동상태, ⑮산업, ⑯종사상의 지위, ⑰직업, ⑱초혼연령, ⑲생존자녀수, ⑳사망자녀수, ㉑총출생자녀수 및 주거·주택에 관한 사항중 이기가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 기타 서류 검토 및 정리

1) 가구명부 대조 보완 및 편철

준비조사시 작성한 가구명부는 본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기간 중 전출, 누락

등에 의하여 가구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표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보완이 끝나고 나면 동·읍·면별로 편철한다.

2) 조사구역도 수정 보완

준비조사시 작성한 요도는 본조사 완료후 요도상의 변동사항(거처의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수정 보완한다.

3) 일반조사표 편철

일반조사표는 조사구별로 편철하며, 마모,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4) OMR조사표 정리

조사원은 일반조사표를 토대로 OMR조사표에 이기작업이 끝나면 조사구단위로 OMR조사표 보호용 비닐에 넣어 동·읍·면 지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표본조사구에서는 OMR 전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를 함께 사용한다.

- 표본조사구에 외국인 조사표가 있는 경우 조사구마다 OMR전수조사표·표본조사표와 OMR외국인 조사표를 분리하여 각각 보호용 비닐에 넣어 동·읍·면 지도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라. 조사표 정리요령

- 조사구마다 조사구 분류용카드 1매를 작성하여 OMR조사표 맨위에 정리한다.

- 조사구 단위마다 거처번호, 가구 번호순으로 정리한다.

- 한가구에 2매이상 조사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수조사표를 조사표매수 일련 번호순으로 먼저 정리하고 표본조사표를 조사표 매수 일련 번호순으로 정리한다.

- 담당 조사구에 외국인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조사표를 사용하여

작성한 후 별도의 보호용 비닐에 보관한다.

- * 기숙시설 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도 OMR 전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를 함께 사용하며 OMR조사표 정리 방법은 표본조사구와 동일하다.

IX. 조사현황 파악 및 보고

1. 동·읍·면 : 조사원을 하오 5:00에 소집하여 전날까지의 조사구별 진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하오 6:00까지 구·시·군에 보고
2. 구·시·군 : 각 동·읍·면 별로 진도를 보고받아 이를 집계한 후 하오 7:00까지 시·도에 보고
3. 시 · 도 : 각 구·시·군에서 보고한 상황을 집계한 후 익일 오전 9시까지 중앙에 보고

X. 참고 사항

X. 참고사항

1. 금회 총조사의 특징

본조사는 10년주기의 정기 총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통계수요에 부응하는 조사항목과 통계기법을 도입하였다.

- 소득관련항목으로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규모를 파악하고
- 대도시 교통정책 및 연구자료는 물론 지역교통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목으로 ①통근·통학 여부 ②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③출발·도착 시각 ④이용교통수단의 4가지 항목이 있고
- 주거의 안정문제와 관련된 항목은 주택의 임차 유형과 임차료 및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다가구 거주가능 주택항목이 선정되었음.
- 또한 조사결과를 보다 빨리 집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광학 판독기법(OMR)을 도입한 점이다.

2. 센서스 명칭을 『총조사』로 변경한 이유

- 『센서스』 명칭이 외래어라는 이유로 통계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 우리말 발음이 어려워 ‘선세스’, ‘쎄사스’ 등 다양한 발음과 표기가 이루어져 명칭 사용상의 혼란과 불편이 따르고 있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변경하였다.
- 선정 이유는 인구 주택의 총수와 인구 주택의 개별 특성을 망라하여 모두 조사한다는 뜻으로 일반조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총조사”로 선정하였다.

3. 인구 주택 총조사의 연혁과 법적근거

가. 연 혁

1) 인구 총조사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삼한시대부터 시작되어 삼국시대, 고려 및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어 왔음.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인구조사는 192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그후 5년마다 실시되어 이번 총조사는 14회에 해당된다.

2) 주택 총조사

1960년 이후 인구 총조사와 함께 5년 주기로 실시(단 1966년에는 인구 총조사만 실시)하였으며 이번 총조사는 6회에 해당된다.

3) 그간 실시된 인구 및 주택 총조사의 실시연도와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제 1 회	간이국세조사	1925년 10월 1일
제 2 회	조선국세조사	1930년 10월 1일
제 3 회	조선국세조사	1935년 10월 1일
제 4 회	국세조사	1940년 10월 1일
제 5 회	간이국세조사	1944년 5월 1일
제 6 회	총인구조사	1949년 5월 1일
제 7 회	간이총인구조사	1955년 9월 1일
제 8 회	인구주택국세조사	1960년 12월 1일
제 9 회	인구센서스	1966년 10월 1일
제 10 회	총인구 및 주택조사	1970년 10월 1일
제 11 회	총인구 및 주택조사	1975년 10월 1일
제 12 회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0년 11월 1일

제 13 회	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85년 11월 1일
제 14 회	인구 주택 총조사	1990년 11월 1일

나. 법적근거

1) 통계법 제 3조 및 동법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111-11-01호(인구 총조사) 및 111-11-02호(주택 총조사)

2) 통계법에는 본 총조사 실시의 법적근거 이외에도 응답자의 신고의무, 본 조사관계 공무원과 조사원의 의무규정 및 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 응답자의 신고의무

◦ 통계법 제 4조(신고)

①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에 관한 신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 7조(실지조사)

①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제 6조의 통계조사원을 포함한다)는 지정통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미리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검사 또는 조사자료제출의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비밀의 보호에 관한 규정

◦ 통계법 제 8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법 제 9조(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벌칙규정

◦ 통계법 제 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명령을 받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2.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와 조사 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통계작성의 결과를 고의로 진실과 상이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한 자

◦ 통계법 제 18조(동전)

①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항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그 직무상 지득한 제 1항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도 제 1항과 같다.

4. 조사구의 종류

가. 조사구 설정의 목적

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원의 조사 담당구역을 명확히 하여 조사대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원의 업무량을 균등히 하는 외에 앞으로 실시되는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나. 조사구 설정 방법

조사구 설정은 각 동·읍·면 별로 제작된 기본도(청사진)에 의하여 군부에서는 행정리 경계, 시부에서는 도로, 철도, 하천 등 주요한 지형지물을 조사구 경계로 하여 평균 60가구 기준으로 경제기획원 장관이 정하는 요령에 따라 설정하였다.

다. 조사구의 종류

1) 일반 조사구

조사원이 자유로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역에 설정되는 조사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보통 조사구1
- 나) 섬조사구2
- 다) 기숙시설 조사구3
- 라) 특수사회 시설 조사구4
- 마)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5

2) 특별 조사구

- 가) 외무부 조사구
- 나) 내무부 조사구

다) 법무부 조사구

라) 국방부 조사구

라. 조사구 번호

동·읍·면 별로 설정된 조사구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사구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001	-	1	조사구의 특성번호
002	-	3	1……보통조사구
003	-	4	2……섬조사구
004	-	2	3……기숙시설 조사구
005	-	1	4……특수사회시설 조사구
↓		↓	5……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
일련번호			특성번호

5. 집계 및 보고서 발간

전수·표본 및 특성별로 시의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발간

-잠정보고서 : 91.3

-2% 표본집계결과보고 : 91.6

-10% 표본 집계결과 보고서 : 91.12

-전수항목 집계결과 보고서 : 92.9

-인구이동, 출산력 보고서 : 92.12

-경제활동집계결과 보고서 : 93.2

6. '90년 총조사 산업분류와 직업분류

이번 총조사에 사용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는 별첨과 같다. 이 분류는 조사표의 산업내용과 직업내용란을 검토할 때 참고로 할수 있도록 수록하였다.

산 업 분 류

분류번호	산 업 명	분류번호	산 업 명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321	섬 유
11	농업 및 수렵업	322	의 복
111	농 업	323	가죽 및 모피제품
112	농업 서어비스업 (부화업, 방역, 수확, 탈곡)	324	신 발
113	수렵업	33	나무, 나무제품, 가구
12	임 업	311	나무, 나무제품
121	영림업	332	가 구
122	벌목업	34	종이, 종이제품, 인쇄, 출판업
13	어 업	341	종이, 종이제품
130	어 업	342	인쇄, 출판
2. 광 업		35	화 학
21	석탄광업	351	산업용 화학물(유기, 무기, 산업용 가스, 염색, 안료, 비료, 합성수지)
210	석탄광업	352	기타 화학제품(도료, 의약, 비누, 화장품, 접착제, 성냥, 잉크, 광택 제, 카본부러)
22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353	석유정제업(연료, 윤활유)
2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354	기타(연탄, 코크스)
23	금속광업	355	고무제품(타이어, 고무신, 산업 위 생고무)
230	금속광업	356	프라스틱제품(가정용품, 용기, 가 구, 신발)
29	기타광업(토사석, 화학, 비료, 광물, 염전, 비금속광업)	36	비금속 광물제품
290	기타공업	361	도기, 자기, 토기
3. 제조업		362	유리, 유리제품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69	기타(벽돌, 기와, 타일, 시멘트, 석 회, 석고, 암면, 시멘트벽돌)
311-312	식료품		
313	음료품		
314	담 배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분류번호	산 업 명	분류번호	산 업 명
37	제1차금속	527	구조강건설업
371	제1차철강(제철, 제강, 압연, 주조, 단조)	528	방수, 방습, 내화공사업
372	제1차 비철금속	529	기타(유리공사, 정지공사, 굴정공사, 해체공사)
38	조립금속, 기계, 장비	6.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381	조립금속(납붙이, 수공구, 철물금속가구, 구조금속제품, 금속 포장용기)	61	도매업
382	기 계	611	일반도매
383	전기기계(전자)	612	상품중개업
384	운수장비	613	무역업
385	과학장비, 광학제품	62	소매업
390	기타(장신구, 악기, 운동구, 사무용품, 칠기, 우산, 가발, 라이터, 장난감, 단추)	621	일반소매업
4. 전기, 개스, 수도사업		622	종합소매업
410	전기, 개스, 증기	63	음식, 숙박업
420	수도사업	631	음식점업
5. 건설업		632	숙박업
51	종합건설업	7. 운수, 창고, 통신업	
511	건 물	71	운수, 창고
512	토 목	711	육상운수
52	전문직별 건설업	712	수상운수
521	연관, 난방	713	항공운수
522	포장, 실내장식	719	운수관리 서어비스(화물운송, 여행알선, 화물중개, 포장, 보관, 창고업)
523	전기공사업	720	통신업(우편, 전신전화업)
524	석공, 미장공사업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25	목공사업	810	금융업
526	지붕잇기, 함석공사업	820	보험업
		830	부동산업
		84	사업서비스업

분류번호	산 업 명	분류번호	산 업 명
841	법무, 회계 및 기타 사무 관련	939	기타(종교, 정치단체 등)
843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	94	오락, 문화서어비스
844	기계장비 임대이외의 기타 사업서비스업	941	영화, 방송, 연극, 연예인
845	기계 및 정비임대업	942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9.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		949	기타 오락(운동설비운영, 경기장운영, 유기장운영, 공원, 해수욕장)
91	공공행정 및 국방	95	개인, 가사서어비스
911	중앙정부사무	951	수선업(신발, 가방, 전기제품, 자동차, 자건거, 시계, 약기, 우산)
912	지방정부사무	952	세탁, 염색
920	위행서어비스	953	가사서어비스
93	사회서어비스	959	기타(이발소, 미장원, 사진관, 장의사, 결혼상담소, 예식장, 육탕업)
931	교 육	960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주한 외국공관)
932	학술연구	000	기타 분류불능산업
933	의료, 보건, 수의서어비스		
934	사회복지		
935	기업, 전문, 노동단체		

직 업 분 류

대분류 0/1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분류번호	직 업 명	분류번호	직 업 명
01	자연 과학자 및 관련 기술공	042	선박 고급 승무원 및 수로안내원
011	화학자	043	선박관리기술자
012	물리학자	05	생명 과학자 및 관련 기술공
013	달리 분리되지 않은 자연과학자	051	생물학자 및 관련과학자
014	자연과학기술공	052	세균학자, 약물학자 및 관련 과학자
02/03	건축 기술자, 공학 기술자 및 관련 기술공	053	농경학자 및 관련과학자
021	건축기술자 및 도시계획 기술자	054	생명과학기술공
022	토목기술자	06/07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및 관련 종사자
023	전기 및 전자기술자	061	의 사
024	기계기술자	062	의료보조원
025	화학기술자	063	치과의사
026	금속기술자	064	치과보조원
027	광산기술자	065	수의사
028	산업경영기술자	066	수의 보조원
0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술자	067	약 사
031	측량기사	068	약사 보조원
032	제도사	069	영양사 및 보조영양사
033	토목기술공	071	직업간호원
034	전기 및 전자기술공	0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호원
035	기계 기술공	073	직업 보조원
036	화학 기술공	07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사원
037	금속 기술공	075	검안사 및 안경조종사
038	광산 기술공	076	의료 방사선기술공
0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학 기술공	077	한의사
04	항공기 및 선박 고급 승무원	078	한의보조원
041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	0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 종사자

분류번호	직업명	분류번호	직업명
08.	통계학자, 수학자, 체계분석가 및 관련 기술공	15	저작자, 언론인 및 관련 작가
081	통계학자	151	저작가 및 평론가
082	수학자 및 보험수리자	1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작자, 언론 인 및 관련작가
083	체계분석가	16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 창작 예술가
084	통계 및 수학기술공	161	조각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09	경제학자	162	상업미술가 및 도안사
090	경제학자	163	사진사 및 촬영사
11	회계사	17	작곡가 및 연예인
110	회계사	171	작곡가, 음악가 및 가수
12	법무 종사자	172	안무가 및 무용가
121	변호사 및 검사	173	배우 및 무대감독
122	판사	174	제작가, 연출가
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법무종사자	175	곡마단 연예인
13	교원	1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연예인
131	대학 및 전문교육 교원	18	체육인 및 관련 종사자
132	중고등교육 교원	180	체육인 및 관련종사자
133	초등교육 교원	19	기술및 관련직 종사자
134	학령전 교육 교원	191	사서, 기록보관인 및 관리인
135	특수교육 교원	192	사회학자, 인류학자 및 관련 학자
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원	193	사회사업가
14	종교 관계 종사자	194	인사 및 직업전문가
141	성직자 및 종교교단의 관련 종사자	195	언어학자, 번역사 및 통역사
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교관계 종사 자	199	기타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대분류 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분류번호	직업명	분류번호	직업명
20	입법공무원과 정부 관리직 공무원	21	관리자
201	입법 공무원	211	총괄 관리자
202	정부 관리직 공무원	212	생산관리자(농장관리인 제외)
		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리자

대분류 3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분류번호	직업명	분류번호	직업명
30	사무원 감독자	353	전신전화국장
300	사무원 감독자	3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 통신사업 감독원
31	정부 행정 공무원	36	교통 안내원
310	정부행정공무원	360	교통 안내원
32	속기사, 타자원 및 카드 및 테이프 천공원	37	우편물 취급 사무원
321	속기사, 타자원 및 전신 타자원	370	우편물 취급 사무원
322	카드 및 테이프 천공원	380	전화 및 전신기 조작원
33	경리원, 출납원 및 관련 종사자	380	전화 및 전신기 조작원
331	경리원 및 출납원	39	달리 분리되지 않은 사무 및 관련 직 종사자
3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리원, 출납원 및 관련 종사자	391	물품관리원
34	계산기 조작원	392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 사무원
341	기장기 및 계산기조작원	393	문서 및 보고사무원
342	자동자료 처리기 조작원	394	안내원 및 여행사 사무원
35	운수 및 통신 사업 감독자	395	도서 및 문서 정리원
351	철도역장	3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원
352	우체국장		

대분류 4 판매종사자

분류번호	직업명	분류번호	직업명
40	도 소매 관리자	44	보험, 부동산, 증권가 기업서어비스 판매원 및 경매업
400	도소매 관리자		
41	도 소매 자영자	441	보험, 부동산 및 증권거래인
410	도소매 자영자	442	기업서어비스 판매원
42	판매 감독자 및 구매원	443	경매인 및 감정인
421	판매 감독자	45	판매원, 점원 및 관련 종사자
422	구매원	451	판매원, 점원 및 선전원
43	기술 판매원, 판매 외무원 및 제조업체 판매 대리인	452	행상인, 외판원 및 신문팔이
		49	달리 분리되지 않은 판매 종사자
431	기술판매원 및 서어비스 지도원	4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판매 종사자
432	판매외무원 및 제조업체 판매대리인		

대분류5 서비스 종사자

분류번호	직업명	분류번호	직업명
50	요식 숙박업 관리	54	달리 분리되지 않은 가정부 및 관련 가사 종사자
500	요식숙박업 관리자		
51	요식 숙박업 자영자	54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부 및 관련가사 종사자
510	요식숙박업 자영자		
52	가사 및 관련 서어비스 감독자	55	건물 관리원, 청소원 및 관련 종사자
520	가사 및 관련 서어비스 감독자		
53	조리사, 웨이터, 바텐더 및 관련 종사자	551	건물관리원
		552	청소원 및 관련종사자
531	조리사	56	세탁공
532	웨이터, 바텐더 및 관련 종사자	560	세탁공

분류번호	직업명	분류번호	직업명
57	이발사, 미용원 및 관련 종사자	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어비스직 종사자
570	이발사, 미용사 및 관련종사자		
58	보안 업무 종사자	591	안내원
581	소방원	592	장의사 및 시체방부처리사
582	경찰관 및 수사관	599	기타 서어비스 종사자
5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안업무 종사자		

대분류 6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

분류번호	직업명	분류번호	직업명
60	농장 관리자 및 감독자	626	가금사육종사자
600	농장관리자 및 감독자	627	원예종사자 및 정원사
61	농업 경영자	628	농기계 조작용
611	일반농업경영자	6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 종사자
612	전문농업경영자		
62	농업 및 축산 종사자	63	임업종사자
621	일반농업 종사자	631	벌채원
622	전답작물 및 채소농업 종사자	632	임업종사자(벌채제외)
623	과수원 및 유사교 관목 재배종사자	64	어부, 수렵인 및 관련 종사자
624	가축 사육 종사자(가금제외)	641	어부
625	낙농 종사자	6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어부, 수렵인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7/8/9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분류번호	직업명	분류번호	직업명
70	생산감독	744	증류기 및 반응기 조작공
700	생산감독	745	정유공
71	광원, 채석원, 굴정원 및 관련 종사자	7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 가공공 및 관련 종사자
711	광원 및 채석원	75	방적공, 제직공, 편직공, 염색공 및 관련 종사자
712	광물 및 석재처리공	751	섬유준비공
713	굴정원, 천공원 및 관련종사자	752	방적공 및 권사공
72	금속가공 처리공	753	제직기 및 편직기 조정공과 무늬카드 준비공
721	금속 제련, 전련 및 정련로공	755	편직공
722	금소압연공	756	표백공, 염색공 및 섬유제품완성공
723	금속 용해공 및 재가열공	76	가축 처리공
724	금속주조공	761	무두질공 및 양피처리공
725	금속주형공 및 중자제조공	762	모피손질공
726	금속소둔공, 경화공 및 표면 경화공	77	음식료품 가공 처리공
728	금속도금공	771	제분공 및 관련종사자
7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가공처리공	772	제당공 및 정당공
73	목재 가공 종사자 및 제지공	773	도살공 및 육류가공공
731	목재가공처리공	774	식품저장공
732	제재공, 합판제조공 및 관련목재가공종사자	775	낙농품 가공공
733	펄프 제조공	776	제빵공 및 제과공
74	화학물 가공공 및 관련 종사자	777	차, 커피 및 코코아 제조공
741	파쇄공, 마쇄공 및 혼합공	778	양조공 및 음료제조공
742	조제공, 하소공 및 관련 처리공	7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음식료품 가공 처리공
743	여과기 및 분리기조작공		

분류번호	직업명	분류번호	직업명	
78	담배 제조공	83	대장공, 공구 제작공 및 기계공구 조작공	
781	담배 제조공	831	대장공 및 단야압연기 조작공	
782	여송연 제조공		832	공고제작공, 금속원형제작공 및 금속정반공
783	권련 제조공		833	기계공구조정 조작공
7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담배 제조공		834	기계공구 조작공
79	의복 제조공, 재봉공, 가구내장공 및 관련 종사자		835	금속연삭공, 연마공 및 공구갈이공
791	양복공 및 양장공	8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대장공, 공구 제작공 및 기계공구 조작공	
792	모피 양복공 및 관련종사자	84	기계설비공, 기계 조립공 및 정밀 기구 제작공(전기제외)	
793	제모공		841	기계설비공 및 기계조립공
794	원형제조공 및 재단공		842	시계 및 정밀기구 제작공
795	재봉공 및 자수공		843	자동차 정비공
796	가구내장공 및 관련종사자		844	항공기 기관 정비공
7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복제조공, 재봉공, 가구내장공 및 관련종사자	8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설비공, 기계조립공 및 정밀기구 제작공(전기제외)	
80	제화공 및 가죽제품 제조공	85	전기 설비공 및 관련전기 전자공	
801	제화공 및 구두수선공		851	전기설비공
802	구두재단공, 조립공, 재봉공 및 관련종사자		852	전자설비공
803	가죽제품 제조공		853	전기 및 전작장비 조립공
81	가구 제조공 및 관련 목공	854	라디오 및 TV수리공	
811	가구제조공	855	전 공	
812	목공 기계 조작공	856	전신 및 전화시설설공	
8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제조공 및 관련 목공	857	전선 가설공 및 케이블 접속공	
82	돌 재단공 및 돌 조작공	8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설비공 및 관련전기 및 전자공	
820	돌 재단공 및 돌 조작공			

분류번호	직업명	분류번호	직업명
86	방송 및 음향 장비 조작공과 영상공	92	인쇄공 및 관련 종사자
861	방송장비 조작공	921	식자공
862	음향장비 조작공 및 영상공	922	인쇄공
87	연관공, 용접공, 판금공, 구조 금속 준비공 및 건립공	923	제판공
871	연관공 및 배관공	924	인쇄조판공(사진요판공제외)
872	용접공 및 화염 절단공	925	사진요판공
873	판금공	926	제본공 및 관련종사자
874	구조금속 준비공 및 건립공	927	사진암실종사자
88	장신구 및 귀금속 세공공	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쇄공 및 관련종사자
880	장신구 및 귀금속 세공공	93	도장공
89	유리성형공, 도기공 및 관련 종사자	931	건설도장공
891	유리성형공, 절단공, 연마공 및 완성공	9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장공
892	도자기공 및 연마석 성형공	9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893	유리 및 도기 가마공	941	악기제조공 및 조율사
894	유리조각공 및 식각공	942	바구니 세공공 및 슬제조공
895	유리 및 도기칠공과 장식공	943	비금속 광물제품제조공
8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리성형공, 도기공 및 관련종사자	949	기타 생산 및 관련 종사자
9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공)	95	벽돌공, 목공 및 기타 건설 종사자
9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공(타이어 제조공 및 타이어 경화공제외)	951	벽돌공 및 타일 부착공
902	타이어 제조공 및 경화공	952	철근콘크리트공, 시멘트공 및 테라조공
91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공	953	지붕잇기공
910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공	954	목공, 소목공 및 조각목제공
		955	미장공
		956	단열공
		957	유리직공
		9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설종사자

분류번호	직업명	분류번호	직업명
96	고정기관 및 관련 장비 운전원	98	수송 장비 운전사
961	발전기 운전원	981	갑판원, 거룻배선원 및 뱃사공
9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정기관 및 관련장비 조작공	982	선박기관실원
97	화물 취급 및 관련 장비 조작공, 부두 노동자 및 화물 취급인	983	철도기관사 및 화부
971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	984	화물열차 차장, 산호수 및 전철수
972	색구공 및 케이블 접속공	985	자동차 운전사
973	기중장비 운전공	986	우마부
974	운토기 및 관련기계 운전공	9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장비 운전 사
9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 운전공	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무자
		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무자

대분류 × 분류불능자

분류번호	직업명
X1	신규 구직자
X10	신규구직자
X2	적절히 분류할 수 없는 직업 종사 자
X20	적절히 분류할 수 없는 직업 종사 자
X3	직종을 보고하지 않은 종사자
X30	직종을 보고하지 않은 종사자

가 구 명 부

(전수·표본)

이 조사구의 조사표배수는
가구수가 2주, 6인 이상
가구수가 9가구이므로
41매가 된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조사구번호	조사표매수	가구명부매수	조사원	이 수 영
서울	종로	사직	012-1	일반 41매 OMR 82매	1매중 1매	지도원	김영수
						지도공무원	박홍명

① 거 처 번 호	② 가 구 일 련 번 호	③ 주 소			④ 가 구 주 또는 대 표 자 성 명			⑤ 가 구 원 수			⑥ 가 구 의 종 류			⑦ 거 처 의 종 류					⑧ 번	⑨ 동·어 가 구 분		⑩ 비 고			
		리	번	동	성 명	본 판	학 려	계	남	여	일 반 가 구	집 단 가 구	외 국 인 가 구	단 독 주 택	아 파 트	연 립 주 택	다 세 대 주 택	비 거 주 용		건 물 내 의 주 택	주 택 의 외 의 거 처		농	어	
1	1	23	3/1	張 경관	결성	고졸	4	2	2	0			0												
	2			趙 고현	김제	고졸	7	3	4	0															
2	3	38	3/1	차 희순	강릉	고졸	5	2	3	0			0												
	4			尹 세환	과평	고졸	6	4	2	0															
3	5	37	3/1	金 백두	김해	고졸	3	2	1	0			0												
	6			韓 옥길	황주	대졸	4	1	3	0															90.11.2 전출
4	7	34	3/1	崔 학준	간성	대졸	6	2	4	0			0												
	8			權 창희	안동	대졸	2	1	1	0															
5	9	29	3/1	鄭 종만	경주	대졸	4	1	3	0			0												
	10			宋 기래	김해	대졸	4	2	2	0															
6	11	36	3/2	홍 영배	해평	고퇴	6	4	2	0			0												
	7	35	3/2										0												빈집
8	12	43	3/2	李 고선	전주	고퇴	5	2	3	0			0												
	13			洪 승표	강양	고퇴	3	2	1	0															
9	14	44	3/2	吳 광수	고창	고퇴	5	3	2	0			0												
	15			姜 흥묵	진주	중졸	3	1	2	0															
10	16	45	3/2	홍 기락	창녕	중졸	7	3	4	0			0												
	17			梁 재건	간원	중졸	1	1	0	0															
11	18	146	4/1	沈 진로	청송	중졸	7	7	0	0			0												
12	19	146	4/1	安 석환	광주	중졸	5	2	3	0			0												
13	20	146	4/1	南 영덕	고성	대졸	6	2	4	0			0												
14	21	146	4/1	申 봉순	평산	대졸	6	4	2	0			0												
15	22	146	4/1	康 영봉	신천	대졸	5	4	1	0			0												
16	23	146	4/1	潘 장우	거제	대졸	4	2	2	0			0												
17	24	148	4/1	林 순방	다주	대졸	7	3	4	0			0												
18	25	148	4/1	陳 명호	여양	대학	3	1	2	0			0												
19	26	148	4/1	柳 종호	고흥	중퇴	2	1	1	0			0												
20	27	148	4/1	呂 길영	성주	대퇴	2	1	1	0			0												
21	28	148	4/1	田 희철	판양	국퇴	5	3	2	0			0												
22	29	148	4/1	方 정환	문양	대퇴	4	1	3	0			0												
23	30	152	4/1	卜 제로	면천	고졸	3	2	1	0			0												
24	31	154	4/1	후 상제	연안	고졸	4	2	2	0			0												
1	32	23	3/1	安 철호	광주	고졸	2	1	1	0															주택(준비)라
3	33	37	3/1	南 료진	고성	고졸	2	0	2	0															90.11.3 전입
소 계							138	71	67	31	1	0	10	0	12	0	1	1	1	0	0				(주택, 전출도 동일)

「② 가구일련번호」의 합계와 「⑥ 가구의 종류」의 합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이 명부에서는 「② 가구일련번호」가 맨 끝번호 33에서 「⑥ 가구일련번호」 6번 가구가 전출이므로 32 가구이다

「① 거처번호」의 제일 큰 숫자와 「⑦ 거처의 종류」 총합계와는 일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① 거처번호」와 「⑦ 거처의 종류」는 주가구만 기입하고 등거가구는 사선(\\)을 짓기 때문이다.

전거주지에서 조사되었던 것을 물어, 조사가 안되었을 경우 전입일시를 기재하고 조사한다. 이때 동읍면에 제출한 식도 동일하게 수정보완한다 (주택, 전출도 동일)

가구에 관한 사항 모든 가구에 해당됩니다.

① 거처의 종류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한 종류의 집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⑥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⑦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⑧ 사무실 겸용 주택(오피스텔) ⑨ 기타(음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

② 가구 구분
택이 이집을 대표하는 주가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세를 들어 사는 가구들만이 있을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가 주가구입니다.
 ① 주가구 ② 동거가구 ③ 집단가구
 ※ 집단가구는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를 의미하며 ③ 집단가구에 해당되면 ③~⑨까지 사전(\\)을 긋습니다.

③ 점유형태 ㉔ 입차료
이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와 영업을 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 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전세 및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 나 됩니까?

① 주거 전용	① 자기 집	전세 및 보증금			
	② 전 세	억	천만	백만	십만원
② 영업 겸용	③ 보증부 월세		/	5	0
	④ 월세(사글세)	월 세			
	⑤ 무 상	백만	십만	만원	
			/	0	

 ※ 사글세의 경우에는 한 달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④ 사용 방수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봅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⑥ 6개이상

⑤ 식수의 종류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상수도 ② 간이수도 ③ 자가수도
 ④ 수동펌프 ⑤ 우물 ⑥ 기타()

⑥ 취사연료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연탄 ② 유류 ③ 가스
 ④ 전기 ⑤ 임산연료 ⑥ 기타()

⑦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① 재래식 아궁이 ② 연탄 아궁이 ③ 연탄 보일러
 ④ 단독 기름보일러 ⑤ 단독 가스보일러 ⑥ 중앙난방보일러
 ⑦ 전기 보일러 ⑧ 기타()

⑧ 문화시설 및 가재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합니다.
 ① 텔레비전 ② 냉장고 ③ 세탁기
 ④ 전화 ⑤ 전축(오디오) ⑥ 녹화재생기(V.T.R)
 ⑦ 에어컨 ⑧ 개인용 컴퓨터 ⑨ 자가용 승용차

⑨ 전용시설
택에서는 다음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 부엌 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2. 화장실 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3. 출입구 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또는 없음

⑩~⑬ 시설형태
단독사용 또는 공동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음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⑩ 부엌 시설: ① 재래식 ② 입식 ③ 없음
 ⑪ 화장실 시설: ① 재래식 ② 수세식 ③ 없음
 ⑫ 목욕 시설: ① 온수시설 ② 비온수시설 ③ 없음
 ⑬ 상수도 시설: ① 있음 ② 없음

㉔ 월 평균 가구 소득 규모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월 평균 얼마 나 됩니까? ※ 지난 1년(1989. 11. 1~1990. 10. 31) 동안의 총소득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소득세나 상여금은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① 20만원 미만 ②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③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④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⑤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⑥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⑦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⑧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⑨ 300만원 이상

○ 지난 1년간(1989. 11. 1~1990. 10. 31)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인 총소득액을 평균 한 한 달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난달의 소득이나 현재의 가구원 소득을 기준해서는 안됩니다.
 ○ 가구원 전체 총소득이란, 가족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영업사용인 또는 동거인과 같이 가족이 아닌 사람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 소득이 현물(쌀, 보리 및 공업제품 등)일 경우에는 그 현물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실업자가 취업을 해서 12개월이 안된 경우 및 신규취업자의 취업 기간이 12개월이 안된 경우 등은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실제 취업기간(개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포함되어야 할 소득]
 ○ 근로소득: 임금, 급여, 봉급, 일당, 상여금, 봉사료(팁), 부업소득 및 기타 근로소득

월 평균 가구 소득 규모 작성기준

○ 임대소득: 건물임대소득, 토지임대소득, 자동차임대소득, 특허권 등 기타 임대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및 점포나 소규모 공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의 사업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난 다음의 소득
 ○ 이전소득: 정부 및 사회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에서 정부 및 사회단체에 준 기부금·분담금 등을 뺀 잔액, 가족·친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가족·친지에게 준 보조금을 뺀 잔액, 연금
[포함되어서는 안될 소득 또는 수입]
 ○ 복권당첨금, 경조사시 들어온 수입금, 퇴직일시금, 상속재산액, 각종 보험금 탄 것, 재산을 매각한 수입, 저축금 탄 것, 깃돈 탄 것, 빌려준 돈 회수금

주택에 관한 사항 주가구만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이 주택을 대표하는 주가구만 해당됩니다. (가구에 관한사항 ① 거처의 종류 ①~⑤에 해당되면서, ②가구 구분란의 ①에 해당되는 가구)

⑭ 외벽재료
이 주택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벽재료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재료를 말합니다.
 ① 나무 ② 적벽돌, 돌 ③ 시멘트제품
 ④ 철근콘크리트 ⑤ 흙, 흙벽돌 ⑥ 기타()

⑮ 지붕재료
이 주택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기와 ② 슬레이트 ③ 슬래브(슬래브기와)
 ④ 합석 ⑤ 짚, 갈대 ⑥ 기타()

⑯ 연건평 및 대지 면적
이 주택의 연건평과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기입하고 대지 면적은 담장 안의 전면적을 기입합니다. ※ 평 또는 m² 중 한쪽만 기입합니다.
 ⑯ 연건평 평 ⑰ 대지 면적 평
 m² m²

⑱ 총방수 및 거주 가구수
이 주택에는 방이 모두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보며, 동거가구의 방수 및 가구수도 포함됩니다.
 ⑱ 총 방수 개
 ⑲ 거주 가구수 가구

⑳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
 ① 1950년 이전 ② 1950년~1959년
 ③ 1960년~1969년 ④ 1970년~1979년
 ⑤ 1980년~1985년 ⑥ 1986년
 ⑦ 1987년 ⑧ 1988년
 ⑨ 1989년 ⑩ 1990년

㉑ 편의시설수
이 주택에는 다음 시설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1. 부엌: 개
 2. 화장실: 개
 3. 출입구: 개

㉒ 거주 가능 가구수
이 주택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가구

응답자 성명 **장덕순** 서명 **장덕순** 조사원 성명 **김영수** 서명 **김영수**

● 이제 택의 조사표가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 택을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이 조사표를 잘 전달하여 주 바랍니다.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시 : 산업, 종사상의 지위 및 직업의 기입 예

⑮ 산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업
주된 사업 내용 벼농사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사외 농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음
직장·사업체 이름 논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⑮ 산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업
주된 사업 내용 전직를 원단을 생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회사 회장과 원단을 하고 있음
직장·사업체 이름 동방기업사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총무부 운전기사

⑮ 산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업
주된 사업 내용 도목건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경리사무를 하고 있음
직장·사업체 이름 경제건설주식회사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경리과 경리계장

⑮ 산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업
주된 사업 내용 아동복 제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일을 분담해주고 재봉을 겸한다
직장·사업체 이름 한길섬유주식회사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봉제부 반장

		1	2	3	4	5	
만 15세 이상 태어난 분	경제활동 ⑭ 이 분은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중 30일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11월 1일 직전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에 해당되고, 11월 1일 직전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에 해당됩니다. ※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은 ⑮ 산업부터 기입하시고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분은 ⑮ 산업부터 ⑰ 직업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산업 ⑮ 이 분이 다니시는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직장명이나 사업체명이 있다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단 산업 기입 예를 참조하시고 주된 사업 내용을 기입할 때에는 생산 품목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주된 사업 내용 산죽자재 알루미늄 소재 생산 직장·사업체 이름 한성공업주식회사	주된 사업 내용 채소 소매 직장·사업체 이름 우리 집				
	종사상의 지위 ⑯ 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상단의 종사상의 지위 기입 예를 참조하여 기입합니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직업 ⑰ 이 분은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 및 직책도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단의 직업 기입 예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말은 일의 종류 알루미늄 재봉을 하고 있음 부서 및 직책 산반반 기능공	말은 일의 종류 채소 소매를 하고 있음 부서 및 직책				
	혼인상태 ⑪ 이 분은 결혼하였습니까? 사실상의 혼인상태에 ○표합니다.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				
만 15세 이상 중혼 ⑫ 결혼은 세는 나이로 몇 살 때 하였습니까? 결혼한 날짜는 생일전입니까? 후입니까? 결혼은 몇 년도에 하였습니까?	26 살 때 ① 생일전 ② 생일후 1982 년도	24 살 때 ① 생일전 ② 생일후 1982 년도					
만 15세 이상 중 기혼 여자만 기입합니다	생존 자녀 수 ⑱ 부인이 낳은 자녀중 현재 생존해 있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부인이 낳은 자녀중 외지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남 2 명 여 1 명 계 3 명	남 2 명 여 1 명 계 3 명				
	사망 자녀 수 ⑳ 부인이 낳은 자녀중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남 0 명 여 0 명 계 0 명	남 0 명 여 0 명 계 0 명				
	총출생 자녀 수 ㉑ 지금까지 부인이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남 2 명 여 1 명 계 3 명	남 2 명 여 1 명 계 3 명				

↓ 뒷면에 계속됩니다.

인구에 관한 사항

		1	2	3	4	5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모든 기입합니다	성명	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가구주부터 기입하여 주시고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강창호	장득순	강석른	강석순	강석태
	가구주와의 관계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장남, 「장남의 장녀」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가구주	처	장남	장녀	차남
	성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해당번호에 ○표합니다.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나이	4-1 세는 나이로 몇 살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입합니다.	34 살	32 살	8 살	6 살	3 살
		4-2 출생년도 이 분은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무슨 띠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출생년도와 띠를 기입합니다.	1957 년도 닭 띠	1959 년도 돼지 띠	1983 년도 돼지 띠	1985 년도 소 띠	1988 년도 용 띠
		4-3 생일 실제로 집에서 쇠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쇠는 생일을 기입합니다.	4 월 27 일 ① 양력 ② 음력	8 월 7 일 ① 양력 ② 음력	10 월 3 일 ① 양력 ② 음력	10 월 26 일 ① 양력 ② 음력	11 월 8 일 ① 양력 ② 음력
		4-4 만 나이 이 난은 앞면에 있는 만나이 환산표를 보시고 정확한 만나이를 계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만 33 살	만 31 살	만 7 살	만 5 살	만 1 살
	출생지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출생 당시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합니다. ※ 북한의 경우에는 출생 당시의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되 시·도명 앞에는 북한을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경상북도(국) 포항 구(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경상북도(국) 포항 구(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만 1세 이상 거주지	지금으로부터 1년전(89.11.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고 외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만 5세 이상 거주지	지금으로부터 5년전(85. 11. 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고 외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 시도(국) 구시군
교육정도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입합니다. ※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말합니다. ※ 현재 1학기 이상 휴학상태인 경우는 중퇴에 해당됩니다.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④ 고 동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교) ⑦ 대 학 원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④ 고 동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교) ⑦ 대 학 원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④ 고 동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교) ⑦ 대 학 원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④ 고 동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교) ⑦ 대 학 원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④ 고 동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교) ⑦ 대 학 원	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④ 고 동 등 ⑤ 전 문 대 ⑥ 대 학(교) ⑦ 대 학 원
만 12세 이상 되는 분만 기입합니다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직장 또는 학교(원)를 다니는 경우에도 통근·통학에 포함됩니다. ② 안한다에 해당되는 분은 ⑧에서 ⑩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직장주소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면 직장 또는 학교(원)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② 다른 동읍면으로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곳의 행정구역명을 정확히 기입하시고 모를 경우에는 직장 또는 학교(원)의 이름이나 인근 유명한 건물 이름 또는 특징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 서울특별시(도) 구로(구)시군 구로(동)읍면 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	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 시(도) 구시군 동읍면 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				
출발·도착시간	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	·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7 시 10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7 시 50 분	·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	·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	·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	·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	
이용교통수단	평소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할 때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근·통학시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번호에 +표합니다.	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	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 조사구용 조사표)

비밀의 보호
 이 조사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정통계 제 1 호 및 제 2 호

시	구	동	통리동(아파트)	120번지 호
서울	종로	경운	3동1반	전화 (720-0000)

※ 이 난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이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매수	가구원수
004-1	31	49	2매중 1매	6

인사 말씀

경제기획원에서는 5년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에 관한 총조사를 실시하여 나라살림을 바르게 꾸려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99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이번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와 모든 주택에 대하여 총수는 물론 그 개별특성까지 파악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귀댁의 식구에 대한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및 통근·통학 여부와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표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사실대로 기입하였다가 조사원이 다시 방문하였을 때 돌려주시고 기입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원의 확인이나 추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시리라 생각되지만, 기입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이 국가 기본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0년 11월 1일

경제기획원 장관

조사대상

이번 총조사는 11월 1일 0시 현재,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귀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 0시 이후에 출생한 아이나 11월 1일 0시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조사되어야 할 사람	조사되어서는 안될 사람
○ 해외 또는 국내의 다른 곳에 출장, 여행, 행사 등으로 잠시 출타중인 사람	○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외지 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 경찰서 보호실, 구치소(교도소)의 미결수	○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 등에 들어가 있는 사람
○ 예비군 또는 방위소집중인 사람	○ 군 또는 전투경찰(병역의무자)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사람
○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	○ 요양소, 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중인 사람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의 탑승승무원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부녀보호소 등)에서 살고 있는 사람
○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아직 정착 여부를 알 수 없는 1개월 미만의 부재중인 가족.	

“김영수”라는 사람은 1990년 11월 1일 현재 세는 나이는 30살이고 띠가 소띠이며,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 10월 21일 일 때 “김영수”의 만나이는 몇 살인가? **답 28세**
 해설 : 만나이환산표에서 세는 나이가 30살이고 소띠인 경우에 만나이는 29세 또는 28세가 되는데, 1961년 11월 1일의 음력날짜가 9월 23일이고 김영수의 음력생일 10월 21일은 음력 9월 23일 이후가 되므로 김영수의 만나이는 28세가 됨.

만(滿)나이 환산표

만나이 환산에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 일 이 양 11월 1일 전	양 력 11월 1일의 음력날짜	생 일 이 양 11월 1일 후
1	1990	말	0	9. 14	-
2	1989	백	1	10. 3	0
3	1988	용	2	9. 22	1
4	1987	토끼	3	9. 10	2
5	1986	호랑이	4	9. 29	3
6	1985	소	5	9. 19	4
7	1984	쥐	6	10. 9	5
8	1983	돼지	7	9. 27	6
9	1982	개	8	9. 16	7
10	1981	닭	9	10. 5	8
11	1980	잔나비	10	9. 24	9
12	1979	양	11	9. 12	10
13	1978	말	12	10. 1	11
14	1977	백	13	9. 20	12
15	1976	용	14	9. 10	13
16	1975	토끼	15	9. 28	14
17	1974	호랑이	16	9. 18	15
18	1973	소	17	10. 7	16
19	1972	쥐	18	9. 26	17
20	1971	돼지	19	9. 14	18
21	1970	개	20	10. 3	19
22	1969	닭	21	9. 22	20
23	1968	잔나비	22	9. 11	21
24	1967	양	23	9. 29	22
25	1966	말	24	9. 19	23
26	1965	백	25	10. 9	24
27	1964	용	26	9. 27	25
28	1963	토끼	27	9. 16	26
29	1962	호랑이	28	10. 5	27
30	1961	소	29	9. 23	28
31	1960	쥐	30	9. 13	29
32	1959	돼지	31	10. 1	30
33	1958	개	32	9. 20	31
34	1957	닭	33	9. 10	32
35	1956	잔나비	34	9. 29	33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 일 이 양 11월 1일 전	양 력 11월 1일의 음력날짜	생 일 이 양 11월 1일 후
36	1955	양	35	9. 17	34
37	1954	말	36	10. 6	35
38	1953	백	37	9. 25	36
39	1952	용	38	9. 14	37
40	1951	토끼	39	10. 3	38
41	1950	호랑이	40	9. 22	39
42	1949	소	41	9. 11	40
43	1948	쥐	42	10. 1	41
44	1947	돼지	43	9. 19	42
45	1946	개	44	10. 8	43
46	1945	닭	45	9. 27	44
47	1944	잔나비	46	9. 16	45
48	1943	양	47	10. 4	46
49	1942	말	48	9. 23	47
50	1941	백	49	9. 13	48
51	1940	용	50	10. 3	49
52	1939	토끼	51	9. 20	50
53	1938	호랑이	52	9. 10	51
54	1937	소	53	9. 29	52
55	1936	쥐	54	9. 18	53
56	1935	돼지	55	10. 6	54
57	1934	개	56	9. 24	55
58	1933	닭	57	9. 14	56
59	1932	잔나비	58	10. 4	57
60	1931	양	59	9. 22	58
61	1930	말	60	9. 11	59
62	1929	백	61	10. 1	60
63	1928	용	62	9. 19	61
64	1927	토끼	63	10. 7	62
65	1926	호랑이	64	9. 26	63
66	1925	소	65	9. 15	64
67	1924	쥐	66	10. 5	65
68	1923	돼지	67	9. 23	66
69	1922	개	68	9. 13	67
70	1921	닭	69	10. 2	68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 일 이 양 11월 1일 전	양 력 11월 1일의 음력날짜	생 일 이 양 11월 1일 후
71	1920	잔나비	70	9. 21	69
72	1919	양	71	9. 9	70
73	1918	말	72	9. 28	71
74	1917	백	73	9. 17	72
75	1916	용	74	10. 6	73
76	1915	토끼	75	9. 24	74
77	1914	호랑이	76	9. 14	75
78	1913	소	77	10. 4	76
79	1912	쥐	78	9. 23	77
80	1911	돼지	79	9. 11	78
81	1910	개	80	9. 30	79
82	1909	닭	81	9. 19	80
83	1908	잔나비	82	10. 8	81
84	1907	양	83	9. 26	82
85	1906	말	84	9. 15	83
86	1905	백	85	10. 5	84
87	1904	용	86	9. 24	85
88	1903	토끼	87	9. 13	86
89	1902	호랑이	88	10. 2	87
90	1901	소	89	9. 21	88
91	1900	쥐	90	9. 10	89
92	1899	돼지	91	9. 28	90
93	1898	개	92	9. 18	91
94	1897	닭	93	10. 7	92
95	1896	잔나비	94	9. 26	93
96	1895	양	95	9. 15	94
97	1894	말	96	10. 4	95
98	1893	백	97	9. 23	96
99	1892	용	98	9. 12	97
100	1891	토끼	99	9. 30	98
101	1890	호랑이	100	9. 19	99
102	1889	소	101	10. 9	100
103	1888	쥐	102	9. 28	101
104	1887	돼지	103	9. 16	102
105	1886	개	104	10. 6	103

		1	2	3	4		
⑬ 종사상의 지위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⑭ 직	말은 일의 종류 제등을 구부리고 좌는 일을 하고 있음					
⑮ 업	※ 통계국 기입란	대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중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소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⑯ 초혼연령	십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1.생일전 2.생일후						
	초혼연령도	백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십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⑰ 생존자녀수	십	0 1	0 1	0 1	0 1	0 1	
	일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⑱ 사망자녀수	십	0 1	0 1	0 1	0 1	0 1	
	일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⑳ 총출생자녀수	십	0 1	0 1	0 1	0 1	0 1	
	일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가 구 에 관 한 사 항	⑳ 임 차 료	전 세 및 보 증 금					월 세				
		억	천 만	백 만	십 만 원	만 원	백 만	십 만	만 원	만 원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㉑ 월 평 균 가 구 소 득 구 모	1 20만원 미만	2 20만원~30만원미만	3 30만원~50만원미만	4 50만원~70만원미만	5 70만원~100만원미만	6 100만원~150만원미만	7 150만원~200만원미만	8 200만원~300만원미만	9 300만원이상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 마크하실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굽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 동재장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주소	서울 ^시 종로 ^구 경운 ^동 (120번지 아파트)		조사구번호	0	1	2	3	0	1	2	3	
가처번호	0	1	2	3	0	1	2	3	0	1	2	3
가구당 조사표매수	0	1	2	3	0	1	2	3	0	1	2	3
가구당 조사표매수	0	1	2	3	0	1	2	3	0	1	2	3

		1	2	3	4	5
성명		강진호				
⑫ 1년 전 거주지	다른구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	외국				
	구 시 군 일	0 1 2 3 4 5 6 7 8 9				
⑬ 5년 전 거주지	다른구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	외국				
	구 시 군 일	0 1 2 3 4 5 6 7 8 9				
⑭ 경제활동상태		1 2 3 4 5 6 7 8 9 0				
⑮ 산 업	주된 사업 내용	건축자재알루미늄 쇠시 생산				
	직장 사업체 이름	한성공업주식회사				
	※ 통계국 기입란	대 중 소				

아기·내경 요원 기입란

아기·내경 요원 기입란

		1	2	3	4	5
⑩ 종사상 의 지 위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말은 일의 종류	알루미늄 제품을 값고 있음	채소소매를 하고 있음			
⑪ 직 부서 및 직책		선반반 기능공				
	※통계국기입란					
⑫ 대 중 소	대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중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소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⑬ 초 혼 연 령	초혼연령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생일전 2.생일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백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초혼연령 도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⑭ 생 존 자 녀 수 계	십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일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⑮ 사 망 자 녀 수 계	십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일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⑯ 총 출 생 자 녀 수 계	십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일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전 세 및 보 증 금					월 세						
가 구 에 관 한 사 항	⑳ 임 차 료	억	0	1	2	3	4	백 만	0	1	2	3	4
		천 만	0	1	2	3	4		5	6	7	8	9
		백 만	0	1	2	3	4		5	6	7	8	9
		십만원	0	1	2	3	4		5	6	7	8	9
㉑ 월 평 균 가 구 소 득 구 모		1	2	3	4	5	6	7	8	9			
		20만원 미만		20만원~30만원미만		30만원~50만원미만		50만원~70만원미만					
		70만원~100만원미만		100만원~150만원미만		150만원~200만원미만		200만원~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1990년 인구 주택 능조사

(표 본 조사 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 마크하실 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서울 ^시 종로 ^구 경운 ^동 120번지	호 (아파트) ^호	조사구번호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거처번호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가구번호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가구당 조사표매수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가구원수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성명	1	2	3	4	5
성명	강창호	강석순	강석돈	강석순	강석태
⑫ 1년 전 거주지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구시군 일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⑬ 5년 전 거주지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input type="checkbox"/> 1. 현재 살고 있는 집 <input type="checkbox"/>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input type="checkbox"/> 3. 다른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구시군 일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⑭ 경제활동상태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⑮ 산업	주된 사업 내용 건축자재 알루미늄 샷시 생산	채소 소매			
	직장 사업체 이 한성공업주식회사	우리 집			
※ 통계국 기입란	대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중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소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이거 내걸
요원 기입란

이거 내걸
요원 기입란

		1	2	3	4	5	
⑥ 교육 정도		1. 안다녔음 (안다나고있음) <input type="checkbox"/> 2. 국민 3. 중학 1. 졸업 <input type="checkbox"/>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input type="checkbox"/>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input type="checkbox"/>	1. 안다녔음 (안다나고있음) <input type="checkbox"/> 2. 국민 3. 중학 1. 졸업 <input type="checkbox"/>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input type="checkbox"/>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input type="checkbox"/>	1. 안다녔음 (안다나고있음) <input type="checkbox"/> 2. 국민 3. 중학 1. 졸업 <input type="checkbox"/>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input type="checkbox"/>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input type="checkbox"/>	1. 안다녔음 (안다나고있음) <input type="checkbox"/> 2. 국민 3. 중학 1. 졸업 <input type="checkbox"/>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input type="checkbox"/>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input type="checkbox"/>	1. 안다녔음 (안다나고있음) <input type="checkbox"/> 2. 국민 3. 중학 1. 졸업 <input type="checkbox"/> 4. 고등 5. 전문대 2. 재학 <input type="checkbox"/> 6. 대학(교) 7. 대학원 3. 중퇴 <input type="checkbox"/>	
⑦ 통근·통학여부		1. 한다 2. 안한다 <input type="checkbox"/> (⑧번으로 계속) (⑩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input type="checkbox"/> (⑧번으로 계속) (⑩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input type="checkbox"/> (⑧번으로 계속) (⑩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input type="checkbox"/> (⑧번으로 계속) (⑩번으로 계속)	1. 한다 2. 안한다 <input type="checkbox"/> (⑧번으로 계속) (⑩번으로 계속)	
⑧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input type="checkbox"/>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input type="checkbox"/>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input type="checkbox"/>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시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동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읍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면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⑨ 출발·도착 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출발		00 10 20 30 40 50		00 10 20 30 40 50		00 10 20 30 40 50	
도착		00 10 20 30 40 50		00 10 20 30 40 50		00 10 20 30 40 50	
⑩ 이용 교통수단		1 2 3 4 5 6 7 8 9 0					
⑪ 혼인 상태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가 구 에 관 한 사 항	① 거처의 종류	1 2 3 4 5 6 7 8 9
	② 가구 구분	1. 주가구 2. 동거가구 3. 집단가구 <input type="checkbox"/>
	③ 점유 형태	1. 주거전용 2. 영업겸용 <input type="checkbox"/>
	④ 사용 방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input type="checkbox"/>
	⑤ 식수의 종류	1. 상수도 2. 간이수도 3. 자가수도 4. 수도펌프 5. 우물 6. 기타 <input type="checkbox"/>
	⑥ 취사 연료	1. 연탄 2. 유류 3. 가스 4. 전기 5. 임산연료 6. 기타 <input type="checkbox"/>
	⑦ 난방 시설	1 2 3 4 5 6 7 8
	⑧ 문화시설및가재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화 5. 전축 6. 녹화재생기 7. 에어컨 8. 개인용컴퓨터 9. 자가용승차
시 설 형 태	⑨ 전용시설	1. 부엌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2. 화장실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3. 출입구시설 1. 단독으로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⑩ 부엌시설	1. 재래식 2. 입식 3. 없음 <input type="checkbox"/>
	⑪ 화장실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음 <input type="checkbox"/>
	⑫ 목욕시설	1. 온수시설 2. 비온수시설 3. 없음 <input type="checkbox"/>
⑬ 상수도시설	1. 있음 2. 없음 <input type="checkbox"/>	

주 택 에 관 한 사 항	⑭외벽재료	<input type="checkbox"/> 1. 나무 <input type="checkbox"/> 2. 적벽돌, 돌 <input type="checkbox"/> 3. 시멘트제품 <input type="checkbox"/> 4. 철근콘크리트 <input type="checkbox"/> 5. 흙, 흙벽돌 <input type="checkbox"/> 6. 기타	
	⑮지붕재료	<input type="checkbox"/> 1. 기와 <input type="checkbox"/> 2. 슬레이트 <input type="checkbox"/> 3. 스프라(스라브기와) <input type="checkbox"/> 4. 합석 <input type="checkbox"/> 5. 짚, 갈대 <input type="checkbox"/> 6. 기타	
	⑯연 건 평	7평미만 7~9 9~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평이상	
	⑰대지면적	10평미만 10~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149 149~199 199~249 249평이상	
	⑱층 방 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이상	
	⑲거주가구수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가구 8가구 9가구 10가구 11가구 12가구이상	
	⑳건축년도	1. 1950년이전 2. 50~59 3. 60~69 4. 70~79 5. 80~85 6. 86년 7. 87년 8. 88년 9. 89년 0. 1990년	
	⑳ ① ② ③	1. 부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2. 화장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3. 출입구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㉑거주가능 가구 수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이상



1990년 인구 주택 조사

(전수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세요.
- 마크하실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굽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동계장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주소	서울 ^시 종로 ^구 경운 ^동 120번지 호 아파트 (동 호)	조사구번호	0백 0123 0십 0123456789 4일 0123456789
거처번호	0백 0123 0십 0123456789 /일 0123456789	가구번호	0백 0123 0십 0123456789 9일 0123456789
가구당 조사표매수	0백 0123 0십 0123456789 2일 0123456789	가구원수	0백 0123 0십 0123456789 일 0123456789

		1	2	3	4	5	
①성명		강진호					
②가구주와의 관계	십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일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③성별		1. 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여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input type="checkbox"/>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input type="checkbox"/>	
④나	4-1 세는나이	백	1	1	1	1	1
		십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출생년도	일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백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이	4-2 띠	십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일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4-3 생일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십	0123 456789	0123 456789	0123 456789	0123 456789	0123 456789
양력·음력구분		1. 양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음력 <input type="checkbox"/>	1. 양력 <input type="checkbox"/> 2. 음력 <input type="checkbox"/>	1. 양력 <input type="checkbox"/> 2. 음력 <input type="checkbox"/>	1. 양력 <input type="checkbox"/> 2. 음력 <input type="checkbox"/>	1. 양력 <input type="checkbox"/> 2. 음력 <input type="checkbox"/>	
4-4 만나이	백	1	1	1	1	1	
	십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⑤출생지	다구시군의도	일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집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 본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 본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 본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01234 56789	

이거 내검요원 기입란

이거 내검요원 기입란

		1	2	3	4	5
⑥ 교육 정도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전문대 6. 대학(교) 7. 대학원 1. 졸업 2. 재학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전문대 6. 대학(교) 7. 대학원 1. 졸업 2. 재학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전문대 6. 대학(교) 7. 대학원 1. 졸업 2. 재학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전문대 6. 대학(교) 7. 대학원 1. 졸업 2. 재학 3. 중퇴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전문대 6. 대학(교) 7. 대학원 1. 졸업 2. 재학 3. 중퇴
⑦ 통근·통학여부		1. 한다 2. 안한다 (⑧번으로 계속) (⑩번으로 계속)				
⑧ 직장또는학교(원)주소		1. 현재의동읍면 2. 다른동읍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시읍면 일				
		동읍면 일				
⑨ 출발·도착시각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00 10 20 30 40 50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00 10 20 30 40 50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00 10 20 30 40 50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00 10 20 30 40 50	1. 오전 2.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00 10 20 30 40 50
		출발시각	출발시각	출발시각	출발시각	출발시각
		도착시각	도착시각	도착시각	도착시각	도착시각
⑩ 이용 교통수단		1. 2. 3. 4. 5. 6. 7. 8. 9. 0				
⑪ 혼인 상태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가 구 에 관 한 사 항	① 거처의 종류	1. 2. 3. 4. 5. 6. 7. 8. 9.
	② 가구 구분	1. 주가구 2. 동거가구 3. 집단가구
	③ 점유 형태	1. 주거전용 2. 영업전용 1. 자기집 2. 전세 3. 보증부월세 4. 월세(사당세) 5. 무상
	④ 사용 방 수	1. 2. 3. 4. 5. 6. 개 이상
	⑤ 식수의 종류	1. 상수도 2. 간이수도 3. 자가수도 4. 수도펌프 5. 우물 6. 기타
	⑥ 취사 연료	1. 연탄 2. 유류 3. 가스 4. 전기 5. 일산화탄소 6. 기타
	⑦ 난방 시설	1. 2. 3. 4. 5. 6. 7. 8.
	⑧ 문화시설및가재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화 5. 전축 6. 녹화재생기 7. 에어컨 8. 개인용컴퓨터 9. 자가용승용차
시 설 형 태	⑨ 전용 시설	1. 부엌 시설 2. 화장실 시설 3. 출입구 시설 1. 단독으로 사용 2. 공동 사용 또는 없음 1. 단독으로 사용 2. 공동 사용 또는 없음 1. 단독으로 사용 2. 공동 사용 또는 없음
	⑩ 부엌 시설	1. 재래식 2. 입식 3. 없음
	⑪ 화장실 시설	1. 재래식 2. 수세식 3. 없음
	⑫ 목욕 시설	1. 온수 시설 2. 미온수 시설 3. 없음
	⑬ 상수도 시설	1. 있음 2. 없음

주 택 에 관 한 사 항	⑭ 외벽 재료	1. 나무 2. 벽돌, 돌 3. 시멘트계통 4. 철근콘크리트 5. 흙, 흙벽돌 6. 기타
	⑮ 지붕 재료	1. 기와 2. 슬레이트 3. 스티브(스티브기외) 4. 합석 5. 질갈대 6. 기타
	⑯ 연 건 평	7. 7~9 9~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평 이상
	⑰ 대지면적	10. 10~14 14~19 19~29 29~39 39~49 49~69 69~99 99~149 149~199 199~249 249평 이상
	⑱ 총 방 수	1. 2. 3. 4. 5. 6. 개 7. 8. 9. 10. 11. 12. 개 이상
	⑲ 거주 가구 수	1. 2. 3. 4. 5. 6. 가구 7. 8. 9. 10. 11. 12. 가구 이상
	⑳ 건축년도	1. 1950년 이전 2. 50~59 3. 60~69 4. 70~79 5. 80~85 6. 86년 7. 87년 8. 88년 9. 89년 0. 1990년
	㉑ 편의 시설	1. 부엌 2. 화장실 3. 출입구 1. 2. 3. 개 4. 5. 6. 개 이상 1. 2. 3. 개 4. 5. 6. 개 이상
	㉒ 거주 가능 가구 수	1. 2. 3. 4. 5. 6. 가구 이상



1990년 인구 주택 조사 (전수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세요.
- 마크하실 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굽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0번지 아파트		조사구번호	0백 0123 0십 0123456789 4일 0123456789
거처번호	0백 0123 3십 0123456789 1일 0123456789	가구번호	0백 0123 4십 0123456789 9일 0123456789	
가구당 조사표매수	0백 0123 0십 0123456789 2일 0123456789	가구원수	0백 0123 0십 0123456789 6일 0123456789	

		1	2	3	4	5
① 성명		강창호	장덕순	강석돈	강석순	강석태
② 가구주와의 관계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③ 성별		1. 남 2. 여				
④ 나이	4-1 세는나이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4-2 출생년도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18 19 0 1 2 3 4 5 6 7 8 9
	4-3 생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양력·음력구분	1. 양력 2. 음력				
4-4 만 나이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⑤ 출생지	다구시군의도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 구시군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3. 다 구시군
	구시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외국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이 기 내검모원기입란

이 기 내검 모원 기입란

		1	2	3	4	5	
16	종사상의 지위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고용원을 둔 사업주 <input type="checkbox"/> 2.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input type="checkbox"/> 3.무급가족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임금·봉급 근로자	
	17	직업	말은 일의 종류 알아남 제품을 팔고 있음	부서 및 직책 재소소매를 하고 있음			
18	통계국기입란	대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중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소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0 1 2 3 4 5 6 7 8 9 X
18	초혼연령	초혼연령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0 1 2 3 4 5 6 7 8 9
		초혼연령	1.생일전 2.생일후 18 19 0 1 2 3 4 5 6 7 8 9	1.생일전 2.생일후 18 19 0 1 2 3 4 5 6 7 8 9	1.생일전 2.생일후 18 19 0 1 2 3 4 5 6 7 8 9	1.생일전 2.생일후 18 19 0 1 2 3 4 5 6 7 8 9	1.생일전 2.생일후 18 19 0 1 2 3 4 5 6 7 8 9
19	생존자녀수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20	사망자녀수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21	총출생자녀수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0 1 0 1 2 3 4 5 6 7 8 9	
가구에 관한 사항	23	임차료	전세 및 보증금		월세		
	24	월 평균 가구소득규모	1 20만원 미만 2 20만원~30만원미만 3 30만원~50만원미만 4 50만원~70만원미만 5 70만원~100만원미만 6 100만원~150만원미만 7 150만원~200만원미만 8 200만원~300만원미만 9 300만원이상				

• 「종사상의 지위」는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직업」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말은 일의 종류」와 「부서 및 직책」을 []에 그대로 이기한다.

- 「*통계국기입란」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초혼연령」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생존자녀수」 「사망자녀수」 「총출생자녀수」는 일반조사표의 「계」란만을 해당란에 마크한다.

• 「가구에 관한 사항」은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된 경우 조사표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 이상은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 본 조사 표)

• 조사표는 흑색 2B 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십시오.
 • 마크할 때에는 □ 와 같이 옆으로 굽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지 및 숫자를 기입할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찢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림동 120번지 아파트			조사구번호	04010101
거처번호	3	1	1	가구번호	49
가구당 조사표매수	0	가구당 조사표매수중 일련번호	0	가구원수	6
성명	강창호	장익순	장석돈	장석순	장석태
1년전 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5년전 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경제활동상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주된 사업 내용	건축·채광·설시 생산	제조·소매			
직장·사업체 이름	한성공영주택회사	우리집			
*통계국 기입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 「주소」「조사구번호」「거처번호」「가구번호」「가구당 조사표 매수」「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는 한가구에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될 경우 매장마다 작성한다.

“예” 조사표가 3매 사용된 경우

—첫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	가구당 조사표매수중 일련번호	0
0	1	0	1
1	2	1	2
2	3	2	3
3	4	3	4
4	5	4	5
5	6	5	6
6	7	6	7
7	8	7	8
8	9	8	9

—둘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	가구당 조사표매수중 일련번호	0
0	1	0	1
1	2	1	2
2	3	2	3
3	4	3	4
4	5	4	5
5	6	5	6
6	7	6	7
7	8	7	8
8	9	8	9

—셋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	가구당 조사표매수중 일련번호	0
0	1	0	1
1	2	1	2
2	3	2	3
3	4	3	4
4	5	4	5
5	6	5	6
6	7	6	7
7	8	7	8
8	9	8	9

* 「가구당 조사표 매수」와 「가구당 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는 전수조사표와 표본 조사표 매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 「가구원수」는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될 경우 조사표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부터는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성명」은 전수조사표에 작성되어 있는대로 가구원 일련 번호순으로 이기한다.

• 「1년전 거주지」는 「3. 다른 구시군」에 마크되어 있으면 「다른 구시군의 시도」는 마크하고, 「구시군」 부호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5년전 거주지」는 「3. 다른 구시군」에 마크되어 있으면 「다른 구시군의 시도」는 마크하고, 「구시군」 부호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므로 공백 상태로 남겨둔다.

• 「경제 활동 상태」는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산업」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주된 사업 내용」과 「직장·사업체 이름」을 그대로 이기한다.

—「*통계국 기입란」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1	2	3	4	5	
⑥ 교육 정도	1. 안다(없음)	<input type="checkbox"/>					
	2. 국민	<input type="checkbox"/>					
	3. 중학	<input type="checkbox"/>					
	1. 졸업	<input type="checkbox"/>					
⑦ 통근·통학여부	1. 안다	<input type="checkbox"/>					
	2. 안한다	<input type="checkbox"/>					
	1. 현재(주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input type="checkbox"/>					
	2. 안한다	<input type="checkbox"/>					
⑧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	시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구	1. 대전	2. 경기	3. 강원	4. 충북	5. 충남	
	시	1. 전북	2. 전남	3. 경북	4. 경남	5. 제주	
	군	1. 전북	2. 전남	3. 경북	4. 경남	5. 제주	
	읍	1. 전북	2. 전남	3. 경북	4. 경남	5. 제주	
	면	1. 전북	2. 전남	3. 경북	4. 경남	5. 제주	
	출발시각	1. 오전	2. 오후				
	도착시각	1. 오전	2. 오후				
	이용교통수단	1. 도보	2. 자전거	3. 버스	4. 지하철	5. 택시	
	혼인상태	1. 미혼	2. 혼인	3. 사별	4. 이혼		
	가구에 관한 사항	① 거처의 종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빌딩	4. 기타	
		② 가구 구분	1. 주거용	2. 통용	3. 업무용	4. 기타	
③ 점유 형태		1. 자기	2. 전세	3. 임대	4. 기타		
④ 사용 방수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⑤ 식수의 종류		1. 상수도	2. 정수기	3. 지하수	4. 수동	5. 기타	
⑥ 취사 연료		1. 연탄	2. 도시가스	3. LPG	4. 전기	5. 임산연료	
⑦ 난방 시설		1. 없음	2. 있음	3. 기타	4. 없음	5. 있음	
⑧ 문화시설 및 가재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에어컨	5. 기타	
⑨ 생활 시설		1. 부엌	2. 화장실	3. 욕조	4. 샤워실	5. 기타	
⑩ 화장실 시설		1. 욕조	2. 샤워실	3. 기타	4. 없음	5. 있음	
⑪ 목욕 시설		1. 욕조	2. 샤워실	3. 기타	4. 없음	5. 있음	
⑫ 상수도 시설		1. 상수도	2. 정수기	3. 기타	4. 없음	5. 있음	
주택에 관한 사항	⑬ 의복재	1. 나무	2. 철근콘크리트	3. 석면	4. 기타		
	⑭ 지붕재	1. 기와	2. 슬레이트	3. 스프링클러	4. 기타		
	⑮ 연면적	1. 7~9	2. 10~19	3. 20~29	4. 30~39	5. 40~49	
	⑯ 대지면적	1. 49~69	2. 70~89	3. 90~109	4. 110~129	5. 130~149	
	⑰ 층방수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⑱ 거주가구수	1. 1가구	2. 2가구	3. 3가구	4. 4가구	5. 5가구	
	⑳ 건축년도	1. 1950년 이전	2. 1951~59	3. 1960~69	4. 1970~79	5. 1980~89	
	㉑ 1부 방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㉒ 2부 방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㉓ 3부 방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㉔ 거주가능 가구수	1. 1가구	2. 2가구	3. 3가구	4. 4가구	5. 5가구	

• 「교육정도」「통근·통학여부」는 일반 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직장 또는 학교(원)주소」는 일반조사표에 「② 다른 동읍면」란에 기입된 경우 「시도」란에 마크하고, 「구시군」 부호와 「동읍면」 부호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출발·도착시각」「이용교통수단」「혼인상태」는 일반조사표에 기입된 내용을 그대로 해당란에 마크한다.

• 「가구에 관한 사항」「주택에 관한 사항」은 한가구에 조사표가 2매 이상 사용될 경우 첫째 장만 작성하고 둘째장 이상은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의 주거수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전수조사표)

- 조사표는 흑색 2B연필로 사용하고 틀린 부분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십시오.
- 마크할 때에는 □와 같이 옆으로 굵고 진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 문자 및 숫자를 기입할 때에는 기입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표를 구기거나, 자르거나, 접거나, 오손시키지 마십시오.

OMR조사표 작성 요령

OMR조사표 기입은 일반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을 보면서 각란의 기입내용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0번지 아파트	조사구번호	04
기처번호	031	가구번호	49
가구당 조사표매수	02	가구원수	06

- 「주소」「조사구번호」「기처번호」「가구번호」「가구당 조사표 매수」「가구당 조사표 매수 중 일련번호」는 한가구에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될 경우 매장마다 작성한다.
- “예” 조사표가 3매 사용된 경우

-첫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3	가구당조사표 일련번호	01
-----------	----	-------------	----

-둘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3	가구당조사표 일련번호	02
-----------	----	-------------	----

-셋째장

가구당 조사표매수	03	가구당조사표 일련번호	03
-----------	----	-------------	----

- 「가구원수」는 조사표가 2매이상 사용될 경우에도 조사표 첫째장에만 작성하고 둘째장부터는 공백상태로 남겨둔다.

- 「성명」은 가구원 일련번호순으로 가구주부터 작성한다. 이때 가구원 일련번호 중 중간번호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예”

성명	강창호	장석순		장석돈	장석운
----	-----	-----	--	-----	-----

- 「가구주와의 관계」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는 난이므로 조사원은 작성하지 않는다.

- 「성별」은 가구원마다 작성한다.

- 「나이」는 「세는나이」「출생년도」「띠」「생일」「양력음력구분」「만나이」란의 십단위의 「0」을 반드시 마크한다.

“예” 세는 나이 8살.

세는나이	08
------	----

- 「출생지」는 일반조사표에 「③다른구시군」란에 기입되어 있으면 「다른 구시군의 시도」란은 마크하고, 「구시군」 부호는 이기·내검요원이 작성하므로 공백상태로 남겨 둔다.

①성명	강창호	장석순	장석돈	장석운	장석래
②가구주와의 관계					
③성별	남	남	남	남	남
④나이	세는나이	8	18	18	18
	출생년도	80	70	70	70
	띠	미소	귀소	귀소	귀소
	생일	1월 2일	1월 2일	1월 2일	1월 2일
	양력음력구분	1. 양력	1. 양력	1. 양력	1. 양력
⑤출생지	다른구시군외도				
	구시군				

가구에 관한 사항 모든 가구에 해당됩니다.

① 거처의 종류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한 종류의 집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6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7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8 사무실 겸용 주택(오피스텔) 9 기타(음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

② 가구 구분
택이 이집을 대표하는 주거구입니까? 아니면 동거가구입니까?
 세를 들어 사는 가구들만이 있을 경우, 안방을 쓰고 있는 가구가 주거구입니다.
 1 주거구 2 동거가구 3 집단가구
 ※ 집단가구는 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를 의미하며 3 집단가구에 해당되면 ③~⑭까지 사진(\)을 긋습니다.

③ 점유형태 ② 입차료
이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아니면 주거와 영업을 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 집입니까? 아니면 셋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전세 및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됩니까?

① 주거전용	① 자기 집	전세 및 보증금						
	② 전 세	억	천만	백만	십만원			
② 영업겸용	③ 보증부월세	월 세						
	④ 월세(사글세)					백만	십만	만원
	⑤ 무 상							

 ※ 사글세의 경우에는 한 달분의 월세를 기입합니다.

④ 사용 방수
택에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봅니다.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이상

⑤ 식수의 종류
먹는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1 상수도 2 간이수도 3 자가수도
 4 수도펌프 5 우물 6 기타()

⑥ 취사연료
취사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1 연탄 2 유류 3 가스
 4 전기 5 입산연료 6 기타()

⑦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하나만 표합니다.
 1 개래식 아궁이 2 연탄 아궁이 3 연탄 보일러
 4 단독 기름보일러 5 단독 가스보일러 6 중앙난방보일러
 7 전기 보일러 8 기타()

⑧ 문화시설 및 가재
문화시설 및 가재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합니다.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4 전화 5 전축(오디오) 6 녹화재생기(V.T.R)
 7 에어컨 8 개인용 컴퓨터 9 자가용 승용차

⑨ 전용시설
택에서는 다음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 부엌 시설: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2. 화장실 시설: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3. 출입구 시설: 1 단독사용 2 공동사용 또는 없음

⑩~⑬ 시설형태
단독사용 또는 공동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 부엌 시설: 1 개래식 2 입식 3 없음
 11 화장실 시설: 1 개래식 2 수세식 3 없음
 12 목욕 시설: 1 온수시설 2 비온수시설 3 없음
 13 상수도 시설: 1 있음 2 없음

⑭ 월 평균 가구 소득 규모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 지난 1년(1989. 11. 1~1990. 10. 31) 동안의 총소득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소득세나 상여금은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1 20만원 미만 2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4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5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6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9 300만원 이상

○ 지난 1년간(1989. 11. 1~1990. 10. 31)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인 총소득액을 평균 한 달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난달의 소득이나 현재의 가구원 소득을 기준해서는 안됩니다.

○ 가구원 전체 총소득이란, 가족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영업사용인 또는 동거인과 같이 가족이 아닌 사람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 소득이 현물(쌀, 보리 및 공업제품 등)일 경우에는 그 현물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실업자가 취업을 해서 12개월이 안된 경우 및 신규취업자의 취업 기간이 12개월이 안된 경우 등은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실제 취업기간(개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포함되어야 할 소득]
 ○ 근로소득: 임금, 급여, 봉급, 일당, 상여금, 봉사료(팁), 부업소득 및 기타 근로소득

월 평균 가구 소득 규모 작성기준

○ 임대소득: 건물임대소득, 토지임대소득, 자동차임대소득, 특허권 등 기타 임대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및 점포나 소규모 공장을 경영하는 자영자의 사업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난 다음의 소득
 ○ 이전소득: 정부 및 사회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에서 정부 및 사회단체에 준 기부금·분담금 등을 뺀 잔액, 가족·친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가족·친지에게 준 보조금을 뺀 잔액, 연금

[포함되어서는 안될 소득 또는 수입]
 ○ 복권당첨금, 경조사시 들어온 수입금, 퇴직일시금, 상속재산액, 각종 보험금 탄 것, 재산을 매각한 수입, 저축금 탄 것, 깃돈 탄 것, 빌려준 돈 회수금

주택에 관한 사항 주거구만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이 주택을 대표하는 주거구만 해당됩니다.
 (가구에 관한사항 ① 거처의 종류 ①~⑤에 해당되면서, ②가구 구분란의 ①에 해당되는 가구)

⑭ 외벽재료
이 주택의 외벽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벽재료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재료를 말합니다.
 1 나무 2 적벽돌, 돌 3 시멘트제품
 4 철근콘크리트 5 흙, 흙벽돌 6 기타()

⑮ 지붕재료
이 주택의 지붕재료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1 기와 2 슬레이트 3 슬래브(슬래브기와)
 4 합석 5 짚, 갈대 6 기타()

⑯, ⑰ 연건평 및 대지 면적
이 주택의 연건평과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연건평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기입하고 대지 면적은 담장 안의 전면적을 기입합니다. ※ 평 또는 m² 중 한쪽만 기입합니다.
 ⑯ 연건평 평 ⑰ 대지 면적 평
 m² m²

⑱, ⑲ 총방수 및 거주 가구수
이 주택에는 방이 모두 몇 개 있으며,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현대식 주택의 거실(응접실)과 식당도 방으로 보며, 동거가구의 방수 및 가구수도 포함됩니다.
 ⑱ 총 방 수 개
 ⑲ 거주 가구수 가구

⑳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
 1 1950년 이전 2 1950년~1959년
 3 1960년~1969년 4 1970년~1979년
 5 1980년~1985년 6 1986년
 7 1987년 8 1988년
 9 1989년 0 1990년

㉑ 편의시설수
이 주택에는 다음 시설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1. 부엌: 개
 2. 화장실: 개
 3. 출입구: 개

㉒ 거주 가능 가구수
이 주택은 몇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습니까?
 가구

응답자 성명	장덕순	서명	장덕순
조사원 성명	김영수	서명	김영수

● 이제 택의 조사표가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 택을 방문하는 조사원에게 이 조사표를 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시 : 산업, 종사상의 지위 및 직업의 기입 예

⑮ 산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업
주된 사업 내용 벼 농사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사외 농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음
직장·사업체 이름 논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⑮ 산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업
주된 사업 내용 전직을 원단을 생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회사 원단을 생산하고 있음
직장·사업체 이름 동방기업사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총무부 운전기사

⑮ 산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업
주된 사업 내용 도목건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경리사무를 하고 있음
직장·사업체 이름 경제건설주식회사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경리과 경리계장

⑮ 산업	⑯ 종사상의 지위	⑰ 직업
주된 사업 내용 아동복 제조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말은 일의 종류 직을 분담해주고 재봉을 검사한다
직장·사업체 이름 한일 섬유주식회사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부서 및 직책 봉제부 반장

		1	2	3	4	5
만 15세 이상 되는 분만 기입합니다	⑭ 이 분은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중 30일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11월 1일 직전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에 해당되고, 11월 1일 직전에 퇴직한 사람으로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에 해당됩니다. ※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은 ⑮ 산업부터 기입하시고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분은 ⑮ 산업부터 ⑰ 직업까지 사선(\)을 긋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 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 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 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 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집안일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③ 학교(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④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있다. ⑤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다. [수입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⑥ 직장 또는 일거리 를 찾고 있다. ⑦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⑧ 학교(원)에 다니고 있다. ⑨ 놀고 있다. ⑩ 기타(방위소집, 노령, 질병 등)
	⑮ 이 분이 다니시는 직장 또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직장명이나 사업체명이 있다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단 산업 기입 예를 참조하시고 주된 사업 내용을 기입할 때에는 생산 품목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주된 사업 내용 건축자재 일류제품 생산 직장·사업체 이름 권성공업주식회사	주된 사업 내용 직장·사업체 이름			
	⑯ 어떠한 형태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상단의 종사상의 지위 기입 예를 참조하여 기입합니다.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①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③ 무급 가족 종사자 ④ 임금·봉급 근로자
	⑰ 이 분은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 및 직책도 기입하여 주십시오. 상단의 직업 기입 예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말은 일의 종류 제품을 주부라고 부르는 일을 하고 있음 부서 및 직책 군선반 기능공	말은 일의 종류 부서 및 직책			
	⑱ 이 분은 결혼하였습니까? 사실상의 혼인상태에 ○표합니다.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				
만 15세 이상 중 기혼	⑲ 결혼은 세는 나이로 몇 살 때 하였습니까? 결혼한 날짜는 생일전입니까? 후입니까? 결혼은 몇 년도에 하였습니까?	살 때 ① 생일전 ② 생일후 년도				
만 15세 이상 중 기혼 여자만 기입합니다	⑲ 부인이 낳은 자녀중 현재 생존해 있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부인이 낳은 자녀중 외지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남 명 여 명 계 명				
	⑳ 부인이 낳은 자녀중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남 명 여 명 계 명				
	㉑ 지금까지 부인이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남 명 여 명 계 명				

↓ 뒷면에 속됩니다.



		1	2	3	4	5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주민이 기입합니다	성명	<p>① 조사대상이 되는 분의 성명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가구주부터 기입하여 주시고 가구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p>	강진로					
	가주주와의 관계	<p>②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장남」, 「장남의 장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p>	제					
	성별	<p>③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해당번호에 ○표합니다.</p>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① 남 ② 여	
	나이	④-1 세는 나이	<p>세는 나이로 몇 살입니까? 호적이거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입합니다.</p>	28 살	살	살	살	살
		④-2 출생년월일	<p>이 분은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무슨 띠입니까? 호적이거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출생년도와 띠를 기입합니다.</p>	1963 년도 토끼 띠	년도 띠	년도 띠	년도 띠	년도 띠
		④-3 양력음력 구분	<p>실제로 집에서 쇠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양력입니까? 호적이거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쇠는 생일을 기입합니다.</p>	2 월 8 일 ① 양력 ② 음력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월 일 ① 양력 ② 음력
		④-4 만나이	<p>이 난은 앞면에 있는 만나이 환산표를 보시고 정확한 만나이를 계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p>	만 27 살	만 살	만 살	만 살	만 살
	출생지	⑤ 출생지	<p>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출생 당시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곳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합니다. ※ 북한의 경우에는 출생 당시의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되 시·도명 앞에는 북한을 추가하여 기입합니다. ※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경상북도(국) 포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⑥ 만 1세 이상 되는 분만 기입합니다</p> <p>지금으로부터 1년전(89.11.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고 외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교육정도	⑥ 교육정도	<p>지금으로부터 5년전(85. 11. 1)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③ 다른 구시군일 경우에는 그 곳의 현재 시·도, 구·시·군명을 기입하시고 외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 이름을 기입합니다.</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경상북도(국) 포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현재 살고 있는 구시군 ③ 다른 구시군</p> <p> 시도(국) 구시군</p>
<p>⑦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입합니다. ※ 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이상을 말합니다. ※ 현재 1학기 이상 휴학상태인 경우는 중퇴에 해당됩니다.</p>			<p>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등 ④ 고 등 대 ⑤ 전 문 대 ⑥ 대 학 (교) ⑦ 대 학 원</p> <p>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p>	<p>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등 ④ 고 등 대 ⑤ 전 문 대 ⑥ 대 학 (교) ⑦ 대 학 원</p> <p>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p>	<p>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등 ④ 고 등 대 ⑤ 전 문 대 ⑥ 대 학 (교) ⑦ 대 학 원</p> <p>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p>	<p>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등 ④ 고 등 대 ⑤ 전 문 대 ⑥ 대 학 (교) ⑦ 대 학 원</p> <p>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p>	<p>① 안다녔음(안다고 있음) ② 국 민 ③ 중 학 등 ④ 고 등 대 ⑤ 전 문 대 ⑥ 대 학 (교) ⑦ 대 학 원</p> <p>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p>	
만 12세 이상 되는 분만 기입합니다	⑦ 통근·통학 여부	<p>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통근·통학하고 있습니까? 걸어서 직장 또는 학교(원)를 다니는 경우에도 통근·통학에 포함됩니다. ② 안한다에 해당되는 분은 ⑧에서 ⑩까지 사선(\)을 긋습니다.</p>	① 한 다 ② 안 한 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① 한 다 ② 안 한 다	
		<p>⑧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면 직장 또는 학교(원)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② 다른 동읍면으로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곳의 행정구역명을 정확히 기입하시고 모를 경우에는 직장 또는 학교(원)의 이름이나 인근 유명한 건물 이름 또는 특징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p>	<p>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p> <p>서문북면(도) 구로(시)군 구로(동)읍면</p> <p>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p>	<p>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p> <p> 시도 구시군 동읍면</p> <p>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p>	<p>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p> <p> 시도 구시군 동읍면</p> <p>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p>	<p>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p> <p> 시도 구시군 동읍면</p> <p>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p>	<p>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② 다른 동읍면</p> <p> 시도 구시군 동읍면</p> <p>직장·학교(원) 주요건물이름</p>	
	⑨ 출발·도착 시각	<p>평소 집에서 직장 또는 학교(원)로 출발하는 시각과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p>	<p>•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7 시 10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7 시 50 분</p>	<p>•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p>	<p>•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p>	<p>•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p>	<p>•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① 오전 시 분 ② 오후 시 분 •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하는 시각 시 분</p>	
		<p>⑩ 평소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원)에 도착할 때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통근·통학시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번호에 모두 ○표합니다.</p>	<p>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p>	<p>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p>	<p>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p>	<p>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p>	<p>① 시내 버스 ② 좌석 버스 ③ 시외 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전철·지하철·기차 ⑥ 택시 ⑦ 승용차(지프) ⑧ 자전거 ⑨ 도보 ⑩ 기타 교통수단</p>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조사구용 조사표)

비밀의
이 조사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정통계 제 1 호 및 제 2 호

시 도	구 시 군	동 유 면	동리동(아파트)	120번지 호
서울	종로	경운	3동1반	전화 (720-0000)

※ 이 난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이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매수	가구원수
0041	31	49	2매중 2매	

등재장은 사전()

인사 말씀

경제기획원에서는 5년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에 관한 총조사를 실시하여 나라살림을 바르게 꾸려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99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이번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와 모든 주택에 대하여 총수는 물론 그 개별특성까지 파악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귀택의 식구에 대한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및 통근·통학 여부와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표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사실대로 기입하였다가 조사원이 다시 방문하였을 때에 돌려주시고 기입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원의 확인이나 추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기입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이 국가 기본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택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0년 11월 1일
경제기획원 장관

조사대상

이번 총조사는 11월 1일 0시 현재,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귀택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 0시 이후에 출생한 아이나 11월 1일 0시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조사되어야 할 사람	조사되어서는 안될 사람
○ 해외 또는 국내의 다른 곳에 출장, 여행, 행사 등으로 잠시 출타중인 사람	○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외지 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 경찰서 보호실, 구치소(교도소)의 미결수	○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 등에 들어가 있는 사람
○ 예비군 또는 방위소집중인 사람	○ 군 또는 전투경찰(병역의무자)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사람
○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	○ 요양소, 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중인 사람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의 탑승승무원	○ 사회시설(양로원, 부녀보호소 등)에서 살고 있는 사람
○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아직 정착 여부를 알 수 없는 1개월 미만의 부재중인 가족.	

“김영수”라는 사람은 1990년 11월 1일 현재 세는 나이는 30살이고 띠가 소띠이며, 실제로 쇠는 생일이 음력으로는 10월 21일 일 때 “김영수”의 만나는 몇 살인가? 28세

해설: 만나이환산표에서 세는 나이가 30살이고 소띠인 경우에 만나는 29세 또는 28세가 되는데, 1961년 11월 1일의 음력날짜가 9월 23일이고 김영수의 음력생일 10월 21일은 음력 9월 23일 이후가 되므로 김영수의 만나는 28세가 됨.

만(滿)나이 환산표

만나이 환산에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일 11월 1일 전	이력 11월 1일 전	양력 11월 1일의 음력날짜	이력 11월 1일 후
1	1990	말	0	9. 14	-
2	1989	백	1	10. 3	0
3	1988	용	2	9. 22	1
4	1987	토끼	3	9. 10	2
5	1986	호랑이	4	9. 29	3
6	1985	소	5	9. 19	4
7	1984	쥐	6	10. 9	5
8	1983	돼지	7	9. 27	6
9	1982	개	8	9. 16	7
10	1981	닭	9	10. 5	8
11	1980	잔나비	10	9. 24	9
12	1979	양	11	9. 12	10
13	1978	말	12	10. 1	11
14	1977	백	13	9. 20	12
15	1976	용	14	9. 10	13
16	1975	토끼	15	9. 28	14
17	1974	호랑이	16	9. 18	15
18	1973	소	17	10. 7	16
19	1972	쥐	18	9. 26	17
20	1971	돼지	19	9. 14	18
21	1970	개	20	10. 3	19
22	1969	닭	21	9. 22	20
23	1968	잔나비	22	9. 11	21
24	1967	양	23	9. 29	22
25	1966	말	24	9. 19	23
26	1965	백	25	10. 9	24
27	1964	용	26	9. 27	25
28	1963	토끼	27	9. 16	26
29	1962	호랑이	28	10. 5	27
30	1961	소	29	9. 23	28
31	1960	쥐	30	9. 13	29
32	1959	돼지	31	10. 1	30
33	1958	개	32	9. 20	31
34	1957	닭	33	9. 10	32
35	1956	잔나비	34	9. 29	33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일 11월 1일 전	이력 11월 1일 전	양력 11월 1일의 음력날짜	이력 11월 1일 후
36	1955	양	35	9. 17	34
37	1954	말	36	10. 6	35
38	1953	백	37	9. 25	36
39	1952	용	38	9. 14	37
40	1951	토끼	39	10. 3	38
41	1950	호랑이	40	9. 22	39
42	1949	소	41	9. 11	40
43	1948	쥐	42	10. 1	41
44	1947	돼지	43	9. 19	42
45	1946	개	44	10. 8	43
46	1945	닭	45	9. 27	44
47	1944	잔나비	46	9. 16	45
48	1943	양	47	10. 4	46
49	1942	말	48	9. 23	47
50	1941	백	49	9. 13	48
51	1940	용	50	10. 3	49
52	1939	토끼	51	9. 20	50
53	1938	호랑이	52	9. 10	51
54	1937	소	53	9. 29	52
55	1936	쥐	54	9. 18	53
56	1935	돼지	55	10. 6	54
57	1934	개	56	9. 24	55
58	1933	닭	57	9. 14	56
59	1932	잔나비	58	10. 4	57
60	1931	양	59	9. 22	58
61	1930	말	60	9. 11	59
62	1929	백	61	10. 1	60
63	1928	용	62	9. 19	61
64	1927	토끼	63	10. 7	62
65	1926	호랑이	64	9. 26	63
66	1925	소	65	9. 15	64
67	1924	쥐	66	10. 5	65
68	1923	돼지	67	9. 23	66
69	1922	개	68	9. 13	67
70	1921	닭	69	10. 2	68

세는 나이	서 기 띠	만 나이			
		생일 11월 1일 전	이력 11월 1일 전	양력 11월 1일의 음력날짜	이력 11월 1일 후
71	1920	잔나비	70	9. 21	69
72	1919	양	71	9. 9	70
73	1918	말	72	9. 28	71
74	1917	백	73	9. 17	72
75	1916	용	74	10. 6	73
76	1915	토끼	75	9. 24	74
77	1914	호랑이	76	9. 14	75
78	1913	소	77	10. 4	76
79	1912	쥐	78	9. 23	77
80	1911	돼지	79	9. 11	78
81	1910	개	80	9. 30	79
82	1909	닭	81	9. 19	80
83	1908	잔나비	82	10. 8	81
84	1907	양	83	9. 26	82
85	1906	말	84	9. 15	83
86	1905	백	85	10. 5	84
87	1904	용	86	9. 24	85
88	1903	토끼	87	9. 13	86
89	1902	호랑이	88	10. 2	87
90	1901	소	89	9. 21	88
91	1900	쥐	90	9. 10	89
92	1899	돼지	91	9. 28	90
93	1898	개	92	9. 18	91
94	1897	닭	93	10. 7	92
95	1896	잔나비	94	9. 26	93
96	1895	양	95	9. 15	94
97	1894	말	96	10. 4	95
98	1893	백	97	9. 23	96
99	1892	용	98	9. 12	97
100	1891	토끼	99	9. 30	98
101	1890	호랑이	100	9. 19	99
102	1889	소	101	10. 9	100
103	1888	쥐	102	9. 28	101
104	1887	돼지	103	9. 16	102
105	1886	개	104	9. 6	103

4-2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특별 조사구 조사 요령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I. 조사개요	3
II. 조사대상	5
1. 외무부	5
2. 내무부	5
3. 법무부	7
4. 국방부	7
III. 조사표 작성요령	10
IV.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제출	19
※ 부록 1. 특별조사구 조사표정리방법	24
2. 행정구역부호 일람표	25
3. 재외공관용조사표 가구주와의 관계 부호 분류표	55

I. 조 사 개 요

1. 법적근거

- 가. 통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법정 기본통계조사
- 나. 인구 주택 총조사 시행 규칙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한 특별조사구 규정에 의한 조사

2. 실시주기

- 1925년 이래 매 5년 주기로 실시
- 올해는 14번째 조사임

3. 목 적

인구의 규모 분포 및 인구의 관련된 제반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

4. 조 사 구(특별조사구)

- 외무부 : 재외공관
- 내무부 : 전투(의무)경찰, 경찰서, 경찰학교(간부후보생, 경찰대학생), 해양경찰
- 법무부 :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보호감호소, 보안감호소
- 국방부 : 육·해·공군 중(대)대단위

5. 조사시점 및 기간

가. 조사시점 : 1990년 11월 1일 0시

나. 조사기간 : 1990년 11월 1일 - 11월 5일(5일간)

6. 조사방법

가. OMR 조사표를 이용한 타계식 조사 :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나. OMR 조사표를 이용한 자계식 조사 : 외무부

7. 조사대상

가. 외무부 : 재외공관 직원(무관, 주재관, 안기부파견관 포함) 및 그 가족

나. 내무부 : 전투(의무)경찰 대원, 해양경찰대,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
생 및 경찰서 보호실 유치인 및 대용감방 수용자

다. 법무부 :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보호감호소, 감별소, 보안감호소의
기·미결수 및 보호자

라. 국방부 : 육·해·공군(영·내외 거주불문)

Ⅱ. 조 사 대 상

1. 외 무 부

가. 기본방향

- 1) 재외공관별로 조사한다.
- 2) 재외공관용 조사표를 사용한다.

나. 조사대상

- 1) 재외공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우리나라 사람을 조사한다(가족 포함).
- 2) 외국현지에서 고용한 우리나라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한국에서 채용하여 재외주재 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은 조사한다.
- 3) 파견된 무관도 현지 공관에서 조사한다.
- 4) 단, 해외군사교육을 위해 파견된 군인은 외무부에서 조사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조사한다.

2. 내 무 부

가. 기본방향

- 1) 경찰서 및 중대단위로 조사한다.
- 2) 전투경찰대원은 배치된 경찰서 단위 또는 중대단위로 조사한다.
- 3) 경찰서 보호실 유치인 및 대용감방 수용자는 전투경찰대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군인·전경용조사표 및 교도소용조사표로

구분작성).

나. 조사대상

1) 전투경찰대원, 해양경찰대원, 경찰대학생(4년제) 및 경찰간부후보생(1년제)(군인·전경용조사표 사용)

(가) 전투경찰대원, 해양경찰대원, 경찰대학생(4년제) 및 경찰간부후보생(1년제), 전투경찰대원 및 해양경찰대원은 소속단위부대에서 조사한다. 단, 경찰서, 경찰대학교, 경찰학교 등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배치기관 또는 중대단위로 조사한다.

(나) 경찰대학생(4년제) 및 경찰간부후보생(1년제)은 학교에서 조사한다. 그러나 현직 경찰관으로서 직무교육 등을 받기 위해 입교한 경찰관은 자기집에서 조사한다.

(다) 논산훈련소, 해군 교육단 등에 입영하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의무경찰 및 해양경찰대원은 국방부에서 조사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조사한다.

(라) 해양경찰대원의 경우 조사기준일 전에 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출항예정인 경비정 승무원으로서, 조사기간내 귀항하지 못할 경우 10월 31일 이전이라도 출항전에 조사를 한다.

(마) 해안 및 도서경비대에 근무하는 일반경찰은 자택에서 조사한다.

(바) 승선 경찰관은 자택에서 조사한다.

2) 경찰서 유치인

'90년 11월 1일 0시 현재 경찰서에 유치중인 자는 모두 조사한다(교도소용 조사표 사용).

3. 범 무 부

가. 기본방향

- 1)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보호감호소 및 경비교도대 단위로 조사한다.
- 2) 재소자는 교도소용 조사표, 경비교도대는 군인·전경용조사표를 사용한다.
- 3) 교도소용 조사표는 기결과 미결을, 군인·전경용조사표는 영내·영외거주 여부를 표시한다.

나. 조사대상

- 1) '90년 11월 1일 0시 현재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보호감호소에 수감된자는 기결이든 미결이든 모두 조사해야 한다.
- 2)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가 산모로서 어린아이와 함께 있을 경우, 이 어린아이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조사한다.
- 3) 호송중인 수형자 또는 원생은 출발한 날이 10월 31일 이전일 때에는 받는 교도소 및 소년원에서, 11월 1일 이후일 때에는 보내는 교도소 및 소년원에서 조사한다.
- 4) 10월 31일 이전에 석방 또는 퇴원키로 확정된 사람이라도 11월 1일 현재 수용중인 사람은 교도소, 소년원에서 조사한다.
- 5) 수용중 도망한 사람은 조사하지 않는다.

4. 국 방 부

가. 기본방향

- 1) 중대, 학교, 병원, 합정단위로 조사한다.

- 2) 국방부, 합참본부, 통합사령부 등은 군별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 3) 조사표 작성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각 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 4) 집계표는 대대이상 즉, 대대, 연대, 사단, 군단 등 각 단계별로 취합 작성하며 해군, 공군도 이에 준한다.

나. 조사대상

모든 정규군인(영내·외 거주불문)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서 조사한다.

- 1) 휴가, 출장(해외출장포함)중인 군인은 소속부대에서 조사한다.
- 2) 해외군사교육을 위해 파견된 군인은 현재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 조사한다. 그러나, 재외공관에 파견된 무관은 외무부에서 조사한다.
- 3) 전속이동 중인 군인은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 (가) 10월 31일 이전에 출발한 군인은 전입부대에서 조사하고 11월 1일 이후에 이동하는 군인은 전출부대에서 조사한다.
 - (나) 10월 31일 이전에 전속발령을 받았지만 11월 1일 이후에 출발하는 군인은 전출부대에서 조사한다.
- 4) 전역 또는 제대특명을 받고 11월 1일 이후에 소속되었던 부대를 떠나는 사람은 제대전 부대에서 조사한다.
- 5) 11월 1일 현재 타부대에서 파견 또는 교육대, 하사관 학교 등에 입교한 군인은 파견 또는 입교부대에서 조사한다.
- 6) 군에 입영하는 사람으로서 10월 31일 이전에 수용대에 입소한 사람은 수용대에서 조사하고, 11월 1일 이후에 수용대에 입소한 사람은 본가에서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가 안되었

을 경우 조사한다. 다만, 10월 31일 이전에 입소하였다라도,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10월 31일 이전에 귀가한 경우 조사하지 않는다.

- 7) 논산훈련소, 해군 교육단 등에 입영하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의무경찰 및 해양경찰대원은 국방부에서 조사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조사한다.
- 8) 군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자는 현재 수감된 장소에서 조사한다.
- 9) 11월 1일 현재, 일보가 삭제되지 않은 휴가, 미귀자, 무단이탈자, 영장처분자(징계처분자), 의무실 입실자 등은 원소속부대에서 조사한다. 단,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자는 병원에서 조사한다.
- 10) 10월 31일 이전에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하여 조사기간 중에 귀항하지 못할 함정 승무원은 출발전에 미리 조사한다.
- 11) 국방부, 합참본부, 통합사령부 및 통합병원 등 3군이 함께 근무하는 곳은 군별로 분리 조사한다.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 ① 군부대에서 동원 훈련중인 예비군
- ② 군부대에서 훈련 또는 소집중인 방위병
- ③ 군부대에서 위탁 교육중인 전투(의무)경찰 및 해양경찰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방법

- 가. 본조사는 단위기관(단위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등)별로 조사담당자가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OMR조사표에 기입하는 타계식 조사방법이며 조사표 1매당 10명씩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앞뒤 각 5명).
- 나. 육·해·공군, 전투경찰대, 해양경찰대, 경찰간부후보생, 법무부의 경비교도대는 군인·전경용 조사표를 작성하고,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호소, 보안감호소 및 경찰서 유치인은 교도소용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 다.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용 조사표를 사용한다.

2. 조사표 기입시 주의사항

- 가. OMR 조사표는 반드시 배부된 2B연필을 사용하여 기입한다.
- 나. 조사표를 구기거나 접거나 오손하여서는 안된다.
- 다. 각 항목마다 마크와 내용검사를 철저히 하여 기입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조사 해야하며, 비치되어 있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보고 작성해서는 안된다.
- 마. 잘못 기재된 조사표를 지우개로 지웠을 때에는 그 흔적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운 후에 다시 기입한다.

3. 조사표 기입

〈군인·전경용, 교도소용조사표〉

가. 조사표 난외기입 사항

(1) 조사구명(기관명)

국방부 특별조사구는 지정된 단위 부대명(○○사단 ○○연대 ○○대대 ○○중대), 법무부는 교도소 또는 소년원의 명칭, 내무부는 단위기관의 명칭(○○경찰서, ○○중대)을 기입한다.

(2) 조사표 매수

조사표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조사표의 총매수와 해당조사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 후 해당조사표의 일련번호를 마크한다.

(3) 조사담당자

실지조사를 담당한 사람의 직위와 성명을 조사표 각장에 2B연필로 기입한다.

나. 조사표 난내기입 사항

①②	이름 및 성별
----	---------

①이	름	
②성	별	1. 남 <input type="checkbox"/> 2. 여 <input type="checkbox"/>

- 기입순서는 계급순, 연령순, 호실순 등 조사편의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2B연필로 기입한다.
- 해당되는 남·여에 정확히 마크한다.

③ 나 이

③ 나 이	세 는 나 이	백	1				
		십	0	1	2	3	4
		일	5	6	7	8	9
		일	0	1	2	3	4
			5	6	7	8	9
	되	취	소	번	토거	용	
		별	말	양	전비	완	
		개	폐지				
	출 생 년 도	백	18		19		
		십	0	1	2	3	4
		5	6	7	8	9	
일		0	1	2	3	4	
	일	5	6	7	8	9	
생 일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십	0	1	2	3		
일	일	0	1	2	3	4	
	일	5	6	7	8	9	
양력음력구분		1. 양력	2. 음력				

- 먼저 세는 나이를 묻고 마크한다.
- 다음은 띠를 묻고 마크한다.
- 세번째는 실제의 출생년월일을 묻고 양력인가 음력인가를 표시한다.
- 특히 노인중에서는 출생년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띠에 의하여 출생년도를 환산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④ 교 육 정 도

④ 교 육 정 도	1. 안다녔음 (안다니고있음)	<input type="checkbox"/>
	2. 국민	<input type="checkbox"/>
	3. 중학	<input type="checkbox"/>
	4. 고등	<input type="checkbox"/>
	5. 전문대	<input type="checkbox"/>
	6.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7.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1. 졸업	<input type="checkbox"/>
	2. 재학	<input type="checkbox"/>
	3. 중퇴	<input type="checkbox"/>

- 응답자가 다닌 최종학교의 학력을 말하며 휴학중인 경우는 중퇴로 간주한다.
- 학교라 함은 주·야간을 막론하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각급 정규학교를 말한다. 단, 입시학원과 타자·경리·부기 및 운전기술학원등은 학교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 규 학 교	정규학교로 보지 않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학교(공민학교 포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포함) • 고등학교(구제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전수 학교 포함) • 초급대학, 전문대학(구제전문대학교 포함) • 대학이상(각급사관학교, 신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포함) • 검정고시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입 검정고시 합격(국졸) - 고입 검정고시 합격(중졸) - 대입 검정고시 합격(고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 미용학원 • 타자, 경리, 부기학원 • 재수생을 위한 입시학원 • 기술학원 • 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 • 노인대학, 주부대학 등

⑤ 혼 인 상 태

혼 인 상 태	1. 미혼 <input type="checkbox"/>	2. 유배우 <input type="checkbox"/>
	3. 사별 <input type="checkbox"/>	4. 이혼 <input type="checkbox"/>

○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묻고 마크한다.

1. 미 혼 : 결혼한 사실이 없는 사람
2. 유배우 : 결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3. 사 별 : 배우자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있는 경우로써 6·25등으로 배우자가 실종 또는 납치된

후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사별로 간주한다.

4. 이혼: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있는 경우

⑥ 영 외 거주 여부

(군인·전경용 조사표)

영 외 거 주 여 부	1 영외거주 <input type="checkbox"/>	2 영내거주 <input type="checkbox"/>
----------------------------	------------------------------------	------------------------------------

○ 이란은 육·해·공군, 전투(해양)경찰대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에 대하여 영외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 『영외거주』라 함은 영내를 벗어나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대에 출·퇴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영내에 잠시 거주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 영외거주로 본다.

○ 『영내거주』라 함은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영내에서 기거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영내거주로 본다.

- ① 군부대내 B.O.Q에서 생활하는 독신장교
- ② 부대밖에 방을 얻어 놓고 있으나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장교 또는 하사관
- ③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서 관사에 기거하는 단위기관(또는 부대)의장

⑥ 형의 확정 여부

(교도소용 조사표)

형의 확정 여부	기결	미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단신자 <input type="checkbox"/>	가족동거 <input type="checkbox"/>

- 기·미결을 구분, 해당항에 마크한다.
- 미결일 경우에는 입소 또는 유치전에 가족과 함께 살았는지 또는 가족이 없이 혼자서 살았는지의 여부를 질문 해당항에 마크한다.
- 『단신자』란 현재 가족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동거자』란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입소 또는 유치전의 거주지에서 현재에도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출생지

⑦ 출 생 지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도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한
		구·시·군(군)				
구 시 군	십	0	1	2	3	4
	일	5	6	7	8	9

- 호적에 기재된 출생지와는 관계 없이 실제로 태어난 곳을 말한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출생 당시의 행정구역이 현재와 다를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명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시·도에 마크하고 구·시·군명을 기입한다.
- 구·시·군 행정구역 번호는 첨부된 행정구역 부호를 보고 마크한다.
- 구(구단위출장소포함)가 있는 일반시(안양, 청주)는 일반시 행정

구역 부호를 기입하지 않고 구 부호를 기입한다.

예) 청주시 동부출장소 ⇒
60 61

청주시 60(×)
동부출장소 61(○)

- 출생지가 북한일 경우는 도명을 기입한후 해당 시·군부호를 마크한다.
- 출생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국명을 기입한후 해당국명 부호를 마크한다.

예) 경상북도 울릉군 ⇒ 시·도란에 경북 항에 마크하고 구시군란에는 54라고 마크한다(첨부된 행정구역 번호 참조).

⑧ 본가의 주소

⑧ 본가의 주소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시군		동읍면				
구시군	일	0	1	2	3	4	
		5	6	7	8	9	
동읍면	일	0	1	2	3	4	
		5	6	7	8	9	

- 입영 또는 수감 당시의 거주지 주소를 기입한다.
- 시부의 경우에는 행정동,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동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 관악구 봉천동 : 법정동
관악구 봉천3동 : 행정동
-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던 자는 입영 또는 수감 당시의 거주지 주소를 기입한다.
- 본가 주소의 시도는 해당시도에 마크하고 구시군, 동읍면은 기입란에 기재한후 행정구역부호에

의해 해당되는 부호를 마크한다.

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 시도란에는 전북 에 마크하고, 구시군란에는 일반시와 구가 있기 때문에 구부호 62를 마크하고, 동읍면란에는 송천동에 해당하는 부호24를 마크한다.(별첨 행정구역코드참조)

※ 출생지란 기입과 동일하나, 동읍면 행정구역번호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마크해야 한다.

〈재외공관용 조사표〉

조사표란의 기입사항

(1) 가구번호

재외공관내에서 가구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가구에 속한 종업원은 동거인으로 조사한다.

단, 가구로 형성되지 않은 소속 직원은 대표자 1명을 가구주로 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동거인으로 한다.

(2) 가구원수

가구별 총인원수를 기입하고 마크한다.

(3) 재외공관주소

재외공관주소를 기입하고 해당기관에 마크한다.

예) 하아이 영사관→영사관 주소 기입하고 에 마크한다.

(4) 가구당조사표 매수중 일련번호

가구별 소요된 총조사표 매수를 기입하고 이에 따른 일련번호

를 기입한다.

예) 가구원수가 7명인 경우 첫째장에는 2매중 1매, 둘째장에는 2매중 2매로 기입하고 마크한다.

나. 조사표 난내 기입사항

- ①.② 이름 및 성별, ④. 나 이, ⑤. 교육정도, ⑥. 혼인상태,
- ⑦. 본국의 주소란은 군인·전경용 조사표 기입요령과 동일하다. 그러나,
- ③. 가구주와의 관계란은 가구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묻고 기입한후 조사요령서 뒤에 첨부된 “가구주와의 관계 부호분류표”에 의거 마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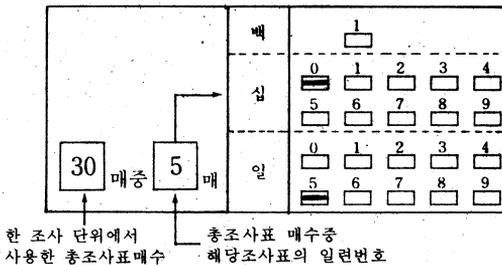
IV.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제출

1. 조사표 내용 검토

가. 난의사항

- 매 조사표마다 조사구명(기관명), 조사표 매수표시와 조사자 위, 성명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한다.
- 한 조사단위에서 OMR 조사표 일련번호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검사한다.
- 조사표 매수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예)



- 총조사표 매수 중 해당조사표와 일련 번호가 마크되어 있는 확인한다.

나. 난내사항

① 이 름

- 일보상 누락된 인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성 별

- 남·여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마크 되어 있는지 확인

③ 나 이

○ 기재 사항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다.

○ 마크는 정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④ 교육정도

○ 마크는 정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⑤ 혼인상태

○ 마크는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⑥ 영외거주(군인전경용 조사표)

○ 개념정의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난에 마크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⑦ 형의 확정 여부(교도소용조사표)

○ 기결, 미결 중 어느 하나의 난에 마크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결에 마크되었을 경우 “단신자”, “가족동거자” 중 반드시 어느 하나에 마크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⑧ 출 생 지

○ 행정구역명의 기입이 누락되지 않았나 확인하고, 행정구역부호는 정확히 기입 되었는지 확인한다.

⑨ 본가의 주소

○ 시부의 경우 행정동까지, 군부의 경우 읍면까지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행정구역 코드는 정확히 기입 되었는지 확인한다.

○ 구가 있는 일반시인 경우 구 코드가 기입 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에 시부호가 기입되어 있으면 구부호로 바꿔준다(출생지란도 동일하다).

2. 집계표 작성

가. 외 무 부

(1)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 작성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는 주재국별로 작성한다.

(2) 집 계 표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를 참조하여 외무부에서 재외공관 단위별로 인구수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내 무 부

(1)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 작성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는 경찰서단위, 중대단위, 학교단위로 작성한다.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는 경찰서단위 조사표 맨위에 놓는다.

(2) 집 계 표

조사구(경찰서, 학교, 중대)단위로 작성한 특별조사구 분류용카드를 보고 차상급기관 즉, 경찰국, 대대 등 각 단계마다 작성 취합하며 차하급부대 또는 기관의 집계표 1부를 첨부 제출한다.

다. 법 무 부

(1)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는 기관단위(구치서, 교도소, 소년원)로 작성한다.

(2)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에 의해 차상급 기관에서 집계표를 작성한다.

라. 국 방 부

(1)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는 중대에서 작성하고 중대조사표 맨위에

놓는다(부대명은 ○○사단 ○○연대 ○○중대 등으로 쓴다).

(2) 집계표 작성

집계표는 중대단위에서 작성한 조사표와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를 참조하여 부대 즉 대대, 연대, 사단, 군단 등 각 단계마다 작성 취합하며 차하급부대 집계표 1부를 첨부 제출한다.

3. 조사표 제출

가. 각 조사구의 조사담당관은 1990년 11월 5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내용 기입에 누락, 오기 등이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한후 조사표를 OMR조사표 보호용 비닐에 넣은후 11월 15일까지 각 소속장관에게 제출한다.

나. 조사표 정리는 맨 밑에, 조사표 일련번호순에 의해 OMR 조사표를 넣은후 그위에 특별조사구 분류용 카드를 놓고 OMR 조사표 보호용 비닐에 넣는다.

다. 해당 각부의 장관은 각 조사단위 책임자가 작성 제출한 조사표와 집계표에 의거 종합 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표와 함께 11월 2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MR 조사표 작성 및 수정방법

- 1) OMR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2B연필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 사용은 할 수 없다.
- 2) 마크할때에는 에 『』와 같이 굵고 진하게 좌측선과 우측선에 벗어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양호한 마크〉



〈불량한 마크〉



가늘거나
희미하게
짧은 경우



직선이외의
표시



좌측선과 우측선에서
2mm이상 벗어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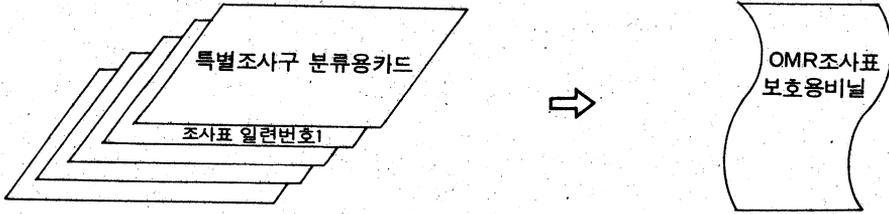
잉크·볼펜 등으로
표시한 경우

3) 수정할 때에는 배부한 지우개를 사용하여 깨끗이 지우고, 지우개 흔적이나 가루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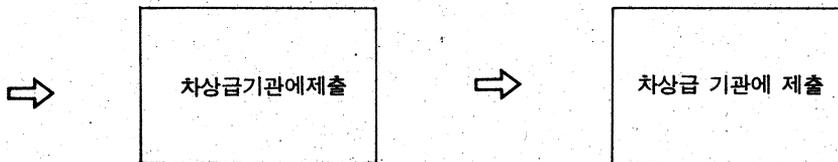
4) 조사표 훼손상태 점검

점 검 사 항	처 리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에 오물이 묻어 있는가를 확인 예) 기름, 인주, 밥풀, 커피, 빗물 등 • 조사표의 구겨짐과 찢어짐 • 조사표에 불필요하게 낙서되어 있거나 문자 및 숫자가 마크란을 침범하여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볼펜, 적색볼펜, 만년필 등의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 호치켓, 테이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에 오물이 묻어 있거나 구겨지고 찢어져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조사표에 재작성 • 마크란에 불필요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움 • 지우개를 사용할 때에는 연필 흔적이나 가루가 남지 않도록 털어내야 함 • 새로운 조사표에 재작성

〈부록 1〉 특별 조사구 조사표 정리 방법



- 조사표 일련 번호에 의해 정리
- 조사표 맨위에 특별 조사구 분류용카드 정리
- 특별조사구 분류용카드에는 조사 단위 기관명 및 조사표 매수, 조사된 인원수를 기입한다.
- OMR 조사표 보호용 비닐에 포장
- 조사단위(중대, 학교, 경찰서, 교도소등)로 포장
- 조사표 보호용 비닐에는 조사표 60~70매(600~700명)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나, 조사 단위 인원이 적을 경우 그대로 포장함.



- 특별조사구 분류용카드에 의해 집계표 작성
- 하급기관 조사표와 집계표1부 상급기관에 제출
- 차하급기관 집계표에 의해 집계표 작성

<부록 2>

<출생지 행정구역 부호>

11	중	로	구	22	강	서	구	71	수	정	구	45	안	성	군
12	중	로	구	대			구	72	중	원	구	46	김	포	군
13	용	산	구	11	중		구	11	의	부	시	47	강	화	군
14	성	동	구	12	동		구	80	안	양	시	48	용	진	군
15	동	대	구	13	서		구	81	만	안	出				
16	중	랑	구	14	남		구	82	동	안	出				
17	성	복	구	15	북		구	90	부	안	出				
18	도	봉	구	16	수	성	구	91	중		구				
19	노	원	구	17	달	서	구	92	남		시				
20	은	대	구		인		천	13	송	명	시				
21	서	대	구	11	중		구	14	동	탄	시				
22	마	포	구	12	동		구	15	안	두	시				
23	양	천	구	13	남		구	16	과	산	시				
24	강	천	구	14	남	동	구	17	구	천	시				
25	구	로	구	15	남		구	18	평	리	시				
26	영	등	구	16	북	서	구	19	미	택	시				
27	동	작	구		광		주	20	오	금	시				
28	관	악	구					21	시	산	시				
29	서	초	구	11	동		구	22	군	홍	시				
30	강	남	구	12	서		구	23	의	포	시				
31	송	파	구	13	북		구	24	하	왕	시				
32	강	동	구	14	광	산	구	31	양	남	시				
	부	산			대		전	32	남	주	군				
11	중		구	11	동		구	33	여	양	군				
12	서		구	12	중		구	34	평	주	군				
13	동		구	13	서		구	35	화	성	군				
14	영	도	구	14	유	성	구	36	파	주	군				
15	부	산	구	15	대	덕	구	37	고	양	군				
16	동	산	구		경		기	38	광	주	군				
17	남	래	구					39	연	천	군				
18	북		구	60	수	원	시	40	포	천	군				
19	해	운	구	61	장	안	구	41	가	평	군				
20	사	대	구	62	권	선	구	42	양	평	군				
21	금	하	구	70	성	남	시	44	용	천	군				
											총				
												60	청	주	시
												61	동	부	出
												62	서	부	出
												11	충	주	시
												12	제	천	시
												31	청	원	군

32	보	은	군	14	남	원	시	47	영	광	군	53	울	진	군
33	옥	천	군	15	김	제	시	48	장	성	군	54	울	릉	군
34	영	동	군	31	완	주	시	49	완	도	군	경 남			
35	진	천	군	32	진	안	시	50	진	도	군				
36	피	산	군	33	무	주	시	51	신	도	군	60	울	산	시
37	음	성	군	34	장	수	시	경 북			61	중	남	구	
38	증	원	군	35	임	실	시				11	포	항	시	62
39	제	원	군	36	남	원	시	12	경	주	시	63	동	마	구
40	단	양	군	37	순	창	시	13	김	천	시	70	마	산	시
총 남				38	정	읍	시	14	안	동	시	71	합	포	구
				39	고	창	시	15	구	시	43	안	미	시	72
11	천	안	시	40	부	안	시	16	영	주	시	11	창	원	시
12	공	주	시	41	김	제	시	17	영	천	시	12	진	주	시
13	대	천	시	42	옥	구	시	18	상	주	시	13	진	해	시
14	은	양	시	43	익	산	시	19	점	촌	시	14	총	무	시
15	서	산	시	전 남			20	경	성	산	시	15	삼	포	시
31	금	산	시				11	목	포	시	31	달	성	시	16
32	연	기	군	12	여	수	시	32	군	위	시	17	밀	양	시
33	공	주	군	13	순	천	시	33	의	성	시	18	장	포	시
34	논	산	군	14	나	주	시	34	안	동	시	31	진	양	군
35	부	여	군	15	여	천	시	35	청	송	시	32	의	령	군
36	서	천	군	16	동	광	시	36	영	양	시	33	함	안	군
37	보	령	군	31	담	양	군	37	영	덕	시	34	창	녕	군
38	청	양	군	32	곡	성	군	38	영	일	시	35	밀	양	군
39	홍	성	군	33	구	례	군	39	경	주	시	36	양	산	군
40	예	산	군	34	광	양	군	40	영	천	시	37	울	주	군
41	서	산	군	35	여	천	군	41	경	산	시	38	김	해	군
42	태	안	군	36	승	주	군	42	청	도	시	39	의	창	군
43	당	진	군	37	고	홍	군	43	고	령	시	40	통	영	군
44	아	산	군	38	보	성	군	44	성	주	시	41	거	제	군
45	천	원	군	39	화	순	군	45	칠	곡	시	42	고	성	군
전 북				40	장	홍	군	46	금	룡	시	43	사	천	군
				41	강	진	군	47	선	군	48	상	산	시	44
60	전	주	시	42	해	남	군	49	문	주	시	45	하	동	군
61	완	산	구	43	영	암	군	50	예	경	시	46	산	청	군
62	덕	진	구	44	무	안	군	51	영	천	시	47	함	양	군
11	군	산	시	45	나	주	군	52	봉	화	시	48	거	창	군
12	이	리	시	46	합	평	군				시	49	합	창	군
13	정	주	시				군				시				군

제 주		29	용강	강서	군	64	안흥	변원	군	97	회평이	양강천	군
11	제 주 시	30	강 평	서 원	군	65	흥 복	원 청	군	98	이 김	화 원	군
12	서 귀 포 시	31	평 안	원 주	군	66	이 단	원 천	군	99	철		군
31	북 제 주	32	개 덕	천 천	군	67	신 장	흥 진	군	00			군
32	남 제 주	33	영	원	군	68	장 품	산 수	군	00			군
북 한		34			군	69	삼	수 산	군	외 국			
		35			군	70	갑	산	군	51	중 일		국
황 해 도		평 안 북 도				71				52	말 레 이 지		아
01	해 주 시	36	신 의 주	시	군	72				53	필 리		핀
02	사 리 원	37	의 주	시	군	73				54	터 키		남
03	송 립 성	38	용 철	산	군	74				55	월		남
04	벽 립 성	39	선 천	천	군	합 경 북 도			56	기 타	아 시 아	지	역
05	연 백 천	40	정 박	주	군	75	청 나	진 진	시	57	미 캐	나 다	국
06	금 평 신	41	박 영	천	군	76	성 학	진 성	시	61	캐 나	다	다
07	평 신 계	42	영 운	변	군	77	길 주	성 주	시	62	맥 브	라	코
08	신 장 연	43	운 태	산	군	78	명 경	천 성	군	63	아 르	헨	티
09	장 송 은	44	태 구	천	군	79	부 무	성 명	군	64	기	타	나
10	은 안 신	45	구 삭	성	군	80	회 산	명 산	군	65	남 북	아 메 리 카	지
11	안 신 재	46	삭 창	주	군	81	중 회	성 명	군	66	영 블	란	서
12	신 재 황	47	창 벽	성	군	82	은 경	성 원	군	71	독 이	스 태	일
13	황 봉 서	48	벽 위	동	군	83	경 경	원 흥	군	72	스 스	페 위	리
14	봉 서 수	49	위 초	원	군	84				73	스 스	웨	스
15	수 곡 평	50	초 회	산	군	85				74	스 스	웨	스
16	곡 평 안	51	회 강	천	군	86				75	스 스	웨	스
17	안 산 평	52	강 자	계	군	87				76	스 스	웨	스
18	산 평 안	53	자 후	성	군	88				77	스 스	웨	스
19	산 평 안	54	창 후	창	군	경 기 도			78	텐	마	크	
평 안 남 도		55	합 경 남 도			89	개 장	성 단	시	79	기 타	유 럽	지
20	평 양 남					90	개 장	단 품	시	80	호 뉴	질 랜	드
21	남 동	56	함 원	홍 산	시	91	개 장	품 진	시	81	기 타	대 양	주
22	동 천	57	원 함	산 남	시	92	강 원 도			82	아 프	리 카	지
23	순 천	58	함 정	남 주	시				83	미 상	인 경	우	
24	맹 산	59	정 영	주 평	시	93	통 고	천 성	군				
25	양 성	60	영 고	평 흥	시	94	인 양	제 구	군				
26	성 동	61	고 문	원 천	시	95							
27	강 동	62				96							
28	중 화	63											

〈본가의 주소 행정구역 부호〉

11 서울특별시		21	신 당 제 1 동	15	사 근 동	14	제 기 제 1 동
		22	신 당 제 2 동	16	행 당 제 1 동	15	제 기 제 2 동
11 종 로 구		23	신 당 제 3 동	17	행 당 제 2 동	16	전 농 제 1 동
11	청 운 동	24	신 당 제 4 동	18	응 봉 동	17	전 농 제 2 동
12	효 자 동	25	신 당 제 5 동	19	금 호 1 가 동	18	전 농 제 3 동
13	사 직 동	26	신 당 제 6 동	20	금 호 2 가 동	19	전 농 제 4 동
14	삼 청 동	27	향 학 동	21	금 호 3 가 동	20	담 십 리 제 1 동
15	부 침 동	28	중 립 동	22	금 호 4 가 동	21	담 십 리 제 2 동
16	평 창 동	13 용 산 구		23	옥 수 제 1 동	22	담 십 리 제 3 동
17	무 악 동	11	후 암 동	24	옥 수 제 2 동	23	담 십 리 제 4 동
18	교 남 동	12	용 산 2 가 동	25	성 수 1 가 제 1 동	24	담 십 리 제 5 동
19	세 종 로 동	13	남 영 동	26	성 수 1 가 제 2 동	25	장 안 제 1 동
20	가 회 동	14	청 파 제 1 동	27	성 수 2 가 제 1 동	26	장 안 제 2 동
21	종 로 1,2 가 동	15	청 파 제 2 동	28	성 수 2 가 제 2 동	27	장 안 제 3 동
22	종 로 3,4 가 동	16	원 효 로 제 1 동	29	성 수 2 가 제 3 동	28	장 안 제 4 동
23	종 로 5,6 가 동	17	원 효 로 제 2 동	30	성 수 2 가 제 4 동	29	청 량 리 제 1 동
24	이 화 동	18	원 효 로 제 2 동	31	화 양 동	30	청 량 리 제 2 동
25	해 화 동	19	효 창 동	32	송 정 동	31	회 기 동
26	명 른 3 가 동	20	용 문 동	33	군 자 동	32	회 경 제 1 동
27	창 신 제 1 동	21	한 강 로 제 1 동	34	중 곡 제 1 동	33	회 경 제 2 동
28	창 신 제 2 동	22	한 강 로 제 2 동	35	중 곡 제 2 동	34	이 문 제 1 동
29	창 신 제 3 동	23	한 강 로 제 3 동	36	중 곡 제 3 동	35	이 문 제 2 동
30	승 인 제 1 동	24	이 촌 제 1 동	37	중 곡 제 4 동	36	이 문 제 3 동
31	승 인 제 2 동	25	이 촌 제 2 동	38	능 동	16 중 량 구	
12 중 구		26	이 태 원 제 1 동	39	용 답 동	11	면 목 제 1 동
11	태 평 로 1 가 동	27	이 태 원 제 2 동	40	구 의 제 1 동	12	면 목 제 2 동
12	소 공 동	28	한 남 제 1 동	41	구 의 제 2 동	13	면 목 제 3 동
13	남 대 문 로 5 가 동	29	한 남 제 2 동	42	광 장 동	14	면 목 제 4 동
14	회 현 동	30	서 병 고 동	43	자 양 1 동	15	면 목 제 5 동
15	명 동	14 성 동 구		44	자 양 2 동	16	면 목 제 6 동
16	충 무 로 4.5 가 동	11	왕 십 리 제 1 동	45	자 양 3 동	17	면 목 제 7 동
17	필 동	12	왕 십 리 제 2 동	15 동 대 문 구		18	상 봉 제 1 동
18	장 충 동	13	도 선 동	11	신 설 동	19	상 봉 제 2 동
19	광 회 동	14	마 장 동	12	용 두 제 1 동	20	중 화 제 1 동
20	을 지 로 3.4.5 가 동			13	용 두 제 2 동	21	중 화 제 2 동

22	중화제	3	동	18	도	봉	구	19	중계제	2	동	15	북아현제	2	동	
23	목제	1	동	11	미아제	1	동	20	상계제	1	동	16	북아현제	3	동	
24	목제	2	동	12	미아제	2	동	21	상계제	2	동	17	대신	동		
25	망우제	1	동	13	미아제	3	동	22	상계제	3	동	18	창천	동		
26	망우제	2	동	14	미아제	4	동	23	상계제	4	동	19	연회제	1	동	
27	망우제	3	동	15	미아제	5	동	24	상계제	5	동	20	연회제	2	동	
28	신내		동	16	미아제	6	동	25	상계제	6	동	21	연회제	3	동	
17	성북	구		17	미아제	7	동	26	상계제	7	동	22	홍제제	1	동	
11	성북제	1	동	18	미아제	8	동	27	상계제	8	동	23	홍제제	2	동	
12	성북제	2	동	19	번제	1	동	28	상계제	9	동	24	홍제제	3	동	
13	동소문		동	20	번제	2	동	29	상계제	10	동	25	홍제제	4	동	
14	삼선제	1	동	21	수유제	1	동	20	은	평	구	26	홍은제	1	동	
15	삼선제	2	동	22	수유제	2	동	11	녹변	동		27	홍은제	2	동	
16	동선제	1	동	23	수유제	3	동	12	불광제	1	동	28	홍은제	3	동	
17	동선제	2	동	24	수유제	4	동	13	불광제	2	동	29	남가좌제	1	동	
18	돈암제	1	동	25	수유제	5	동	14	불광제	3	동	30	남가좌제	2	동	
19	돈암제	2	동	26	쌍문제	1	동	15	갈현제	1	동	31	북가좌제	1	동	
20	안암		동	27	쌍문제	2	동	16	갈현제	2	동	32	북가좌제	2	동	
21	보문		동	28	쌍문제	3	동	17	구산		동	22	마	포	구	
22	정능제	1	동	29	방학	1	동	18	대조		동	11	아현제	1	동	
23	정능제	2	동	30	방학제	2	동	19	응암제	1	동	12	아현제	2	동	
24	정능제	3	동	31	방학제	3	동	20	응암제	2	동	13	아현제	3	동	
25	정능제	4	동	32	창제	1	동	21	응암제	3	동	14	공덕제	1	동	
26	길음제	1	동	33	창제	2	동	22	응암제	4	동	15	공덕제	2	동	
27	길음제	2	동	34	창제	3	동	23	역촌제	1	동	16	신공덕	동		
28	길음제	3	동	35	창제	4	동	24	역촌제	2	동	17	도화제	1	동	
29	종암제	1	동	36	도봉	1	동	25	신사제	1	동	18	도화제	2	동	
30	종암제	2	동	37	도봉	2	동	26	신사제	2	동	19	용강	동		
31	월곡제	1	동	19	노	원	구	27	중산		동	20	대흥	동		
32	월곡제	2	동	11	월계제	1	동	28	수색		동	21	염리	동		
33	월곡제	3	동	12	월계제	2	동	29	진관내		동	22	노고산	동		
34	월곡제	4	동	13	월계제	3	동	30	진관외		동	23	신수전	동		
35	상월	곡	동	14	공능제	1	동	21	서대문	구		24	창상수	동		
36	장위제	1	동	15	공능제	2	동	11	충정로	동		25	창상수	동		
37	장위제	2	동	16	하계제	1	동	12	천연	동		26	서교	동		
38	장위제	3	동	17	하계제	2	동	13	현저	동		27	동교	동		
39	석관제	1	동	18	중계제	1	동	14	북아현제	1	동	28	합정	동		
40	석관제	2	동									29	망원	제	1	동

30	망원제	2	동	21	발산제	1	동	11	영등포제	1	동	26	대방동		
31	연남제		동	22	발산제	2	동	12	영등포제	2	동	27	신대방제	1	동
32	성산제	1	동	23	공항		동	13	영등포제	3	동	28	신대방제	2	동
33	성산제	2	동	24	방화제	1	동	14	여의도		동	28 관악구			
34	상암		동	25	방화제	2	동	15	당산제	1	동				
23	양천		구	26	과해		동	16	당산제	2	동	11	봉천본		동
				25 구로구								12	봉천제	1	동
11	목제	1	동	11	신도림		동	17	도림제	1	동	13	봉천제	2	동
12	목제	2	동	12	구로제	1	동	18	도림제	2	동	14	봉천제	3	동
13	목제	3	동	13	구로제	2	동	19	문래제	1	동	15	봉천제	4	동
14	목제	4	동	14	구로제	3	동	20	문래제	2	동	16	봉천제	5	동
15	목제	5	동	15	구로제	4	동	21	양평제	1	동	17	봉천제	6	동
16	목제	6	동	16	구로제	5	동	22	양평제	2	동	18	봉천제	7	동
17	신월제	1	동	17	구로제	6	동	23	신길제	1	동	19	봉천제	8	동
18	신월제	2	동	18	구로제		동	24	신길제	2	동	20	봉천제	9	동
19	신월제	3	동	19	가리봉제	1	동	25	신길제	3	동	21	봉천제	10	동
20	신월제	4	동	20	가리봉제	2	동	26	신길제	4	동	22	봉천제	11	동
21	신월제	5	동	21	가리봉제	3	동	27	신길제	5	동	23	남현		동
22	신월제	6	동	22	독산제	1	동	28	신길제	6	동	24	신림본		동
23	신월제	7	동	23	독산제	2	동	29	신길제	7	동	25	신림제	1	동
24	신정제	1	동	24	독산제	3	동	30	대림제	1	동	26	신림제	2	동
25	신정제	2	동	25	독산제	4	동	31	대림제	2	동	27	신림제	3	동
26	신정제	3	동	26	독산본		동	32	대림제	3	동	28	신림제	4	동
27	신정제	4	동	27	시흥제	1	동	27 동작구				29	신림제	5	동
28	신정제	5	동	28	시흥제	2	동	11	노량진제	1	동	30	신림제	6	동
29	신정제	6	동	29	시흥제	3	동	12	노량진제	2	동	31	신림제	7	동
30	신정제	7	동	30	시흥제	4	동	13	상도제	1	동	32	신림제	8	동
24 강서구				31	시흥제	5	동	14	상도제	2	동	33	신림제	9	동
11	염창		동	32	시흥본		동	15	상도제	3	동	34	신림제	10	동
12	등촌제	1	동	33	고척제	1	동	16	상도제	4	동	35	신림제	11	동
13	등촌제	2	동	34	고척제	2	동	17	상도제		동	36	신림제	12	동
14	화곡제	1	동	35	개봉제	1	동	18	본		동	29 서초구			
15	화곡제	2	동	36	개봉제	2	동	19	후석제	1	동				
16	화곡제	3	동	37	개봉제	3	동	20	후석제	2	동	11	서초제	1	동
17	화곡제	4	동	38	오류제	1	동	21	동작제	3	동	12	서초제	2	동
18	화곡제	5	동	39	오류제	2	동	22	사당제	1	동	13	서초제	3	동
19	화곡본		동	26 영등포구				23	사당제	2	동	14	잠원		동
20	가양		동	24	사당제	3	동	24	사당제	3	동	15	반포본		동
				25	사당제	4	동	25	사당제	4	동	16	반포제	1	동

17	반포제	2	동	14	마천제	1	동	26	성내제	3	동	13	동	구	
18	반포제	3	동	15	마천제	2	동	27	길제	1	동	11	초량제	1	동
19	반포제	4	동	16	방이	동	동	28	길제	2	동	12	초량제	2	동
20	방배본	동	동	17	오륜	동	동	29	둔촌제	1	동	13	초량제	3	동
21	방배제	1	동	18	오륜	동	동	30	둔촌제	2	동	14	초량제	4	동
22	방배제	2	동	19	송파제	1	동	21 부산직할시				15	초량제	6	동
23	방배제	3	동	20	송파제	2	동					16	수정제	1	동
24	양재	동	동	21	석촌	동	동	11 중 구				17	수정제	2	동
25	내곡	동	동	22	삼전	동	동	11	중	구	동	18	수정제	3	동
30 강남구				23	가락제	1	동	12	중	구	동	19	수정제	4	동
11	신사	동	동	24	가락제	2	동	13	대	동	동	20	수정제	5	동
12	논현	동	동	25	가락본	동	동	14	보수제	1	동	21	좌천제	1	동
13	학	동	동	26	문정제	1	동	15	보수제	2	동	22	좌천제	2	동
14	압구정	1	동	27	문정제	2	동	16	부평	동	동	23	좌천제	3	동
15	압구정	2	동	28	잠실본	동	동	17	광복	동	동	24	좌천제	4	동
16	청담	1	동	29	잠실제	1	동	18	남포	동	동	25	범일제	1	동
17	청담	2	동	30	잠실제	2	동	19	영주제	1	동	26	범일제	2	동
18	삼성제	1	동	31	잠실제	3	동	20	영주제	2	동	27	범일제	4	동
19	삼성제	2	동	32	잠실제	4	동	12 서 구				28	범일제	5	동
20	대치제	1	동	33	잠실제	5	동	11	대신제	1	동	29	범일제	6	동
21	대치제	2	동	34	잠실제	6	동	12	대신제	2	동	14 영 도 구			
22	대치제	3	동	35	잠실제	7	동	13	대신제	3	동	11	대교	동	동
23	대치제	4	동	32 강 동 구				14	서대신제	1	동	12	대교	동	동
24	역삼제	1	동	11	하일	동	동	15	서대신제	2	동	13	남평	동	동
25	역삼제	2	동	12	하일	동	동	16	서대신제	3	동	14	영선제	1	동
26	도곡제	1	동	13	하일	1	동	17	서대신제	4	동	15	영선제	2	동
27	도곡제	2	동	14	명일	2	동	18	서대신제	4	동	16	신선제	1	동
28	개포제	1	동	15	명일	1	동	19	부용	동	동	17	신선제	2	동
29	개포제	2	동	16	고덕	2	동	20	부민	동	동	18	신선제	3	동
30	개포제	3	동	17	고덕	1	동	21	토성	동	동	19	신선제	3	동
31	개포제	4	동	18	암사	2	동	22	아미	1	동	20	봉래제	1	동
32	세곡	동	동	19	암사	3	동	23	아미	2	동	21	봉래제	2	동
33	일원	동	동	20	천호	1	동	24	초장	동	동	22	봉래제	3	동
31 송 파 구				21	천호	2	동	25	충무	동	동	23	봉래제	4	동
11	풍납	1	동	22	천호	3	동	26	남부민	1	동	24	청학	1	동
12	풍납	2	동	23	천호	4	동	27	남부민	2	동	25	청학	2	동
13	거여	동	동	24	성내	1	동	28	남부민	3	동	26	동	1	동
				25	성내	2	동		압	남	동		동	2	동

15 부 산 진 구				17	은	천	제	3	동	27	남	천	제	2	동	13	중	제	1	동
11	부	전	제 1	동	18	사	직	제 1	동	28	문	현	제 1	동	14	중	제	2	동	
12	부	전	제 2	동	19	사	직	제 2	동	29	문	현	제 2	동	15	좌			동	
13	범	전		동	20	사	직	제 3	동	30	문	현	제 3	동	16	송	정		동	
14	연	지		동	21	거	제	제 1	동	31	문	현	제 4	동	17	반	여	제 1	동	
15	초	읍		동	22	거	제	제 2	동	32	문	현	제 5	동	18	반	여	제 2	동	
16	양	정	제 1	동	23	거	제	제 3	동	33	수	영		동	19	반	여	제 3	동	
17	양	정	제 2	동	24	거	제	제 4	동	34	망	미	제 1	동	20	반	석	대	동	
18	양	정	제 3	동	25	연	산	제 1	동	35	망	미	제 2	동	21	반	송	제 1	동	
19	양	정	제 4	동	26	연	산	제 2	동	36	광	안	제 1	동	22	반	송	제 2	동	
20	전	포	제 1	동	27	연	산	제 3	동	37	광	안	제 2	동	23	반	송	제 3	동	
21	전	포	제 2	동	28	연	산	제 4	동	38	광	안	제 3	동	24	재	송		동	
22	전	포	제 3	동	29	연	산	제 5	동	39	광	안	제 4	동	20 사 하 구					
23	전	포	제 4	동	30	연	산	제 6	동	40	광	안	제 4	동	11	괴	정	제 1	동	
24	부	암	제 1	동	31	연	산	제 7	동	18 북 구				12	괴	정	제 2	동		
25	부	암	제 2	동	32	연	산	제 8	동	11	구	포	제 1	동	13	괴	정	제 3	동	
26	부	암	제 3	동	33	연	산	제 9	동	12	구	포	제 2	동	14	과	정	제 4	동	
27	당	감	제 1	동	34	안	락	제 1	동	13	금	곡		동	15	당	리		동	
28	당	감	제 2	동	35	연	락	제 2	동	14	화	명		동	16	하	단		동	
29	당	감	제 3	동	36	명	장	제 1	동	15	덕	천	제 1	동	17	신	평		동	
30	당	감	제 4	동	37	명	장	제 2	동	16	덕	천	제 2	동	18	장	림	제 1	동	
31	가	야	제 1	동	17 남 구				17	만	덕	제 1	동	19	장	림	제 2	동		
32	가	야	제 2	동	11	대	연	제 1	동	18	만	덕	제 2	동	20	다	대		동	
33	가	야	제 3	동	12	대	연	제 2	동	19	삼	라		동	21	구	대		동	
34	개	금	제 1	동	13	대	연	제 3	동	20	모	라		동	22	감	천	제 1	동	
35	개	금	제 2	동	14	대	연	제 4	동	21	덕	포	제 1	동	23	감	천	제 2	동	
36	개	금	제 3	동	15	대	연	제 5	동	22	덕	포	제 2	동	21 금 정 구					
37	범	천	제 1	동	16	대	연	제 6	동	23	괘	법		동	11	서	제	1	동	
38	범	천	제 2	동	17	용	호	제 1	동	24	감	전	1	동	12	서	제	2	동	
39	범	천	제 3	동	18	용	호	제 2	동	25	감	전	2	동	13	서	제	3	동	
16 동 래 구				19	용	호	제 3	동	26	주	례	제 1	동	14	서	제	4	동		
11	수	민		동	20	용	호	제 4	동	27	주	례	제 2	동	15	금	사		동	
12	복	산		동	21	용	당		동	28	학	장		동	16	오	륜		동	
13	명	륜	1	동	22	감	만	제 1	동	29	업	궁		동	17	부	곡	제 1	동	
14	명	륜	2	동	23	감	만	제 2	동	19 해 운 대 구				18	부	곡	제 2	동		
15	은	천	제 1	동	24	우	암	제 1	동	11	우	제 1	동	19	부	곡	제 3	동		
16	은	천	제 2	동	25	우	암	제 2	동	12	우	제 2	동	20	장	전	제 1	동		
					26	남	천	제 1	동											

21	장전제	2	동	28	대봉	1	동	18	비산	4	동	17	침산	3	동
22	장전제	3	동	29	대봉	2	동	19	비산	5	동	18	노원	1,2	가 동
23	선두		동	12 동 구				20	비산	6	동	19	노원	3	가 1 동
24	노칭남	구포용산	동	11	신암	1	동	21	비산	7	동	20	노원	3	가 2 동
25	노칭남	구포용산	동	12	신암	2	동	22	평리	1	동	21	산격	1	동
26	구서제	1	동	13	신암	3	동	23	평리	2	동	22	산격	2	동
27	구서제	2	동	14	신암	4	동	24	평리	3	동	23	산격	3	동
28	구서제	2	동	15	신암	5	동	25	평리	4	동	24	대현	1	동
29	금성		동	16	신천	1	동	26	평리	5	동	25	대현	2	동
30	강서	구	동	17	신천	2	동	27	상리		동	26	대현	3	동
22 강서구				18	신천	3	동	28	중리		동	27	대복	현	1 동
11	대저	1	동	19	신천	4	동	29	원대	1,2	가 동	28	대복	현	2 동
12	대저	2	동	20	효목	1	동	30	원대	3	가 동	29	검단		동
13	강동		동	21	효목	2	동	14 남 구				30	무조	야	동
14	명지		동	22	평광		동	11	이천	1	동	31	조야	곡	동
15	가락		동	23	불로·봉무		동	12	이천	2	동	32	노곡		동
16	녹산		동	24	도지		동	13	봉덕	1	동	33	칠곡	1	동
17	천가		동	25	지석		동	14	봉덕	2	동	34	칠곡	2	동
22 대구직할시				26	입사		동	15	봉덕	3	동	35	칠곡	3	동
11 중 구				27	검사		동	16	대명	1	동	16 수성구			
11	동인	1,2	가 동	28	방촌		동	17	대명	2	동	11	범어	1	동
12	동인	3	가 동	29	둔산·부평		동	18	대명	3	동	12	범어	2	동
13	동인	4	가 동	30	신평		동	19	대명	4	동	13	범어	3	동
14	삼덕	1,2	가 동	31	공산	1	동	20	대명	5	동	14	범어	4	동
15	삼덕	3	가 동	32	공산	2	동	21	대명	6	동	15	만촌	1	동
16	봉산		동	33	안심	1	동	22	대명	7	동	16	만촌	2	동
17	동성		동	34	안심	2	동	23	대명	8	동	17	수성	1	가 동
18	서성		동	35	안심	3	동	24	대명	9	동	18	수성	2,3	가 동
19	남성		동	36	안심	4	동	25	대명	10	동	19	수성	4	가 동
20	달성		동	13 서 구				26	대명	11	동	20	황금		동
21	대신	1	동	11	내당	1	동	15 북 구				21	중상		동
22	대신	2	동	12	내당	2	동	11	고성		동	22	상파		동
23	남산	1	동	13	내당	3	동	12	칠성	1	가 동	23	두산		동
24	남산	2	동	14	내당	4	동	13	칠성	2	가 1 동	24	지범	산	동
25	남산	3	동	15	비산	1	동	14	칠성	2	가 2 동	25	범물		동
26	남산	4	동	16	비산	2	동	15	침산	1	동	26	고산	1	동
27	남산		동	17	비산	3	동	16	침산	2	동	27	고산	2	동

17	달	서	구	13	화	수	2	동	36	연	수	동	29	갈	산	동			
11	성	당	제	1	14	화	평	동	37	연	수	동	30	부	개	1	동		
12	성	당	제	2	15	송	현	동	14 남 동 구				31	부	개	2	동		
13	두	류	1	동	16	송	현	동	11	구	월	1	동	32	일	신	동		
14	두	류	2	동	17	송	현	동	12	구	월	2	동	33	십	정	1	동	
15	두	류	3	동	18	송	림	동	13	간	석	1	동	34	십	정	2	동	
16	성	서	1	동	19	송	림	동	14	간	석	2	동	35	계	양	동		
17	성	서	2	동	20	송	림	동	15	간	석	3	동	16 서 구					
18	성	서	3	동	21	송	림	동	16	간	석	4	동	11	검	암	동		
19	성	서	4	동	22	송	림	동	17	만	수	1	동	12	경	서	동		
20	본	리	동	23	송	금	창	동	18	만	수	2	동	13	연	회	동		
21	월	배	1	동	24	남	구	동	19	만	수	3	동	14	가	신	동		
22	월	배	2	동	11	송	의	1	21	장	수	4	동	15	신	현	동		
23	월	배	3	동	12	송	의	2	동	22	서	창	동	16	석	남	1	동	
24	월	배	4	동	13	송	의	3	동	23	도	림	동	17	석	남	2	동	
25	송	현	1	동	14	송	의	4	동	24	논	현	동	18	원	창	동		
26	송	현	2	동	15	용	현	1	동	25	고	잔	동	19	가	좌	1	동	
27	송	현	본	동	16	용	현	2	동	15 북 구				20	가	좌	2	동	
23 인천 직할시				17	용	용	현	3	동	11	부	평	1	동	21	가	좌	3	동
11 중 구				18	용	용	현	4	동	12	부	평	2	동	22	가	좌	4	동
11	중	안	동	19	용	학	현	5	동	13	부	평	3	동	24 광주 직할시				
12	연	안	동	20	학	학	의	1	동	14	부	평	4	동	11 동 구				
13	신	포	동	21	학	우	의	2	동	15	부	평	5	동	11	대	금	동	
14	신	홍	동	22	우	도	련	1	동	16	부	평	6	동	12	충	수	동	
15	신	선	동	23	도	도	화	2	동	17	산	곡	1	동	13	대	수	의	동
16	도	원	동	24	도	도	화	3	동	18	산	곡	2	동	14	대	의	동	
17	울	목	동	25	도	주	화	1	동	19	산	곡	3	동	15	대	제	1	동
18	내	경	동	26	주	주	안	2	동	20	산	곡	1	동	16	대	제	2	동
19	인	현	동	27	주	주	안	3	동	21	청	제	1	동	17	대	제	1	동
20	북	성	동	28	주	주	안	4	동	22	청	제	2	동	18	대	제	2	동
21	송	월	동	29	주	주	안	5	동	23	효	제	1	동	19	대	제	3	동
22	영	종	동	30	주	주	안	6	동	24	효	제	2	동	20	대	제	1	동
23	용	유	동	31	주	주	안	7	동	25	계	제	1	동	21	대	제	2	동
12 동 구				32	주	주	안	8	동	26	계	제	2	동	22	대	제	3	동
11	만	석	동	33	주	문	학	동	27	작	전	1	동	23	대	제	1	동	
12	화	수	1	동	34	문	학	동	28	작	전	2	동	23	대	제	2	동	

24	남	금	동	39	봉	성	동	21	임	극	출	장	소	13	선	화	2	동		
25	충	금	동	13	북	구		22	동	곡	출	장	소	14	선	화	3	동		
26	삼	성	동					23	평	출	장	소	15	목				15	선	화
27	서	석	동	11	증	홍	제	1	동	동	출	장	소	16	중	촌		동		
28	학	제	1	12	중	홍	제	2	동	24	삼	도	출	17	대	홍	1	동		
29	학	제	2	13	중	홍	제	3	동	25	본	양	출	18	대	홍	2	동		
30	학	제	3	14	유				동	26	대	촌	출	19	대	홍	3	동		
31	학	운	동	15	누	문			동	27	서	창	출	20	문	창	1	동		
32	지	원	동	16	북				동	25 대전직할시				21	문	창	2	동		
12 서				17	임				동	11 동				22	문	석	교	사	사	동
11	양	림	동	18	신	안			동	11	원			23	대	부	용	용	동	
12	방	림	1	19	용	봉	제	1	동	12	인			24	부	용	두	1	동	
13	방	림	2	20	동	운	제	2	동	13	효			25	용	두	두	2	동	
14	사	구	동	21	동	운	산	2	동	14	신	홍		26	용	류			동	
15	서	제	1	22	우	향	산	1	동	15	관	암		27	오	평	천	화	동	
16	서	제	2	23	풍	향	산	2	동	16	용	운		28	태	평	천	화	동	
17	양	제	1	24	풍	화			동	17	대	동	1	29	태	평	천	화	동	
18	양	제	2	25	문	화	제	1	동	18	대	자	2	30	유	문	문	화	동	
19	양	제	3	26	두	암	제	2	동	19	자	신	1	31	유	문	문	화	동	
20	월	산	1	27	두	암	산	2	동	20	신	소	2	32	문	문	문	화	동	
21	월	산	2	28	서	산	효		동	21	소	가	1	33	문	문	문	화	동	
22	월	산	3	29	충	산	효		동	22	가	양	2	34	문	문	문	화	동	
23	월	산	4	30	청	산	효		동	23	가	양	1	35	문	문	문	화	동	
24	월	산	5	31	장	본	운		동	24	용	전	2	13 서				구		
25	농	성	1	32	본	운	촌		동	25	성	남	1	11	복	수			동	
26	농	성	2	33	우	촌	치		동	26	성	남	2	12	도	마	1		동	
27	백	운	1	34	삼	소			동	27	홍	성	1	13	도	마	2		동	
28	백	운	2	14 광 산				구	28	삼	성	성	2	14	변					동
29	주	월	1	11	송	정	1	1	동	29	삼	성	2	15	용	문			동	
30	주	월	2	12	송	정	2	2	동	30	정			16	용	과	정		동	
31	효	덕	동	13	송	정	3	3	동	31	중			17	가	장			동	
32	송	암	동	14	도	산			동	32	추			18	갈	마			동	
33	광	천	동	15	신	홍	운		동	33	세	천		19	가	수	원		동	
34	유	덕	동	16	용	운	촌		동	34	산	내		20	가	수	성		동	
35	쌍	촌	동	17	소	운	촌		동	12 중				구	14	유	성		구	
36	화	정	1	18	우	산			동	11	은	행		11	원	내			동	
37	화	정	2	19	비	아	출	장	소	12	선	화	1	12	진	내	잠		동	
38	화	정	3	20	하	남	출	장	소											동

13	은	천	1	동	13	세	류	2	동	19	상	대	원	제	3	동	18	원	정	동		
14	은	천	2	동	14	세	류	3	동	20	분	당	매	수	교	동	19	오	정	동		
15	신	성		동	15	평			동	21	이	당	매	수	교	동	20	신	홍	동		
16	탄			동	16	서	둔		동	22	여	당	매	수	교	동	21	신	홍	동		
17	전	민		동	17	매	산		동	23	관	수	교	곡	동	22	도	당	동	동		
18	구	추		동	18	고	등		동	24	금	운	금	중	동							
15 대 덕 구					19	인	계		동	81 안양시만안출장소						91 부 천 시 남 구						
11	오	정		동	20	매	탄	제	1	동	11 안 양 1 동						11	심	곡	1	동	
12	대	화		동	21	매	탄	제	2	동	12 안 양 2 동						12	심	곡	본	동	
13	회	덕	1	동	22	원	곡	천		동	13 안 양 3 동						13	소	사	사	1	동
14	회	덕	2	동	23	곡	천	선		동	14 안 양 4 동						14	소	사	사	2	동
15	회	덕	3	동	71 성 남 시 수 정 구					15 안 양 5 동						15	소	사	사	3	동	
16	신	탄	진	동	11	신	홍	1	동	16 안 양 6 동						16	범	곡	박	동		
17	석	봉	암	동	12	신	홍	2	동	17 안 양 8 동						17	역	곡	곡	1	동	
18	덕	상		동	13	신	홍	3	동	18 안 석 수 1 동						18	역	곡	곡	2	동	
19	목	상		동	14	태	평	1	동	19 석 수 수 2 동						19	역	곡	곡	3	동	
31 경 기 도					15	태	평	2	동	20 석 수 수 3 동						20	피	안		동		
61 수원시장안구					16	태	평	3	동	21 석 수 달 동						21	중	송	내	제	1	동
11	팔	달		동	17	태	평	4	동	82 안양시등안출장소						22	송	내	제	2	동	
12	남	향		동	18	수	진	1	동	11 안 양 7 동						23	송	내	제	2	동	
13	신	안		동	19	수	진	2	동	12 비 산 1 동						24	송	상		동		
14	화	서	1	동	20	단	대	성	동	13 비 산 2 동						11 의 정 부 시						
15	화	서	2	동	21	산	지	정	동	14 바 산 3 동						11	의	정	부	1	동	
16	파	장		동	22	양	정	촌	동	15 관 양 1 동						12	의	정	부	2	동	
17	울	천		동	23	복	정	촌	동	16 관 양 2 동						13	의	정	부	3	동	
18	정	제	1	동	24	신	촌	동	동	17 평 촌 동						14	의	정	부	4	동	
19	정	제	2	동	25	고	동	동	동	18 호 계 1 동						15	효	원		동		
20	영	화		동	26	시	동	동	동	19 호 계 2 동						16	장	곡	산	동		
21	송	원		동	72 성 남 시 중 원 구					20 호 계 3 동						17	송	산	금	동		
22	조	원		동	11	성	남		동	91 부 천 시 중 구						18	자	금		동		
23	연	원		동	12	중	남		동	11 심 곡 2 동						19	가	능	1	동		
24	지	만		동	13	금	강	제	1	동	12 심 곡 3 동						20	가	능	2	동	
25	우	의		동	14	금	강	제	2	동	13 원 미 1 동						21	가	능	3	동	
26	이	의		동	15	은	행	1	동	14 원 미 2 동						22	낙	양		동		
62 수원시권선구					16	은	행	2	동	15 춘 의 곡 동						12 광 명 시						
11	매	교		동	17	상	대	원	제	1	동	16 성 의 곡 동						11	광	명	1	동
12	세	류	1	동	18	상	대	원	제	2	동	17 고 강 동						12	광	명	2	동

13	광명	3	동	13	고잔	1	동	16	도농	동	13	신덕	장제	2	동
14	광명	4	동	14	고잔	2	동	20	오산	시	14	덕덕	제제	1	동
15	광명	5	동	15	성포		동	11	중역	앙	15	덕덕	제제	2	동
16	광명	6	동	16	군원	자	동	12	중역	촌	16	덕덕	제제	3	동
17	광명	7	동	17	원곡	1	동	13	남	촌	17	풍감	산		동
18	철산	1	동	18	원곡	2	동	14	신	장	18	감	산	북	동
19	철산	2	동	19	초	지	동	15	세	마	19	춘	북	궁	동
20	철산	3	동	20	공	단	동	16	초	평	20	초	궁	이	동
21	철산	4	동	21	선	부	동	21	시	흥	31	양	주	군	
22	하안	1	동	16	과	천	시	11	대	야	11	회	천		읍
23	하안	2	동	11	중	앙	동	12	신	천	31	주	내	현	면
24	소하	1	동	12	갈	현	동	13	신	관	32	은	현		면
25	소하	2	동	13	별	양	동	14	은	행	33	남			면
26	은		동	14	부	림	동	15	매	화	34	광	적		면
	승	탄	시	15	과	천	동	16	안	산	35	백	석		면
11	중서	앙	동	16	문	원	동	17	목	감	36	장	흥		면
12	지	정	동	17	구	리	시	18	거	모	32	남	양	주	군
13	송	산	동	11	갈	매	동	19	청	왕	11	와	부		읍
14	송	북	동	12	동	구	동	22	군	포	12	진	접		읍
15	신	장	동	13	인	창	동	11	군	포	31	별	내		면
16	신	장	동	14	교	문	동	12	군	제	32	퇴	원		면
17	도	원	동	15	수	택	동	13	당	정	33	진	계	건	면
18	동	부	동	16	수	평	동	14	산	제	34	수	동	도	면
	14	두	천	18	평	택	시	15	산	제	35	화	도		면
11	생	연	1	11	산	평	동	16	금	정	36	조	안		면
12	생	연	2	12	서	부	동	23	의	왕	33	여	주	군	
13	생	연	3	13	통	북	동	11	고	천	11	여	주	읍	
14	생	연	4	14	비	전	동	12	부	곡	31	점	남	면	
15	보	산	동	15	비	전	동	13	오	전	32	가	서	면	
16	내	행	동	16	세	교	동	14	내	제	33	능	천	면	
17	동	안	동	19	미	금	시	15	내	제	34	홍	사	면	
18	소	요	동	11	호	평	동	16	청	계	35	금	북	면	
19	광	암	동	12	평	내	동	24	하	남	36	산	신	면	
20	상	패	동	13	금	곡	동	11	천	현	37	대	신	면	
	안	산	시	14	양	정	동	12	신	제	38	북	내	면	
11	반	월	동	15	지	금	동				39	강	천	면	
12	수	암	동												

34	평	택	군	36	파	평	면	34	소	홀	면	34	마	장	면
11	평	성	읍	37	적	성	면	35	신	복	면	35	대	월	면
31	진	위	면	38	군	내	면	36	창	수	면	36	모	가	면
32	서	탄	면	37	고	양	군	37	영	중	면	37	설	성	면
33	고	덕	면	11	신	도	읍	38	일	동	면	38	을		면
34	오	성	면	12	화	전	읍	39	이	동	면	44	용	인	군
35	청	북	면	13	원	당	읍	40	영	북	면	11	용	인	읍
36	포	승	면	14	일	산	읍	41	관	인	면	12	기	홍	읍
37	현	덕	면	15	벽	제	읍	42	화	현	면	31	포	곡	면
38	안	중	면	16	지	도	읍	41	가	평	군	32	모	현	면
35	화	성	군	31	송	포	면	11	가	평	읍	33	구	성	면
11	태	안	읍	38	광	주	군	31	설	악	면	34	수	지	면
31	반	월	면	11	광	주	읍	32	외	서	면	35	남	사	면
32	매	송	면	31	오	포	면	33	상		면	36	이	동	면
33	봉	담	면	32	초	월	면	34	하		면	37	원	삼	면
34	비	봉	면	33	도	척	면	35	부		면	38	외	사	면
35	남	양	면	34	실	춘	면	42	양	평	군	39	내	사	면
36	마	도	면	35	퇴	춘	면	11	양	평	읍	45	안	성	군
37	송	산	면	36	남	중	면	31	강	상	면	11	안	성	읍
38	서	신	면	37	중	부	면	32	강	하	면	31	보	개	면
39	팔	탄	면	39	연	천	군	33	양	서	면	32	금	광	면
40	장	안	면	11	연	천	읍	34	옥	천	면	33	서	운	면
41	우	정	면	12	전	곡	읍	35	서	중	면	34	미	양	면
42	향	남	면	31	군	남	읍	36	단	월	면	35	대	덕	면
43	양	감	면	32	청	산	읍	37	청	운	면	36	양	성	면
44	정	남	면	33	백	학	면	38	양	동	면	37	공	도	면
45	동	탄	면	34	중		면	39	지	제	면	38	원	곡	면
36	파	주	군	35	창	남	면	40	용	문	면	39	일	죽	면
11	금	춘	읍	36	미	산	면	41	개	군	면	40	이	죽	면
12	문	산	읍	37	왕	장	면	43	이	천	군	41	삼	죽	면
13	파	주	읍	38	신	서	면	11	이	천	읍	42	고	삼	면
14	법	원	읍	40	포	천	군	12	장	호	읍	46	김	포	군
31	법	원	면	11	포	천	읍	13	부	원	읍	11	김	포	읍
32	월	룡	면	31	군	내	면	31	신	발	면	31	고	촌	면
33	교	현	면	32	내	춘	면	32	백	둔	면	32	검	단	면
34	조	하	면	33	가	산	면	33	호	사	면	33	양	춘	면
35	광	탄	면							법	면	34	대	곳	면

35	월	곳	면	19	호	반	동	13	임	당	동	14	상	장	동
36	하	성	면	20	후	평	동	14	옥	천	동	15	장	성	동
37	통	진	면	21	후	평	동	15	교	1	동	16	화	광	동
47	강	화	군	22	효	자	동	16	교	2	동	17	계	산	동
11	강	화	읍	23	효	자	동	17	포	남	동	18	철	암	1
31	선	원	면	24	효	자	동	18	초	당	동	19	철	암	2
32	불	은	면	25	석	사	동	19	송	정	동	20	연	화	동
33	길	상	면	26	퇴	계	동	20	내	곡	동	21	동	점	동
34	화	도	면	27	온	의	동	21	장	현	동	22	문	곡	동
35	양	도	면	28	삼	천	동	22	노	암	동	23	소	도	동
36	내	가	면	29	칠	송	동	23	월	호	동	24	화	전	1
37	하	점	면	30	사	우	동	24	입	평	동	25	화	전	2
38	양	사	면	31	우	두	동	25	두	암	동	16	속	초	시
39	송	해	면	32	사	농	동	26	유	산	동	11	영	랑	동
40	교	동	면	33	신		동	27	죽	천	동	12	동	명	동
41	삼	산	면	12	원	주	시	28	운	현	동	13	중	양	동
42	서	도	면	11	중	평	동	29	저	정	동	14	금	호	동
48	웅	진	군	12	원	인	동	14	동	해	시	15	청	학	동
31	북	도	면	13	개	운	동	11	천	곡	동	16	교	학	동
32	송	림	면	14	명	륜	동	12	송	정	동	17	노	양	동
33	백	령	면	15	단	구	동	13	북	삼	동	18	조	호	동
34	대	청	면	16	일	산	동	14	부	곡	동	19	청	포	동
35	덕	적	면	17	학	성	1	15	동	호	동	20	대	문	동
36	차	월	면	18	학	성	2	16	향	로	동	21	도	악	동
37	영	홍	면	19	단	계	동	17	발	한	동	22	설	사	동
38	대	부	면	20	우	산	동	18	사	문	동	23	장		동
32	강	원	도	21	태	장	1	19	북	호	동	17	삼	척	시
				22	태	장	2	20	북	평	동				
11	춘	천	시	23	봉	산	1	21	이	원	동	11	남	양	동
				24	봉	산	2	22	어	달	동	12	월	계	동
11	중	양	동	25	행	구	동	23	망	상	동	13	교		동
12	교	운	동	26	무	실	동	24	삼	홍	동	14	정	라	동
13	조	사	동	27	관	설	동	25	삼	화	동	15	사	직	동
14	약	림	동	28	반	곡	동	15	태	백	시	16	도	원	동
15	죽	낙	동	13	강	릉	시								
16	소	낙	동	11	홍	제	동	11	황	지	1	31	춘	성	군
17	근	화	동	12	중	양	동	12	황	지	2	31	동		면
18	소	양	동	12			동	13	황	지	3	32	동	산	면

33	신동	동내	면	37	홍판	업	면	14	동서	송	읍	35	강현	면	
34	남		면	38	관	부	면	31	근	남	면	44	명주	군	
35	남	산	면	39	신	림	면	32	근	북	면	11	주문	진	
36	남		면	35 영월				군	33	근		군	31	성왕	산
37	서사	북	면	11	영상	월	읍	39 화천				32	구강	정	
38	사	북	면	12	중하	동	읍	11	화간	천	읍	33	구옥	동	
39	신	북	면	31	북	동	면	31	하	동	면	34	옥사	계	
40	북	산	면	32	북	동	면	32	상	남	면	35	사연	천	
32 홍천				33	남		면	33	사	서	면	36	연	곡	
11	홍화	천	읍	34	서		면	40 양구				45	삼척	군	
31	두내	촌	면	35	주	천	면	11	양	구	읍	11	도원	계	
32	서동	촌	면	36	수	주	면	31	남		면	12	근하	덕	
33	서동	촌	면	36 평창				군	32	동		면	31	하	덕
34	남서	촌	면	11	평	창	읍	33	방	산	면	32	하	장	
35	남서	석	면	31	미	창	면	34	해	안	면	33	노	곡	
36	북		면	32	방	단	면	41 인제				34	미	로	
37	북	방	면	33	대	림	면	11	인	제	읍	35	가	곡	
38	내		면	34	봉	화	면	31	남		면	36	신	기	
39	내		면	35	용	평	면	32	북		면	33 총청북도			
33 횡성				36	진	평	면	33	기	린	면	61 청주시동부출장소			
11	횡우	성	읍	37	도	부	면	34	서	화	면	11	영·북2·북문로3기동		
31	안강	홍	면	37 정선				군	35	상	남	면	12	문화·북1·남기동	
32	둔	림	면	11	정	선	읍	42 고성				13	서윤, 남1가	동	
33	갑	내	면	12	고	한	읍	11	거	진	읍	14	서문	동	
34	갑	천	면	13	사	북	읍	12	간	성	읍	15	남주	동	
35	청	일	면	14	신	동	읍	31	현	내	면	16	석교	동	
36	공	근	면	31	동	동	면	32	죽	왕	면	17	수	동	
37	공	원	면	32	남		면	33	토	성	면	18	우	동	
38	서		면	33	북		면	43 양양				19	내	동	
34 원주				34	북	평	면	11	양	양	군	20	내	동	
31	소초	저	면	35	임	계	면	31	양	양	읍	21	울	동	
32	호	정	면	38 철원				군	32	서	양	면	22	탐	동
33	지	막	면	11	철	원	읍	33	손	북	면	23	영	동	
34	문	론	면	12	김	화	읍	34	현	남	면	24	금	동	
35	부	래	면	13	갈	말	읍				면	25	용담·명암·산성동		
36	귀		면				읍				면				

26	용암·용정·방서동	17	동현	31	동이	면	36	청천	면	
62 청주시서부출장소		18	두학	32	안안	면	37	청도	면	
11	사직 1 동	19	청전	33	안내	면	38	도안	면	
12	사직 2 동	20	화산 1	34	청성	면	39	도리	면	
13	사창 동	21	화산 2	35	청이	면	40	도소	면	
14	모층 동	22	영천 1	36	이원	면	41	도불	면	
15	운천·신봉 동	23	영천 2	37	군서	면	37 음성군			
16	산·미·분·수곡 동	31	청원군	38	군북	면	11	음성	읍	
17	성화·개신·중림 동	31	남성	34 영동군			12	음성	읍	
18	가경·복대 동	32	미원	11	영동	읍	31	소원	면	
19	봉명·송정 동	33	가덕	31	용산	면	32	원남	면	
20	강서 1 동	34	남일	32	황간	면	33	맹동	면	
21	강서 2 동	35	남이	33	황금	면	34	대소	면	
11 충주시		36	문의	34	매곡	면	35	삼성	면	
11	성내·성남·성서 동	37	현도	35	상촌	면	36	생극	면	
12	충인·충의 동	38	부용	36	양강	면	37	생감	면	
13	교현 1 동	39	강내	37	용화	면	38 증원군			
14	교현 2 동	40	강외	38	학산	면	31	살미	면	
15	용산 동	41	옥산	39	양산	면	32	상모	면	
16	지현 동	42	오창	40	양심	면	33	이류	면	
17	역전 동	43	북이	35 진천군			34	주덕	면	
18	호암·직동	44	북일	11	진천	읍	35	신니	면	
19	단월·풍·가주 동	32 보은군			31	덕산	면	36	노은	면
20	달천·용관·용두 동	11	보은	읍	32	초평	면	37	양성	면
21	봉방 동	31	내속	리	33	문백	면	38	가금	면
22	칠금·금농 동	32	외속	리	34	백곡	면	39	금가	면
23	연수 동	33	마로	면	35	이월	면	40	동량	면
24	목행·용탄 동	34	탄부	면	36	이승	면	41	산척	면
25	안림·종민·목별 동	35	삼승	면	36 괴산군			42	엄정	면
12 제천시		36	수한	면	11	괴산	읍	43	소태	면
11	교양 동	37	회남	면	12	괴평	읍	39 제원군		
12	중양 동	38	회북	면	31	감물	면	31	금성	면
13	남천 동	39	내북	면	32	장연	면	32	청풍	면
14	명서 동	40	산외	면	33	연풍	면	33	수산	면
15	의림 동	33 옥천군			34	칠성	면	34	수덕	면
16	용두 동	11	옥천	읍	35	문광	면	35	한수	면

36	백	운	면	12	대	관	동	35	전	의	면	35	구	룡	면
37	봉	양	면	13	대	신	동	36	전	동	면	36	홍	산	면
38	송	학	면	14	홍	덕	동					37	옥	산	면
40	단	양	군	15	왕	대	동	33	공	주	군	38	남	화	면
11	단	양	읍	16	현	대	동	31	이	인	면	39	충	화	면
12	매	포	읍	14	은	양	시	32	탄	천	면	40	양	화	면
31	대	강	면	11	은	천	1	33	계	룡	면	41	임	천	면
32	가	곡	면	12	은	천	2	34	반	포	면	42	장	암	면
33	영	춘	면	13	권	곡	동	35	장	기	면	43	세	도	면
34	어	상	면	14	신	정	동	36	의	당	면	44	석	성	면
35	적	성	면	15	용	화	동	37	정	안	면	45	초	춘	면
34	총	청	남	16	은	주	동	38	우	성	면	36	서	천	군
				15	서	산	시	39	사	곡	면	11	장	향	읍
11	천	안	시	11	부	춘	동	40	신	풍	면	12	서	천	읍
11	대	룡	동	12	동	문	동	41	유	구	면	31	마	서	면
12	문	성	동	13	동	성	동	34	논	산	군	32	화	양	면
13	남	성	동	14	활	성	동	11	논	산	읍	33	기	산	면
14	원	성	동	15	수	석	동	12	강	경	읍	34	한	산	면
15	원	성	동	16	석	남	동	13	연	무	읍	35	마	산	면
16	성	춘	동	31	오	산	동	31	성	동	면	36	시	초	면
17	쌍	봉	동	11	금	산	군	32	광	석	면	37	문	산	면
18	신	룡	동	11	금	산	읍	33	노	성	면	38	판	교	면
19	청	룡	동	31	금	성	면	34	상	월	면	39	종	천	면
20	신	안	동	32	제	원	면	35	부	적	면	40	비	인	면
21	부	성	동	33	부	리	면	36	연	산	면	41	서		면
12	공	주	시	34	군	북	면	37	두	마	면	37	보	령	군
11	증	학	동	35	남	일	면	38	벌	곡	면	31	주	포	면
12	봉	황	동	36	남	이	면	39	양	춘	면	32	주	교	면
13	산	성	동	37	진	산	면	40	가	야	면	33	오	천	면
14	응	진	동	38	복	수	면	41	은	진	면	34	천	북	면
15	금	학	동	39	추	부	면	42	채	운	면	35	청	소	면
16	옥	룡	동	32	연	기	군	35	부	여	군	36	청	라	면
17	신	관	동	11	조	치	읍	11	부	여	읍	37	남	포	면
18	금	홍	동	31	동	원	면	31	규	암	면	38	응	천	면
13	대	천	시	32	서		면	32	은	산	면	39	주	산	면
11	원		동	33	남		면	33	외	산	면	40	미	산	면
				34	금	남	면	34	내	산	면	41	성	주	면

38	청 양 군	41	서 산 군	33	탕 정 면	24	서 완 산 동
11	청 양 읍	31	인 지 면	34	음 봉 면	25	동 서 학 동
31	운 곡 면	32	부 석 면	35	둔 포 면	26	서 서 학 동
32	대 치 면	33	팔 봉 면	36	영 인 면	27	중 서 화 신 동
33	정 치 산 면	34	지 봉 면	37	인 주 면	28	서 평 신 화 동
34	목 산 면	35	대 곡 산 면	38	선 장 면	29	평 화 친 동
35	창 남 면	36	성 연 면	39	도 고 면	30	삼 자 동
36	장 평 면	37	음 암 면	40	신 창 면	31	효 자 동
37	남 양 면	38	운 산 면	45	천 원 군	32	효 자 동
38	화 성 면	39	해 미 면			33	남 고 동
39	비 봉 면	40	고 북 면				
39	흥 성 군	42	태 안 군	11	성 환 읍	62	전 주 시 덕 진 구
11	흥 성 읍	11	태 안 읍	12	성 거 읍	11	서 노 송 동
12	광 천 읍	12	안 면 읍	31	풍 세 면	12	진 북 1 동
31	흥 북 면	31	고 남 면	32	광 목 면	13	진 북 2 동
32	금 마 면	32	근 흥 면	33	복 북 면	14	인 후 1 동
33	흥 동 면	33	소 홍 면	34	성 남 면	15	인 후 2 동
34	장 공 면	34	원 북 면	35	수 신 면	16	인 후 3 동
35	은 하 면	35	이 북 면	36	병 신 면	17	덕 후 3 동
36	결 성 면	36	원 북 면	37	동 신 면	18	금 암 1 동
37	서 부 면	43	당 진 군	38	직 산 면	19	금 암 2 동
38	갈 산 면	11	당 진 읍	39	입 장 면	20	팔 복 동
39	구 향 면	12	합 덕 읍	40	도 장 면	21	우 아 동
40	예 산 군	31	고 대 면	35	전 라 북 도	22	호 성 동
11	예 산 읍	32	석 문 면			23	전 미 동
12	삼 교 읍	33	대 호 지 면	61	전 주 시 완 산 구	24	송 천 동
31	대 술 면	34	정 미 면	11	중 앙 동	25	조 천 동
32	신 양 면	35	면 천 면	12	경 원 동	26	동 동
33	광 시 면	36	순 성 면	13	풍 남 동	11	군 산 시
34	대 흥 면	37	우 강 면	14	전 남 동	11	해 망 동
35	응 봉 면	38	신 평 면	15	다 가 동	12	신 흥 동
36	덕 산 면	39	송 약 면	16	고 사 동	13	월 명 동
37	봉 산 면	40	송 산 면	17	교 동	14	오 룡 동
38	고 산 면	44	아 산 군	18	태 평 1 가 동	15	신 풍 동
39	신 덕 면	11	염 치 읍	19	태 평 2 가 동	16	삼 학 동
40	오 암 가 면	31	송 치 면	20	중 노 송 1 가 동	17	선 양 동
		32	배 약 방 면	21	중 노 송 2 가 동	18	명 산 동
				22	남 노 송 동	19	중 양 로 1 가 동
				23	동 완 산 동	20	중 양 로 2 가 동

21	중 앙 로 3 가	동	16	시 기 3	동	39	경 화 동	면	34	성 둔	수 남	면
22	미 원	동	17	연 지	동	40	화 동	면	35	신	남 덕	면
23	중 남	동	18	농 소	동	41	동	면	36	삼 관	덕 계	면
24	홍 남	동	19	상 평	동	32 진 안 군			37	관	계	면
25	조 촌	동	20	과 교	동				38	장	촌	면
26	경 암	동	21	내 장	동	11	진 안	읍	39	덕	진	면
27	구 암	동	22	정 일	동	31	용 안	면	40	지	치	면
28	개 수	동	14 남 원 시			32	안 천	면	41	36 남 원 군		
29	나 송	동	11	동 충	동	33	동 상	면				
30	소 룡	동	12	죽 항	동	34	상 백	면	31	주 천	면	
32	미 성	동	13	쌍 교	동	35	성 운	면	32	수 지	동	면
12 이 리 시			14	금 왕	동	36	성 수	면	33	송 동	생	면
11	창 인	동	15	정 교	동	37	마 부	면	34	주 금	지	면
12	중 양	동	16	향 용	동	38	부 정	면	35	대 대	사	면
13	평 화	동	17	도 정	동	39	주 천	면	36	대 대	사	면
14	갈 산	동	18	통 정	동	40	주 천	면	37	대 대	사	면
15	주 현	동	19	암 정	동	33 무 주 군			38	대 대	사	면
16	인 화	동	15 김 제 시			11	무 주	읍	39	대 대	사	면
17	동 산	동	11	요 촌	동	31	무 풍	면	40	대 대	사	면
18	마 산	동	12	신 풍	동	32	설 천	면	41	대 대	사	면
19	남 1	동	13	봉 황	동	33	적 상	면	42	대 대	사	면
20	남 2	동	14	검 산	동	34	안 성	면	43	대 대	사	면
21	모 현	동	15	서 산	동	35	부 성	면	44	대 대	사	면
22	송 화	동	16	교 천	동	34 장 수 군			45	대 대	사	면
23	목 학	동	17	월 문	동	11	장 수	읍	46	대 대	사	면
24	계 천	동	31 완 주 군			31	장 산	면	37 순 창 군			
25	북 문	동	11	삼 레	읍	32	산 반	면	11	순 창	창	면
26	신 일	동	12	봉 동	읍	33	계 내	면	31	인 창	계	면
27	신 흥	동	31	용 동	면	34	천 천	면	32	동 창	계	면
28	팔 봉	동	32	상 관	면	35	계 남	면	33	적 창	성	면
29	삼 성	동	33	이 서	면	36	계 북	면	34	유 창	동	면
13 정 주 시			34	소 양	면	35 입 실 군			35	풍 창	산	면
11	수 성	동	35	구 양	면	11	입 실	읍	36	금 창	과	면
12	장 명	동	36	고 이	면	31	청 실	면	37	팔 창	덕	면
13	상 시	동	37	비 산	면	32	운 암	면	38	복 창	홍	면
14	시 기 1	동	38	운 봉	면	33	신 평	면	39	쌍 창	치	면
15	시 기 2	동		주 주	면				40	구 창	림	면

38	정	읍	군	35	보	안	면	11	합	열	읍	31	죽	교	2	동
11	신	태	인	36	변	산	면	31	오	산	면	32	죽	교	3	동
31	북			37	진	서	면	32	황	등	면	33	달			동
32	입	암		38	백	산	면	33	합	라	면	34	대	성		동
33	소	성		39	상	서	면	34	응	포	면	35	이	반		동
34	고	부		40	하	서	면	35	성	당	면	36	삼	로		동
35	영	원		41	출	서	면	36	용	안	면	37	충	향		동
36	덕	천		42	위	포	면	37	낭	산	면	38	연	무		동
37	이	평		41	김	제	군	38	망	성	면		12	여	수	시
38	정	우		31	죽	산	면	39	여	산	면	11	종	화		동
39	태	인		32	백	산	면	40	금	마	면	12	수	정		동
40	감	곡		33	용	지	면	41	왕	공	면	13	공	화		동
41	옹	동		34	백	구	면	42	춘	포	면	14	관	문		동
42	칠	보		35	부	량	면	43	삼	기	면	15	고	소		동
43	산	내		36	만	경	면	44	용	동	면	16	동	산		동
44	산	의		37	공	덕	면		36 전 라 남 도			17	중	안		동
	고	창		38	청	하	면		11 목 포 시			18	교			동
11	고	창		39	성	덕	면	11	용	당	1	20	충	자		동
31	고	수		40	진	봉	면	12	용	당	2	21	연	무		동
32	아	산		41	금	구	면	13	산	정	1	22	광	교		동
33	무	장		42	봉	남	면	14	산	정	2	23	서	강		동
34	공	음		43	황	산	면	15	산	성	3	24	봉	산		동
35	상	하		44	금	산	면	16	대	성	1	25	봉	산		동
36	해	리		45	광	산	면	17	대	성	2	26	남	산		동
37	성	송		42	옥	구	군	18	양			27	국	산		동
38	대	산		11	옥	구	읍	19	북	교		28	신	경		동
39	심	원		31	회	산	면	20	남	교		29	경	여		동
40	홍	덕		32	임	현	면	21	호	남		30	여	서		동
41	성	내		33	서	피	면	22	죽	안		31	문	수		동
42	신	림		34	대	수	면	23	무	명		32	오	림		동
43	부	안		35	개	야	면	24	동	해		33	미	평		동
	부	안		36	성	정	면	25	영	달		34	둔	덕		동
11	부	안		37	나	산	면	26	유	호		35	오	천		동
31	주	진		38	옥	포	면	27	만	산		36	만	홍		동
32	동	안		39	옥	도	면	28	서	금		37	덕	충		동
33	행	안		40	의	서	면	29	온							동
34	계	화		43	의	산	군	30	죽	교	1	13	순	천		시

11	영	수	동	11	황	금	동	33	토	지	면	31	도	덕	면
12	영	옥	동	12	성	황	동	34	마	산	면	32	풍	양	면
13	행	금	동	13	중	마	동	35	광	의	면	33	금	산	면
14	매	곡	동	14	광	영	동	36	용	방	면	34	도	화	면
15	삼	산	동	15	태	인	동	37	산	동	면	35	포	두	면
16	조	곡	동	16	금	호	동					36	봉	래	면
17	덕	연	동	17	금	당	동	34	광	양	군	37	동	일	면
18	풍	덕	동		31	담	양	11	광	양	읍	38	점	암	면
19	남	제	동				군	31	봉	강	면	39	영	남	면
20	저	천	동	11	담	양	읍	32	옥	룡	면	40	과	역	면
21	장	천	동	31	봉	산	면	33	옥	곡	면	41	남	양	면
22	중	양	동	32	고	서	면	34	진	상	면	42	동	강	면
23	대	평	동	33	남	평	면	35	진	월	면	43	대	서	면
24	덕	흥	동	34	창	덕	면	36	다	압	면	44	두	원	면
25	인	안	동	35	대	정	면					38	보	성	군
26	왕	조	동	36	무	성	면	35	여	천	군				
				37	금	성	면	11	돌	산	읍	11	보	성	읍
14	나	주	시	38	용	산	면	31	소	라	면	12	별	교	읍
				39	월	북	면	32	울	촌	면	31	노	동	면
11	송	월	동	40	수	전	면	33	화	양	면	32	미	력	면
12	영	강	동	41	대	전	면	34	남		면	33	겨	백	면
13	향	교	동					35	화	정	면	34	울	어	면
14	금	남	동		32	곡	성	36	화	산	면	35	복	내	면
15	성	북	동				군					36	문	덕	면
16	송	현	동	11	곡	성	읍	36	승	주	군	37	조	성	면
17	남	산	동	31	오	곡	면					38	득	량	면
18	영	산	동	32	삼	기	면	11	승	주	읍	39	회	창	면
19	부	산	동	33	석	곡	면	31	해	룡	면	40	응	치	면
20	이	덕	동	34	목	동	면	32	서		면				
21	가	창	동	35	죽	사	면	33	황	전	면	39	화	순	군
		야	동	36	죽	곡	면	34	월	등	면				
				37	고	달	면	35	주	암	면	11	화	순	읍
				38	옥	과	면	36	송	광	면	31	한	천	면
				39	입		면	37	의	서	면	32	춘	양	면
				40	겸	산	면	38	낙	안	면	33	청	풍	면
								39	별	량	면	34	이	양	면
								40	상	사	면	35	능	주	면
15	여	천	시		33	구	레	37	고	흥	군	36	도	곡	면
							군					37	도	암	면
11	쌍	봉	동	11	구	레	읍	11	고	흥	읍	38	이	서	면
12	시	전	동	31	문	척	면					39	부		면
13	여	천	동					12	도	양	읍				
14	주	삼	동												
15	삼	일	동												
16	묘	도	동												
17	상	암	동												
16	동	광	양	시	32	간	전								

40	동	북	면	39	마	산	면	39	금	천	면	38	북	일	면
41	남		면	40	황	산	면	40	산	포	면	39	북	이	면
42	동		면	41	산	이	면	41	남	평	면	40	북	하	면
40	장	흥	군	42	문	내	면	42	다	도	면	49	완	도	군
11	장	흥	읍	43	화	원	면	43	봉	황	면	11	완	도	읍
12	관	산	읍	43	영	암	군	46	함	평	군	12	금	도	읍
13	대	덕	읍	11	영	암	읍	11	합	평	읍	13	노	일	읍
31	용	산	면	31	덕	진	면	31	손	불	면	31	군	화	면
32	안	양	면	32	금	정	면	32	신	광	면	32	신	외	면
33	장	동	면	33	신	북	면	33	학	교	면	33	고	지	면
34	장	평	면	34	시	종	면	34	엄	다	면	34	약	금	면
35	유	치	면	35	도	포	면	35	대	동	면	35	청	산	면
36	부	산	면	36	군	서	면	36	나	산	면	36	소	안	면
37	회	진	면	37	서	호	면	37	해	보	면	37	금	당	면
41	강	진	군	38	학	산	면	38	월	야	면	38	보	길	면
11	강	진	읍	39	미	암	면	47	영	광	군	39	생	일	면
31	군	동	면	40	삼	호	면	47	영	광	군	50	진	도	군
32	칠	량	면	44	무	안	군	11	영	광	읍	11	진	도	읍
33	대	구	면	11	무	안	읍	12	백	수	읍	31	군	내	면
34	마	량	면	12	일	로	읍	13	홍	농	읍	32	고	군	면
35	도	암	면	31	삼	향	면	31	대	마	면	33	의	신	면
36	신	전	면	32	몽	탄	면	32	묘	량	면	34	임	회	면
37	성	천	면	33	청	계	면	34	불	감	면	35	지	산	면
38	작	천	면	34	현	경	면	35	군	서	면	36	조	도	면
39	병	영	면	35	망	운	면	36	염	남	면	51	신	안	군
40	음	천	면	36	해	제	면	37	법	산	면	11	지	도	읍
42	해	남	군	37	운	남	면	38	낙	성	면	31	증	도	면
11	해	남	읍	45	나	주	군	48	장	성	군	32	임	자	면
31	삼	산	면	31	세	지	면	11	장	성	읍	33	자	은	면
32	화	산	면	32	왕	곡	면	31	진	원	면	34	비	금	면
33	현	산	면	33	반	남	면	32	남		면	35	도	초	면
34	송	지	면	34	공	산	면	33	동	화	면	36	후	산	면
35	북	평	면	35	동	강	면	34	삼	서	면	37	하	의	면
36	옥	천	면	36	다	시	면	35	삼	계	면	38	신	의	면
37	북	일	면	37	문	평	면	36	황	통	면	39	장	산	면
38	계	곡	면	38	노	안	면	37	서	삼	면	40	안	좌	면

41	팔	금	면	16	탑	정	동	22	평	화	동	19	휴	천	1	동
42	암	대	면	17	황	남	동	23	안	기	동	20	휴	천	2	동
43	암	해	면	18	인	교	동	24	안	막	동	21	휴	천	3	동
37 경 상 북 도				19	선	도	동	25	안	옥	동	22	가	홍	1	동
				20	도	동	동	26	송	하	동	23	가	홍	2	동
11 포 함 시				21	보	덕	동	27	송	하	동	17 영 천 시				
				22	보	황	동	28	강	천	동	11	동	부	동	
11	대	홍	동	23	용	황	동	15 구 미 시				12	중	양	동	
12	중	양	동	24	동	천	동					13	교	산	동	
13	덕	수	동	25	정	래	동					14	완	남	동	
14	대	신	동	26	불	국	동					15	주	작	동	
15	동	빈	동	13 김 천 시								16	봉	도	동	
16	학	산	동	11	용	호	동					17	영	전	동	
17	항	구	동	12	모	암	동					18	대	산	동	
18	상	1	동	13	성	내	동					19	명		동	
19	상	2	동	14	평	화	동					18 상 주 시				
20	해	1	동	15	남	산	동					11	중	양	동	
21	해	2	동	16	황	금	동					12	남	원	동	
22	송	도	동	17	신	음	동					13	북	문	동	
23	양	학	동	18	금	산	동					14	계	림	동	
24	죽	도	동	19	미	곡	동					15	동	문	동	
25	죽	1	동	20	부	곡	동					16	동	성	동	
26	용	2	동	21	지	좌	동					17	신	홍	동	
27	용	홍	동	22	대	응	동					19 점 촌 시				
28	우	창	동	23	양	천	동					11	충	현	동	
29	두	호	동	14 안 동 시								12	중	양	동	
30	장	량	동	11	중	구	동					13	신	홍	동	
31	환	여	동	12	명	륜	동					14	신	기	동	
32	청	림	동	13	옥	을	동					15	대	성	동	
33	제	철	동	14	신	홍	동					16	모	전	동	
34	효	곡	동	15	용	성	동					20 경 산 시				
35	대	이	동	16	동	남	동					11	중	양	동	
12 경 주 시				17	대	홍	동					12	동	부	동	
11	성	내	동	18	대	신	동					13	서	부	동	
12	성	동	동	19	당	북	동					14	남	부	동	
13	황	오	동	20	태	화	동					15	북	부	동	
14	중	양	동	21	법	상	동									
15	성	건	동													

16	중	방	동	45	신	평	면	31	강	구	면	11	금	호	읍
31	달	성	군	46	안	사	면	32	남	정	면	31	청	통	면
				47	안	평	면	33	달	산	면	32	신	녕	면
31	가	창	면	34 안 동 군			34	지	품	면	33	화	산	면	
32	다	사	면	11	풍	산	읍	35	충	산	면	34	화	북	면
33	하	빈	면	31	와	룡	면	36	영	해	면	35	자	양	면
34	화	원	면	32	복	후	면	37	병	곡	면	36	임	고	면
35	옥	포	면	33	서	후	면	38	창	수	면	37	고	경	면
36	논	공	면	34	풍	천	면	38 영 일 군			38	북	안	면	
37	현	풍	면	35	일	직	면	11	구	포	읍	39	대	창	면
38	유	가	면	36	남	후	면	12	홍	해	읍	40	화	남	면
39	구	지	면	37	남	선	면	13	연	일	읍	41 경 산 군			
32 군 위 군				38	임	하	면	14	오	천	읍	11	하	양	읍
11	군	위	읍	39	길	안	면	31	신	광	면	31	와	촌	면
31	소	보	면	40	임	동	면	32	청	하	면	32	진	량	면
32	효	령	면	41	예	안	면	33	송	라	면	33	자	인	면
33	부	계	면	42	도	산	면	34	기	계	면	34	용	성	면
34	우	보	면	43	녹	전	면	35	죽	장	면	35	남	산	면
35	의	홍	면	35 청 송 군			36	대	송	해	면	36	압	량	면
36	산	성	면	11	청	송	읍	37	동	행	면	37	남	천	면
37	고	로	면	31	부	동	면	38	지	보	면	42 청 도 군			
33 의 성 군				32	부	남	면	39	대	북	면	11	화	양	읍
11	의	성	읍	33	현	동	면	40	기	북	면	12	청	도	읍
31	단	촌	면	34	현	서	면	39 경 주 군			31	각	도	면	
32	점	곡	면	35	안	덕	면	11	감	포	읍	32	풍	남	면
33	옥	산	면	36	파	천	면	12	안	강	읍	33	각	북	면
34	사	곡	면	37	진	보	면	13	건	천	읍	34	이	서	면
35	춘	산	면	36 영 양 군			14	외	동	읍	35	운	문	면	
36	가	음	면	11	영	양	읍	31	양	북	면	36	금	천	면
37	금	성	면	31	입	안	면	32	양	남	면	37	매	전	면
38	봉	양	면	32	청	기	면	33	내	남	면	43 고 령 군			
39	비	안	면	33	일	월	면	34	산	내	면	11	고	령	읍
40	구	천	면	34	수	비	면	35	서	공	면	31	덕	곡	면
41	단	밀	면	35	석	보	면	36	견	동	면	32	운	수	면
42	단	북	면	37 영 덕 군			37	강	북	면	33	성	산	면	
43	안	계	면	11	영	덕	읍	38	천	천	면	34	다	산	면
44	다	인	면					40	영	천	군				

35	개	진	면	43	부	항	면	33	호	계	면	36	석	포	면
36	우	곡	면	44	대	덕	면	34	산	북	면	37	재	산	면
37	쌍	림	면	45	증	산	면	35	동	로	면	38	명	호	면
44	성	주	군	47	선	산	군	36	마	성	면	39	상	운	면
11	성	주	읍	11	선	산	읍	37	농	암	면	53	울	진	군
31	선	남	면	31	무	을	면	50	예	천	군	11	울	진	읍
32	용	암	면	32	옥	성	면	11	예	천	읍	12	평	해	읍
33	수	륜	면	33	도	개	면	31	용	문	면	31	복		면
34	가	천	면	34	해	평	면	32	상	리	면	32	서		면
35	금	수	면	35	산	동	면	33	하	리	면	33	근	남	면
36	대	가	면	36	장	천	면	34	감	천	면	34	원	남	면
37	벽	진	면	37	고	아	면	35	보	문	면	35	기	성	면
38	초	전	면	48	상	주	군	36	호	명	면	36	온	정	면
39	월	향	면	11	합	창	읍	37	유	천	면	37	죽	변	면
45	칠	곡	군	31	사	별	면	38	용	궁	면	38	후	포	면
11	왜	관	읍	32	중	동	면	39	개	포	면	54	울	릉	군
31	지	천	면	33	낙	동	면	40	지	보	면	11	울	릉	읍
32	동	명	면	34	청	리	면	41	풍	양	면	31	서		면
33	가	산	면	35	공	성	면	51	영	풍	군	32	북		면
34	석	적	면	36	외	남	면	11	풍	기	읍	38	경	상	도
35	북	삼	면	37	내	서	면	31	이	산	면	61	울	산	구
36	약	목	면	38	모	서	면	32	평	은	면	11	학	성	동
37	기	산	면	39	모	동	면	33	문	수	면	12	반	구	동
46	금	릉	군	40	화	서	면	34	장	수	면	13	복	산	동
31	농	소	면	41	화	서	면	35	안	정	면	14	북	정	동
32	남		면	42	화	남	면	36	봉	현	면	15	옥	교	동
33	아	포	면	43	화	북	면	37	순	홍	면	16	성	남	동
34	개	령	면	44	외	서	면	38	단	산	면	17	우	정	동
35	감	문	면	45	은	척	면	39	부	석	면	18	태	화	동
36	어	모	면	46	공	검	면	52	봉	화	군	19	병	영	동
37	봉	산	면	47	이	안	면	11	봉	화	읍	20	약	사	동
38	대	향	면	49	문	경	군	31	물	야	면	21	진	장	동
39	감	천	면	11	문	경	읍	32	법	성	면	22	효	문	동
40	조	마	면	12	가	은	읍	33	범	전	면	23	양	정	동
41	구	성	면	31	영	순	면	34	춘	양	면	24	염	포	동
42	지	례	면	32	산	양	면	35	소	천	면				

25	송 정 동	18	중 앙 동	17	반 송 동	13	진 해 시
62	울 산 시 남 구	19	완 월 동	18	대 대 동	11	충 무 로 1 가 동
11	신 정 제 1 동	20	자 월 동	19	내 용 동	12	충 무 로 2 가 동
12	신 정 제 2 동	21	서 성 동	20	신 사 동	13	충 무 로 3 가 동
13	신 정 제 3 동	22	동 성 동	21	증 가 동	14	충 무 로 4 가 동
14	신 정 제 4 동	23	부 립 동	22	가 음 정 동	15	충 무 로 5 가 동
15	달 동	24	추 성 동	23	남 산 주 남 촌 귀 동	16	충 무 로 6 가 동
16	무 거 동	25	중 호 동	24	성 응 신 삼 동	17	여 좌 1 가 동
17	옥 천 동	26	성 원 동	25	성 응 신 삼 동	18	여 좌 2 가 동
18	여 음 1 동	27	교 방 동	26	신 동	19	여 좌 3 가 동
19	야 음 2 동	28	교 남 1 동	27	신 동	20	태 백 가 동
20	야 음 3 동	29	상 남 2 동	28	신 동	21	경 화 1 가 동
21	야 음 3 동	30	상 남 2 동	29	신 동	22	경 화 2 가 동
22	선 암 동	31	오 동 동	12	진 주 시	23	경 화 3 가 동
23	부 곡 동	32	산 호 1 동	11	망 경 동	24	경 석 동
24	황 성 동	33	산 호 2 동	12	강 남 동	25	이 동
25	용 연 동	72	마 산 시 회 원 구	13	칠 암 동	26	자 은 동
26	장 생 포 동	11	회 원 1 동	14	본 성 동	27	덕 산 동
27	매 암 동	12	회 원 2 동	15	남 성 동	28	풍 호 동
63	울 산 시 동 구	13	석 전 1 동	16	대 안 동	29	장 천 동
11	방 어 동	14	석 전 2 동	17	중 안 동	30	행 암 동
12	일 산 동	15	회 성 동	18	봉 곡 동	31	응 천 1 동
13	화 정 동	16	양 덕 1 동	19	상 봉 동	32	응 천 2 동
14	전 하 1 동	17	양 덕 2 동	20	상 봉 동	33	응 동 1 동
15	전 하 2 동	18	양 덕 3 동	21	봉 래 동	34	응 동 2 동
16	남 목 제 1 동	19	합 성 1 동	22	수 정 동	14	총 무 시
17	남 목 제 2 동	20	합 성 2 동	23	장 대 동	11	도 천 동
18	주 전 동	21	구 성 1 동	24	옥 남 동	12	서 호 동
71	마 산 시 합 포 구	22	구 성 2 동	25	옥 북 동	13	명 정 동
11	현 포 동	23	봉 암 동	26	상 대 1 동	14	항 정 남 동
12	가 포 동	11	창 원 시	27	상 대 2 동	15	항 중 남 동
13	월 영 1 동	11	의 안 동	28	상 평 동	16	문 양 화 동
14	월 영 2 동	12	동 정 동	29	초 전 재 동	17	태 평 호 동
15	창 포 동	13	소 계 동	30	장 거 동	18	동 평 호 동
16	월 남 동	14	팔 용 동	31	평 이 동	19	정 량 동
17	반 월 동	15	상 북 동	32	관 현 동	20	북 신 동
		16	사 립 동	33	가 문 호 동	21	무 전 동

22	평림	1	동	17	밀	양	시	34	화	정	면	11	삼	랑	진	읍
23	평림	2	동					35	용	덕	면	12	하	남	읍	
24	안평		동	11	내	일이	동	36	정	곡	면	31	부	북	면	
25	당평		동	12	내		동	37	지	정	면	32	상	동	면	
26	미수	1	동	13	교		동	38	낙	서	면	33	산	외	면	
27	미수	2	동	14	삼	문	동	39	부	림	면	34	산	내	면	
28	봉평		동	15	가	곡	동	40	봉	수	면	35	단	장	면	
29	도남	1	동	16	용	활	동	41	공	유	면	36	상	남	면	
30	도남	2	동					42	유	곡	면	37	초	동	면	
15	삼천포		시	18	장	승	포	시	33	합	안	군	38	무	안	면
11	동선	서구	동	11	장	승	포	동	33	합	안	군	39	청	도	면
12	동선	서금	동	12	마	진	동									
13	동선	서좌	동	13	능	포	동	11	가	야	읍	36	양	산	군	
14	동선	좌룡	동	14	아	주	동	31	함	안	면	11	양	산	읍	
15	동선	룡이	동	15	옥	제	동	32	군	복	면	12	기	장	읍	
16	동선	이공	동	16	옥	포	동	33	법	수	면	13	장	안	면	
17	동선	이공	동					34	대	산	면	31	동		면	
18	동선	이공	동	31	진	양	군	35	철	서	면	32	물	금	면	
19	동선	이공	동	32	내	동	면	36	칠	북	면	33	원	동	면	
20	동선	이공	동	33	정	촌	면	37	칠	원	면	34	상	북	면	
21	동선	이공	동	34	금	곡	면	38	산	인	면	35	하	북	면	
22	동선	이공	동	35	문	산	면	39	여	향	면	36	응	상	면	
23	동선	이공	동	36	진	성	면	34	창	녕	군	37	일	광	면	
24	동선	이공	동	37	일	반	면	11	창	녕	읍	38	정	관	면	
25	동선	이공	동	38	이	성	면	12	남	지	읍	39	철	마	면	
26	동선	이공	동	39	사	성	면	31	고	암	면	37	울	주	군	
16	김해		시	40	지	성	면	32	성	산	면	31	농	소	면	
11	동회	상현	동	41	대	수	면	33	대	합	면	32	강	동	면	
12	동회	원부	동	42	금	곡	면	34	이	방	면	33	온	산	면	
13	동회	원부	동	43	집	현	면	35	유	어	면	34	서	생	면	
14	동회	원부	동	44	미	천	면	36	대	지	면	35	은	양	면	
15	동회	원부	동	45	명	석	면	37	계	성	면	36	청	량	면	
16	동회	원부	동	46	대	평	면	38	영	산	면	37	응	춘	면	
17	동회	원부	동					39	장	마	면	38	범	서	면	
18	동회	원부	동	32	의	령	군	40	도	천	면	39	두	동	면	
19	동회	원부	동	11	의	령	읍	41	길	곡	면	40	두	서	면	
20	동회	원부	동	31	가	곡	면	42	부	곡	면	41	언	양	면	
				32	차	곡	면					42	상	북	면	
				33	대	의	면	35	밀	양	군					

43	삼	남	면	36	사	등	면	37	고	현	면	36	안	의	면
44	삼	동	면	37	연	초	면	38	설	천	면	37	서	하	면
38 김 해 군				38	하	청	면	39	창	선	면	38	서	상	면
39				39	장	목	면	45 하 등 군				39	백	전	면
11	진	영	읍	42 고 성 군				40	하	동	읍	40	병	곡	면
31	장	유	면	11	고	성	읍	11	하	동	읍	48 거 창 군			
32	주	춘	면	31	삼	산	면	31	화	개	면	11	거	창	읍
33	진	례	면	32	하	일	면	32	악	양	면	31	주	상	면
34	한	림	면	33	하	이	면	33	적	량	면	32	응	양	면
35	생	림	면	34	상	리	면	34	횡	청	면	33	고	제	면
36	상	동	면	35	대	가	면	35	고	진	면	34	북	상	면
37	대	동	면	36	영	현	면	36	금	남	면	35	위	천	면
39 의 창 군				37	영	오	면	37	금	성	면	36	마	리	면
31	내	서	면	38	개	천	면	38	진	교	면	37	남	상	면
32	동		면	39	구	만	면	39	양	보	면	38	남	하	면
33	북		면	40	회	화	면	40	북	천	면	39	신	원	면
34	대	산	면	41	마	암	면	41	청	암	면	40	가	조	면
35	구	산	면	42	동	해	면	42	옥	중	면	41	가	북	면
36	진	동	면	43	거	류	면	46 산 침 군				49 합 천 군			
37	진	북	면	43 사 천 군				11	산	청	읍	11 합 천 읍			
38	진	전	면	11	사	천	읍	31	차	황	면	31	합	산	면
40 통 영 군				31	정	동	면	32	오	부	면	32	봉	산	면
31	용	남	면	32	사	남	면	33	생	초	면	33	묘	산	면
32	산	양	면	33	용	현	면	34	금	서	면	34	가	야	면
33	도	산	면	34	축	동	면	35	삼	장	면	35	야	로	면
34	광	도	면	35	곤	양	면	36	시	천	면	36	을	곡	면
35	육	지	면	36	곤	명	면	37	단	성	면	37	초	계	면
36	한	산	면	37	서	포	면	38	신	안	면	38	쌍	책	면
37	사	량	면	44 남 해 군				39	생	비	면	39	덕	곡	면
41 거 제 군				40	신	등	면	40	신	등	면	40	척	곡	면
11	신	현	읍	11	남	해	읍	47 함 양 군				41	대	중	면
31	일	운	면	31	이	동	면	11	함	양	읍	42	쌍	양	면
32	동	부	면	32	상	주	면	31	마	천	면	43	삼	가	면
33	남	부	면	33	삼	동	면	32	휴	천	면	44	가	회	면
34	남	부	면	34	미	조	면	33	유	림	면	45	대	병	면
35	둔	덕	면	35	남	서	면	34	수	동	면	46	용	병	면
				36	서		면	35	지	곡	면	39 제 주 도			

11 제 주 시				22	봉 개 동	14	천 지 동	13	구 좌 읍
11	일 도 1	동	23	아 라 동	15	효 돈 동	31	한 경 읍	
12	일 도 2	동	24	오 라 동	16	영 천 동	32	추 자 도	
13	이 도 1	동	25	연 노 동	17	동 흥 동	33	우 도	
14	이 도 2	동	26	노 형 동	18	서 흥 동	32 남 제 주 군		
15	삼 도 1	동	27	외 도 동	19	대 륜 동	11	대 정 읍	
16	삼 도 2	동	28	이 호 동	20	대 천 동	12	남 원 읍	
17	용 담 1	동	29	도 두 동	21	대 중 동	13	성 산 읍	
18	용 담 2	동	12 서 귀 포 시			22	예 래 동	31	안 덕 읍
19	건 입 동	동	11	송 산 동	31 북 제 주 군			32	표 선 읍
20	화 복 동	동	12	정 방 동	11	한 립 읍			
21	삼 양 동	동	13	중 앙 동	12	애 월 읍			

〈부록 5〉 재외공관용조사표 가구주와의 관계 부호 분류표

